
2020년도 함양군 긴급구조대응계획



함양소방서

< 일러두기 >

-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수립하는 함양군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지침이며,
 - ◆ 실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목 차

심의의결서	1
수정일지	3
용어정의	4
목 차	8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 목 적	8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8
2.1 재난위험성 분석	8
2.2 계획적용 범위	9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9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9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11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12
3.4 초기대응	12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13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15
5. 계획서의 운용책임	17
5.1 일반 책임	17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17

제2절 긴급구조체제

1. 긴급구조통제단	26
1.1 운영책임	26
1.2 통제단 운영조직	26
1.3 현장지휘	30
1.4 설치장소	30

1.5 기 능	30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30
1.7 상황판단회의	31
1.8 운영규모 및 기간	32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34
2. 상황실	34
2.1 운영체제	34
2.2 위 치	34
2.3 대체 119종합상황실	35
2.4 정보통신체계	38
3. 통합지휘체계	38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9
3.2 통합지휘팀	40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43
4. 통제단-대책본부의 연계성	43
4.1 상호협조관계	43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43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43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43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45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45
5.1 자원집결지	45
5.2 자원대기소	45
5.3 수송대기지역	46
6. 재난대응구역	46
6.1 운영개념	46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46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47
6.4 대응구역 통신	47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47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1절 지휘통제계획(#1)

1. 목 적	50
2. 조직 및 운영	50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50
2.2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54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56
2.4 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57
3. 임무수행	58
3.1 총괄지휘부	58
3.2 대응계획부	66
3.3 자원지원부	70
3.4 현장지휘대	84
3.5 긴급복구부	96

제2절 비상경고계획(#2)

1. 목 적	98
2. 조직 및 운영	98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99
4. 임무수행	99
4.1 재난대비 임무	99
4.2 재난신고의 접수	99
4.3 비상경고 발령	100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101
4.5 인접 119상황실 통지	101
4.6 중점관리대상 대한 통지	101
4.7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102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103
4.9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103

제3절 대중정보계획(#3)

1. 목 적	104
2. 조직 및 운영	104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105
4. 임무수행	105
4.1 연락공보담당	105
4.2 대중정보센터	110
4.3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111

제4절 피해상황분석계획(#4)

1. 목 적	112
2. 조직 및 운영	112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14
4. 임무수행	114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114
4.2 초기 조사	114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115
4.4 최초보고	115
4.5 재난사태 선포	115
4.6 지원요청	115
4.7 정보의 표시	116
4.8 대중정보 제공	116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116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116

제5절 구조·진압계획(#5)

1. 목 적	117
2. 조직 및 운영	117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19
4. 임무수행	119
4.1 수색 및 구조	119
4.2 안전점검	119
4.3 비상발전 및 조명	120
4.4 가스 차단	120
4.5 오염제독	120
4.6 방사능 탐지	120
4.7 고립주민 원조	120
4.8 자원집결지운영	121
4.9 응급의료	121

제6절 응급의료계획(#6)

1. 목 적	122
2. 조직 및 운영	122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24
4. 임무수행	125
4.1 현장응급의료소장	125
4.2 중증도분류반	125
4.3 응급처치반	126
4.4 이송반	127
4.5 의료자원지원반	128
4.6 임시영안소	129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130
4.8 응급의료 통신	130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131

제7절 긴급오염통제계획(#7)

1. 목 적	133
2. 운영조직	135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35
4. 임무수행	135
4.1 긴급오염통제반장	135
4.2 식품오염통제팀	136
4.3 감염병통제팀	137
4.4 환경오염통제팀	138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139

제8절 현장통제계획(#8)

1. 목 적	140
2. 조직 및 운영	140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41
4. 임무수행	141
4.1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142
4.2 교통지원팀	146

제9절 긴급복구계획(#9)

1. 목 적	148
2. 조직 및 운영	148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50
4. 임무수행	151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함양군	151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소방본부(소방서)	152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경찰(경찰서)	152
4.4 비상전력 공급-한국전력 긴급복구팀(지역본부 또는 지사)	154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가스 긴급복구팀(지역본부 또는 지사)	155
4.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 - 민간 안전진단팀	156
4.7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지역본부 또는 지부)	157
4.8 통신 - 한국통신(지역본부 또는 지사)	158
4.9 기타(필요에 따른 임무 목록)	158

제10절 긴급구호계획(#10)

1. 목 적	159
2. 조직 및 운영	159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61
4. 임무수행	161
4.1 대피수용팀	161
4.2 구호자원지원팀	163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 목 적	166
2. 조직 및 운영	166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67
4. 임무수행	167
4.1 119종합상황실 통신시스템	167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167
4.3 대체 119종합상황실 통신	168
4.4 현장지휘소 통신	168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168
4.6 대피소와의 통신	168
4.7 통신 유지관리	168
4.8 119종합상황실 메시지 흐름	169
4.9 지원 및 후생업무	169

제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170
1.1. 홍수(집중호우)	170
1.2 태풍	184
1.3 폭설	196
1.4. 지진	211
2. 사회재난	226
2.1 붕괴사고	226
2.2 가스폭발	238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51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262

부 록

1. 각종현황(현장지휘에 필요한 현황)		
1. 자원집결지	283
2. 서 식		
1. 각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289
2.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289
3.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289
4. 지휘권이양협의서	290
5.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291
6. 방사능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292
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293

8.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294
9. 긴급구조 대응지침서	295
10. 상황예측 매뉴얼	296
11. 상황요약절차	297
12. 상황요약양식	298
13.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299
14. 주요 기관 목록	300
15.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라디오 방송국)	300
16.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 방송국)	300
17.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301
18.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301
19. 통제단 주요 지휘관 비상연락망	302
20. 자원동원매뉴얼	303
21. 피해상황분석편람	304
22. 최초보고서	305
23. 자원요청서	306
24. 대중정보보고서	307
25. 피해상황 최종보고서	308
26. 피해상황분석관 표준작전절차(통제단 반별 임무)	309
27. 사상자 조치상황	310
28.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311
29. 통제단보고양식	311
30. 자원동원 매뉴얼	312
31.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313
32. 자원대기소 설치절차	314
33.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315
34. 동원인원현황	316

35. 동원장비현황	316
36. 장비불출현황	316
37. 동원인원 및 장비현황	317
38. 긴급구조지원기관, 단체 출동인원 및 장비현황	318
39. 유관기관 출동인원 및 작업일지	318
40. 구조대원 현황(현장투입)	318
41. 유관기관 통보현황	319
42. 첨단장비 동원현황	319
43. 현장지휘소 전화번호 현황	319
44. 무전기 지급 현황	320
45.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320
46. 재난현장 안전진단 대장	320
47. 재난현장 경리대장	321
48. 재난정보 관리대장	321
49. 장비지원 신청서	322
50. 소모품 불출 현황	322
51. 상황일지	323
52. 문서접수대장	323
53. 문서등록대장	324
54. 병원별 수용능력표	324
55. 사상자 이송현황	325
56. 사상자 현황	325
57. 병원영안실 현황	326
58. 발굴대장	326
59. 구급차 배치 현황	327
60. 실종자 신고 접수대장	328
61. 헬기 인명구조 활동대장	328

62. 자원봉사자 현황	328
63.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329
64.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 소모품)	329
65. 구호물자 접수대장	329
66. 이재민 구호대장	330
67. 구호물자 접수대장	330
68. 통제선 출입 허가증 발부대장	330
69. 공동취재단 명단	331
70. 보도 비표 발급대장	331
71. 긴급구조활동 보도(홍보) 대장	331
72.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332
73.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332
74.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	332
7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332
76.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333

2. 참고자료

1. 표준현장지휘체계	338
2.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구조대응매뉴얼	339
3.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340
4. 비상경고메시지(예시)	341
5.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예시)	343
6.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357
7.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및 대피소, 자원집결소 현황	358
8.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362

9. 소방응원협정체결 대상 현황	365
10.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366
11.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366
12.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366
13. 통제단 주요 지휘관 비상연락망	367
14. 주요기관 목록	368
15.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369
16. 자연재난 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370
17. 유해화학물질 재난 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371
18. 중점관리대상 목록	372
19.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라디오 방송국)	373
20.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 방송국)	373
21.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373

※ 첨부자료

1. 주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374
2. 세부 대응매뉴얼	375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함양군의 공식적인 긴급구조대응계획이며,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 또는 재난대비훈련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 활동 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함양군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 인증

기관·단체	대표자 명	일 자	서 명
함양소방서	구 분 근	2020.02.19.	구분근
함 양 군	서 춘 수	2020.02.19.	서춘수
함양경찰서	류 재 응	2020.02.18.	류재응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박 점 복	2020.02.18.	박점복
함양군보건소	김 영 숙	2020.02.18.	김영숙
함양국유림관리소	박 창 오	2020.02.19.	박창오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 성 관	2020.02.18.	이성관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최 돈 식	2020.02.19.	최돈식
KT 산청지점	최 성 봉	2020.02.19.	최성봉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연 번	장	절	페이지	수정사항	비 고
1			6	사회재난 범위 확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추가
2	1	1	22	재난유형별 위험도 평가 수정 * 태풍(1), 호우(2), 미세먼지(3) → → → 한파(18)	변경
3	1	1	26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소방출동대 편성하여 초기부터 출동대를 확대.편성 운영 * 초기 대응 2.3단계 출동 → 사태완화 시 1단계 하향	추가
4	1	2	41	긴급구조지휘대 조직도 변경 * 상황분석요원 → 신속기동요원	변경
5	2	1	42	통제단 조직임무표 변경 * 총괄지휘부장 ↔ 대응계획부장 * 기타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 부,반별 임무표 수정	변경
6	2	8	164	함양경찰서 분실물 보관기간 추가 * 분실물 보관기간 1년	추가
7	부록	1	1	자원집결지 운영 서식 추가 * 자원집결반, 자원분배반, 행정지원반	추가
8	참고	12	80-83	통제단 지휘그룹,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변경
9	첨부	1	89	민간지원단체 (백호, 보성스카이) 추가	변경
10			38 43 56 63 94 98 152 169 179 참고80 참고81 참고82 참고83 참고84	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안전총괄과 → 안전도시과 수정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수정	변경

용어정의

- **구급차대기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임시 대기하는 장소
- **기관별지휘소(기관별 비상대책상황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당해 기관 소속직원을 지휘·조정·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 **긴급구조(긴급구조 대응활동,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관련기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같은 법·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 **긴급구조대응계획(긴급대응계획)** :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및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계획서
- **긴급구조요원** : 긴급구조에 참가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소속직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지원기관, 유관기관단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긴급구조지휘대(긴급구조현장지휘대, 현장지휘대)**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원, 경찰관서의 연락관, 응급의료기관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사고와 재난발생 초기(통제단 운영 전) 상황에서 현장지휘를 담당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긴급방송체제**(긴급방송체계, 비상방송체계, 비상방송시스템) :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하는 단계
-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2단계**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3단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비상경고**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긴급히 전파하는 대피명령 등 주민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
- **비상경고체제**(비상경고시스템, 비상경고체계) :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사이렌,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

- **비상연락통신체계**(비상 지휘소 Hot-Line)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 주요 지휘관간의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통제단) : 소방서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통제단) : 시·도의 소방본부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됨
-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및 시설
-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대응구역**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소방지휘작전실 3C 센터, 유관기관협조체제) :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의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간 통신조정시스템
 - ☞ 3C : 지휘(Command), 조정(Coordination), 통제(control)
- **표준현장지휘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 **현장지휘관** :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선착대의 장
-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및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단의 현장지휘부서이며, 구조진압반·응급의료소·현장통제반 및 항공통제반으로 구성
- **현장지휘소**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조정·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기 본 계 획

제 1 장 기본계획

제 1 절 계획 개요

1. 목 적

이 계획은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양군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재난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 그리고 국가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과의 연계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대응계획서이다.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2.1 재난위험성 분석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유형과 위험도 순위는 아래와 같다.

《재난유형별 위험도》

재난유형	발생가능성(빈도)			위험도(피해량)			등급 (발생가능성×위험도)	순위
	상(3)	중(2)	하(1)	상(3)	중(2)	하(1)		
태풍	*			*			9	1
호우	*			*			9	1
미세먼지	*			*			9	1
산불	*				*		6	2
수난사고	*				*		6	2
산악사고	*				*		6	2
폭염	*				*		6	2
감염병확산		*			*		4	3
홍수		*			*		4	3
가뭄		*			*		4	3
폭설	*					*	3	4
지진			*	*			3	4
붕괴			*	*			3	4
대형화재		*				*	2	5
황사		*				*	2	5
교통사고		*				*	2	5
산사태			*		*		2	5
한파			*		*		2	5

2.2 계획적용 범위

- 기본계획과 기능별대응계획은 재난위험 분석결과에 나타난 재난유형과 기타 모든 형태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각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재난유형별 계획(유형별 대응상의 방법과 절차)은 각각의 재난유형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2.1 자연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2.2.2 사회재난 대응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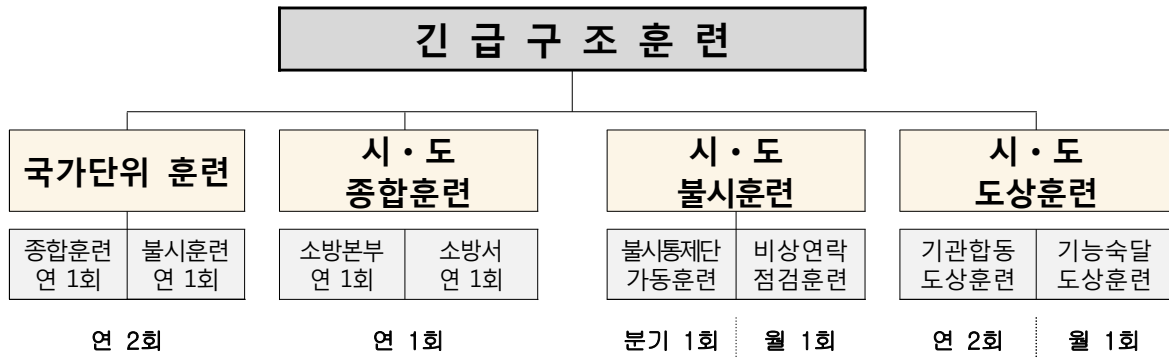
- 이 계획은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화재(산불 포함),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축물 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재난발생에 대비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침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4(재난대비 훈련 등) 및 15(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 훈련 필요성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
 - 신속·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 훈련체제 구축



-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 부·반원 및 각 기관 임무·역할을 수행
 - 대상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년 1회 실시
 -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 긴급구조관련기관(경찰, 군, 지자체, 공사 등)
 -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지원본부 가동 점검
 - ※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긴급통제단 연계 가동 「국가단위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실시(연 2회)

- **(불시훈련)**
 - ① 비상연락망 불시점검훈련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점검을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황실에서 일제동보장치를 가동, 긴급구조지원기관 응답률 평가
 - 실시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월 1회
 - 실시방법 : 동보장치 활용 응소율, 비상연락망 정비상태 점검
 - ②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 재난발생 장소·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분기 1회)

- **(도상훈련)**
 - ① 기관합동 도상훈련(연2회) : 유관기관이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 ② 기능숙달 도상훈련(월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가.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 제55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4조, 제6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호

나. 교육개요

- (대 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관리자, 담당자
- (교육기간) 신규자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 관리자(1일, 7h), 실무자(2일, 14h)
- (운영체계) 각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으로 중앙·지방소방학교와 협조하여 교육 실시
 - 소방본부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연간 교육계획 수립·운영
 - 중앙·지방학교 : 교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관파견 및 교육운영
 - ※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소방서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예시) 장소 : 소방서 회의실에서 소집교육
- (강 사) 학교 재난교수, 교관요원, 소방서장 등 간부
- (교 재) 8과목*, 2권, 1~2월(중앙소방학교 => 교재파일 소방서 공유)
 - ┌ 1권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평가실무, 자원관리, 긴급구조실무)
 - └ 2권 재난관리(국가재난관리, 재난법,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체계)
- (교육유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기관통보, 교육수료 시 학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다 지원기관 협조사항

- 관할소방서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수요 제출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참석 독려(신규자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 추진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 · 분배와 현장 통제로 혼란방지 및 효율적 재난대응
- 실시개요
 - 평가주기 : 년 1회(시행령 제66조의4 제1항)
 - 평가기관 및 대상기관
 - 소방본부 : 시·도 소재 지방청, 공공기관 지역본부 등
 - 소방서 : 시·군·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지사 등
 - ※ 2 이상 긴급구조기관과 관련된 지원기관 평가 → 주된 소재지 관할 긴급구조기관이 평가
- 평가절차 :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지침(2019.12.09.시행)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행정안전부 안전정보 공개(재난안전법 제66조의 9*) * 시행일 : 2020.6.4.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재난현장 대응활동 시 신속한 자원동원 등 지원협업체계 강화

3.4 초기대응

- 일반적으로 재난(테러, 자연적 재난 등 제외)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는 최초의 대응기관이다. 소방관서는 초기의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재난의 규모와 대응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시작한다.

3.4.1 일상적 소규모 사고

- 만약 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단순한 사고인 경우 소방과 현장대응에 필요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며,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3.4.2 재 난

-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소방출동대를 편성하며, 초기부처 출동대를 확대 편성·운영한다. * (초기) 대응2·3단계 출동 →(사태 완화 시) 대응1단계로 하향
- 만약 비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중규모 이상의 재난이거나 다수의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여 다수 유관기관의 지휘통제가 필요한 경우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의 전반적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때, 통제단장은 개략적인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재난대책본부장)에 보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사항을 요청한다.
- 만약, 재난의 규모가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 차원의 동원자원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고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될 경우, 통제단장은 지역재난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건의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법령에 승인된 권한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
- 통제단장은 지역재난 선포가 있는 후 긴급한 대응활동이 종료되고, 재난현장의 위험상황이 진압된 경우에는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 선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국가차원의 자원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 지원을 요청하고,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긴급대응협력관 주요임무
 - (평시 임무)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소속기관 보유자원 관리
 - (재난시 임무)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재난관련업무 부서의 실무책임자 중 지정
- 긴급대응협력관 수행업무
 -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긴급구조 관련 보유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 등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활동 지원 등 해당기관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변경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사실을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초기대응

-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 재난 시 동원된 각 요원의 일상 업무는 이 계획상의 임무로 대체된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포함)의 각 요원(대응계획상의 필수요원)은 119종합상황실 비상경보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되고, 이 계획상의 임무와 현장에서 분담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각 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해당기관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에 임함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함양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서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나.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대상
 1. 재난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2. 재난안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실시한 대응활동
 3. 기타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나.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통제단장) 및 단원 5 ~ 7인
 - ※ 구성 : 통제단장, 통제단 부·반장,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요원 등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활용 평가(본부, 서별 연1회 이상 원칙)
 - ※ 세부평가표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참조

다. 평가내용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
- 긴급구조대응계획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 통합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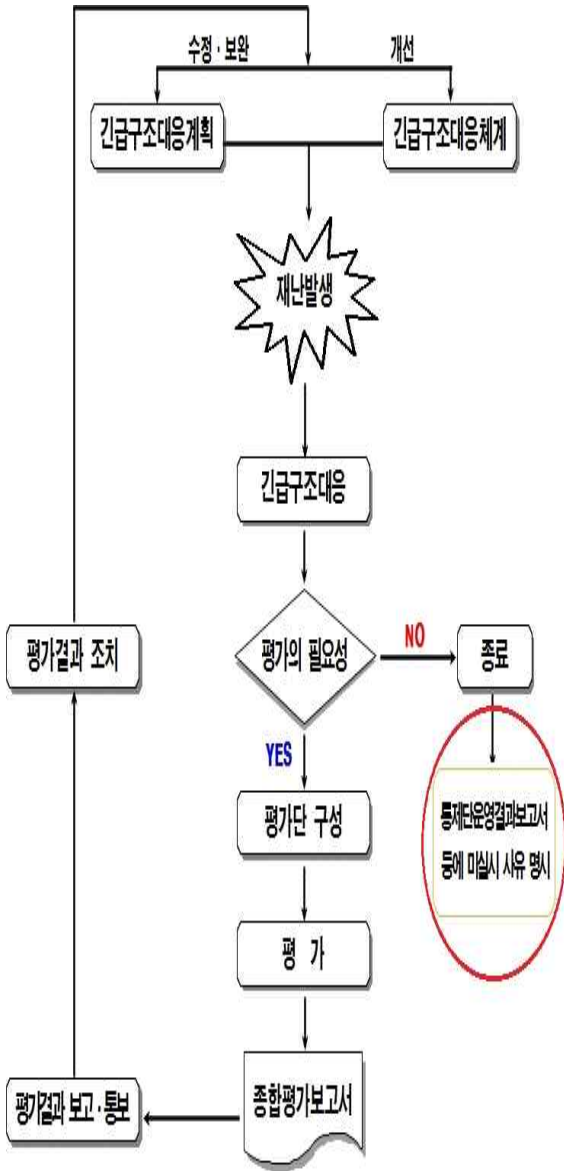
라. 평가 미실시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과의 활동평가를 미실시 할 경우 통제단운영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 기록 관리

긴급구조활동 평가절차

< 평가절차 흐름도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1)



평가의 필요성 판단

-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평가대상 해당여부, 평가실시 필요성 등 결정
-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실시
- 평가 미실시 경우 통제단운영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 명시 기록·관리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5인 이상 7인이하로 구성
-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등 평가근거자료 조사



평가

-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별 1~5점까지 평점 부여 후 평가표 작성, 평가위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별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실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취합된 평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 의결을 거쳐 확정



평가결과 조치

- 통제단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 등 필요 대책 수립·추진
-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장이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평가결과 통보

5. 계획서의 운용책임

5.1 일반 책임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일반책임이 있다.

-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한다.(『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30조)
- 필요에 따라 이 계획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응능력을 유지한다.
-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장비, 시설들을 현장에 배치한다.
- 임무수행 중 작성하는 각종 기록서식, 대원과 장비의 재배치, 부여된 임무의 수행, 현장 안전관리, 자원배치현황을 작성·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들을 확인·감독한다.
- 통제단장에 의해 지시된 사항이 재난대책본부 및 기타 지원기관의 지휘소에 시기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 계획과 지원계획에서 정한 재난 시 행동절차들을 훈련(연습) 및 평가하는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
- 각 요원이 이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지원기관 지휘관(연락관) 및 자원봉사자는 통제단의 전반적 피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필요시 현장의 대응요원에게 인력, 장비, 시설 등 즉각적 지원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자원대기소를 설치 운영한다.
- 현장 자원대기소는 각 통제단(현장지휘소)이 운영하는 통합적 현장대기소와 각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현장 자원대기소가 각각 운영될 수 있다.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5.2.1 지휘통제 계획(기능별 계획 #1)

- 이 기능별 계획 #1은 재난대응의 전반적 지휘통제절차를 규정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각 지원기관의 장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필요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자원 동원
 - b.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가동
 - c. 대응작전 계획(대응방침) 승인 및 재검토
 - d.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자원을 배치하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재난현장대응 및 긴급복구 활동 관리·통제
 - e. 재난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를 포함한 생명과 재산상 보호조치
 - f. 현장대응요원과 지원기관의 현장대응정보, 대응계획부의 상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보호조치(긴급대피,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g. 필요하다면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책본부, 상급 통제단 등에 추가적인 지원요청
 - h. 필요하다면, 일상적 행정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 재배치
 - i. 주요 상황기록 자료를 관리
 - j. 이 계획에 포함된 각 지원기관과의 임무를 조정하고,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5.2.2 비상경고 계획(기능별 계획 #2)

- 이 기능별 계획 #2는 각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과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절차를 규정한다.
-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함양소방서 상황실의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3C 센터”라 한다)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권자(군수, 통제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대응 계획의 가동(비상체제 가동) 시점으로서의 기능수행
 - b.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필요시 즉각 긴급대피시스템 가동
 - c.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d. 이 계획서 상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기타 주요 인사에 대한 비상경고 및 비상연락 실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말하는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곳은 상황실이 이 기능을 하도록 작성할 것

5.2.3 대중정보 계획(기능별 계획#3)

- 이 기능별 계획 #3은 재난지역주민, 언론매체, 군수, 의회의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함양군수 및 통제단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연락공보담당(소속기관 및 직책명)이 이 계획서에 대한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신속한 주민보호정보(뉴스) 제공을 위한 지역언론매체와 119종합상황실간에 설치된 주민보호 긴급방송체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b.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비상방송매뉴얼(메시지)을 개발 및 유지·관리
- c.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VIP에게 주요상황에 대한 브리핑
- d.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중정보의 요청(질문)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5.2.4 피해상황분석 계획(기능별 계획 #4)

- 이 기능별 계획 #4는 피해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에 대한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재난발생 장소와 관련자료 수집, 현장지도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응계획부장(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이 계획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 시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 b. 통제단의 재난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장지휘대장, 기타 주요 참모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
 - c. 자원의 배치 및 활용상황을 감독하고 필요시 추가자원을 조달
 - d.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상급 통제단장에 지원요청
 - e. 보고서 준비

5.2.5 구조진압 계획(기능별 계획#5)

- 이 기능별 계획 #5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일반적인 소방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계획으로, 현장지휘대장(지휘조사담당)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이 임박한 경우 대중에게 비상경고체제(기능별 계획 #2) 가동
 - b. 적절한 재난통신체계(기능별 계획 #11) 확립
 - c. 인명구조를 실시
 - d. 필요시 오염제거 및 확산방지 임무를 수행
 - e. 필요시 긴급대피 결정을 내리고 경찰 연락관과 협조
 - f. 주민보호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연락공보담당과 대응계획부에 제공
 - g.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수단들을 발표 실행
 - h. 구조 진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지역의 교통통제 및 일반인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 경찰 연락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5.2.6 응급의료계획(기능별 계획 #6)

- 이 기능별 계획 #6은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함양군의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춘 응급의료소장(함양군 보건소장)이 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력, 구급차, 응급의료시설, 그리고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을 조정·통제
 - b. 임시영안소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5.2.7 긴급오염통제 계획(기능별 계획#7)

- 이 기능별 계획 #7은 재난 시 긴급오염통제(감염병 등 생물학적 재난에 한한다.) 및 공중보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계획에 대한 가동과 대비책임은 긴급오염통제반장(함양군 환경위생과장)에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오염통제 및 공중보건에 대한 조치사항 발표 및 수행
 - b. 재난발생지역내 긴급오염통제 및 보건위생자원의 전반적 배치 및 관리 조정
 - c. 전염성 질병의 역학조사 및 억제활동을 지시 통제
 - d. 주민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예방책 강구
 - e. 식수를 보급하고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의 조건에 대해 규정 발표

5.2.8 현장통제계획(기능별 계획 #8)

- 이 기능별 계획 #8은 함양군 관할구역 내 현장통제 및 치안유지에 책임이 있고 법 질서 유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조정·통제 할 수 있는 함양경찰서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역주민 및 주요 재난관련 직원에게 전파 지원
 - b. 비상경고(기능별 #2) 계획을 지원
 - c. 대책본부, 통제단, 재난발생지역, 119종합상황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보장 활동 수행
 - d. 긴급대피(소개) 절차 수행
 - e.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
 - f. 재난발생지역 및 위험지역에의 일반인 출입 통제
 - g. 필요시 통행금지 실시
 - h. 탐색구조 및 경상자 이송업무 지원

5.2.9 긴급복구(기능별 계획 #9)

- 이 기능별 계획 #9는 긴급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2차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임시) 복구활동에 책임이 있는 긴급복구반장(함양군 안전도시과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고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9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 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업을 포함)자원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
 - b. 붕괴사고 등 중장비를 사용한 구조작업 지원
 - c. 통제단장(통합지휘팀)의 승인을 받아 재난으로 인한 잔해물을 긴급 제거, 처리
※ 재난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다.
 - d. 구급차 통행로, 긴급구조 비상출동자원 수송로를 확보 유지
 - e.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의 수송, 분배, 저장(보관)임무를 지원
 - f. 교통로 확보에 필요한 자원(자재, 인력, 장비 등) 제공
 - g. 비상전력을 공급
 - h.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 협력업체의 동원 및 배치임무 조정
 - i. 2차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적·공학적 정밀검사 실시

5.2.10 긴급구호계획(기능별 계획 #10)

- 이 기능별 계획 #10은 재난희생자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재난심리상담, 의식주, 수송을 포함한 긴급구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긴급구호기능은 다수의 공·사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 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은 긴급구호반장(함양소방서 구조구급담당)에 있다.
-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10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구호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조정 통제
 - b. 긴급대피한 이재민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식사와 의류보급 등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 c. 재난심리상담프로그램(외상 후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과 기타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 조정 통제
 - d.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숙소 및 긴급대피소 임시 운영
 - e. 주민과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한 인력에게 비상수송서비스 제공
 - f. 실종자 수색, 노약자 도우미 등 재난 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조정 통제

5.2.11 재난통신계획(기능별 계획 #11)

- 이 기능별 계획 #11은 재난통신체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요원, 통신장비, 긴급 통신메시지 흐름에 대한 감독능력을 갖춘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또는 3C 센터장)이 이 계획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통제단과 대책본부, 통제단과 지원기관, 주요 지휘관간의 통신체계 및 통신절차 확립 조정

 - b. 상급 통제단, 인근 지방자치단체 통제단, 자원동원 매뉴얼상의 주요 공·사기업체, 자원봉사단체, 기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단체간의 통신체계 확립·유지

 - c. 현장대응활동에 참가한 주요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가 설치된 경우 이들 현장지휘소와 통제단간의 통신체계 확립

 - d. 비상방송메시지 등 메시지관리 책임자의 119종합상황실 배치 및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 수정보완 및 전달절차 조정통제

 - e. 3C 센터의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지원기관단체의 추가 통신 연락관의 파견근무 요청

제 2 절 긴급구조체제

1. 긴급구조통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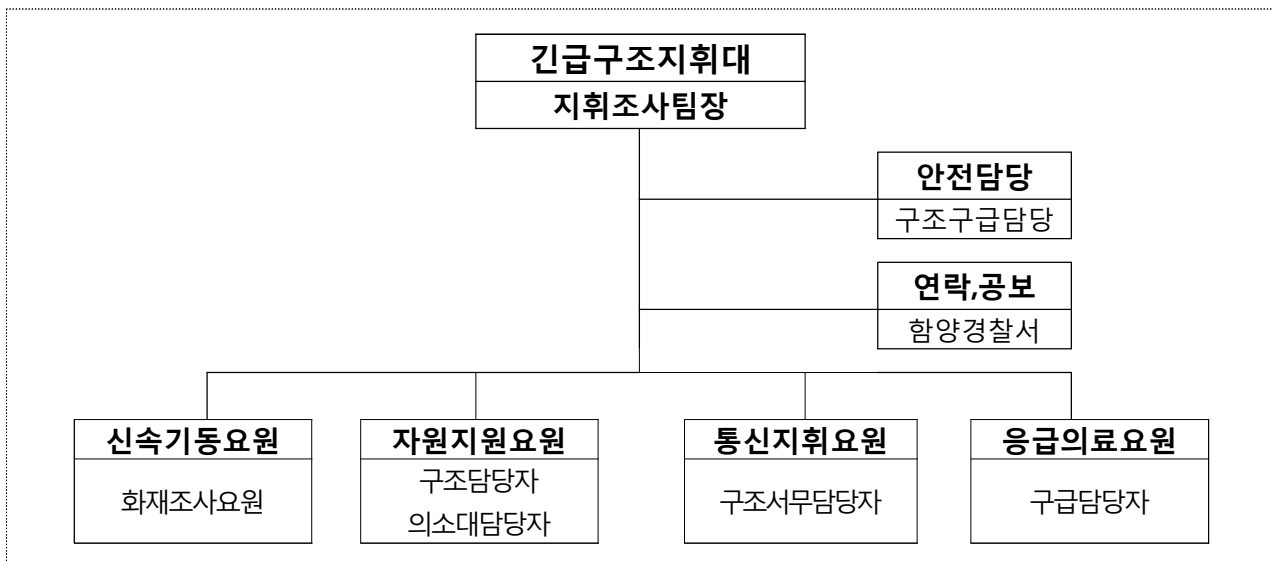
1.1 운영책임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통합조정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1.2 통제단 운영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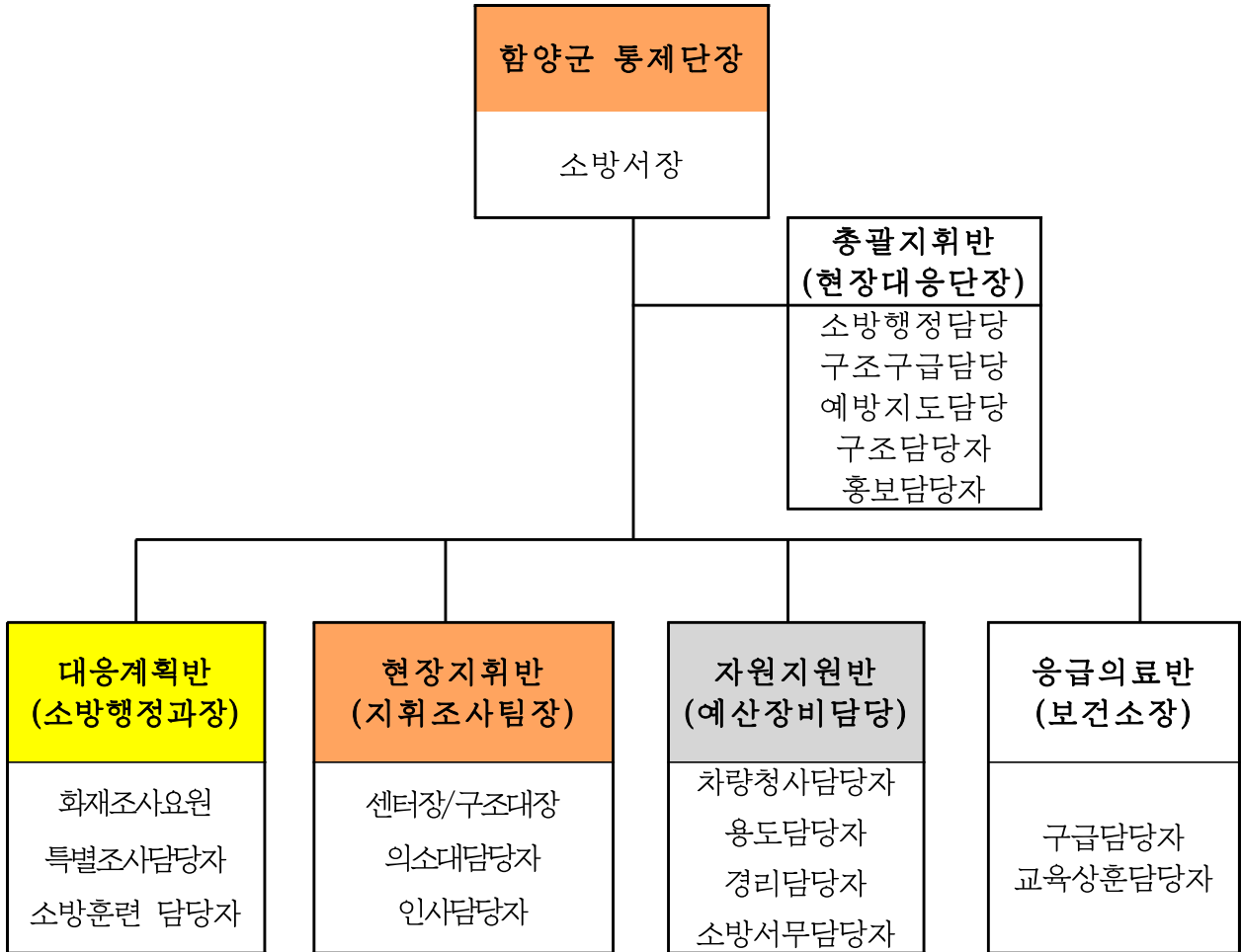
1.2.1 대비단계

- 평상시 훈련이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지 않고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을 지휘한다.
- 대비단계



1.2.2 대응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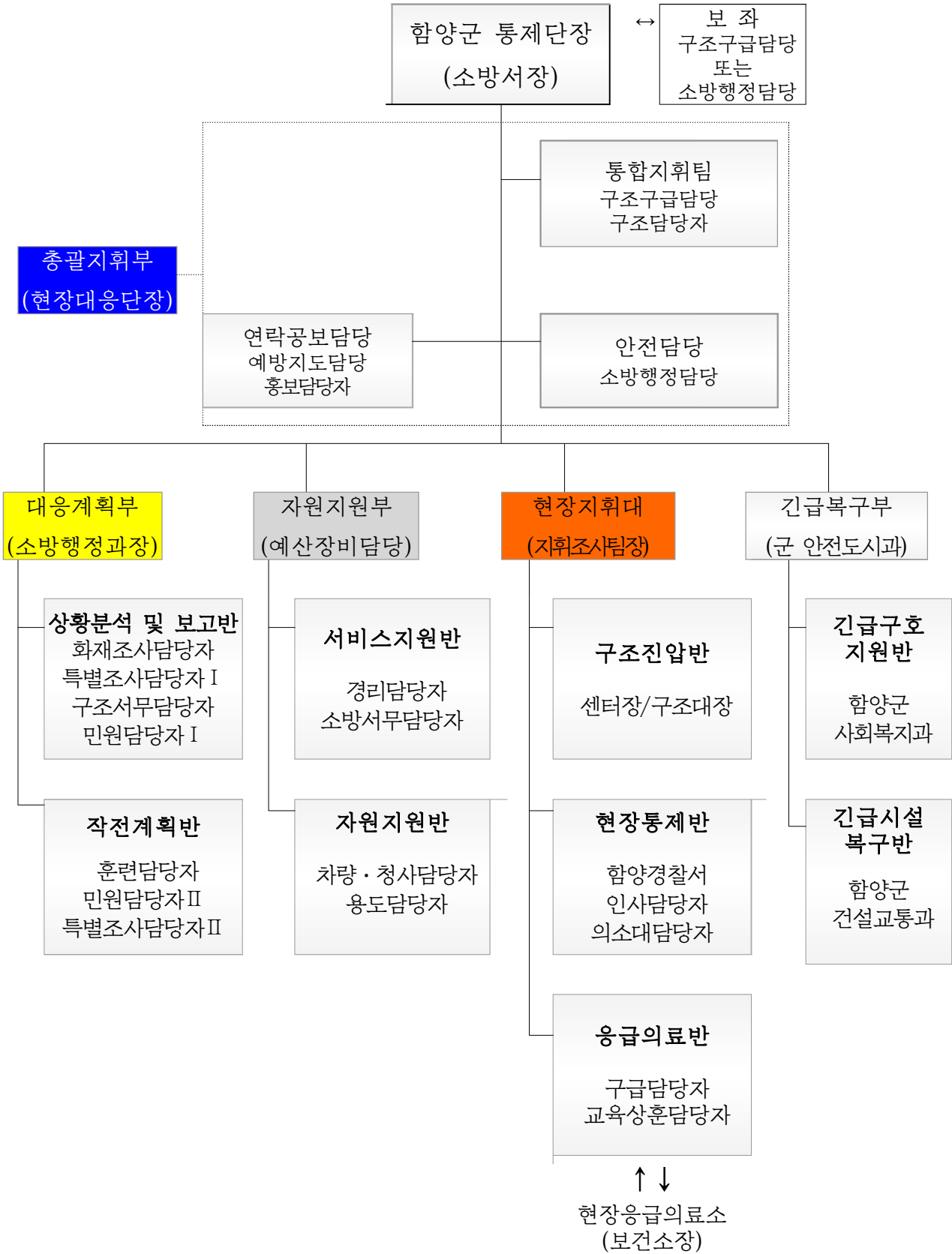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 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2.3 대응2단계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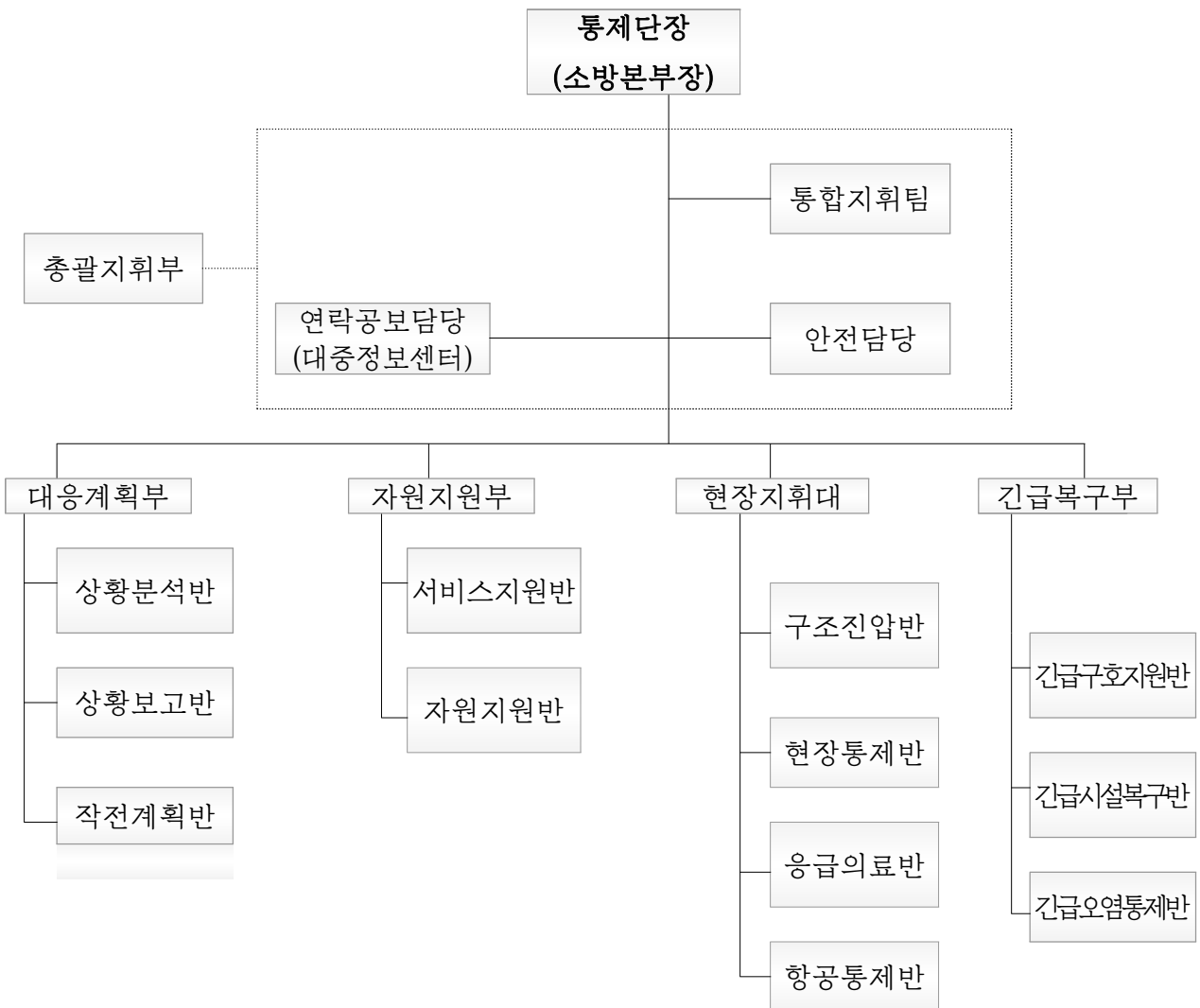
《 함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



1.2.4 대응3단계

-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함양군 통제단은 대응2단계 연계 임무를 지속 실시한다.
- 대응3단계에 운영되는 자원지원부의 자원대기소와 자원집결지, 긴급복구부의 항공통제반, 긴급오염통제반은 대응2단계 해당 부(대)의 요원이 겸임하며, 도 통제단요원의 지원으로 구성한다.

《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



1.3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는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 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 내용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내용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1.4 설치장소

- 긴급구조통제단은 사회재난(국소지역 재난)시에는 현장에 설치하고, 자연재해(광범위한 지역재난)시에는 지휘작전실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이 규모, 각종 여건 등을 고려, 적의 판단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은 주요 지원기관 및 함양군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통제단 운영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1.5 기 능

- 긴급구조통제단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하여 함양군 차원의 긴급구조활동을 통합 조정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는 긴급구조통제단에 해당 지휘소의 가동여부와 운영위치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지원기관의 장은 군 전역에 걸친 대응활동의 통합조정을 위한 지원책임을 진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초기 재난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기능과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활동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가동되는 중앙현장지휘소의 역할을 한다.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 긴급구조통제단은 대응1단계 이상에서 가동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통제단 운영기준을 참고할 것. 본 지침서는 시·도용이며, 시·군·구통제단은 1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니 소방서에 지침 시달시 1단계까지 포함할 것.

- 재난시 함양소방서 및 통제단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요 지원기관(부서)의 일
상적인 운영체제는 일시 중지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1.7 상황판단회의

- 개최시기 :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주재 :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 회의참석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장(필요시 반장), 재난주관 부서의 과장, 긴급구조
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
- 주요결정 사항
 -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확대가능성, 피해현황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여부와 운영단계 및 운영시기
 - 진행되고 있는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8 운영규모 및 기간

-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규모는 재난상황 및 규모에 의해 통제단장이 각 부장의 상
황판단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이 경우, 통제단장은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
황 및 규모에 따라 통제단 운영규모 및 구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1.8 대응단계별 통제단 운영개념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응단계 0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소방서 차원의 긴급구조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발생 상황. ◦ 긴급구조지휘대(소방·경찰·응급의료)의 일상적 현장지휘체계가 운용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한다. ◦ 상황실에서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 부분적 운영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함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 소방본부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가동된다. ◦ 부분 가동되는 소방본부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함양소방서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함양소방서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지역재난 선포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 소방본부 차원의 전면적 지원 필요, 중앙통제단의 지원활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 ◦ 함양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되며,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된다. ◦ 소방본부 통제단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 함양군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본부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경상남도 통제단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 통제단장(소방서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 긴급대응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지원기관은 통제단 운영요원을 배치시킨다. 	특별재난 지역선포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 긴급구조통제단은 1개의 총괄지휘부 및 4개의 하위단위조직(부)을 가지고 있다.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응계획부 : 재난상황분석, 대응정책 개발, 우선순위 결정, 전반적인 대응활동의 조정
- 현장지휘대 : 기능별 대응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조정·통제
- 자원지원부 : 통제단 각 부의 업무지원 및 현장대응자원을 제공
- 긴급복구부 : 긴급시설복구, 재난희생자의 긴급구호, 긴급오염통제 등의 총괄 조정

○ 통제단 부서별 책임자 지정 : 기능별 계획 #1(지휘통제) 참조

《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임무 》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 응 계 획
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 지휘통제계획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 전반적 대응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기타 통제단장 지원활동	- 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계획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지휘통제계획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 지휘통제계획 - 피해상황분석계획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휘통제계획
	작전계획반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 지휘통제계획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 지휘통제계획 - 재난통신계획
	자원지원반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지휘통제계획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자원대기소 운영	- 구조진압계획
	현장통제반	-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현장통제계획
	응급의료반	-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응급의료계획
	항공통제반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 항공구조활동 지 침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 긴급구호계획
	긴급시설복구반	-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긴급복구계획
	긴급오염통제반	-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오염통제계획

2. 상황실

2.1 운영체제

- 상황실의 운영체제는 재난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다르다.
- 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심각한 경우(대응3단계)에 함양소방서 상황실이 완전 가동되고, 현장대응활동의 통합지휘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 운영된다.
- 통제단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에 의해 비상동원 된다.
- 각 지원기관은 비상출동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 및 3C 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상시 파견대상 기관은 필요에 따라 보강근무 요청

2.2 위 치

- 함양소방서 상황실은 소방서 건물 2층(현장대응단)에 위치하고 있다.

2.3 대체 119종합상황실

- 함양소방서 상황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119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 대체 119종합상황실은 함양소방서 상황실이 되며, 함양소방서 2층에 위치하고 있다.
- 대체 상황실로 지정된 곳에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준하는 기본적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2.4 정보통신체계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체계의 구성요소를 기술한 것이다.

2.4.1 함양군 비상연락통신체계(비상지휘소 Hot-line)

- 이 체제는 함양군의 주요 지휘관간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이다.
- 재난 및 비상사태시 함양군수, 각 읍·면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등 군 핵심 간부와 지휘소와의 재난발생 초기 비상통신 연계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2.4.2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함양군 아마추어 무선(HAM), 응원협정을 체결한 각 택시 사업장(TRS), 기타 긴급구조 통신망훈련에 참가하는 통신자원봉사자간의 통신네트워크이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의 구성원은 긴급구조활동시 통신지원 임무를 맡는다.
- 이 임무에는 긴급구조통제단 통신지원팀 보조, 119종합상황실 운영지원 외 다음과 같은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 a. 대규모의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를 위한 각 대별 통신원 역할 수행. 정기적 통신훈련 실시
 - b. 군 재난대응구역과 군 긴급구조통제단간 통신 연계 제공
 - c. 통신자원봉사자 지원임무
 - d. 긴급대피정보 확산
 - e. 시 전역에 대응요원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수송대기지역 통신망” 제공
 - f. 메시지 센터 운영지원
 - g. 도보, 자전거, 차량 메시지 전달
 - h. 재난발생시 통신 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술상의 지원
 - i. 통신자원봉사자 근무기록
 - j. 기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긴급의사전달 임무 등

2.4.3 긴급구조보조통신체계 조직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통제단 자원지원부 통신지원팀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 서비스는 통신지원팀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

긴급구조 보조통신시스템	
조직망	운 영
자원관리통신망	각 대응구역별 배치되는 재난대응자원을 군 및 도 긴급구조통제단과 연계
수송통신망 (수송대기지역)	긴급구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육해공 수송수단간 통신망 제공. 함양군 전역에 위치한 무선중계국 교환원을 119종합상황실 보조통신담당자에 연결(추진예정)
특별망	긴급구조통제단을 특정 재난지역과 연계
비상통신망	재난상황에 따른 임시통신망 구성

2.4.4 비상경고시스템

- 비상경고시스템은 각 방송사(신문매체 포함) 및 주요 민간 무선중계국에 경보 및 주민보호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재난 공공정보를 배포한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다.

2.4.5 3C 센터

- 119종합상황실 3C 센터는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에 의해 통합운영되는 주요 지원기관간 통신조정시스템이다.
- 이 통신시스템은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면서 각 지원기관간 통신 및 기타 긴급구조 관련 비상통신시스템을 중계 또는 연계하기 위한 중앙 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 이 시스템은 대응2단계와 대응3단계에서 가동된다.

2.4.6 긴급방송체계(비상방송시스템: 긴급구조 케이블 TV 방송국)

- 일상적으로, 혹은 재난발생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비상경고, 긴급대피, 기타 공공정보의 핵심 요소를 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이다.
- 소방본부 옥상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로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긴급메세지 위성방송 중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긴급방송 및 중대발표가 가능하다.
- 비상경고 메시지의 내용은 비상경고시스템 또는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해 전파된다.

2.4.7 이동 지휘통제시스템

- 이동 지휘통제시스템은 소방본부 통합지휘차에 탑재되어 있다.
- 소방본부는 현장지휘소에 소방본부 통합지휘차를 배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 지휘소(지휘소)는 통합지휘차의 인근에 위치하여 유기적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한다.
- 각 지휘통신차량은 지휘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회전경광등을 장착하고 현장대응기간(특히 야간) 동안 작동시킨다.

3. 통합지휘체계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1.1 통합지휘 개념

-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하나의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전반적 대응체계를 말한다.
- 통합지휘는 현장지휘대, 표준현장지휘체계, 3C 센터,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을 통해 확립된다.

3.1.2 통합지휘 적용기준

-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팀)를 가동한다.
 - 2개 이상의 관할구역(자치단체)에 걸친 재난
 - 하나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지원기관(국가기관을 포함)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

3.1.3 통합지휘 책임

-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함양소방서는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 기능별계획 가동책임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통제단장의 통합지휘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3.1.4 단계별 통합지휘절차

대응단계	통제단 운영	통합지휘(팀) 운영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은 경우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가 통제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원기관 연락관은 현장지휘대장과 공동으로 소속 기관의 대응 자원을 통합 조정한다. -3C 센터, 통합지휘팀은 운영되지 않는다. - 필요 시 약식통제단이 가동된다.

<p>대응2단계 (중형재난)</p>	<p>대응구역별 통제단 가동되는 경우</p>	<p>-소방서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편성 운영되고,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각 대응구역 통제단 소속 통합지휘팀의 임무를 수행한다. -대응구역별 3C 센터가 완전 가동된다.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가동된다.(통제단 부분 운영)</p>
<p>대응3단계 (대형재난)</p>	<p>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되는 경우</p>	<p>-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응구역별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정통제를 받는다. -시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시 통제단 통합지휘팀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본부 3C 센터가 가동된다.</p>

3.2 통합지휘팀

3.2.1 기능

- 각 유관기관의 자원을 통합시키고, 임무를 분담하며 전반적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며, 통제단장의 지휘의사결정을 지원한다.

3.2.2 조직

-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 및 소방본부의 각 통합지휘팀은 경찰, 군부대, 응급의료소 등 주요 연락관으로 구성된다.

3.2.3 조직운영

- 통합지휘팀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의 주요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사전 조직된 주요 유관기관의 연락관 지휘그룹이다.
- 통합지휘팀은 통제단이 활동을 개시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주요 의사결정이 신속히 전달 가능하도록 즉시 협조해야 한다.

- 통합지휘팀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활동(임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통제단장과 비상연락전화를 통해 협의하고, 즉시 상호 약속된 장소(함양소방서 또는 재난현장)에 합류하여야 한다.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3.1 근 거

- 함양군 유관기관협조시스템은 함양소방서 **긴급구조응원협정서**에 의거한다.
- 협정서는 각 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의 상호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양군 외의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함양군은 재난 시 각 대응구역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다.

3.3.2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협조체제

- 상호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함양소방서는 대응구역별 상호협조지역으로 나눈다.
- 각 대응구역별 유관기관협조체제는 각 소방서 통제단(119종합상황실 3C 센터)에서 조정한다.
- 통제단장은 각 구역 내 주요 유관기관의 장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3.3.3 기능별 협조체제

-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는 아래 기관(부서)에 의해 기능별로 책임 관리된다.

상호협조 분야	책임기관(부서)
1. 지휘통제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구조구급계), 함양군(안전도시과)
2. 비상경고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지휘조사계), 함양군(안전도시과)
3. 대중정보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예방지도계)
4. 상황분석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지휘조사계), 함양소방서(예방지도계)
5. 구조진압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구조구급계), 함양소방서(지휘조사계)
6. 응급의료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구조구급계), 함양군보건소
7. 오염통제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 함양군(환경위생과)
8. 현장통제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 함양경찰서(정보보안과)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9. 긴급복구계획 상호협조	함양군(안전도시과), 함양군(교통건설과), 한국전력
10. 긴급구호계획 상호협조	함양군(안전도시과), 함양군(사회복지과),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11. 재난통신계획 상호협조	함양소방서(지휘조사계), KT산청지사

3.3.4 기능별 협조체제의 운영책임

- 각 기능별 계획가동의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은 각 기능별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조직의 자원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는 각 임무별 대체 책임자 및 운영요원을 지명하고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들은 각 임무별 책임자 부재시 책임자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책임자들은 주기적으로 각 책임임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브리핑을 자치단체장 및 통제단장에 실시하고, 각 기능별 상황판에 관련 상황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제공한다.

3.3.5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각각의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가동하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상호통신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군 전역에 걸친 긴급구조 대응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현장대응기관으로 배치된 각 지원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지휘부(통합지휘팀)로부터 임무할당을 받는다.
- 기타 모든 지원기관은 함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도 119종합상황실)에 피해상황과 필요사항을 정확히 통보할 능력을 갖춘 현장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조직 운영한다.

3.3.6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 세부운영계획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휘소 운영기준(설치와 종료)
 - 교대조 운영계획
 - 연락관 지정 및 상호통신체계
 - 상황통보(보고) 및 브리핑 실시계획
 - 통신
 - 내부통신
 -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통신
 - 상호 연락 메시지 119종합상황실 운영
 - 정보 수집, 평가 및 확산
 - 교통수단(수송계획)
 - 자원배치 절차

4. 통제단-대책본부 연계성

4.1 상호협조관계

- 재난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호협업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3항에 의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법 52조 제7항),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지원에 필요한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여 협업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각급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의 협의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 제10항)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3항)

- 위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5.1 자원집결지

- 함양군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예산장비담당)은 재난 인근지역에 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할 책임이 있다.
- 자원집결지는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에서 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 복구, 구호자원을 재난지역 전체에 배치 및 배포하고, 부상자 외부수송 지원을 위한 임시집결지점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장소가 자원집결지로 운영한다.
 - 함양군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 사전 지정된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기타 시 소유 건물, 공터, 학교 등 육해공 수송수단의 활용이 편리한 곳이 집결지로 사용된다.
- 인근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각 중앙부처(청)의 지원자원은 지정 공표된 집결지에 집결한다.
- 자원집결지에는 각 재난현장으로 배치되는 자원을 수송할 수송대기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 이 수송대기지역의 운영은 자원지원부 시설(서비스)지원반 수송지원팀에서 담당한다.

5.2 자원대기소

-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한 자원집결지의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배치 전 대기, 교대조 운영 및 대응요원들의 휴식을 위한 자원대기 장소이다.

5.3 수송대기지역

- 현장대응요원 및 대응자원 수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 수송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 수송대기지역은 대응2단계(필요시)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인 경우 운영되며, 통제단 수송지원팀은 즉시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들을 배치한다.
- 각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받는다.
- 지정된 대응구역별 수송대기지역은 각 소방서이다.
- 군 수송대기지역은 시 자원집결지 운영장소이다.

6. 재난대응구역

6.1 운영개념

- 재난대응구역은 재난초기 지휘통제가 마비된 중형재난 및 대형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함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이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로 소방서 통제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곧 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되어, 전 함양군에 걸친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진다.
- 함양군에 지정된 각 대응구역은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피해평가, 자원배분, 긴급복구를 위한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대응구역은 함양소방서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각 소방서별 통제단장(또는 현장지휘대장)을 통해 각 대응구역내의 긴급구조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 각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체 통제단을 조직하고 각 유관지원기관 지휘소와 소방본부 통제단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며, 즉각적이고 자치적인 대응활동을 관리한다.
- 함양소방서 통제단장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 각 재난대응구역은 대응2단계,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에 의해 관리된다.
- 대응구역별 자치적 운영기준은 지진과 같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운영된다.
- 주요 대응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해상황조사, 대응자원 조직, 통제, 연락
 -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
 - 지원자원의 보고
- 다음의 지원기관은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에 파견할 연락관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 함양경찰서
 - 함양군보건소
 - 육군8962부대 3대대
 - 응급의료기관
 - 중장비협회

- 버스운송협회
- 트럭운송협회
- 적십자사
-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 KT 산청지사
- 각 연락관은 재난현장(통제단)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사전 비상연락을 취하고 함양소방서 상황실에 집결한다.
- 응급의료소 운영요원은 함양소방서 상황실의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함양소방서 통제단(현장지휘대)으로 출동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 운영장소를 지정 설치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자원봉사자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연결 및 집결기관이 된다.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 함양소방서는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구역 SOP를 개발 유지하도록 한다.
- 이 SOP는 대응구역활동을 확립하고 운영하는 절차이다.
- 함양소방서는 대응구역별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소방서 인근장소에 연락 및 협조 데스크 설치 운영
 - 재난대응 인력과 장비의 집결장소
 - 응급의료 및 보건 활동
 - 자원봉사자 집결지
- 모든 지원기관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요원에게 재난발생 시 대응구역별 소방서로 응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야 한다.
- 대응구역별 SOP에는 대응구역별 피해상황조사, 자원현황조사, 필요자원 조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포함한다.

6.4 대응구역 통신

- 대응구역 통신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및 각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택시/자전거/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메시지센터를 통해 확립된다.
- 모든 유관지원기관의 연락관은 통제단 연락공보담당에게 출발 및 도착여부를 통보한다.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6.5.1 소방

- 함양소방서장은 현장대응단 또는 현장에 통제단을 설치, 자원을 관리하고 각 유관

기관 연락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피해상황과 자원요청, 그리고 자원분배 상황을 기록한 상황판을 설치한다.

- 소방서와 소방본부간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자원봉사자들을 구조진압활동 및 기타 대응활동에 활용하도록 협조한다.

6.5.2 현장통제 (함양경찰서)

- 함양경찰서장은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3C센터,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보강)배치한다.
- 소방서장과 통신체제를 확립한다.
- 재난지역 현장통제를 담당한다.
- 재난지역 교통체계를 원활히 유지한다.

6.5.3 현장응급의료소 (함양군보건소)

- 함양군 보건소장은 통제단,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통신연락 담당요원을 지정(배치)한다.
- 현장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하고 부상자를 분류치료하고 사상자를 이송한다.
- 함양군 통제단장(소방서장)에 의료시설상황을 보고한다.
- 응급의료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6.5.4 긴급시설복구 (함양군)

- 함양군 안전도시과장은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무선연락이 되는 연락관을 배치한다.
- 구역마다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6.5.5 수송 (함양군)

- 함양군 건설교통과장은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함양소방서에 통신차량을 배치하고 긴급수송자원 통제센터로 활용한다.
- 함양소방서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대응요원 및 부상자를 이송하거나 긴급대피를 위한 여유차량을 조직한다.

6.5.6 교통지도 (함양경찰서)

-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각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경찰의 통제하에 지정된 비상도로상의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현장대응요원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한다.

6.5.7 수도 (함양군)

-
- 함양군 상수도사업소장은 무선통신 차량을 소방서 근처에 배치한다.
 - 소속 인력과 보유자원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력과 자원은 관할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배치한다.

6.5.8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현장 활동요원의 안전과 가스시설 조사, 그리고 파손된 가스라인 복구를 위해 자원을 배치한다.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9 비상전력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 단전된 전선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배치한다.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10 통신사업소 (KT 산청지사)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자원을 지원한다.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 1 절 지휘통제계획(#1)

1. 목 적

- 지휘통제계획은 재난 시 다수 관할구역의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절차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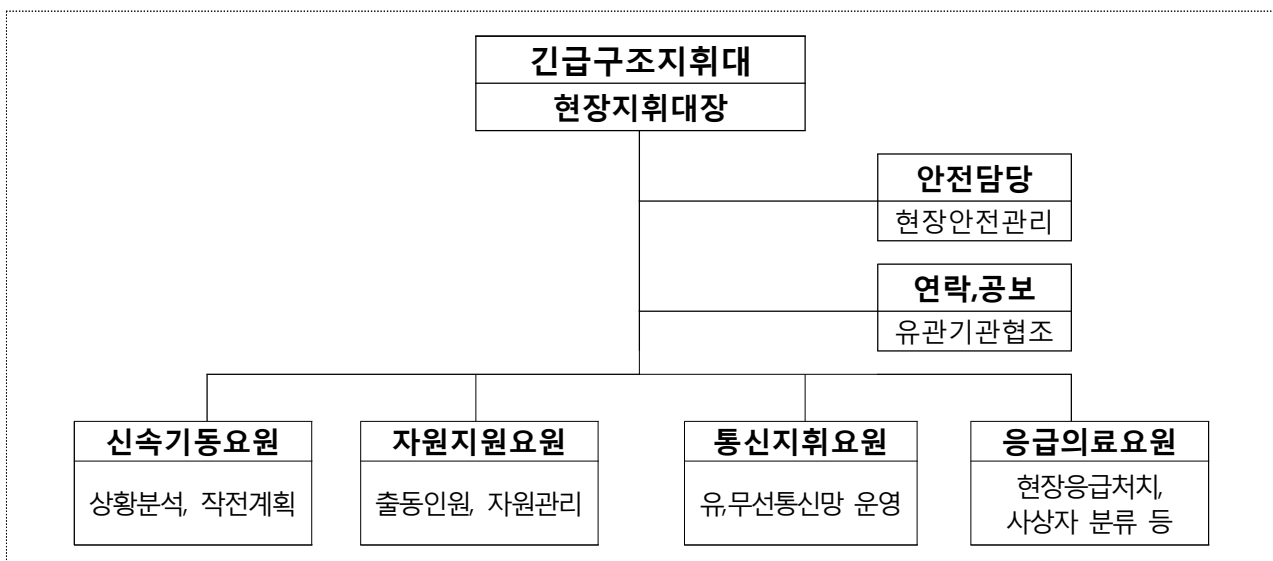
2. 조직 및 운영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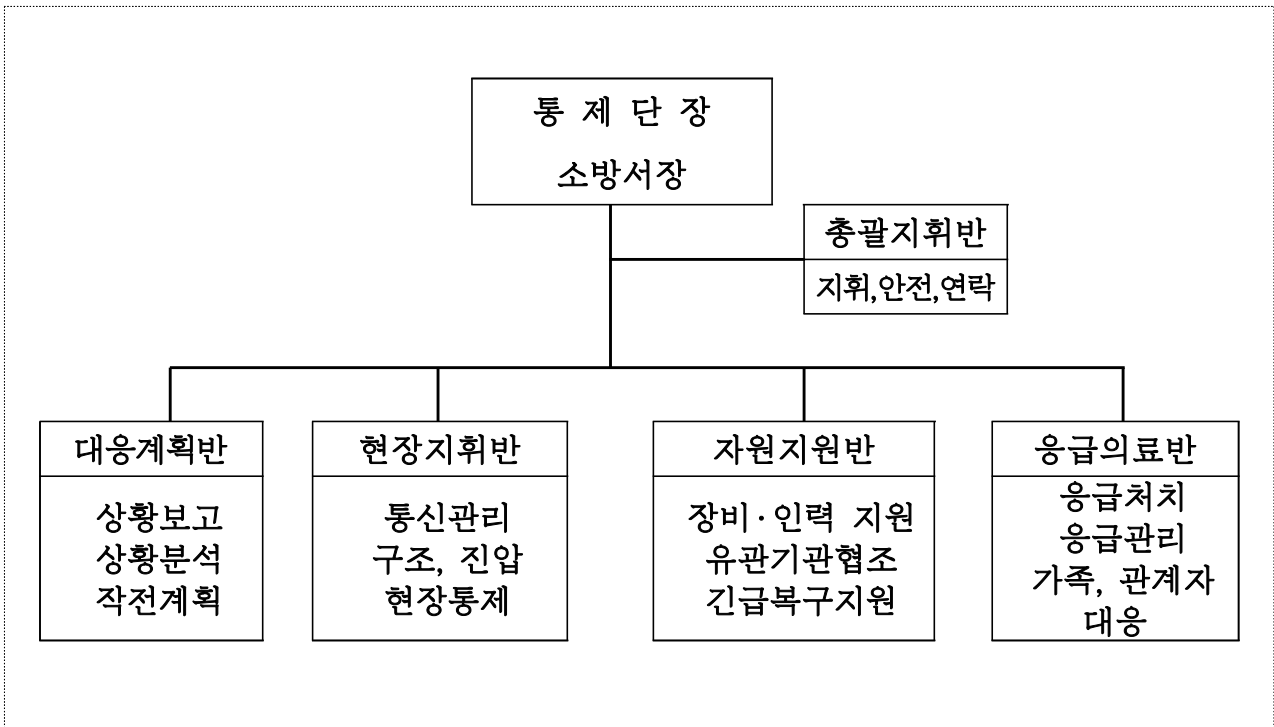
- 긴급구조통제단은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로 구성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관서장이 되고, 통제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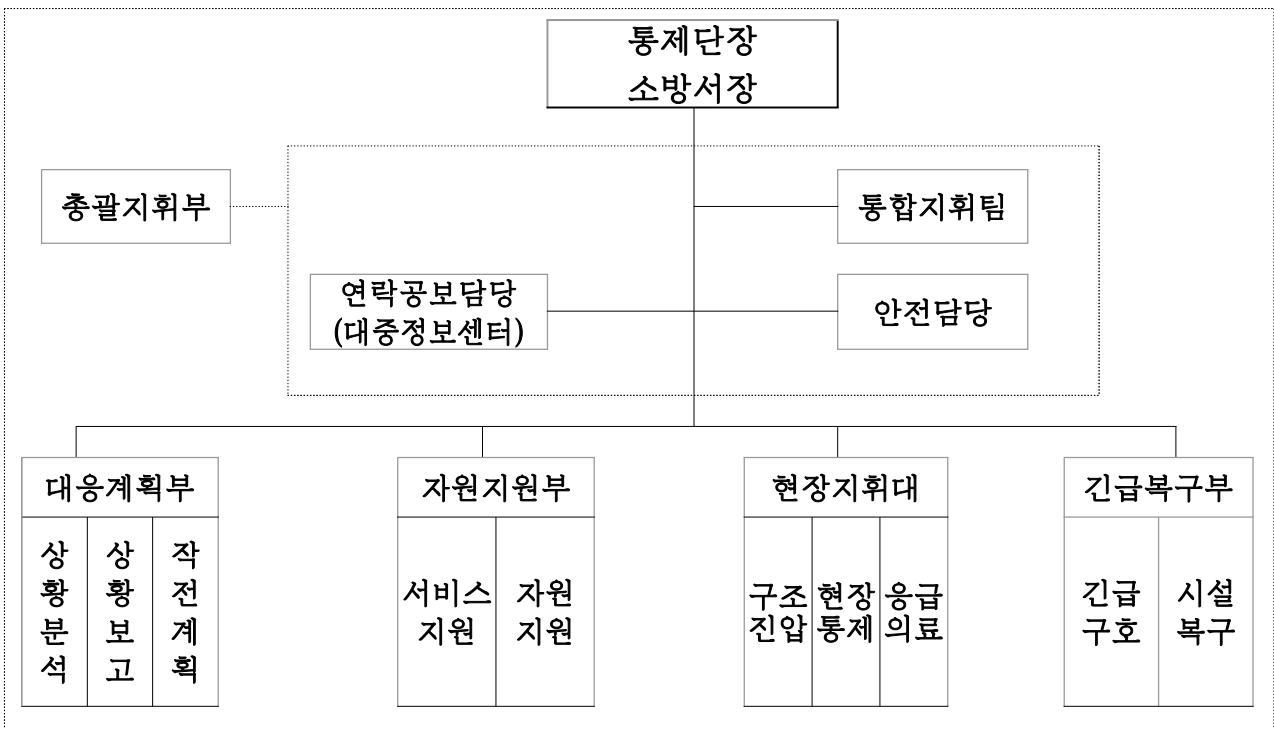
- 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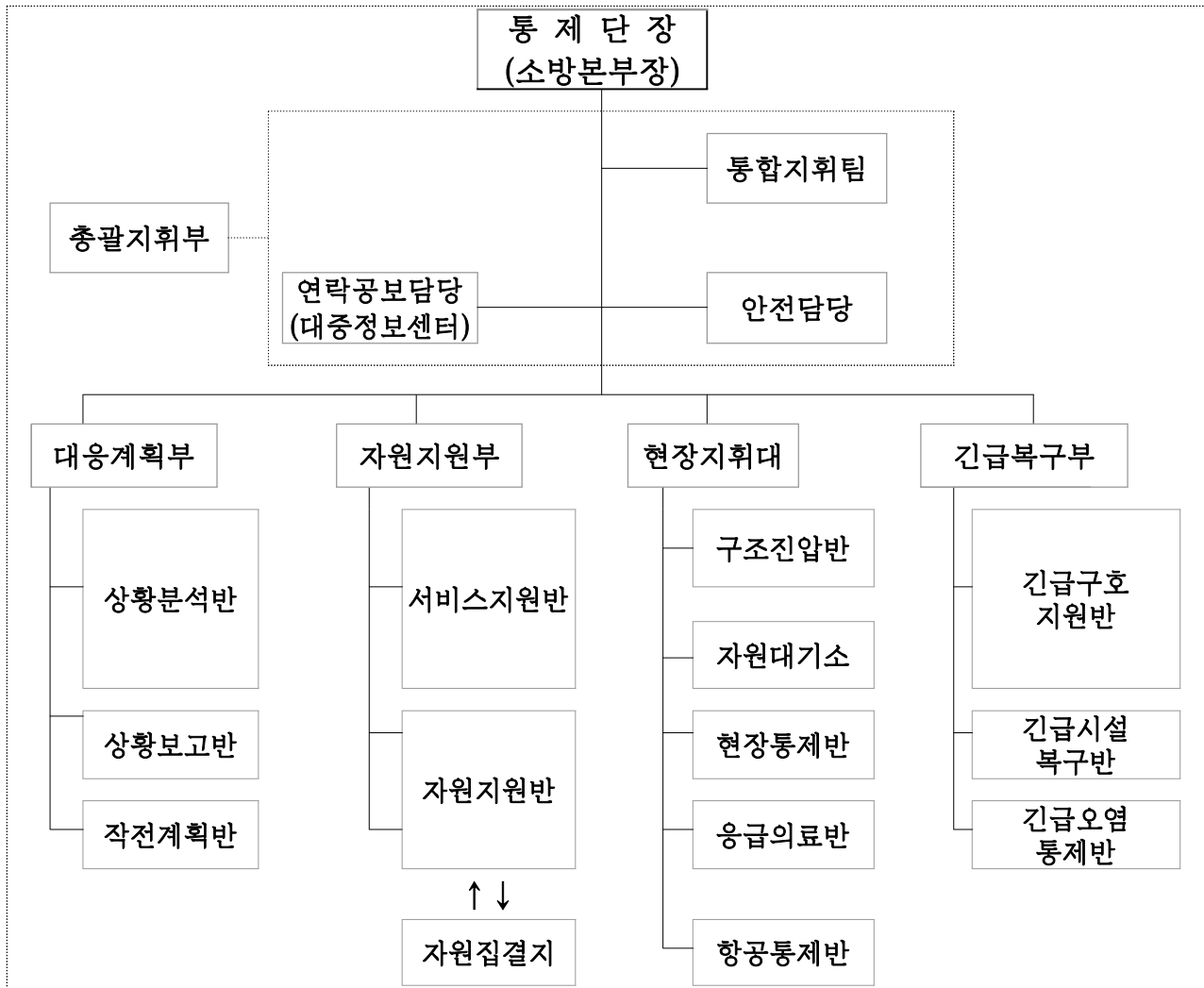
○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 대응2단계 3단계 통제단 운영(조직구성 등)은 동원인력·장비 등을 감안하여 통제단장의 지휘아래 탄력적 운영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 응 계 획
지역통제단장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지휘통제계획 (#1)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1.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3.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4.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
	연락공보담당	1.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사항 3.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4.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대중정보계획 (#3)
	안전담당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지휘통제계획 (#1)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 재난상황예측 3.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지휘통제계획 (#1)
	상황보고반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휘통제계획 (#1)
	작전계획반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지휘통제계획 (#1)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1.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지원 수송지원 3.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4.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지휘통제계획 (#1) 재난통신계획 (#11)
	자원지원반	1.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운영 2.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지휘통제계획 (#1)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1.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2.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3. 자원대기소 운영	구조진압계획 (#5)
	현장통제반	1. 대피계획 지원 2.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계획 (#8)
	응급의료반	1.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4.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응급의료계획 (#6)
	항공통제반	1.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항공구조활동 지침
긴급복구부	긴급구조지원반	1. 긴급구조 및 자원지원활동 2.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구조계획 (#10)
	긴급시설복구반	1.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2. 긴급시설복구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복구계획 (#9)
	긴급오염통제반	1.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2.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통제계획 (#7)

2.2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표준운영절차(SOP)는 다음 3 단계의 조직 기반 위에 운영된다.

2.2.1 현장 대응단계

- 재난 현장대응인력과 자원이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지휘한다.
- 함양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이 확립될 때까지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한 지휘통제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2.2.2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한다.
-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역 내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소방서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유관지원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할 경우
 - 시·도 통제단이 가동되는 경우
- 시·군·구(소방서) 통제단이 편성되면, 인근 시·군·구(소방서) 통제단, 시도 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소방서 통제단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 소방본부 상황실(통제단)에 재난상황과 자원요청사항을 보고한다.
 - 대응구역별 자원을 운용한다.
 - 인근 대응구역의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중앙통제단에 대한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2.2.3 도 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상황에 상응한 도 대응자원을 관리한다.

-
- 각 소방서간 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소방청의 중앙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소방본부 통제단이 시·도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시·도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소방서 통제단이 운영될 때
 - 도지사가 지역재난을 선포했을 때
 -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때
 - 도(소방본부) 통제단이 편성되면, 각 대응구역별 통제단, 인근 시·도 통제단, 중앙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단계	운영체제
1. 초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을 평가한다. - 상황실 운영요원을 보강하고 24시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한다. - 도 119종합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을 가동한다. - 긴급구조지휘대와 연락하고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는다.
2. 중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협조한다. - 유관기관 연락관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현장지휘소)에 도착한다. - 군 통제단을 거쳐 도 통제단이 가동된다. - 긴급복구반 2차 재난방지팀을 비상소집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재난발생 지역의 항공비행을 지시한다. - 위험지도 분석, 여진가능성, 해일가능성, 사상자 예측, 바람 예측(화재, 위험물사고), 구름 및 습도 예측(유독가스사고), 이재민 발생정보 등을 이용해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3. 중기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구역별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활동을 평가한다. - 자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세운다. -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지원반(수송팀)이 긴급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아래 사항에 대비한 임무 수행계획을 세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식수사용 통제 · 긴급대피소와 위생적 음식 공급 · 지역 자원 배분 · 긴급수송과 도로복구 · 사상자 분류, 응급치료, 이송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

2.4 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통제단의 표준 긴급대응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도 통제단, 인접 자치단체 통제단(상황실), 주요 민간기업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확립한다.
- 현 보유자원을 배치하고 추가 요청자원을 해결한다.
- 현장대응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자원을 조정한다.
- 도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 비상방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다.
- 대중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비상경고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긴급대피명령이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이동, 수용 및 보호를 관리한다.

3. 임무수행

3.1 총괄지휘부

3.1.1 조 직

-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함양군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하며, 지휘부는 통합지휘팀, 각 부장,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을 포함한다.
- 통합지휘팀은 경찰연락관, 군부대연락관, 응급의료소장으로 구성되며, 한국전력, 통신공사 등 주요 지원기관 연락관 및 재난유형별 전문위원이 필요에 따라 보강된다.
- 통합지휘팀은 통합지휘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지침을 결정하고 임무를 분담한 후 소속기관과 지휘연락을 한다.
- 소속기관별 임무가 완료되면 팀장(통제단장)에 통보한다.
- 대응단계 2의 운영요원

총괄지휘부	운 영 요 원
통합지휘팀	구조구급담당
연락공보담당	예방교육담당
안전담당	소방행정담당

3.1.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 합 지 휘 (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긴급대응계획의 전반적 체제와 임무수행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도 긴급구조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는다. - 사고발생장소 관할구역의 소방서 통제단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통제단의 각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가동된 각반의 요원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응소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단의 각 반이 모두 가동된다. -각 반원은 상황보고와 상황예측서를 검토하고 대응지침과 기본전략을 밝힌다.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대응자원이 각 재난대응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	--

3.1.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임 무 수 행 매 뉴 얼
통제단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사태 선포의 필요에 대하여 대책본부장에 판단자료 제공 2. 긴급구조를 위한 비상대응요원의 비상소집 확인 3.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의 전면적인 혹은 부분적인 가동 4. 주기적으로 통제단 각부 및 반의 브리핑을 받고, 모든 부 및 반이 대응계획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단 활동 조정 5. 피해상황, 사상자 수 등에 대한 개략적 1차 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6.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또는 상급 부서에 특별한 지원요청을 공식화 7.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사태 선포에 필요한 정보제공 8.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상급 부서와 상호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9. 부족 대응자원을 선점하고 할당하는 것을 지원 10. 현장지휘대장 지휘통제

<p>통합지휘팀</p>	<p>통합지휘팀 임무는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단체 연락관이 아래 사항을 이행함을 의미한다.</p> <p>→ 통합지휘팀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인 대응 목표를 정한다. 2. 전략을 정한다. 3. 전술적 활동을 위한 통합계획이 실행되도록 한다. 4. 총체적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전반적 자원의 활용을 도모한다. <p>→ 각 연락관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지휘회의에 참여 소속기관 임무분담 2. 분담된 임무 소속기관 연락, 이행보고 책임 3. 임무지침서와 통합작전계획 소속기관 소관임무 승인
--------------	--

직책	임무수행매뉴얼
연락공보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보호프로그램 및 비상방송시스템 운영 2. 중앙통제단 지원체계 유지 3. 대책본부 지원체계 유지
안전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수칙 관리. 2. 재난현장 안전 및 2차재난 위험성 검토 3. 대원 재난심리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휘 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구조, 구급, 위험상황의 진압, 접근통제, 통신 등을 포함한 사고현장에 초동 대처하는 현장대원의 활동 조정 2.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안전담당 등 필요 직책을 현장활동 대원 중에서 지정하는 등 현장지휘체계 가동 3. 통제단장과 재난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 강구 4. 통제단 지휘통제체계의 모든 필요기능 수행 5.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응급의료소 운영장소 지정 6. 재난 초기 각 지원기관 연락관과 통합지휘 수행 7. 통제단 미설치시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그리고 연락공보 및 안전담당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간 대별	대응 매뉴얼
재난 발생 직후	<p>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 통합지휘팀, 각 부장은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또는 통제단)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거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화회의를 실시한다.</p> <p>통제단장은 다음 지시사항 중 하나를 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제단을 가동시키지 않는다. 2. 현장의 상황변화를 보며 기다린다. 3. 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통제단을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4. 통제단을 운영할 통합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 5. 통제단을 완전 가동하고 대책본부장(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 <p>※ 현장지휘소는 인적재난인 경우 현장에, 자연재해인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1 - 1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피해 상황 분석 평가 - 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에 상황보고 - 임무 지침서 작성 및 배포준비 - 구조진압 활동 모니터 - 기자회견 및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작성 - 대응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 및 2차 재해방지를 위한 도로, 전기, 가스등의 긴급복구 검토

12 - 24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진압 활동 지속 - 긴급대피, 통행금지 등 주민행동지침 검토 후 발표 - 정기적인 기자회견(기자단에 브리핑시간계획 발표), 시민보호프로그램 운영 - 중앙통제단과 지원협조체제 유지 - 대응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배분 결정 - 긴급대피소 방문 -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검토
24 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긴급복구 상황 모니터(대책본부 설치시 긴급복구 지휘권이양 검토) - 긴급대피소 상황 관찰 - 대책본부, 중앙통제단의 긴급복구활동 지원체제 유지 - 자원봉사자 집결지 위치 결정 및 홍보 - 시설물 안전문제 모니터 및 접근통제 검토 - 시민 보호프로그램 및 언론매체 관리 - 공식 방문 VIP 관리 - 재난유형별 긴급복구팀 비상소집(대책본부 설치시 이동 검토)

○ 통제단 언론브리핑

통제단장과 연락공보담당, 보건소장(응급의료소)은 공동취재단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서 알고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발표한다.

○ 대응 및 긴급복구시 검토사항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구조진압 및 응급의료(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 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로, 가스, 수도)의 긴급 복구
- 이재민의 식사, 숙소, 화장실, 식수, 비상 발전기 등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복구
- 긴급구조요원(자원봉사자를 포함)의 의식주 시설
- 긴급대피 및 시민보호프로그램과 같은 행동지침을 시민에게 전파
- 상황조사 및 평가

- 인력 및 시설을 동원, 배분, 배치한다.
- 대피 및 구조 작업
- 사상자의 치료 및 보호
- 사망자 발굴, 인적사항관련자료 및 현장보존, 사체처리
- 이재민 구호품(음식, 대피소 등)
- 재난지역 치안능력 강화협조
- 보건 및 안전조치 실행
- 필수 자원의 보호, 통제, 배분
- 공장, 학교, 상점 등에 폐쇄 가능성 예고 및 폐쇄조치
- 필수 시설 및 시스템을 긴급복구 또는 정상화

○ 통합지휘팀 검토사항

다음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임무분담 및 전반적 지휘통제를 위한 통합지휘팀의 검토사항이다.

- 초기 상황평가지 검토사항
 - 토지 및 시설물 일시 사용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소방기본법 제 25조)
 - 통행제한 조치
 - 기관간,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호응원협정서
 - 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사항
 - 시도 일상업무의 중단 여부
 - 위험지역 대피명령(병원, 양로원, 어린이집, 공장 등 산업시설, 상업시설의 폐쇄 등)
- 비상 대책
 - 과거 재난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단 각 반별 요원에게 검토해서 보고하게 한다.
 - 조치사항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운영요원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교대 및 인수인계시간을 검토한다.
 - 인력자원을 수정한다.
 - 필요에 따라 부재중인 운영요원의 대체인력을 검토한다.
 - 임시 대피소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 긴급복구

- 긴급복구부를 운영하고 기능별계획#9를 가동한다.
- 긴급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초기 긴급복구계획을 개발한다.
- 통제단 긴급복구부에서 대책본부 총괄조정관(복구반)으로 책임과 업무가 인계되는 것을 모니터한다.

3.2. 대응계획부

3.2.1 조직



- 대응계획부는 재난피해 상황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대응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한다.
-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는 대응계획부가 임무지침 및 작전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 대응2단계의 운영요원

대응계획부	운영요원
대응계획부장	소방행정과장
상황분석반 및 보고반	화재조사담당자 I, 특별조사담당자 I 민원담당자 I, 구조서무담당자
작전계획반	훈련 담당자, 민원담당자 II 특별조사담당 II

3.2.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대응계획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연습을 실시한다.

<p>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의 대응계획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 필요시 현장대응활동을 지원하는 통제단 지휘통제체계를 가동할 수도 있다.
<p>대응2단계 (중형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의 대응계획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계획부는 피해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에게 주기적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p>대응3단계 (대형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의 계획부와 119종합상황실이 완전히 가동된다. - 대응계획부 운영요원은 피해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대응계획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과 통합지휘팀 및 자치단체장에게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 모든 소방본부 운영요원은 각 대응구역별로 분산배치된다.

3.2.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반별	임무
대응계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자원배분을 조정한다. - 상황보고서를 작성 감독하고 예측자료 및 추가 필요자원을 조사하여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 제공한다. - 작전계획을 개발하고 통제단 전 운영요원에게 알린다.
상황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을 분석한다. - 상황보고반 및 작전계획부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상황분석결과에 따라 현장지휘대장에게 단기 예측정보를 긴급 제공한다.
상황보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락공보담당 및 통제단 각 팀에 배포한다. - 상황판 기록 및 수정
작전계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분석팀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자원을 평가한다. -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작전계획)한다. - 작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제단 각 팀에 배포한다.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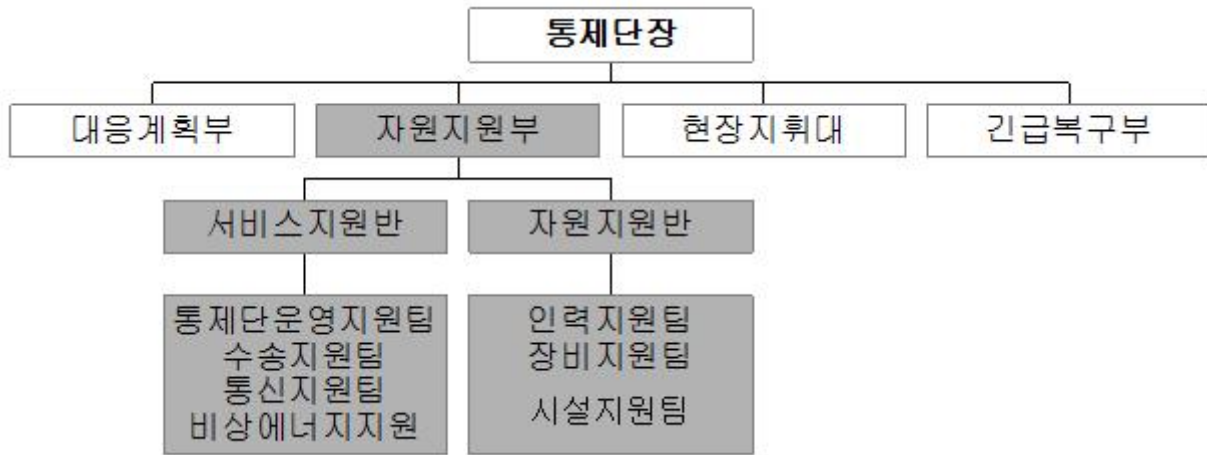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1 - 1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과 보고 - 대응지침서 및 작전계획서 개발 - 단기 예측 및 분석 실시 - 대응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12 - 24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활동 평가 - 자문을 위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전문가 비상소집 - 주요 시설 상태, 인명구조상황, 기타 대응활동 상황 모니터링 - 기타 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지원기능 수행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지원계획 수립시행 - 주민복지지원계획 수립시행

○ 대응 및 긴급복구 정책

- 정보 확인
 - 계획부가 가동되기 전 단계의 재난상황정보는 선착대장 및 119종합상황실에 의해 확인한다.
 - 언론매체나 개인으로부터의 수집한 정보는 선착대장 및 상황실이 확인하기 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예측
 - 처음 72시간 내의 피해의 평가 및 예측은 정확한 조사가 있기까지 개략적인 조사로 대신한다.
- 긴급복구 계획
 - 이 계획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목적에 한하고 기타 복구활동은 대책본부의 정책과 지침을 따른다.

3.3. 자원지원부

3.3.1 조 직



- 자원지원부는 비상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 지역재난 선포시 자원, 재산, 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소유 및 제공하는 모든 시의 기관들은 자원들을 자원지원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응2단계의 운영요원

자원지원부	운영요원
자원지원부장	예산장비담당
서비스지원반	경리담당자 / 소방서무담당자
자원지원반	차량청사담당자 / 용도담당자

3.3.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자원지원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자원지원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p>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p>	<p>자원지원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필요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을 통해 부족자원을 지원받는다.</p>
<p>대응2단계 (중형재난)</p>	<p>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관할소방서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현장대응활동 조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확보하기위해 완전 가동된다.</p>
<p>대응3단계 (대형재난)</p>	<p>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은 완전 가동된다. 운영요원은 비상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 배치된다.</p>

3.3.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자원지원부		임무
자원지원부장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등 필요한 자원지원을 총괄지휘
서비스 지원반	통제단지원팀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
	통신지원팀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시스템 확립
	수송지원팀	현장대응요원의 수송지원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수송수단 제공
	에너지지원팀	통제단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비상에너지 확보
자 원 지원반	인력지원팀	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
	장비지원팀	현장에 필요한 장비지원
	시설지원팀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지원부 조직화 및 운영 - 자원동원체계 가동 - 현장대응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원지원 - 필요사항 파악 및 요구사항 지원 - 부족 및 잉여인력 파악 - 공급물품 및 장비의 부족 및 잉여여부 파악 - 도시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필요부서에 지원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조달을 위한 주문 검토 - 긴급복구활동을 하는 부서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 및 장비의 확보 - 회계자료의 취합 및 대책본부 이관준비

○ 통제단 언론브리핑 양식

자원지원부의 상황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 치 : 자원집결지, 수송대기지역, 자원대기소 등 위치확인
- 자원배치 현황(인적자원, 장비, 수송차량, 통신, 주요 물품)
- 자원요청 현황
 - 총 자원요청건수
 - 우선순위 A에 해당하는 건수(생존자 및 사망자 관련)
 - 우선순위 B에 해당하는 건수(작전상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
 - 우선순위 C에 해당하는 건수(72시간 이후 지속되는 작전에서 필요한 것)
- 문제점 : 각 부서 운영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점
- 대책 : 각 부서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보고

○ 대응 및 복구정책

- 자원지원부의 임무는 비상대응활동을 하는 부서의 자원공급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자원지원부는 현장대응활동 부서들이 요구하는 물품, 장비, 유지관리지원, 인원, 긴급대피소 및 기타 서비스를 확보한다.
- 자원지원부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임무를 수행한다.
 - 확보, 저장, 배분, 통신, 수송, 공급, 집결, 회계
- 비상사태시 대응부서들은 자신의 자원을 통제, 분배한다.
- 각 부서는 계약공급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으며, 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서들과 직접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대응부서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자원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단에 공급을 요청한다.
- 요구사항은 계획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져서 자원지원부로 전달된다.
- 자원지원부는 다음과 같은 공급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배분한다.
 - 자치단체의 각 부서 내 이용가능 한 자원.
 - 자원동원시스템의 물류 네트워크
 - 자치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자원
 - 유관기관들의 협조시스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자원동원시스템
- 통신수단 : 소방활동용 무전기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가. 서비스지원반

1) 통제단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팀 임무

통제단 운영지원팀은 119종합상황실 또는 현장지휘소에 통제단 업무시설을 설치 점검하고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급, 급식, 숙박, 인원관리 등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 주관부서 : 함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운영지원팀 가동	예산장비담당
통제단 운영요원관리	소방서무담당자
비상소집 및 응소기록	경리담당자
운영요원 급식 및 숙박 등 서비스	경리담당자
통제단 보안관리	소방서무담당자
언론(방송) 모니터	소방서무담당자
현장지휘소 안전	경리담당자

2) 수송지원팀

○ 수송지원팀 임무

수송지원팀은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수송기능과 수송 체계의 긴급복구를 담당한다.

○ 주관부서 : 함양소방서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긴급수송기능 회복	함양경찰서
수송체계 피해정도 조사	함양경찰서
긴급대피활동 수송지원	버스운송협회
긴급구조인력 및 장비의 수송	트럭운송협회
사망자 시신 수송	수송지원팀 (응급의료반과 협조)
긴급구조 연료보급	주유소협회
긴급도로 복구(중장비 동원)	수송지원팀 (긴급복구반과 협조)
긴급구조 차량 및 시설보수	차량정비소, 차량정비소 긴급정비팀
수송지원에 소요된 비용계산서 자원지원부 제출	수송지원팀

※ 함양군 건설교통과, 함양경찰서, 소방응원협정체결 기관 협조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체계, 시설 및 장비의 피해정도 평가 * 긴급피난을 위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탐색 및 구조작업을 위한 중장비 제공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구 개시 * 긴급수송서비스를 재개 * 지역별로 긴급하게 필요한 수송체계 마련을 위해 버스 및 트럭 운송협회와 공조체계 유지 * 대체 수송수단 개발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체계의 긴급복구 계속 * 긴급수송서비스 지속성 유지 * 지역별 긴급복구작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 필요시, 대체 수송체계 이용

○ 브리핑을 위한 정보제공

- 긴급수송체계의 현황
- 이용가능 차량대수 (버스, 트럭)
- 이용가능 교통수단(버스, 트럭, 선박, 철도)
- 교통체계와 연관된 사고현장
- 대피활동, 탐색 및 구조활동 및 비상대응활동요원들의 수송 등과 같은 긴급구
조활동에 지원이 가능한 장비, 차량

○ 대응 및 복구 정책

- 재난현장 사상자의 이송
- 사용가능한 수송자원을 평가하고 명시화; 수송차량, 연료, 타이어 등
- 수송지원팀에 택시운송회사, 트럭 및 버스운송협회 연락관을 참여시킨다.
- 참여한 연락관은 통신수단을 가지고 온다.
- 대체 통신체계를 활성화시킨다.

3) 통신지원팀

○ 통신지원팀 임무

통신반은 통제단내의 통신활동을 조정 및 지원하며 대응기간동안 지원기관간 유무선통신이 유지되도록 보조한다.

○ 주관(지원)부서 : KT 산청지사

세부임무	임무 할당	
	주관부서	지원부서
긴급구조 통신체계 복구 대체 통신체계 마련 통신수요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통신자원 및 장비의 할당 이동통신장비 및 차량의 할당	예산장비계 경리 / 서무담당자	KT 산청지사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 피해정도 평가 * 비상통신체계 긴급복구 우선순위 결정 * 통제단 및 시 대책본부 통신체계 긴급복구를 지원 * KT 통신체계 긴급복구 공조활동을 수행
재난발생 후 12~24시간	* 통신체계 긴급복구 계속 * 비상통신체계를 확립 * 각 유관기관(부서)들의 통신체계 복구를 지원 * 재편성된 임시 통신체계를 확립
24시간 이후	* 비상통신체계의 복구 지속

○ 브리핑을 위한 정보제공

- 통신체계의 상태 (라디오, 전화, 무전기, 휴대폰, 기타)
- 복구의 우선순위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 이용 가능한 대체 통신수단

4) 비상에너지지원팀

- 비상에너지지원팀 임무
 - 에너지 지원팀은 재난발생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긴급구조활동자원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관리한다.
 - 여기에는 정보수집, 사용통제, 저장장소의 변경이 포함된다.
- 주관부서 : 함양소방서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주관부서	지원부서
비상에너지통제프로그램 가동 연료획득, 할당 차량관리 프로그램의 감시 연료공급의 부족상황을 감시 비상에너지통제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연료 감독 시설 보존 프로그램 감시 기본생활시설 부족상황을 감시 생활시설 보존 프로그램을 관장	예산장비계 경리 / 서무담당자	함양군 건설교통과 함양군 사회복지과 함양군 안전도시과 한국전력공사(함양)

세부임무	임무 할당	
	주관부서	지원부서
휴대용 발전기의 제공 연료보급능력 확보 전기관련 및 기계관련 보수작업 기타 보급활동	예산장비계 경리 / 경리담당자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북부지사 주유소 협회 협조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대비단계 (경고단계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분 조사 * 비축계획 * 배분의 우선순위, 할당 * 긴축계획
재난발생 후 1~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분에 대한 동원령 * 비축계획의 실행 * 비상에너지 통제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연료의 축적 *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연료공급 축소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급을 확보 * 경제계획을 실행 * 보조계획

○ 대응 및 복구 정책

- 자치단체장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건의
- 자치단체장의 에너지 비상조정관 임명
- 비상에너지 비축조치 지시
-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연료공급 축소
- 일반대중에게 에너지 비축조치 홍보
- 지역 연료공급자로부터 에너지 확보

○ 브리핑을 위한 정보제공

- 에너지 비축 현황 및 현 사용량 현황
- 연료공급이 끊길 때까지의 연료별 사용가능 기간
- 연료부족시 위태로울 수 있는 주요활동
- 연료부족 및 질의 저하시 위태로울 수 있는 통신체계, 정보시스템

○ 비상에너지 통제프로그램(추진 중) ☞ 부록 참조

나. 자원지원반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자원지원반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자원지원반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자원지원반은 대응1단계에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 필요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지원을 요청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시도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각 시·군·구 통제단 자원지원반이 완전 가동된다. - 필요시 자원집결지가 설치 운영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시도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완전 가동된다. - 운영요원은 물류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지원반은 자원 현황정보를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협조팀을 구성한다. - 모든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1) 인력지원팀

○ 임무요약

- 인력지원팀은 현장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인력을 비상소집 및 배치한다.

○ 주관부서 : 함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인력 비상소집 명령 - 자치단체 전역의 인력자원관리 - 대응활동에 할당 가능한 인력 현황 - 임무별로 직원 재배치 	용도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적십자사 인력지원센터와 협력 - 대응활동 동안 직원들이 당면할 작업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내림 	청사·차량담당자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시스템 및 전화연락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발동 @ 수송지원팀과 인력배치활동을 시작한다. @ 자원집결지를 확립한다. @ 비상대응에 따른 직원들의 당면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개발한다.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계획부의 인력 할당계획에 협조한다. @ 자치단체 전체의 자원할당을 재조정한다. @ 긴급복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의 복구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 필요시 대책본부로 인력관리업무와 권한을 이관한다.

○ 브리핑을 위한 정보제공

- 이용 가능한 인력 현황
- 현 배치인력 현황
-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직원의 수
- 단기, 장기 인력 할당계획

○ 자치단체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추진 중)

- 자치단체의 대형재난 발생시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은 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적 재난대응을 위한 것이다.
- 자치단체의 재난 시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은 각 단위 자원봉사조직의 포괄적 조정통제체계를 갖추게 되며, 각 단위 조직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 통합 재난 자원봉사조직에 참가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책임단체	지원단체
적십자사(인력지원센터)	의용(여성)소방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 재난자원봉사조직의 통합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체계를 확립한다.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대비체제로 발전시킨다.
- 대규모 재난 발생시 각 자원봉사조직이 가진 자원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자원 목록을 만든다.
- 대규모 재난시 각 지역별 자원봉사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할 계획과 절차를 마련한다.
- 대규모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적십자사 인력지원센터와의 통신(의사소통) 계획을 마련한다.
- 자원봉사조직 중 긴급구조활동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긴급구조 비상대응팀을 조직한다.
- 비상대응팀의 조직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각 긴급구조비상대응팀은 소방관서와 응원협정서를 체결할 것.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 소방관서와의 출동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주도로 자원봉사조직의 재난대응 출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각 긴급구조 비상대응팀들은 아마추어 무선교환기와 비상출동차량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현장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지원지원부 인력지원팀)과의 세부대응계획(협조절차 및 자체 지휘절차)을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자원지원팀

○ 임무요약

-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은 현장대응부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 지원한다.
- 장비지원에 대한 모든 요청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은 1)자원을 요청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2)지역 판매상에게 필요자원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즉시 조달하거나, 3) 중앙통제단에 필요자원을 요청함으로써 자원요청에 대응한다.

○ 주관부서

세부임무	임무 할당	지원기관(부서)
조달담당 : 장비 및 물품 구매, 임차 계약 수행	차량·청사담당자 용도담당자	함양군 건설교통과 함양군 안전도시과
공급담당 : 장비 및 물품 수령, 보관, 배치		
차량담당 : 비상대응차량 및 장비를 수리하고, 연료를 공급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지원반을 가동한다. 각 담당자들은 각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및 현장대응부와의 교신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으로 파손된 장비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 현장대응부가 요청한 장비, 물품 등의 구매 및 임차 계약을 체결한다. * 즉시 사용가능한 시소유의 공급품 및 장비를 파악한다. * 비상대응 차량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서비스를 원활히 한다. * 모든 소방관서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도록 계약자에게 주문을 하고 연료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할 수 없는 필요물품 및 장비리스트를 중앙통제단에 요청한다. * 필요시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장비지원상황을 검토한다. * 필요한 장비 및 물품에 대해 구매계약하고 긴급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한다. * 대책본부로의 업무인계인수를 준비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장은 다음 현황에 대하여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 조달담당 : 용도담당자
 - 조달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 유무 및 조달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 지역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중앙통제단 지원요청의 유형 및 요구량)
- 공급담당 : 차량담당자
 - 공급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유무 및 공급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발송된 공급품의 유형 및 발송량, 요청되었으나 발송이 불가능한 공급의 유형 및 횟수
 - 즉시 이용가능한 시 소유의 공급물품 및 장비
- 차량연료담당 : 차량담당자
 - 차량연료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유무, 차량연료담당 인력 및 차량 현황
 - 통신체계의 유효성
 - 현 작업량 : 연료공급 횟수 및 량, 요청된 연료공급 횟수 및 량

○ 자원 요청 및 확보 절차(지침)

구 분	절 차
자원 지원 요청 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자원요청 및 지원절차는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에 적용된다. - 긴급복구부의 지휘권이 대책본부로 이관된 경우 또는 긴급복구 외의 일반적 복구작업과 관련된 자원지원은 대책본부에서 다룬다. - 각 기관(부서)의 독자적인 자원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1 : 긴급구조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통제단과 각 지원기관(부서)의 지휘부와의 통신이 두절될 경우에는 각 소방서 통제단장, 소속기관 지휘자의 허가를 받아 즉시 필요자원을 구입할 수 있다. * 조건2 : 요청된 자원이 소속기관단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제단 현장지휘대에 해당자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현장지휘대 내에도 이용가능 자원이 없는 경우, 자원요청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별로 자원지원팀으로 이관된다.
자원 요청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1→ 인명구조와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2→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3→ 작전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우선순위 4→ 작전 수행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자원 지원 요청서 작성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우선순위 - 요청하는 부/반/팀 또는 대의 이름 및 고유번호 - 목록표(부가적 요청물품 포함) - 요청일시 - 연락받을 사람, 연락수단 - 공급업자 및 전화번호(알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공급의 경우 : 요청항목의 설명 및 내역, 요구량 및 추정비용 · 전문적이고 개인적 서비스의 경우 : 서비스의 내역 및 작업범위 · 임대장비의 경우 : 장비의 유형, 크기, 성능, 제조사 및 모델, 요청하는 부서의 수, 요구 임차기간
자원 조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지원팀은 자원지원요청서를 접수한다. - 자원요청의 우선순위대로 분류한다. - 자원요청내용이 현 보유자원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조달담당은 즉시 지역공급업자로부터 필요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한다. - 요청항목을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유관기관 협조팀에 해당사항을 이관한다. - 유관기관협조팀에서 중앙통제단에 자원지원을 요청한다. - 청구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예산지급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작성한다. - 작성된 문서를 건별로 정리하여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3.4. 현장지휘대

3.4.1 조 직



- 현장지휘대는 재난대응에 참가하는 인명구조, 위험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항공 구조 자원들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현장지휘대의 각 반, 팀은 대응계획반의 자원배치 우선순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장지휘대는 통합지휘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전략 및 방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 현장지휘대의 각 반, 팀별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 (부 서)	임무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함양소방서 (지휘조사팀장)	- 재난상황에 대한 평가, 예측에 따른 현장지휘 및 방침을 하달 - 대응계획부장과 긴밀한 협조(통신)관계 유지하고 계획 부장과 공동으로 주요브리핑 수행
구조진압반 - 화재진압팀 - 구조팀	함양소방서 (각 센터장) (각 구조대장)	- 재난현장의 화재진압 등 위험상황진압과 수색 구조활동을 감독 -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를 제공
현장통제반 - 경비지원팀 - 방법지원팀 - 수사지원팀 - 교통통제팀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 (인사담당, 의소대담당)	- 재난발생지역의 긴급대피, 치안질서유지, 교통통제활동 감독 -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 제공

응급의료반 - 응급의료팀 - 보건위생팀 - 환경보건팀 - 정신보건팀 - 사망자관리팀	함양군보건소 함양소방서 (구급담당자)	- 응급의료, 긴급오염통제, 보건위생활동을 감독 - 각 팀장은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 제공
항공통제반	교육상훈담당자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3.4.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현장지휘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현장대응관련 지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훈련 및 연습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통제단의 현장지휘대는 가동되지 않는다. - 필요시 현장지휘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현장지휘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각 반, 팀이 지원기관의 대응활동을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현장지휘대는 완전히 가동된다. - 현장지휘대는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걸친 구조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비상대응구역별로 각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 분산 배치된다.

3.4.3 임무수행

가. 구조진압반

○ 구 조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가용자원의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 대응계획상의 방침과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 및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소방서 현장지휘대가 화재진압 및 구조작업을 조정 통제한다. - 사고장소 인근 지역주민을 긴급 대피시킨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완전가동 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필요에 따라 현장지휘대 보충 운영요원이 비상소집 배치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완전 가동된다. - 함양소방서 현장지휘대가 대응구역별 작전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재난지역 전역에 걸친 주민 대피여부를 고려하고 현장통제반과 통합지휘체계를 가동한다. - 자치단체의 지원부서와 지원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대응구역별로 분산배치된다.

○ 구조진압반 임무

- 구조진압반은 모든 재난대응에 있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구조진압반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재난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의 지휘통제에 대한 책임
 - 하위단위조직 확대운영에 대한 책임
 - 지원기관단체 자원의 조정 통제지휘 및 통제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지역주민 대피 * 예측(24시간)
재난발생 후 12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및 잔화정리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예측(24 - 72시간)

○ 상황실과의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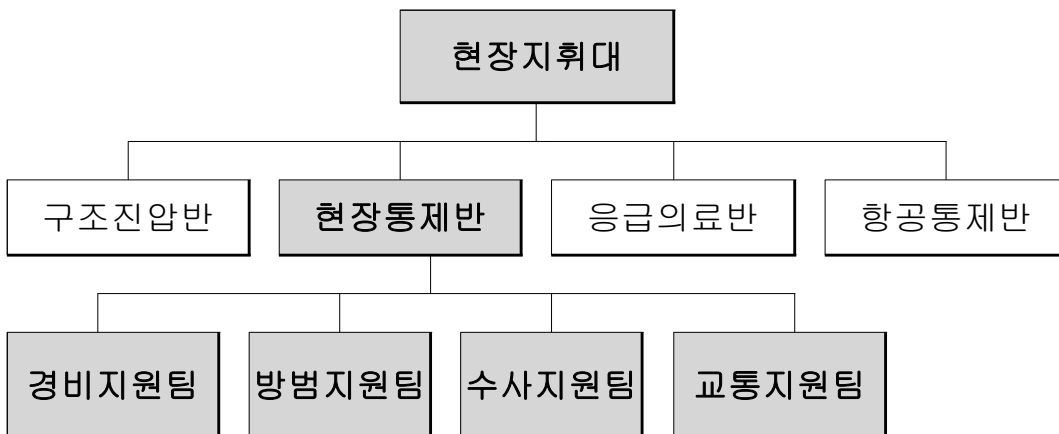
- 119종합상황실 구조진압통신 담당자는 매시간 통제단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 화재발생장소, (동시다발 화재시)발생 수, 발생유형(건물, 공장, 지하 등)
- 자원배치상황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5 구조진압 계획 참조

나. 현장통제반



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임무

- 위험하다고 인정된 지역 또는 잠재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각종 시설 및 자원의 경비와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치안질서 유지에 주력한다.

○ 주관부서 : 함양경찰서

세부임무	임무(부서)별 할당
지휘소 설치 상황 평가 및 사고현장 봉쇄 위협요인 제거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지역 확인 대피시킬 지역 확보 주민 대피경로의 구축 주민 대피명령을 공포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함양소방서 정보보안과

○ 지원부서

세부임무	지원 부서
주민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공공 수송 노약자에 대한 보조 주요장소들의 대피활동(병원, 학교, 교도소)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로 확보 및 통제 대피장소 설치 및 유지 재난지역내부(안쪽) 경계설정(Police line) 재난지역 외부 경계설정 수색 및 구조작업 지원 의료 검시 활동 지원 안전유지를 위한 순찰 수행 (피해영향지역, 주요 시설들이 이전된 장소)	함양소방서 생활안전과 함양소방서 수사과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배치, 상황평가, 현장봉쇄 * 인근 중요자원 시설(통제단 포함)에 경비력 배치 * 위협요인 완화 * 내곽 경계 설정 * 외곽 경계 설정 *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 군중통제활동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주민 소개 활동 수행 * 주민 대피가 필요한 지역 확인 * 대피시킬 지역 확인 * 주민 대피경로의 구축 * 주민 대피명령을 공표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통제 * 주민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노약자에 대한 보조 * 주요장소들의 대피활동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요인 완화 * 바깥쪽 경계 설정 *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 군중통제 절차 확립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주민 대피장소 설정 * 피난상황 해제 및 귀환허가 공표 *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주요장소 점유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방법 및 순찰활동 수행 * 바깥쪽 경계 설정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통제단 보고양식

《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상황보고 예시》

- * 경비범위(중요 자원 · 시설과 함께 투입된 경비자원)
- * 방법 순찰조 편성 현황
-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 대피장소(위치, 수행능력, 시설)
- * 대피경로(위치 및 상태)
- * 파견조직(인력 및 장비)
-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통제 상황 요약보고(인원수 및 배치장소)
- * 인구추산(주민소개지역의 총인구)
 - 대피 주민 수 추산
 - 대피하지 않고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수 추산
- * 주민대피활동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추정 시간

○ 대응2단계의 운영요원

현장통제반	운영요원
통합지휘팀 연락관	함양소방서 정보담당자
현장통제반장	함양소방서 정보과장
경비지원팀장	함양소방서 정보계장
방법지원팀장	함양소방서 생활안전계장
수사지원팀장	함양소방서 형사계장

○ 대응 및 긴급복구대책

- 긴급대피계획 수립

- 자치단체장은 시 소유 건물의 비상사태 대피계획을 수립 및 유지할 것을 명한다.
- 소방관서는 5층 이상의 모든 건물 및 병원(의료기관)에 대하여 긴급대응계획(대피계획서)를 요구한다.

- 교육청은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대피계획서를 요구한다.
- 모든 대피계획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대피계획을 포함시킨다.
- 대피명령을 통지 받았으나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대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 학교(초,중,고) 또는 체육관 등 실내장소가 구비된 곳을 대피장소로 활용한다.
-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비상사태의 위험이 완화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후에 재난지역 내 활동 및 건물의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장(통제단장 또는 대책본부 통제관)이 복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공표한다.

2) 교통지원팀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의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이 계획에 따른 훈련 및 연습을 수행한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절차 및 지침을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통제요원을 각 사고현장에 배치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경찰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운영요원 및 경찰서 통합지휘연락관을 소방서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시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소방본부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운영요원을 각 재난현장에 배치한다. - 주변지역 통제를 위한 자원을 각 대응지역에 배치한다. - 경찰청 통합지휘연락관을 소방본부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시 통행금지,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	---

○ 교통지원팀 임무

- 교통지원팀은 재난상황에서 주변 도로상의 군중통제 및 교통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주관부서 : 함양경찰서

세부임무	임무(부서) 할당
군중통제 활동 주민대피 수행 비상통로(도로) 설정 주변 교통 통제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 시간대별 대응 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인원 배치, 상황평가, 현장봉쇄 <li style="width: 50%;">* 위협요인 완화 <li style="width: 50%;">* 내곽 경계 설정 <li style="width: 50%;">* 외곽 경계 설정 <li style="width: 50%;">*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설치 <li style="width: 50%;">* 군중통제활동 <li style="width: 50%;">*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li style="width: 50%;">* 주민 소개 활동 수행 <li style="width: 50%;">*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위협요인 완화 <li style="width: 50%;">* 바깥쪽 경계 설정 <li style="width: 50%;">* 군중통제 절차 확립 <li style="width: 50%;">*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li style="width: 50%;">*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li style="width: 50%;">*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후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 재난 및 대피지역 주변 교통질서 유지
-------------------	--

○ 통제단 보고 양식

《 교통지원팀 상황 보고 예시 》

1. 상황 요약
2. 최근 수행업무
 - * 임무의 우선순위
3. 활동의 실행
 - * 임무별 부서 배치
 - * 임무별 지원 부서
4. 요원/장비 상태
 - * 근무 중인 요원 수
 - * 비번인 요원 수
 - 부상자/환자 요원 수
 - * 총 차량 수
 - 사용가능 차량
 - 임무수행중인 차량
5. 지휘, 통제, 커뮤니케이션
 - * 근무 중인 부서 지휘자
 - * 하위 지휘소의 위치
 - * 사용 중인 무전기 주파수 및 채널
 - * 지휘부 참모 및 지휘소의 전화번호

○ 대응2단계의 운영요원

현장통제반	운 영 요 원
교통지원팀	함양소방서 교통계장

○ 대응과 복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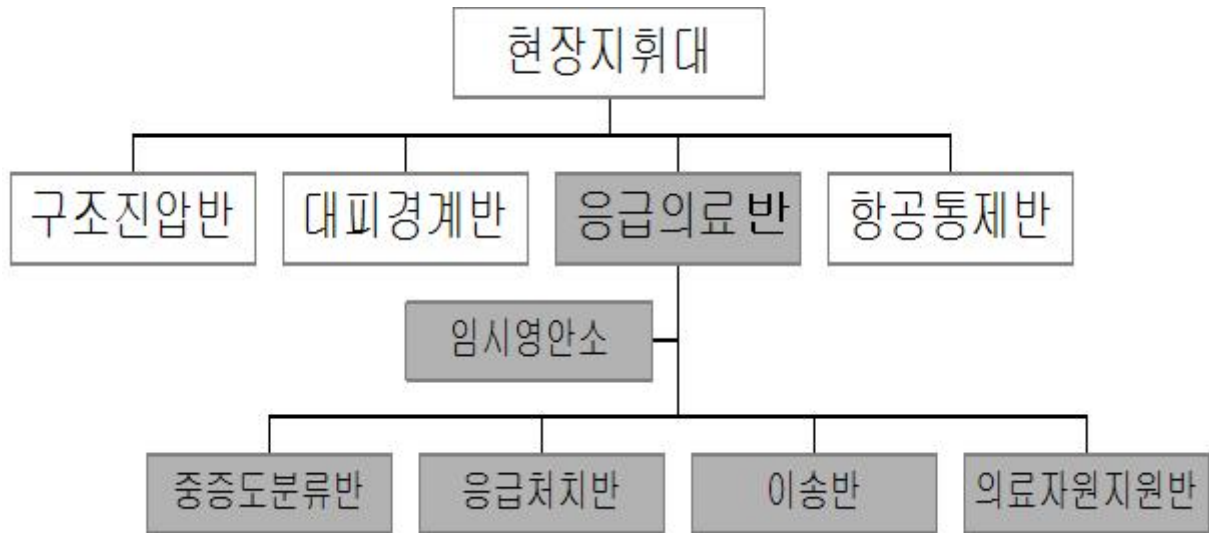
- 접근통제 지역
 - 범죄 및 재난지역에 위험요인에 의한 사상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기자들이 비상대응활동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들의 현장 접근을 허가한다.
- 약 탈
 - 약탈을 자행하는 이는 체포, 구금 및 기소된다.
- 통행금지

- 함양경찰서장 또는 경남경찰청장(2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발생시)은 재난상황 및 통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하여, 통행금지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3)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8 현장통제 계획 참조

다. 응급의료소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6 응급의료 계획 참조

라. 항공통제반

세부임무	임무(부서) 할당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함양소방서 (소방상훈담당자)

3.5 긴급복구부

3.5.1 조 직



3.5.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지침 및 절차의 검토 훈련수행, 대응훈련 및 연습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긴급복구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소방서 긴급복구부가 완전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긴급복구부는 주요관련기관의 긴급복구활동을 조정통제 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대응구역별 소방서 긴급복구부가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완전히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시의 전역에 걸친 긴급복구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긴급복구부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3.5.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세부 대응매뉴얼
긴급복구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대한 평가, 상황예측을 고려하여 긴급복구 지휘 및 방침을 하달한다. *대응계획부와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대응계획부장과 함께 브리핑을 수행한다. *도시시설, 기본생활시설, 도로, 하수도 건물의 피해정도를 평가한다. *접근경로 확보, 파편제거, 오염된 쓰레기 처리 및 건물안전성 여부의 검사를 행한다. *기본생활시설 및 교통시설의 복구를 관리한다. *교외 및 도시 내의 상수도 서비스를 보수, 복구한다. *화재의 진화를 위해 각 대응구역별 구조진압반에 소화용수의 공급을 지원한다. *통제단장에게 지속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한다.

- 긴급복구부는 재난에 대응하여 담당기관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현장지휘대와 협조할 책임이 있다.
- 긴급복구부의 각 반은 자원지원부가 자원배치의 우선권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대응계획부에 보낸다.
- 긴급복구부는 통제단장(통합지휘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전략 및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5.4 세부대응계획

- ☞ 기능별계획 #9 긴급복구 계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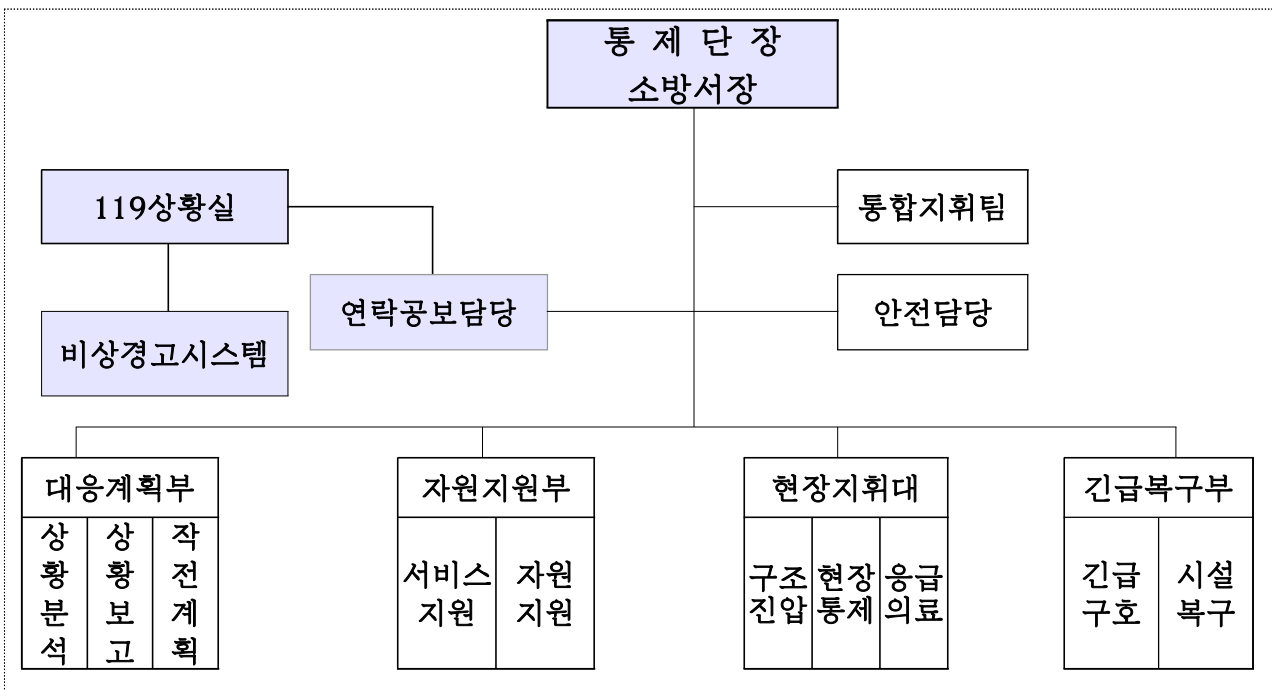
제2절 비상경고 계획(#2)

1. 목 적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경고, 재난상황 통보, 대중전파,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을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연락공보담당, 비상경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 119상황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 비상경고기관이다. 비상경고기관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 연락공보담당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 전파를 위하여 비상경고 발령을 결정하면,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통제단장으로부터 메시지 전파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렌, 현장방문(방송차량 순회방송 포함) 및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비상경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비상경고시스템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비상경고시스템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대비 임무

- 119상황실은 재난을 대비한 일상적 업무로써,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임무달성을 위한 필요자원을 확보한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경고시스템 작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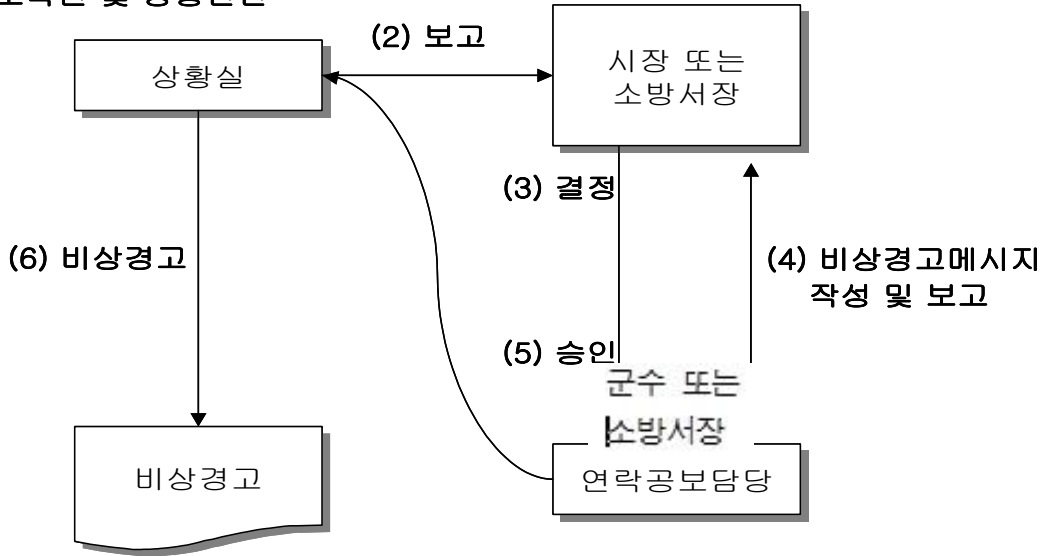
4.2 재난신고의 접수

- 119상황실이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시민의 신고전화
시민들은 목격한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 타 기관으로부터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119상황실로 즉시 통보한다.
 - 기상청의 기상예보
기상예보에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등 일기예보와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가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119상황실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위험상황은 악천후에 대한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상황이다.
119상황실은 태풍, 홍수 등 주의보 발령시부터 기상청과 HOT LINE을 유지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비상경고준비를 한다.

4.3 비상경고 발령

○ 119상황실은 재난신고를 접수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한다.

(1) 정보확인 및 상황판단



<비상경고 발령 절차>

4.3.1 정보확인 및 상황판단

○ 119상황실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4.3.2 보고

- 119상황실은 재난상황을 군수(긴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119상황실의 상황 책임관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에는 선 비상경고발령 후 보고할 수 있다.
- 119상황실은 지속적으로 선착대의 장과 통신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락공보담당에게 보고한다.(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상황 책임관이 연락공보담당의 임무를 대행)

4.3.3 결정

- 군수(긴급시 통제단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비상경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119상황실 및 연락공보담당에게 통보한다.

4.3.4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및 보고

- 119상황실은 비상경고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 비상경고메시지는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책임관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3.5 승 인

- 군수는 비상경고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긴급 시 통제단장)
-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119상황실로 보낸다.

4.3.6 비상경고

- 119상황실은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 비상경고발령이 결정되면, 119상황실은 자동비상경보시스템, 전화, 팩스, E-mail,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비상소집통지를 시작한다. 최우선 통지가 필요한 주요공무원의 비상연락망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 부록 서식 13, 21, 참조(11,15페이지)
 - 주요 기관 목록 : 부록 서식 14, 참조(12페이지)

4.5 인접 119상황실 통지

- 두 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구역에 걸친 대응3단계의 재난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직접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인접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을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인접 119상황실은 관할구역 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절차를 취한다.

4.6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통지

- 119상황실은 학교, 쇼핑몰, 병원 등 옥외의 비상경고를 듣지 못하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통지를 시작한다. 비상경고메시지는 팩스 및 전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중점관리대상의 관계자에게 전송된다.
-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통지는 인접 119상황실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실시한다. 상

황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면, 인접 119상황실에 대한 통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 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사전 작성한다. 중점관리대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중점관리대상 목록 : 부록 참고 18참조

4.7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 일반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4.7.1 사이렌 및 스피커

- 주민들에게 경고를 전파할 수 있는 옥외사이렌이 있다. 비상경고 발령 시 사이렌을 작동하는 절차는 함양군의 지침에 따른다.

4.7.2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

-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은 옥외사이렌의 음향 도달범위 밖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한다.
- 한 대의 차량이 비상경고의 신호로 사이렌을 켜고 지역을 순찰하며, 그 뒤에 두 번째 차량이 따른다. 차량은 매 500미터(예시)마다 정지해서 확성기를 통하여 비상경고 전달하고 진행한다. 비상경고 전파를 위한 각 차량의 순찰경로 및 시간은 소방서와 경찰서가 사전 협약한다.

4.7.3 현장방문 및 유인물 배포

- 상황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재난예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이 포함된 비상경고통지문을 모든 집집마다 전달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경고통지문은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책임관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7.4 비상방송시스템

- 비상방송시스템은 다음의 두 경우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 비상방송시스템의 실제 가동이나 시험 가동은 군수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승인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비상방송시스템 가동이 승인되면 연락공보담당은 1차 재난방송국에 제공할 비상경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메시지는 군수(긴급시 통제단장)이 확인한 후 승인한다. 119 상황실은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해 1차 재난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1차 재난방송국은 지역 내의 타 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 대응3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상황에서는 비상발전장치가 없는 지방 라디오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은 비상방송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 부록 참고 3 참조
-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라디오 방송국) : 부록 참고 19참조
-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 방송국) : 부록 참고 20참조
- 긴급구조 케이블 TV 방송국 --- **추진 중**

이 케이블 TV(채널 00번)는 일상적으로, 혹은 재난발생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비상경보, 긴급대피, 기타 공공정보의 핵심 요소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000 전용 TV 채널이다. 119상황실에 위치해 있는 이 방송국에서는 군수, 통제단장이 직접 방송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소방본부 옥상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접적인 위성방송 중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긴급방송 및 중요정보의 공표가 가능하다. 비상방송시스템 메시지의 내용은 이 채널을 통해 전파된다.

4.7.5 비상경고 문자 발송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도 119종합상황실은 도 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 119상황실은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비상경고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4.9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 중점관리대상 조기경보시스템 및 비상방송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비상방송시스템의 시험 가동은 소방본부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제3절 대중정보 계획(#3)

1. 목 적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공공정보제공,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를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등으로 구성된다.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에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을 설치한다.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상시 운영되며, 운영요원들은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대중정보 조직의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중정보센터 설치 후
		운영 요원
연락공보담당	통제단장 (현장지휘대장) 이 지정한 자	예방지도담당 홍보담당자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 연락공보담당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으며,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하위 4개 팀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재난상황에서 정보수집, 비상경고 발령 및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도자료의 작성 및 기자회견 실시 등 대중정보 제공에 관한 모든 업

무는 연락공보담당이 조정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여부 및 규모(하위 4개 팀 각각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책임이 있다.
- 119상황실은 재난발생 초기의 상황을 신속하게 군수 및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에게 보고하여 주민보호조치 등에 관한 비상경고가 신속히 발령되도록 한다.
- 119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시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대중정보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대중정보센터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대중정보센터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연락공보담당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기에 언론매체와 유관기관에게 확인된 정보를 제공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언론매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응2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 기능을 완전 가동한다.

4.1.1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 연락공보담당은 관할지역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을 기술한 대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중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중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와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언론매체·공공기관·민간기관·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시 대중정보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1.2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 군수(긴급시 통제단장)는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을 결정하면,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고 군수(긴급시 통제단장)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비상경고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안전수칙 : 해야 할 것/하지 말아야 할 것
 - (학부모를 위한)학교의 상황에 관한 정보(학기 중인 경우)
 - 위험하고 오염된 접근금지 지역
 - 야간 통행금지 실시 여부
 - 도로, 다리, 고속도로의 고가 교차로, 댐의 상황 그리고 다른 대체 경로
 -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일정 및 행동요령
 - 식량과 안전한 식수가 있는 위치
 - 보호시설, 진료시설, 병원의 위치 및 상황
 -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 화재에 대비한 지시사항
 - 긴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자제 요청)
 - 시설이용, 공중위생, 시설물 폐쇄에 관한 지시사항과 예방조치
 - (필요시) 기상특보사항
- 녹음된 비상경고메시지를 매 시간 또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변경한다.

4.1.3 대중정보센터의 설치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 대중정보센터는 미리 지정된 운영요원으로 구성된다.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는 대중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대중정보 관련 교육수료자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수로 결정하여 배치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신속하게 비상소집하고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유선전화 및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중정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통신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업하여 다음의 하위 4개의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방문자관리팀
 - 실종자정보팀
 - 유언비어통제팀
 - 자원봉사자등록소

4.1.4 정보의 수집

- 재난발생시 연락공보담당은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와 업무연락 등을 검토하여 재난현장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통합지휘팀으로부터 각 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재난상황 동안 연락공보담당은 다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확인·통제하고 배포한다.

분 야	정보 출처	대중에게 알릴 사항
전 기 수 도 가 스	한국전력 함양지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가스누출 여부 - 전기/수도의 공급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물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 -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공급중단 시기
통신수단	KT 산청지사	- 긴급하지 않는 전화 및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 - 119 대체 전화번호 제시
수송수단	한국도로공사 함양군청 버스협회	- 대체 도로 - 공무원의 응소 장소 - 시내, 시외 버스운행 여부 및 시간표
의료 및 보건시설	함양군 보건소	-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 - 적십자가 설치한 피난장소 및 재난 복지안내소 의 위치 - 정신보건, 복리서비스 연락처
피난시설	대규모 피난 장소 임시 피난장소 식량 배급지점	- 적십자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곳 - 임시 피난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및 지침 사항 -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장소

4.1.5 보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 인명구조 상황과 재난현장에서의 행동요령 및 지시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에 우선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상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시 언론매체에 배포한다.
- 기자회견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기자회견과 필요시 실시되는 특별기자회견이 있다. 모든 기자회견은 대중정보센터에서 열린다. 연락공보담당은 기자회견시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군수 또는 통제단장으로부터 자료 배포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 또는 통제단장은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배포를 승인한다.
- 응급의료소장(함양군 보건소장)은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회견(브리핑) 시 참석한다.

-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상자 : 발표시각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부상자의 수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각 사망자별 안치소)
부상자의 부상정도 및 수용 병원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지명도
 - 재산피해 :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만 발표, 구체적 액수는 조사 후 발표
건물유형 등에 관련해서 기술자들의 견해(지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손실된 재산의 중요성
추가적으로 위험상태에 있는 재산
동일지역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재난현황
 - 발생원인 : 별도 조사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관계기관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조사 중인 것으로 발표
최초 신고자, 목격자의 설명과 선착대원의 초기상황 설명
재난상황이 발견된 경로/방법
재난발생 이전에 있었던 위험징후
 - 재산보존 및 인명구조활동
 - : 활동에 참여한 대원의 수
 - 현장에 있는 지휘관 또는 유명인사
 - 사용된 장비
 -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재난확대 방지 조치
 - 재산보존 조치
 - 애완동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 영웅적 활동 사례
 - 기타 복구상황에 관한 정보
 - 전화번호 : 실종자정보팀 · 유언비어통제팀 · 자원봉사자등록소 등
기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

4.1.6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 허가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지역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출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대피경계반장과 협의하여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아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를 허가한다.
- 공동취재단이 재난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문자관리팀에서 담당한다.

4.2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센터는 기자회견이 열리며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장소이다.
- 대중정보센터는 자연재해 시 함양소방서 상황실에, 사회재난 시에는 현장지휘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재난으로 인하여 함양소방서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에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대중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은 119종합상황실 대체장소와 동일하고, 대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제2, 3의 대체장소가 사용된다.
 - 제2 대체장소 : 상황 발생 시 통제단장이 지정
 - 제3 대체장소 : 상황 발생 시 통제단장이 지정
- 함양군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군청 총무부서는 대중정보센터의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통제반(경비지원팀)은 대중정보센터 출입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출입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정보센터의 보안을 유지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재난상황에 따라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이 설치·운영된다.

4.2.1 방문자관리팀

- 방문자관리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재난전문가 및 다른 관할지역에서 온 공무원 등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의 방문일정을 관리한다.
-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하고 통제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통제단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공동취재단이 현장취재를 위해 재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취재일정을 조정하고 안내자를 지정한다. 재난현장의 지리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담당할 수 있다. 재난지역으로 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통제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4.2.2 실종자정보팀

- 실종자정보팀은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사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각 응급의료소, 병원, 경찰서는 실종자정보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 언론매체에 실종자정보팀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3 유언비어통제팀

- 유언비어통제팀은 시민들과 언론매체가 전화로 문의하는 의문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특별한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들과 언론매체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용전화를 확보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정한다. 재난상황에 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모니터하는데 첨부4의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를 사용한다.
-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유언비어통제팀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3항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의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4.2.4 자원봉사자등록소

- 자원봉사자등록소는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전화번호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4.3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연락공보담당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 119종합상황실로 재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책임관은 신고내용을 평가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비상경고 발령 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119종합상황실은 기능별 계획 #2(비상경고)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연락공보담당자가 작성한 비상경고메시지를 시민에게 전파한다.

제4절 피해상황분석 계획(#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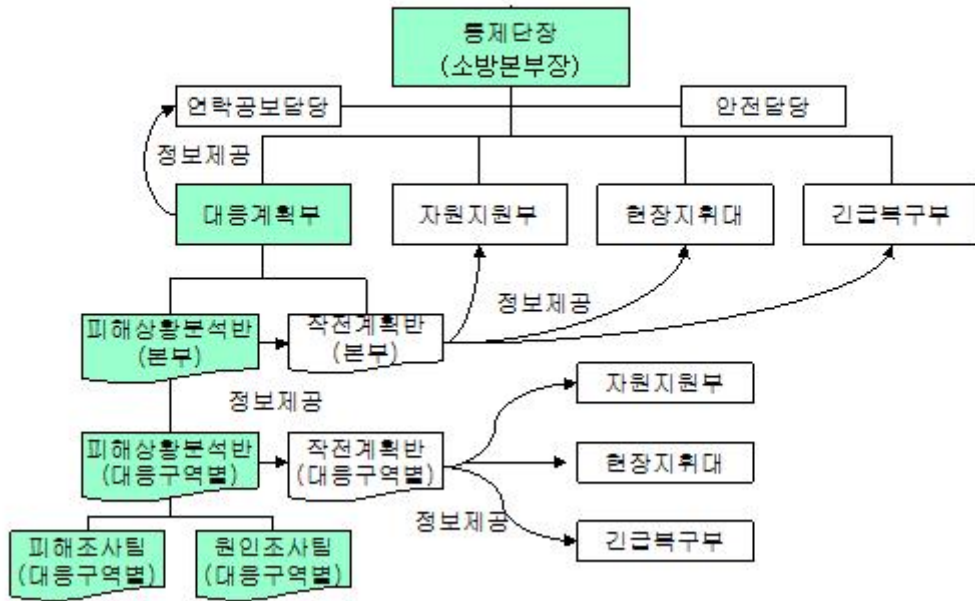
1. 목 적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조치와 추가 자원소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본부의 피해보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상황분석반은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계획부의 일부로 운영된다.
- 소방관서 화재조사담당은 재난발생시 상황분석반장이 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대응3단계)하는 경우 본부 상황분석반장은 대응구역별 상황분석자료를 취합·분석하고 대응구역별 상황분석팀을 조정·통제한다.
- 국지적(대응2단계)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장이 피해상황을 분석한다.(본부 상황분석반은 필요시 지원)
- 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 발생이 발생하면 대응계획부장의 판단에 따라 그 운영규모를 결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 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 상황분석반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분석정보를 상황보고반과 작전계획반에 제공한다.
- 작전계획반은 상황분석반의 분석정보에 따라 필요자원을 평가하고 작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제단 각 부에 배포한다.
- 상황분석 결과는 외부지원(인접 자치단체나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 등)요청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로 활용된다.
- 상황분석을 위한 상황분석반은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 임무수행절차도 》



- 상황분석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상황분석반은 정보수집 활동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요원들로 구성된다.
 - 국지적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이 구성되고,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 및 각 대응구역별 피해상황분석반이 구성된다.
 - 발생 재난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가로 편입한다.
 - 피해상황분석반은 재난유형별 원인 및 피해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상시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 운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 재난유형에 따른 전문가팀 동원 : 첨부 1, 자원동원매뉴얼 참조
- 응원협정 체결기관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피해상황 분석반장	함양소방서 지휘조사팀장 (화재조사담당자)	함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원인조사팀		
피해조사팀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상황분석팀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상황분석팀은 대응구역별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상황분석팀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 상황분석반은 홍수나 태풍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상황인 경우 재난위험반경 내 위험지역의 범위확인, 지도상의 표시, 상황기록, 대응자원의 출동태세확인 등과 같은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을 실시한다.
-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은 상황분석반 원인조사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예상피해 분석활동은 상황분석반 피해조사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상황분석반장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양식(첨부 3)에 의거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작전계획반에 정보를 전달한다.
- 작전계획반은 자원지휘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에 재난상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4.2 초기 조사

-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은 대응계획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자료와 대응방침 자료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선착대나 경찰로부터 재난상황에 관한 초기정보를 수집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본부 상황분석반은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 피해조사팀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한다.
- 원인조사팀장은 피해를 분석·평가하고, 상황보고반장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 상황보고반장은 재난상황보고서를 대응계획부장을 통하여 통합지휘팀 회의에 제출하고, 작전계획반, 현장대응부 및 긴급복구부에 현장상황정보를 전달한다.

- 결재된 재난상황보고서는 메시지센터에 보내지고 전달된 정보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전파된다.
- 각 팀들은 초기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부록 서식 1)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 피해조사팀장은 사유재산피해(집, 공장, 기타 사업체 등) 조사를 위한 팀과 공공재산피해(다리, 도로, 학교 등)조사를 위한 팀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원인조사팀장은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재난유형별 상황분석 전문가팀의 보충을 결정한다.
- 각 팀들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부록 서식 1)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4 최초보고

- 최초보고는 보고서식으로 작성한다. (부록 서식 22참조)
- 대응계획부장은 잠재적 재난 및 발생된 재난의 초기상황에 관한 초기 정보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상황보고반장은 결재된 상황보고서를 119종합상황실을 거쳐 시·도지사과 소방청 등에 보고한다.

4.5 재난사태 선포

- 재난상황이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여 전체적인 자원운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제단장은 상황분석반의 보고서를 근거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한다.
- 상황분석반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재난 선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 시·도지사는 상황보고서와 추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역재난을 선포한다.

4.6 지원요청

- 재난상황이 지역의 자원으로 대응과 복구가 어려워 인접 자치단체나 중앙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대응계획부장(상황분석반장)은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지원요청은 상황에 따라 최초보고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추가자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다. 부록 서식 24참조(19페이지)
- 피해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의 작성,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세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4.7 정보의 표시

- 상황분석반은 재난발생 예측지역, 실재 재난발생 지점, 시설물, 피난로, 긴급대피 지역(소), 피해를 입은 사람 수, 피해정도,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등의 정보들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 상황판에는 상황평가, 피해를 입은 집, 건물의 수, 피해를 입거나 폐쇄된 도로, 다리, 긴급대피소 대피인원 등을 포함한 현재의 재난상황을 표시한다.
- 정보제공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근정보로 갱신하여 표시한다.
- 정보표시 작업은 피해상황분석반 피해조사팀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8 대중정보 제공

- 상황보고반은 통제단 연락공보담당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록 서식25참조(20페이지)
-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재난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은 대응계획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 상황보고반은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부록 서식 25참조)
- 여기에는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상황보고반장이 담당한다.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 상황보고반은 피해상황 최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제출한다.
- 상황분석반은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비디오, 사진 등을 보관한다.
- 상황분석반은 소방청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제5절 구조·진압 계획(#5)

- 기능별 계획 #5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구조진압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고 임무를 할당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통제단장(구조진압반장)이 작성하고, 구조진압분야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목 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위험상황진압을 위한 대비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재난 발생 초기 대응구역별 소방자원은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조정 통제한다.
- 소방서의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은 모든 소방자원의 조정통제를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 발생시 2 이상의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각 대응구역별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조정 통제한다.
- 각 현장지휘대장 구조진압반장은 현장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상황정보를 확보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각급 119종합상황실과 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진행 중 혹은 계획 중인 대응활동, 배치되었거나 배치계획중인 소방자원(인력·장비)에 대하여 119상황실에 보고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자원동원을 요청하여 재난지역의 전반적 소방자원을 배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이 기능별계획을 운영하는 소방서 구조진압반의 책임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지휘대장	지휘조사팀장	재난구조협회 함양군지회 해병전우회 파워레포츠
구조진압반	구조대장 / 센터장	
구조팀	구조팀장	
진압팀	안전센터팀장	

- 구조진압반 조직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구조진압반장	구조대장 / 센터장	구조대장 / 센터장	구조대장 / 센터장
구조팀	구조팀장(당번)	구조팀장(비번)	구조팀장(비번)
진압팀	안전센터팀장(당번)	안전센터팀장(비번)	안전센터팀장(비번)

- 소방관서는 관할구역내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상황이 관할구역 경계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소방관서장은 소방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가 일상적인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소방서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되고, 인근 소방서 구조진압반과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부분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수색 및 구조

- 소방관서는 인명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인명수색 및 구조를 위한 초기대응과 전문적 대응은 119구조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19안전센터가 수행한다.
- 이 계획에 참가하는 각 대별 기관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색대 : 소방서 자원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위험에 처한 요구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 구조대(소방서 구조대) : 구조장비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의 전문적 구조를 담당한다.
 - 구급대 : 소방서 소속 구급대와 기타 구급 지원기관 자원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소 자원으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장비구조대 : 소방관서 소속 굴삭기 및 지원기관의 중장비로 구성된 특수자원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장애물 제거, 건축물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2 안전점검

- 소방서는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소방특별조사반 1인과 건물안전진단 전문가 1인, 전기전문가 1인, 가스전문가 1인

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과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종합적 안전진단업무는 대책본부의 조정통제에 따라 소방자원을 지원한다.

4.3 비상발전 및 조명

- 한국전력은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의 사용을 조정하고 선점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이다.
-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서의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 자원도 사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비상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등을 갖추고 있다.

4.4 가스 차단

- 가스안전공사는 재난시 가스를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이다.
- 소방관서는 재난현장의 초동대응기관으로 재난초기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가스안전공사의 긴급복구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차단한 가스밸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5 오염제독

- 소방관서는 오염지역의 제독을 실시하는 책임기관을 지원한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계획(유해화학물질 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6 방사능 탐지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훈련된 대원과 방사능재난 대응장비를 갖추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초동 현장대응은 소방관서의 책임이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2.4. 방사능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7 고립주민 원조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도로유실, 폭설, 홍수 등으로 고립된 개인 또는 주민이 음식이나 약품의 보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 이러한 고립주민 원조임무는 긴급구호반장과 조정한다.

4.8 자원집결지 운영

- 설치 목적 및 책임
 - 집결지는 각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자원집결, 임무할당, 장비수거지점, 기타 안전지대로의 대피시 인원점검을 위한 베이스기지 등의 기능을 한다.
 - 함양소방서 자원지원부장은 집결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다수의 소방서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원집결지 운영책임은 소방본부 자원지원부장에 있다.
 - 집결지 운영시 집결지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성여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한다.
- 설치조건
 - 재난발생시 다수의 소방서가 대응하는 경우
 - 하나의 소방서가 관할구역 외에서 다수의 안전센터 및 구조대 자원의 합류가 필요한 경우
- 설치위치
 - 집결지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활동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 기타 팀 구성, 배치, 임무수행절차 등은 현장지휘 SOP에 따라 수행된다.

4.9 응급의료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다수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소장이 조정 통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세부적인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기능별 계획 #6(응급의료)을 참고한다.

제6절 응급의료 계획(#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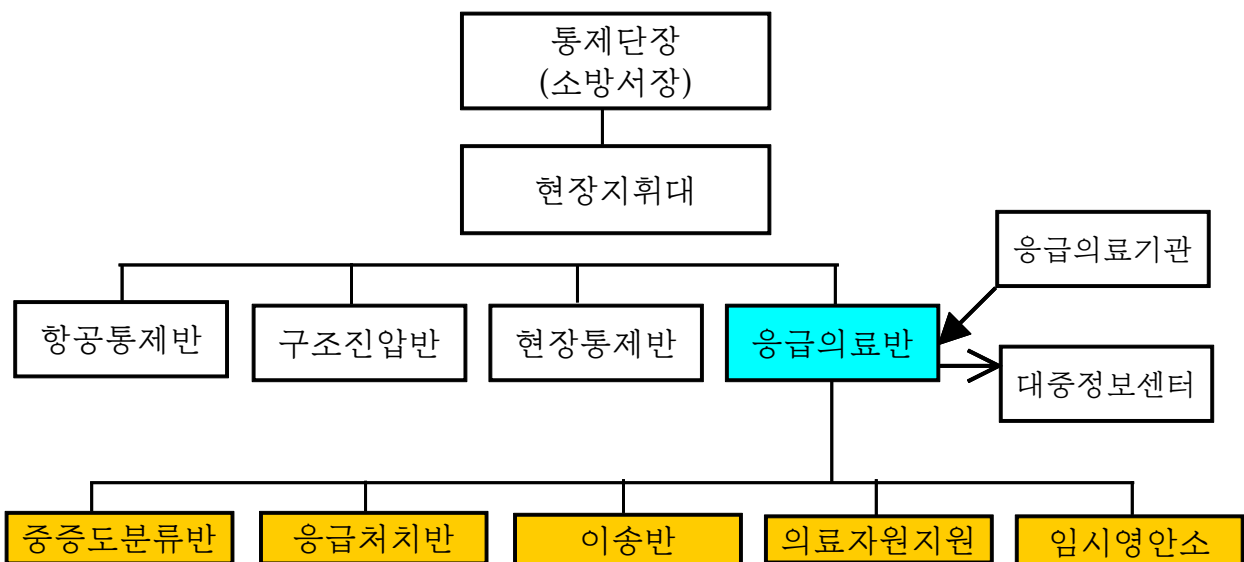
- 기능별 계획 #6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응급의료 대응 방침과 임무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대량 사상자 발생의 처리절차를 다루고 이 절차는 다른 기능별 계획 및 기본계획상의 지휘통제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소장(함양군보건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1. 목 적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직적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해 재난 희생자들의 생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되며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 응급의료소장으로 지정된 자는 모든 응급의료서비스 활동을 위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제정된 절차에 따라 병원 및 단체들과의 연락을 위한 연락관을 지정하며, 재난 희생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활동 및 다른 지원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지원기관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자원을 지원하며 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응급의료대응 책임기관	응급의료대응 지원기관
재난초기 : 함양소방서 임시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시 : 함양군 보건소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시 : 함양군 보건소장 부재 시 임무승계 : 함양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함양경찰서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대한적십자사 함양봉사회 등 함양성심병원

- 운영요원

반별	운영요원	
	소방팀	의료팀
중증도분류반	각 대응구역별 구급대	의사 1, 행정 1, 간호사 1 신속대응반, 간호사 1 행정 1, 구급차(운전) 1 함양군 보건소 의료진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구급담당자	
임시영안소		

- 임무요약

- 응급의료소는 재난발생시 함양군 관할구역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통합 조정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응급의료소는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다.

- 재난발생시 모든 응급의료 지원기관들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 및 119상황실과 통신체제를 유지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개요	비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 응급의료분야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시 대응절차를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연락에 따라 응급의료팀(구급차)이 사고 현장에 급파된다. - 각 구급대는 현장도착시 소방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응급의료반 각 구급대 및 반은 현장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이송반은 자동으로 가동되고, 중증분류반, 응급처치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합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소방본부 통합 응급의료소는 현장응급의료소 중에서 통제단장(소방본부 응급의료팀장)이 지정운영한다. - 통합 응급의료소 각 반은 관할구역별 현장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시 각 소방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응급의료소(중증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응급의료소 각 운영요원은 아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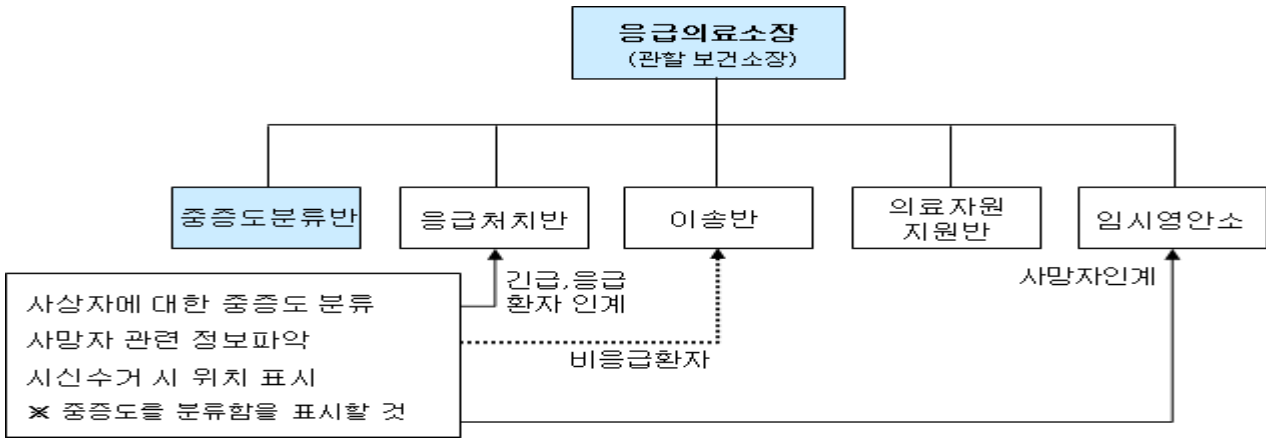
4.1 현장응급의료소장

-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 안전한 장소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의료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를 운영한다.
- 이송반의 설치는 구급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넓은 장소를 지정한다.
- 응급의료 임무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사상자 및 사망자 명단을 대중정보센터에 제공하여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통제단 언론브리핑 시 동석)
- 긴급구호반장이 재난심리상담 등 응급의료업무와 관련된 자원 요청 시 책임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4.2 중증도분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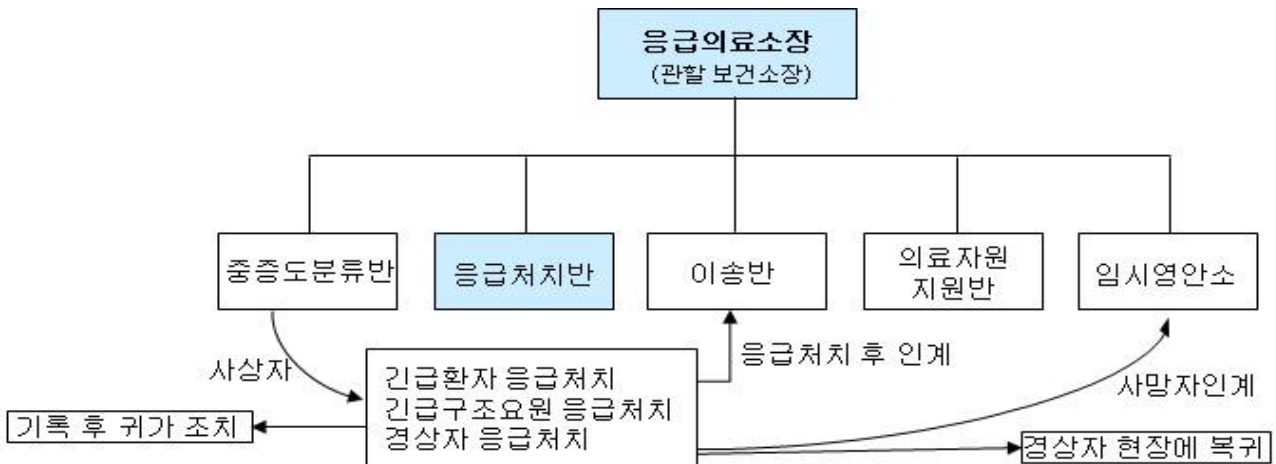
- 분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대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중증도분류반 운영요원을 지정한다.
- 분류반 운영요원은 사상자를 신속하게 아래의 4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적 색(긴 급) : 수분 혹은 단 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 황 색(응 급) :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 녹 색(비응급)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
※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원 진료 받을 것을 권고 후 귀가 조치
 - 흑 색(사 망) :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분류반 운영요원은 해당복장 등을 착용하여 자신이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
- 시신 수습 시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수거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 한 장소에서 2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된 경우 번호 기입
-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는 신원파악을 위하여 임시영안소에 제공한다.
- 부상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응급처치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중증도분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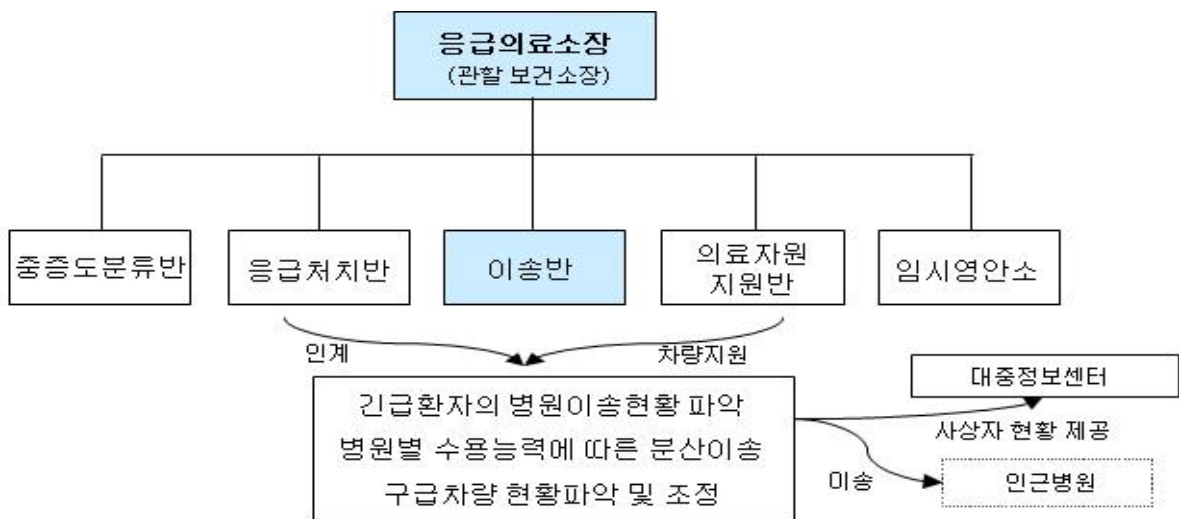
4.3 응급처치반

- 응급처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비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의 응급실이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기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한 후 귀가조치 시키며,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응급처치한 내용을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한다.
- 응급처치 중 의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거나, 구조된 사망자가 응급처치반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임시영안소에 인계한다.
- 연락공보담당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급의료소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제공한다.
-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의료자원지원반를 통하여 자원지원부에 즉시 지원을 요청하여 원활한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처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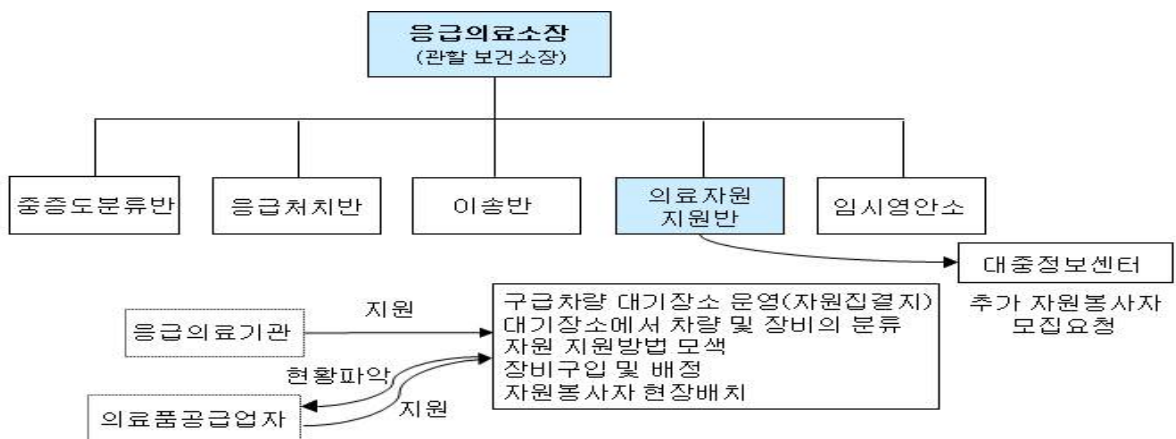
4.4 이송반

- 이송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송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송반장은 의료자원지원반과 함께 구급차, 특수구급차, 영구차와 같은 차량 운영을 조정한다.
 - 차량 동원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이 구급차량 때문에 정체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동원한다.
 - 이송반장은 차량의 운영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① 운행 가능한 구급차
 - ② 이용되고 있는 구급차
 - ③ 이송 병원 현황
 - 이송반원은 사상자 이송현황을 이송반에 제출하고 부착된 중증도분류 및 구급일지를 기록·보관 후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대중정보센터 등에 통보한다.
- 환자분산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 분산수용능력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상자의 이송은 손상유형과 각 병원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분산이송 한다.
 - 이송반장은 실시간 확인 가능한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 수용능력에 따라 분산 이송한다.
 - 적색(긴급)으로 분류된 사상자에 대한 이송은 SOP402(다수환자 발생시 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이송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5 의료자원지원반

- 구급차대기소 운영
 - 구급차대기소를 자원대기소에 설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차량과 직원들이 현장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현장에 모인 응급의료서비스 차량 및 직원들은 도착 즉시 구급차량 대기소에 집결하여 현장임무를 지시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 의료자원지원반은 구급차대기소에 집결된 자원현황에 대하여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반별 자원(구급차)동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한다.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필요시 구급차 대기소 자원을 관리할 대기분대장을 임명한다.
 - 자원의 동원 및 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공급물품 및 장비
 - 모든 구급차량에 재난발생 시 필요한 의료물품을 비축하여야 한다.
 - 각 반장이 추가 물품을 요구 시 대기소에 있는 자원을 즉시 배정한다.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추가로 필요하거나 드물게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 및 배정한다. → 의료물품공급사업장 목록 : 자원동원메뉴얼(응급의료분야) 참조
- 자원봉사자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자원집결지 및 인력지원센터(적십자사)에서 통보된 간호사, 의사, 응급구조사, 기타 유사 자격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자원 지원 요청 시 각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추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 대중정보센터(자원봉사자등록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의료자원지원반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대응단계	대 응 매 뉴 얼
초기 단계 (재난발생 1 ~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자원 및 사상자들의 응급처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 단계별로 시간한도를 정한다. * 응급의료자원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활동 - 특수재해 부상자에 대한 의료대응활동 - 각 병원별 응급의료기능의 보강
중기 단계 (재난발생 6 ~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장에 응급의료소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후기 단계 (재난발생 12시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 시 응급의료반 자원들에 대한 오염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 종료 시 일상적인 업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4.8 응급의료 통신

- 구급차와 병원간의 통신은 무전기(구급전용 지정채널)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구급대원들 간의 통신은 각 재난대응구역별로 UHF 무전기를 사용한다.
-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와의 통신은 VHF 무전기를 사용한다.
- 응급의료서비스 직원들과 현장응급의료소의 통신은 UHF 무전기를 사용한다.
- 각 단위 지휘관(각 반장 및 지원기관단체 지휘관)은 각 소속 지원기관별 비상용 휴대 전화를 확보 소지하여야 한다.
-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재난보조통신시스템의 배정을 요청한다.
- 기타 통신수단은 기능별계획#11 재난통신 계획을 참조한다.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응급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추진계획(매년 119구급과 별도 수립·시행)

□ 훈련개요

- (훈련기간) 년중
- (훈련횟수) 소방서별 연1회 이상
- (훈련방법) 구급대 주도 별도훈련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 *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사고유형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과 동일한 사고
 - 사상자 규모 : 40명 이상 발생한 사고로 설정하여 대응훈련 실시

□ 훈련평가

- (평가대상) 각 시·도 소방본부별 1개 소방서(그 외 자체평가 실시)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합동평가(소방청 1~2명, 중앙응급의료센터 1~2명)
- (평가내용) 대응기관별 임무수행 적정성 및 상호 유기적 대응 중점 평가

□ 세부 평가내용

- 훈련계획의 적절성 및 동원자원관리 현황
 - 사고유형설정 및 시나리오 적절성,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 반영여부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기관 참여, 자원대기소 및 집결처 설치여부
- 선착 구급대장(원)의 명확한 역할 인지
 - 구급대장(원)에 의한 실시간 환자 중증도분류 및 분류표작성 등 명확한 역할(인계, 통제, 보고, 임무부여 등)

-
- 보건소장에게 서면 인수인계서 작성·보고, 지휘(권) 이양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역할 인지
 - 재난초기 소방관서 중심에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신속전환
 - 사상자 명단(현황) 파악·작성 및 관련 언론브리핑
 - 정확한 사상자 파악 위한 이송 의료기관 연락관 파견
 - 통제단장에게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인수인계, 현장지휘부와 실시간 보고체계 유지 등
 - 유관기관 협업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능력
 -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작성
 - 평상시 응급의료자원(현황) 관리 여부
 -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재난 초기부터 활동 가능토록 신속한 상황전파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 인력 및 장비, 임시영안소 설치·운영·관리의 적절성
 - 의사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 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 실시간 이송현황 및 병상정보, 수용능력 등 파악(정보통신 매체 등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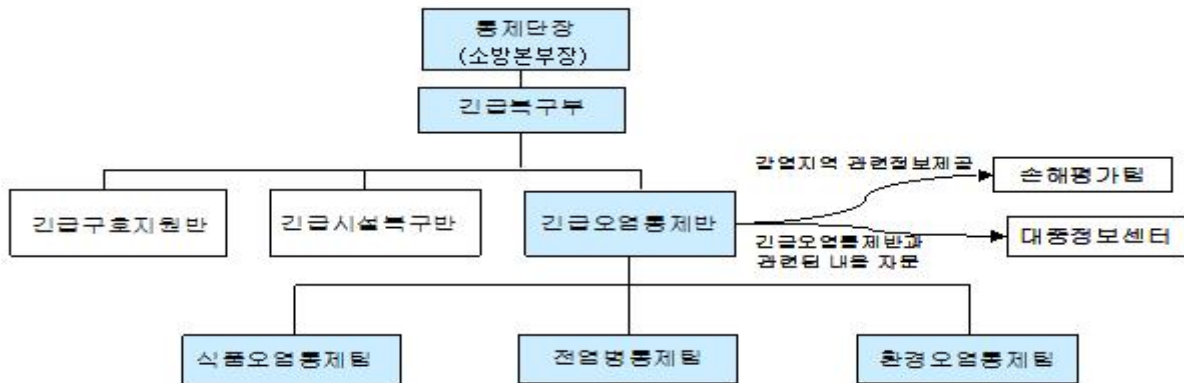
제 7절 긴급오염통제 계획(#7)

- 기능별 계획 #7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긴급오염통제 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긴급복구부장(함양군 안전도시과장)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주요 지원기관(함양보건소, 함양군 환경위생과, 함양군 상수도 사업소)가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기본계획 및 다른 기능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목 적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 지자체, 보건소, 지역환경청 등 관련 주관부서와 협업 지원을 위해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한다.

2. 운영조직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유관기관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원여부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오염통제 자원을 조정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에 시료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료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기능별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 재난초기 : 긴급복구부 긴급오염통제반 (함양군 환경위생과장) - 대책본부 설치운영 시 : 대책본부 이관	① 함양보건소 ② 함양군 환경위생과 ③ 함양군 상수도 사업소 ④ 함양성심병원

- 임무요약
 - 식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급수중단 또는 제한급수를 실시한다.
 - 재난지역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음식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재난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목욕탕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 한다.
 - 역학조사(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예상 오염지역 및 인원을 추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예방접종 실시한다.
 - 오염된 해충 및 동물 통제방법을 강구하고 방역작업 등 필요조치를 수행한다.
 - 오염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감독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인체유해 여부를 판단, 쓰레기 또는 잔해물 등에 의한 오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개요	비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 임무 수행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 임무 관련분야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시 대응절차를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긴급 오염통제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 현장지휘관에 의해 재난현장의 오염통제임무가 수행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119종합상황실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사고 현장에 급파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이 현장 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현장지휘관의 긴급오염통제반장의 역할을 이양 받아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오염통제팀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긴급 오염통제반(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오염통제팀)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긴급오염통제반은 아래의 임무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긴급 오염통제반장

- 각 팀별 임무를 수행할 운영요원의 비상소집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오염통제반의 각 팀별 임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오염통제, 급수통제, 재난지역 인근 수영장 및 목욕탕 등에 대한 오염여부를 결정한다.
-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책본부에 방역활동을 요청하고 격리지역에 대한 긴급 구조요원 및 차량들의 진 출입 통제범위를 결정한다.

4.3 감염병 통제팀

감 ○ 재난지역 수질조사

- 필요시 재난현장 인근의 수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 안전성 여부를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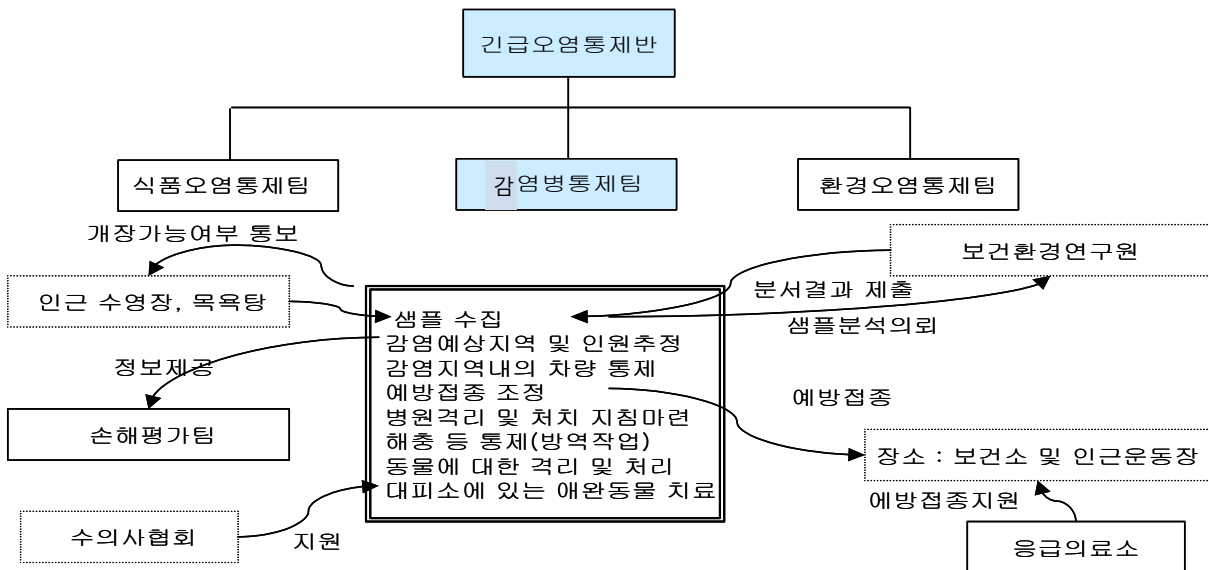
○ 감염병 통제

- 재난발생 지역에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예상 전염지역 및 인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책본부(또는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관할보건소, 긴급대피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안전을 위하여 오염지역내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진입통제를 함양경찰서에 요청한다.
- 감염병환자의 격리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에 정보를 제공한다.

○ 동물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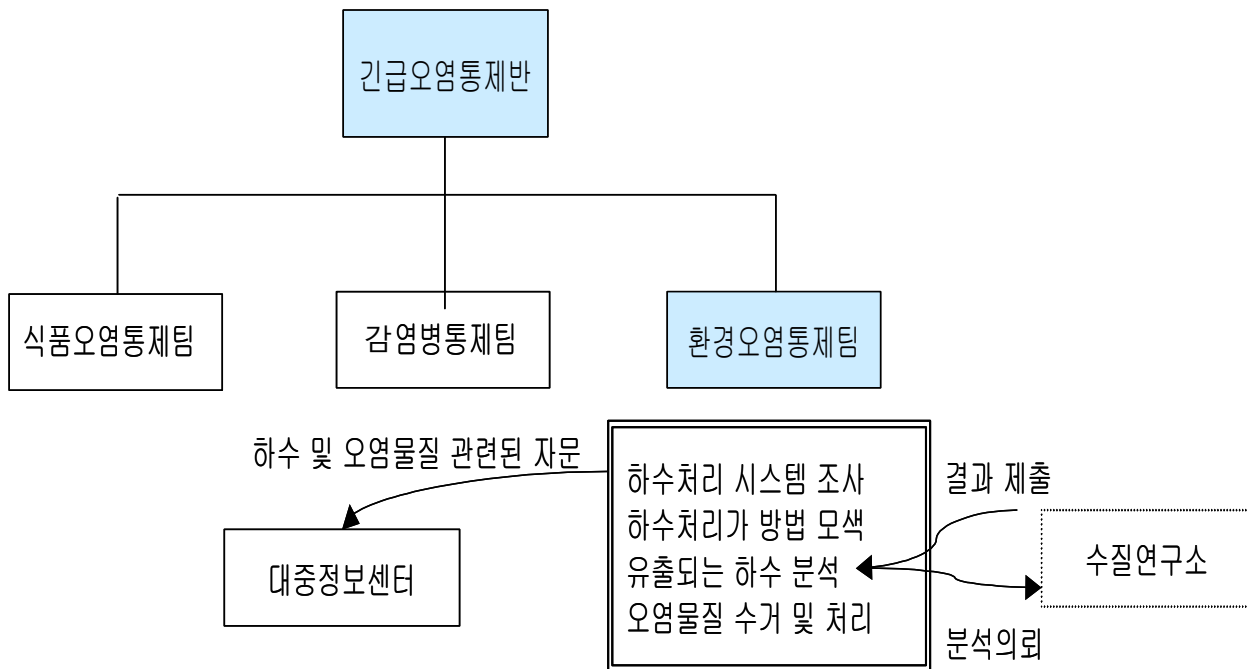
- 감염병 및 오염의 매개체인 곤충, 쥐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대책본부(또는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전염된 동물, 가축의 격리 및 치료업무가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산과, 수의사협회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에 지원을 요청한다.

○ 감염병통제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4 환경오염통제팀

- 재난지역 하수처리
 - 재난현장에서의 공용 및 개인 하수처리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한다.
 - 피해지역내 하수처리시설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하수처리 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유출 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의 분석자료가 통보되면 환경오염통제팀은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
- 오염물질 처리
 - 시민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고현장의 오염물질 및 잔해물을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한다.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단계	매뉴얼
<p>초기단계 (재난발생 1~6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오염통제임무의 운영 자원 및 이행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단계별로 시간 한도를 정함 * 긴급오염통제임무 자원을 아래와 같이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식수) 안전여부 조사활동 - 감염병 예방접종 등 - 오염물질 처리 및 하수처리시스템 긴급복구
<p>중기단계 (재난발생 6~1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에 긴급 오염통제임무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p>후기단계 (재난발생 12시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시 긴급 오염통제임무 자원들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종료시 일상적인 임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제8절 현장통제 계획(#8)

1. 목 적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재난발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현장통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현장통제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여부 및 범위가 결정된다.
 - ※ 재난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현장통제반의 조직도 》

《 현장통제반의 조직도 》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통제반장	함양경찰서 정보과	재난구조협회, 해병전우회 육군 제 8962부대 3대대 등
경비지원팀	함양경찰서 정보과	
방법지원팀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수사지원팀	함양경찰서 수사과	
교통지원팀	함양경찰서 교통계	

- 대피 및 경계반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현장통제반장	함양경찰서 정보과장	함양경찰서 정보과장	함양경찰서 정보과장
경비지원팀	함양경찰서 정보계장	함양경찰서 정보담당자	함양경찰서 정보담당자
방법지원팀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계장	함양경찰서 생활안전담당자	함양경찰서 생활안전담당자
수사지원팀	함양경찰서 수사계장	함양경찰서 수사담당자	함양경찰서 수사담당자
교통지원팀	함양경찰서 교통계장	함양경찰서 교통담당자	함양경찰서 교통담당자

- 현장통제반장은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단체는 필요에 따라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을 위하여 현장통제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관은 현장통제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 기 수행된 안전지원 및 교통통제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현장안전 활동 및 교통통제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장통제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필요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현장통제기능은 일상적 수준에서 가동	
대응2단계	중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	
대응3단계	대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전면 가동	

4. 임무수행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현장통제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위의 각 지원팀은 시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으로 문란해진 치안질서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1.1 자원·시설 안전

- 재난이 발생하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긴급구조통제단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연락공보담당(방문자관리팀)은 통제단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안전지원팀에게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통제단을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허가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통제단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나. 현장지휘소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현장지휘소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현장지휘소는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에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현장지휘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현장지휘소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다. 대중정보센터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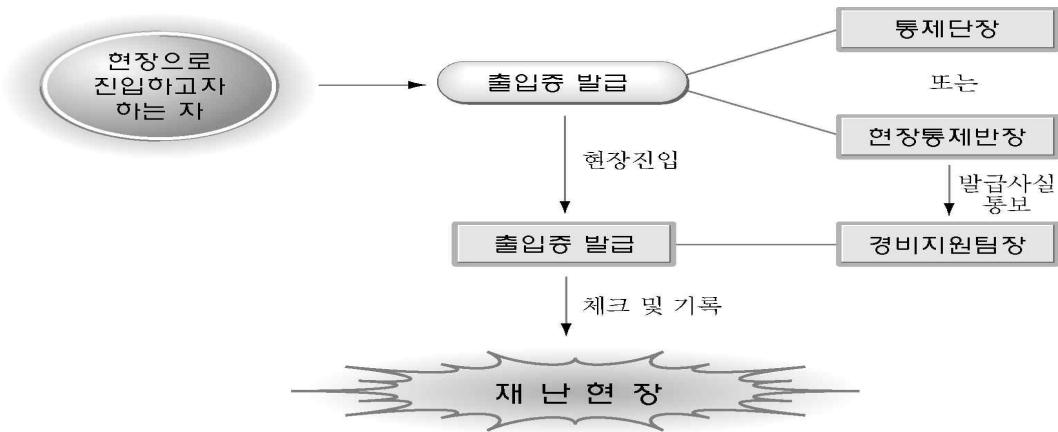
-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이 기자(언론사 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중정보센터 출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일지를 작성한 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을 허가하는 청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 없이는 대중정보센터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라. 중요 자원 · 시설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중요 자원과 시설에 배치한다.
- 경비지원팀장은 관할구역 내 중요한 자원과 시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방법지원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안전요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마. 재난발생지역 안전

- 재난발생으로 도로 파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어떤 유형의 재난은 건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한다. 전기가 차단되면 경보시스템과 비상조명기기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 방법지원팀장은 재난발생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보순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재난지역 내 건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비상조명등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일반 시민의 재난현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 통제단장(연락공보담당)은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경비지원팀은 재난발생지역으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요원 및 지원기관의 직원은 그들이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출입허가증이 발급된다.



바. 대피소 안전

-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은 대피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근무자를 배치하고 정복근무자를 배치하며 주차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 자원집결지의 안전

-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인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기관별 집결지를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집결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집결지를 설치하는 기관은 집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결지 설치기관의 인원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이 지원을 한다.

4.1.2 시민의 안전

- 안전지원팀은 신속한 응급처치 혹은 다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요구조의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순찰차를 지원한다. 이때 방범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 및 구조진압반과 수시로 통신하여 필요시 장비와 인원이 즉각 추가 투입되도록 한다.
- 경비지원팀장과 방범지원팀장은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호지원반과 협조 조정한다.
- 안전요원은 옥내에 구조가 필요한 거주자가 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 인명탐색을 위해 옥내로 진입할 수 있다. 가옥 또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

다면 관계인의 동의 없이 즉시 탐색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4.1.3 수형자의 안전

- 경비지원팀장과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협조하여 수형자 등을 통제단장이 권고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수형자 등에 대한 긴급이송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송수단은 자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원지원부의 수송지원팀에 요청한다.
- 수형자 등의 수송 중 보안 및 안전조치는 자체교도대 등을 이용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비지원팀 또는 방법지원팀에서 전투경찰 내지 의무경찰력을 지원한다.

4.1.4 임시영안소의 안전 지원

- 경비지원팀 또는 방법지원팀은 사체를 초기 수집지점으로 수집 운반하여 검시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사망자의 신분과 소지품 식별 및 처리,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사망통지 등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과 임시영안소의 안전을 지원한다.

4.1.5 동물통제

-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은 축사를 이탈한 가축, 애완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애완동물보호관소, 동물애호협회 또는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조하고 동물 수용장소를 찾고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다.

4.1.6 분실물보관소

- 경비지원팀장은 분실물보관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 경비지원팀장은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분실물보관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홍보한다.
- 재난으로 유실된 재산(분실물)은 습득 후 분실물보관소로 수집되어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또는 1년 동안 분실물보관소에서 보관된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분실물 재산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재산상의 분실이 있는 사람은 분실물보관소에 신고한다.

4.1.7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작성

- 긴급구호반은 매년 청각장애자, 거동불편자 등과 같이 재난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서를 출판한다.
- 이러한 대상자의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긴급구호반장은 이 명단을 갱신·유지하고 현장통제반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현장통제반은 긴급한 상황 또는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명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2 교통지원팀

- 교통지원팀은 진입통제, 교통통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응자원의 원활한 흐름과 2차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통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4.2.1 진입통제

- 진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통제반장의 건의에 따라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서 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다.
- 해당 대책본부장은 그의 명으로 지방도로에 대하여 통행제한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진입통제지역 결정 후 보안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현장통제반 교통지원팀의 임무가 된다.

가. 바리케이드

- 현장으로 연결되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주요 경로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통지원팀의 요원이 배치된다. 2차 도로에는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바리케이드만 설치한다.

나. 교통의 재배치

- 교통지원팀장은 재난현장 주변의 교통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의 주변에는 적절한 우회로 표지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통제지역으로의 진입

-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요원 및 대응자원들이 출입할 통로를 지정해두며, 이 통로는 대응하는 각 지원기관에 배당된다. 해당기관은 소속 요원들의 통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라. 항공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항공기가 재난현장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한다.(필요시)

4.2.2 교통통제

- 대피·소개가 되면 교통지원팀의 요원은 재난지역의 교통흐름이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주요 교차로에 배치된다.

4.2.3 통행금지

- 재난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 대책본부장은 특정지역에 통행금지조치를 명하여 발효시키고 안전지원팀 및 교통지원팀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한다.

4.2.4 차량제거 조치

- 차량들이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 또는 차단하고 있다면, 교통지원팀은 도로로부터 차량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 교통지원팀장은 차량견인회사에 연락하여 도로로부터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사후에 통지한다.

제9절 긴급복구 계획(#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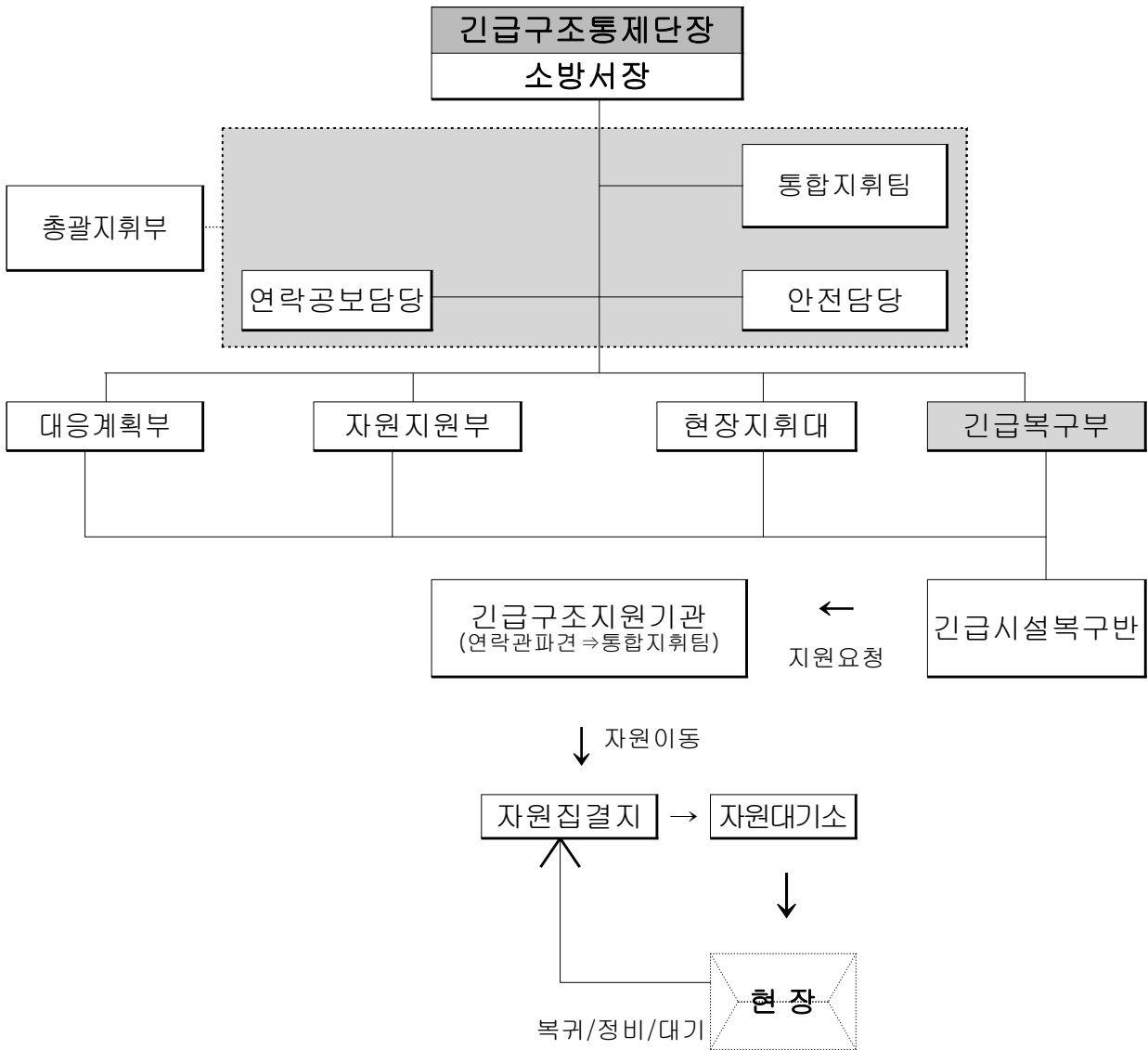
1. 목 적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부서나 협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모든 자원들은 이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사용된다. 부록 서식 21참조(16페이지)
- 재난발생시 대응구역별 긴급복구는 대응구역별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
- 재난발생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조정·통제는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책임이며 자원지원부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대응구역별 긴급시설복구반장은 긴급복구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상황정보에 근거하여 자원동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투입을 결정한다.
- 추가 긴급복구자원 필요시 1차적으로 대응구역별 자원지원반과 협력하고 본부 자원지원부에 자원을 요청한다.
- 본부 자원지원부장은 각 대응구역에서 요청한 필요자원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자원을 조정·통제한다.
-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기관단체의 긴급복구자원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상주한다.
- 연락관은 절차에 따라 각 긴급구조지원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임무를 분담한다.
- 각 소속기관 연락관은 관할 통제단장에게 현 배치자원, 배치예정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임무수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의 자원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이다.
- 자원대기소는 자원동원의 우선순위 즉 현장대응상황에 따라 즉시투입이 필요한 인원과 물자가 대기하는 장소이다.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는 필요에 따라 전체 집결지 또는 재난발생 대응구역별로 설치·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자원지원부장의 책임하에 설치·운영되고,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대장의 책임하에 설치·운영된다.
- 대응계획부장은 연락공보담당에게 긴급복구에 대한 대중정보를 제공한다.
- 연락공보담당이 출동하기 전까지의 긴급복구와 관련한 대중정보 전파는 119상황실이 담당한다.
- 임무수행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 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긴급복구부	함양군 안전도시과	함양군 건설교통과
긴급시설복구반	함양군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문화재소실 민원봉사과-----건축물 건설교통과-----도로 건설교통과-----하천 산림녹지과-----산림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 농업기술센터-----영농부대시설 기타 전기,전력,가스,수도,통신관련 기관단체
긴급구호지원반	함양군 사회복지과	주민행복지원실-----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자원봉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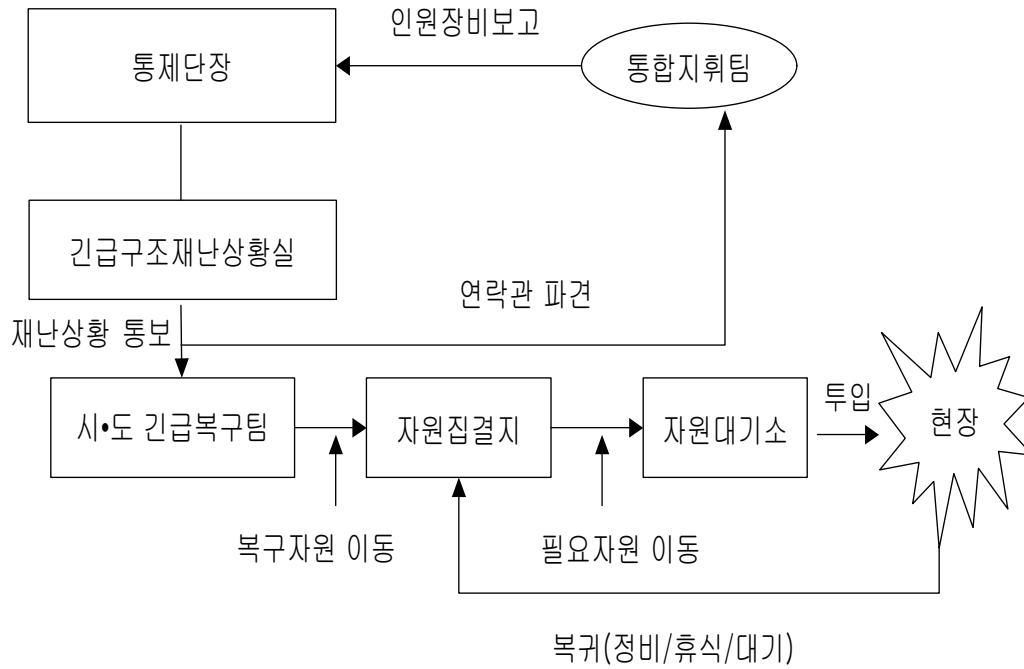
3. 대응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긴급복구반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긴급복구반은 대응구역별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긴급복구반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 함양군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를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각 지원기관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조현장의 진·출입,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는 잔해물 제거
 -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현장진입로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임시 잔해물 적치장소 지정 및 처리
 - 장기 잔해물 처리계획 수립
 - 파손된 소방용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 파손된 식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및 대체급수 강구
 - 필요시 민방위대원 등 인원 동원요청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보유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이 완료된 각 지원기관 긴급복구반장은 임무수행 결과를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복구반장에게 보고한 후 자원대기소로 복귀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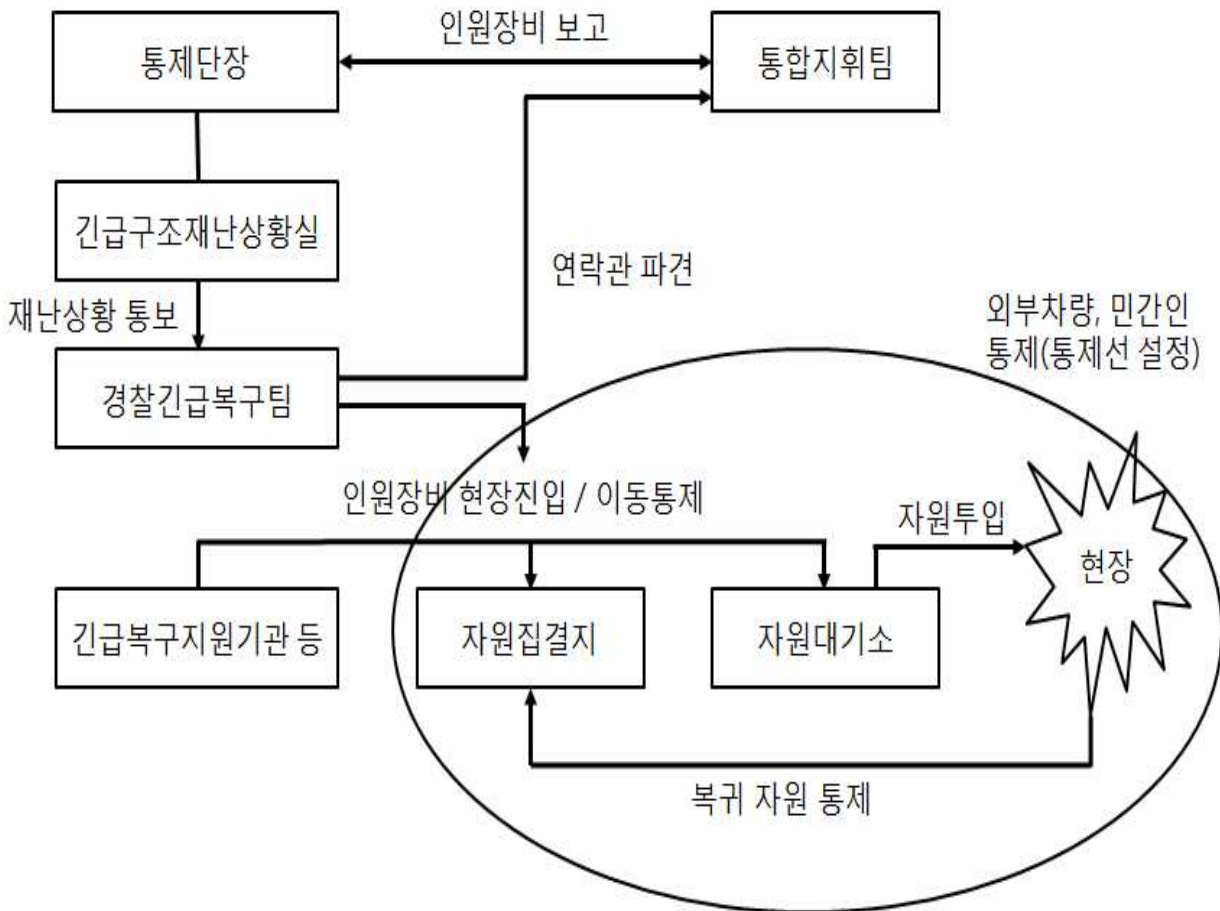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함양소방서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 등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자원집결지는 관할 소방서가 되고, 시·도 차원의 집결지는 사전 지정된 장소 중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자원집결지는 대응구역별 소방서에서 선정한다.
- 자원지원부장은 사전 지정된 장소이외에 긴급복구자원의 진·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자원집결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초 상황 통보시 복구자원이 자원집결지에 집결될 수 있도록 통보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은 현장지휘대와 교신을 실시하고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긴급복구자원을 현장에 인접한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킨다.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함양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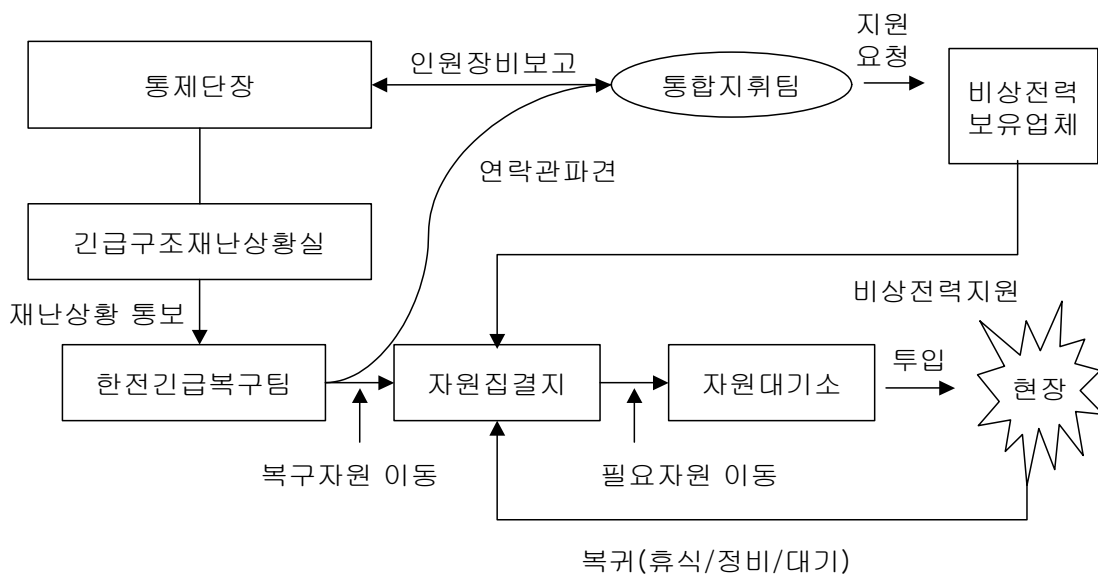
- 긴급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교대조를 편성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지역에 일반차량 및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임무 수행
 - 적절한 위치에 통제선 선정, 장애물 설치, 우회로 선정 및 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차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복구 자원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수송로 확보
 -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불법 주정차, 고장난 차량) 처리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를 긴급시설복구반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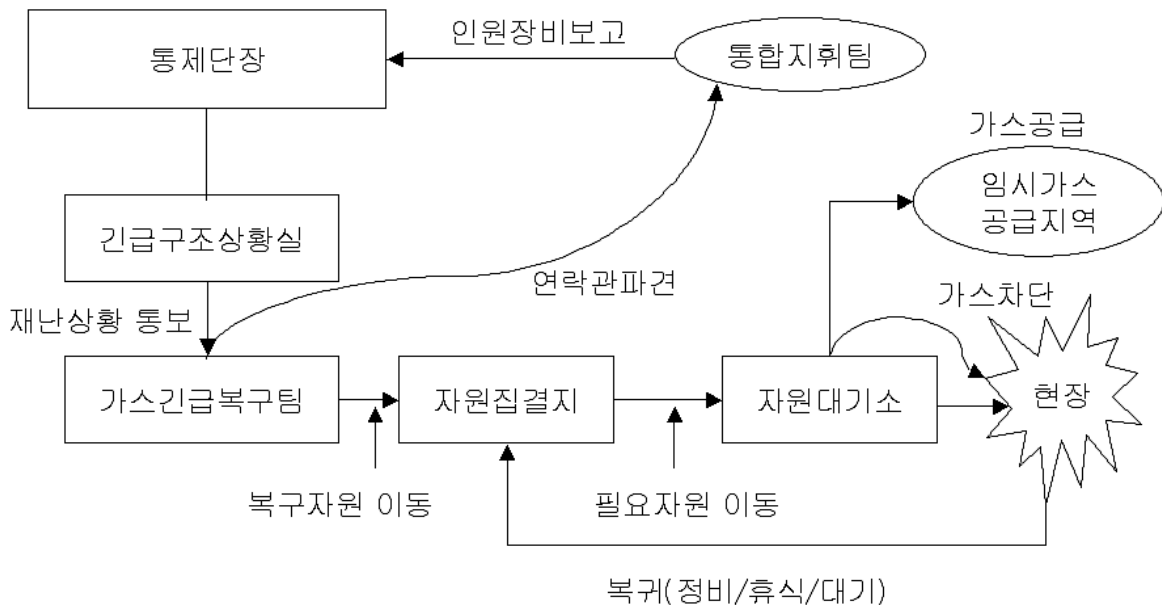
4.4 비상전력 공급-한국전력 긴급복구팀(함양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전원차단 실시
 -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전력 사용을 결정하고 가용한 전력 조정통제
 - 가용한 비상전력(발전기) 보유업체에 긴급연락 및 자원동원
(보유업체의 목록을 자원매뉴얼에 기록관리)
 - 임시피난소 등에 전력공급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 - 가스 긴급복구팀(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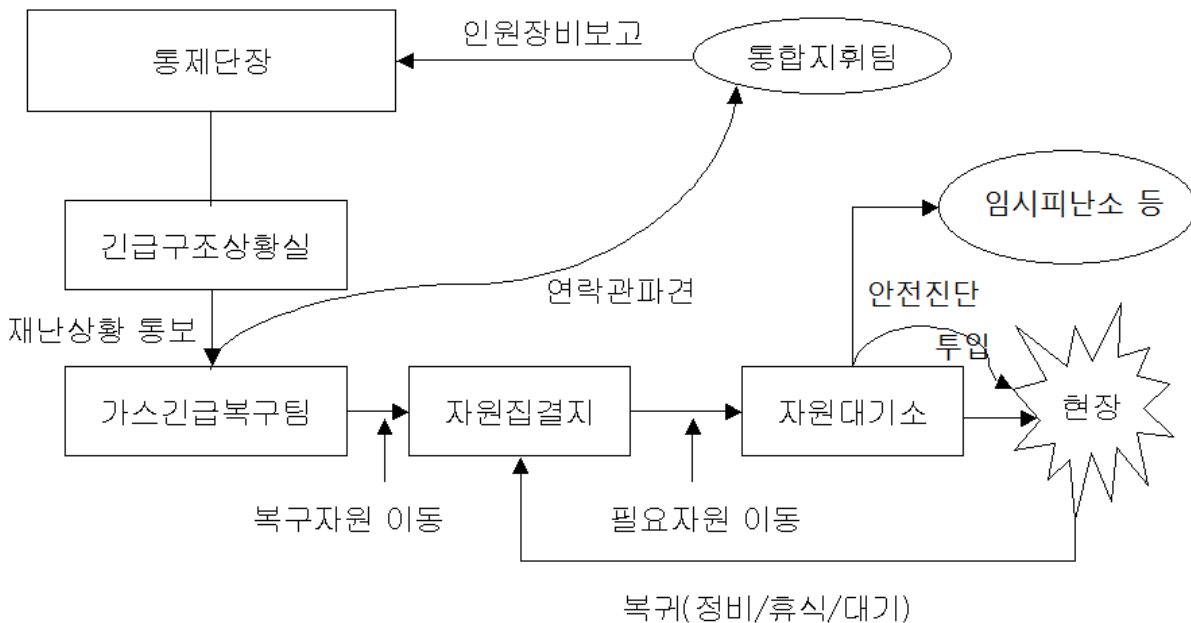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가스공급 차단
 - 사고현장 주변 일대에 대한 가스누출 우려시 안전진단 실시
 - 필요지역에 임시 가스공급 실시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긴급시설복구팀장의 지시에 따라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 - 함양군, 함양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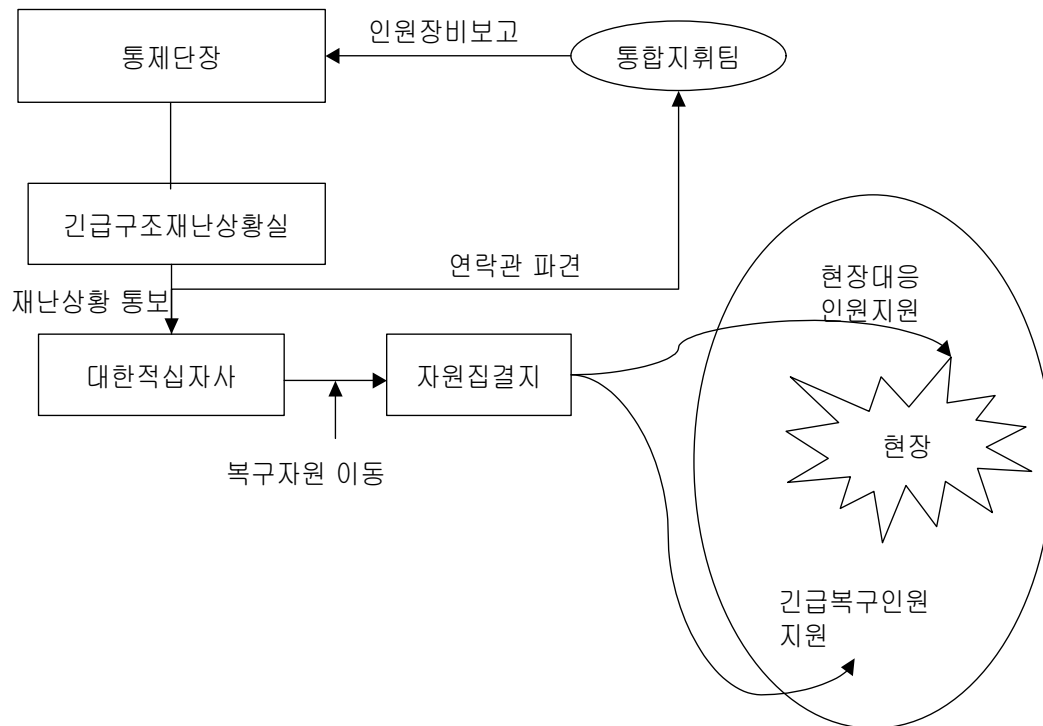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팀장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함양군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은 현장 대응활동에 위협이 되는 재난 지역과 건물 등에 대해 임시 안전점검 실시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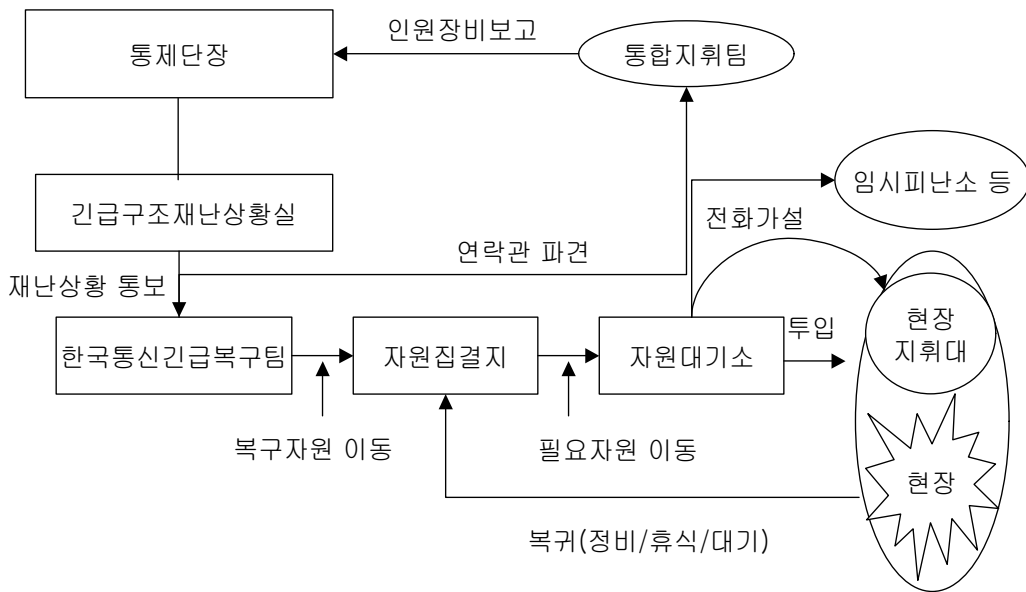
4.7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호품 구입요청, 보급 및 수송체계 확보
 - 긴급구호장비, 소모품 등 물자조달 및 관리
 - 구호요원의 지휘통제, 현장활동대원과 구호자에게 급식제공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8 통신 - KT 산청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는 다음과 같다.
 - 현장지휘소에 긴급전화 설치와 임시피난소 등에 임시 공중전화 가설
 - 통신시설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두절 시설과 지역에 대해 통신회선 응급복구 및 예비통신망 대체운용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9 기타(필요에 따른 임무 목록)

- 군부대, 민간단체 등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장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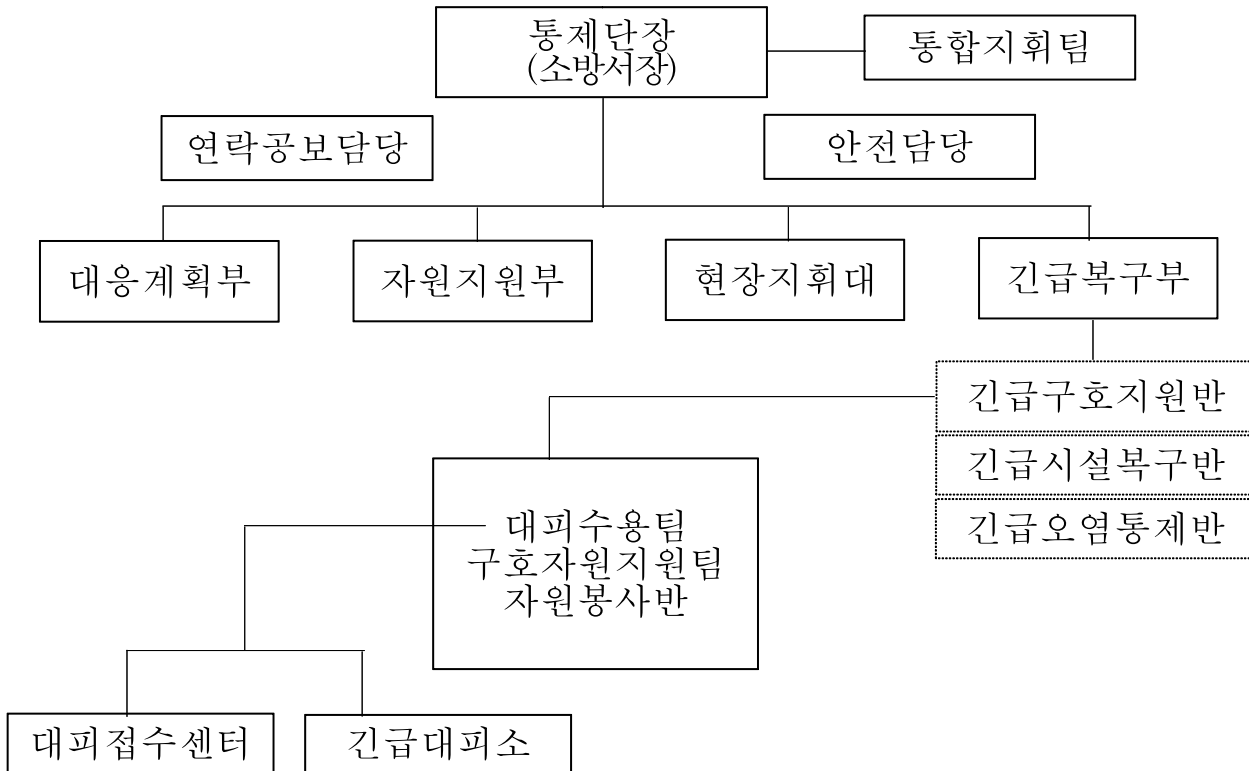
제 10절 긴급구호 계획(#10)

1. 목 적

재난시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부서와 협업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긴급구호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긴급구호자원의 활동을 조정한다.
- 긴급구호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피수용팀, 구호자원지원팀, 심리상담팀 등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된다.
- 긴급구호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 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긴급구호지원반 조직도 》

- 이 기능별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긴급구호지원반장	함양군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구호복지과장)
대피수용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대피수용반) 교육지원청,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수송협회
구호자원지원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구호물자반) 버스 및 트럭운송협회
심리상담팀		재난심리상담기관·단체 정신보건센터지정, 민간병원지정 상담원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각 지원기관단체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은 필요에 따라 긴급구호지원반장과 협의하여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은 긴급구호지원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과 기 수행된 긴급구호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긴급구호 활동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필요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긴급구호기능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긴급구호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긴급구호기능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구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4.1 대피수용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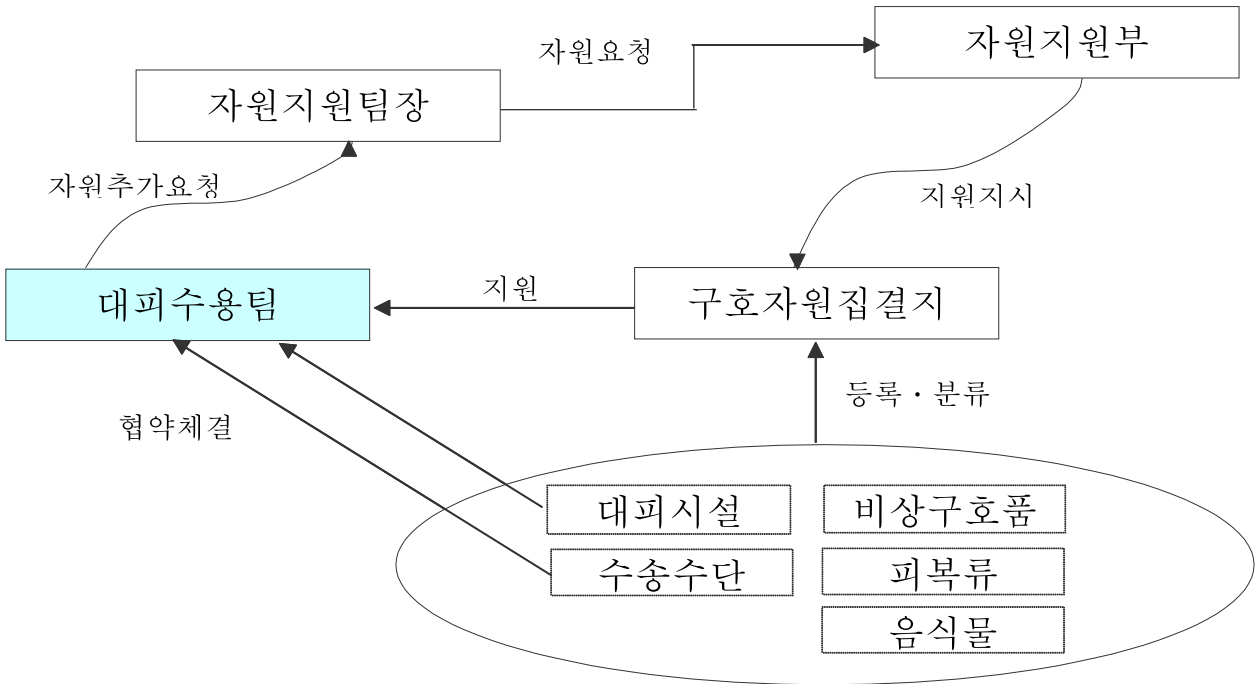
4.2.1 긴급대피 접수센터 운영

-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비상경고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피정보에는 긴급대피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대피수용팀장은 연락공보담당관(대중정보센터)으로부터 긴급대피소 운영정보를 입수하고 대피소 입구에 대피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대피자들을 수용접수 한다.
- 대피접수센터 운영담당자는 재난 피해자 수, 피해자 중 친구나 친척집에 머무를 인원 수, 현재 접수되는 수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대피인원을 대피수용팀장에게 보고한다.
- 이 접수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긴급대피시설의 확보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접수센터를 통해 입수한 실종자정보는 대중정보센터에 통보한다.

4.2.2 긴급대피소 운영

- 긴급대피소는 화학누출사고에 대한 일시적 대피소와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 대피수용팀은 단기간의 긴급대피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장기간의 대피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대피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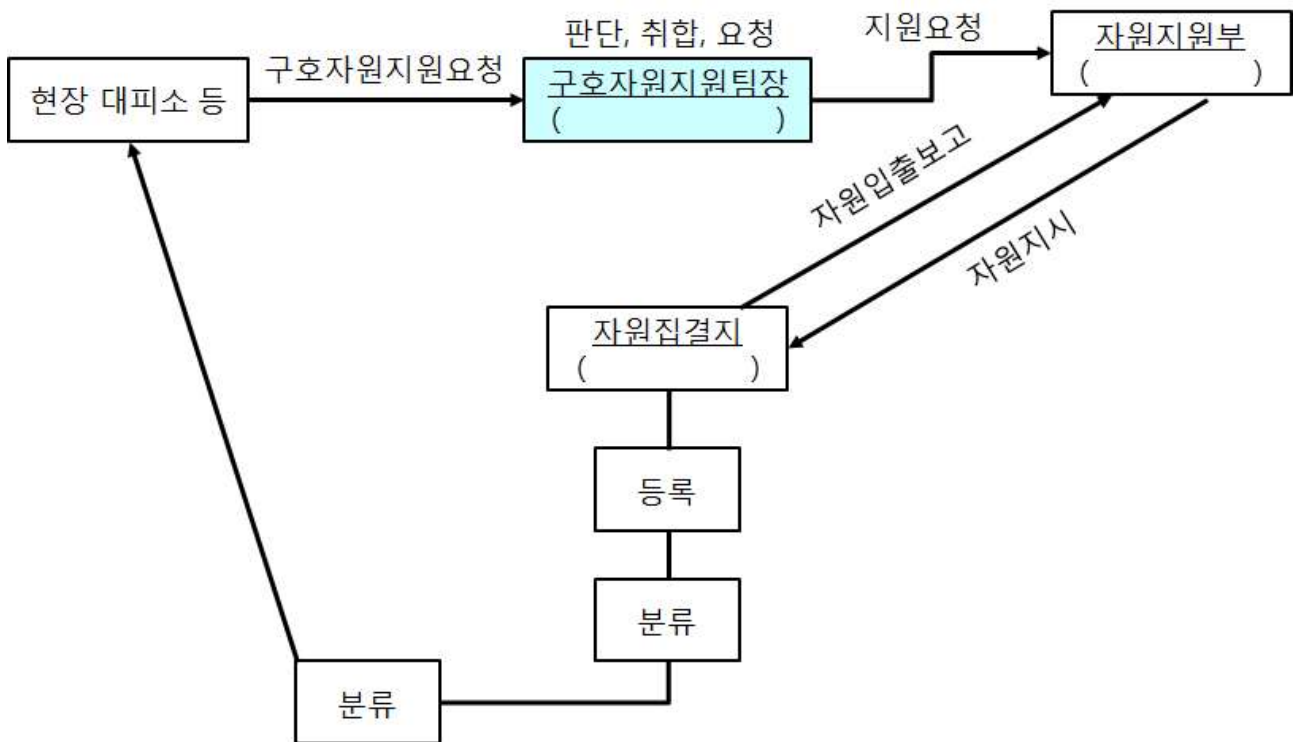
《긴급대피소의 운영》

- 긴급대피소는 일반적으로 수용능력, 의식주 확보 용이성, 구호수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지정된다.
- 긴급대피소 운영계획에는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수송협회 등이 참가한다.(자원동원매뉴얼 긴급구호 참조)
- 대피수용팀에서 필요자원을 신청하면 구호자원지원팀은 긴급 의식주 수단을 제공한다.
- 사전 지정된 대응구역별 긴급대피소는 다음과 같다.

대응구역 명	위 치
제1 ~ 10 대응구역	대응구역내 학교 및 관공서

4.2.2 구호자원집결지 운영

- 자원지원팀은 의식주 물품, 기타 구호품 수집과 구호인력의 총체적 조정통제를 위하여 구호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한다.
- 구호자원집결지는 구호참고 및 긴급대피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운영 된다.
- 추가 지정된 구호집결지는 연락공보담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된다.
- 긴급구호자원은 1차적으로 지정·공표된 구호자원집결지로 모이고, 집결된 구호자원은 현장의 구호지원요청에 따라 인근 구호대기지역으로 수송, 배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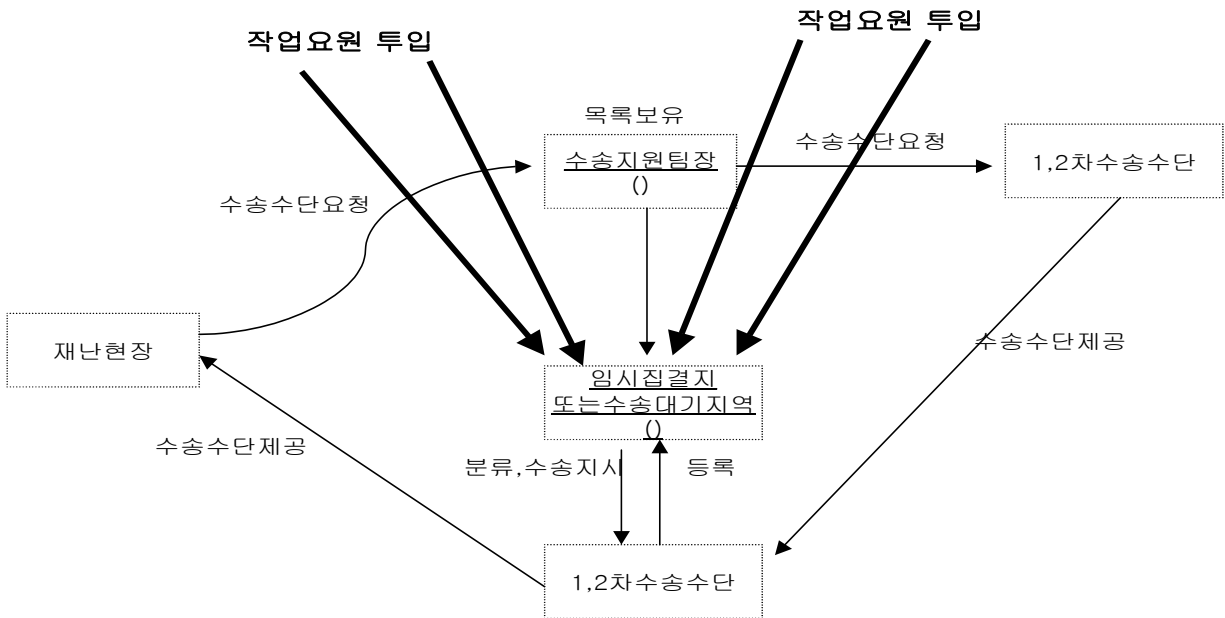


《 구호자원의 집결 》

가. 긴급구조요원 운송수단

- 재난지역내의 긴급구조활동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 다수의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제공된다.
- 현장지휘대 현장통제반은 해당지역의 교통정체를 통제하고, 긴급구조요원들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지원한다.
- 집결지 수송대기지역 및 임시집결지로 지정된 장소(학교 등)에 자가용 차량을 주차해 두

- 고, 학교 버스 등 수송지원팀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재난지역으로 이동한다.
- 트럭 및 버스운송협회 등 수송지원기관단체는 긴급구조요원의 현장수송에 우선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 재난으로 인한 건물붕괴, 잔해물 등 교통진입 장애요인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교통로 확보는 긴급시설복구반의 책임이다.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은 긴급시설복구반장에 진입로 임시복구를 요청한다.
 - 병원, 발전소 등의 비상요원 수송과 대체 119종합상황실로의 물자수송을 위하여 특별한 긴급운송수단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 폭설, 홍수, 위험물재난 등 특수한 재난상황에 따라 특별한 수송수단이 필요한 경우 자원동원매뉴얼 수송분야를 참고한다.



《 긴급구조요원의 비상 수송 》

나. 병원간 비상 환자이송

- 각 병원, 산후조리원, 정신병원, 또는 거동불편자 수용시설은 대피계획을 포함한 내부 긴급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점검하여야 한다.
- 재난으로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경우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는 수용된 환자를 안전한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하여야 한다.
- 대량환자 이송에 따른 구급차 확보는 응급의료소 의료지원지원반(구급차대기소)과 협의 조정한다
- 지역 내 구급차 현황은 자원동원매뉴얼 구급분야를 참고한다.

제 11절 재난통신 계획(#11)

1. 목 적

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통제단간 통신계획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통신지원팀장은 모든 통신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자치단체장, 각 긴급구조지원기관, 상급 긴급구조통제단간의 적절한 정보통신(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을 가동하고 각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신자원을 제공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이 계획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 및 운영요원을 편성하고 통제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책임기관	지원기관
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상황실)	(주)KT 산청지사 육군 8962부대 3대대 함양경찰서

- 운영요원

통신지원팀 직책	책임자	부재시 대행자(교대조)
통신지원팀장	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서무담당자	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조사담당자
메시지 조정담당		
기록담당		
메신저		
교환원		
교환원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통신체계를 점검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재난통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재난통신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재난통신시스템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통신지원팀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소집 절차 이행
 - 통신요원이 숙련되기까지의 교육훈련
 -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 규정
 -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4.1 119종합상황실 통신시스템

- 긴급구조통제단과 상황실과의 통신은 가능한 유선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무선통신수단을 보유한 기관(부서)들은 무선장비가 사용 가능한 경우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 119상황실은 긴급구조지원기관(비상대책상황실)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한다.
-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는 각 유관기관 통신연락관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간 협조를 위한 중앙통신조정센터이다.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 통신지원팀장은 추가적인 회선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전화회사와 통신 및 접촉을 시도한다.
- 회선 수는 수요량에 따라 설치된다.

- HAM 기지국을 119상황실 또는 통신수요 장소에 이동 배치하여 보조적 통신능력을 제공한다.

4.3 대체 119종합상황실 통신

- 대체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수단은 유무선 통신장비와 주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예비 무선통신시스템을 활용한다.
- 대체 상황실의 가동은 해당 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가동한다.

4.4 현장지휘소 통신

- 통제단이 설치되면, 현장요원과 상급 통제단, 다른 관할구역 긴급구조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현장요원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 통신 시스템을 통해, 현장 응답 요원에게 지령이 발송된다.
- 통신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장(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신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차량을 배치운영 한다.
- 119종합상황실이 작동한다면,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을 조정할 통신운영자를 지정한다.
- 보조 통신수단에는 VHF 혹은 UHF 무전기를 포함한다.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 대중정보센터는 뉴스보도가 나가고 만들어지는 곳에 설치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 설치될 경우 대중정보센터는 현장에 설치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와 119종합상황실간의 통신을 구축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전용 전화선(또는 휴대전화)을 설치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조정통제 한다.

4.6 대피소와의 통신

- 대피시설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가 일차적인 통신수단이 된다.
- 전화선이 끊어지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 HAM이 대피장소에 급파되어 119종합상황실과의 통신연결을 구축한다.

4.7 통신 유지관리

-
- 24시간 운영시 통신 유지 관리는 (소속기관단체 직책)에 의해 제공된다.
 - 재난시 전화서비스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예)
 - 긴급구조, 긴급복구, 긴급구호,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민간 통신서비스

4.8 119종합상황실 메시지 흐름

-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는 메시지 기록양식에 기록된다.
- 메시지 양식은 기록요원에게 배포된다.
- 통신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지원팀에 다음요원이 배치된다.
 - 메시지 조정담당 : 통신의 우선순위와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을 최우선적으로 통신하도록 기록요원을 조정한다.
 - 기록요원 : 개별적 형태의 통신과 요약된 정보의 데이터통신 모두를 기록한다.
 - 메신저 : 긴급상황 수보자의 메시지를 통신지원팀장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기타 세부적인 메시지 흐름은 119종합상황실 표준운영절차(SOP)를 참고한다.

4.9 지원 및 후생업무

- 통신지원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보조요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고 그들의 식사 및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물품들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 앞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계획에 적용한 예시이며,
- ❖ 실제 대응 매뉴얼은 재난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또한,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제3장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1.1. 홍수(집중호우)

1.1.1 홍수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계절성 집중호우 증가추세 - 기상예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특정지역의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광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 집중호우지역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인접 시·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중심의 자원 및 활동이 요구됨 - 계곡·하천 등 관광야영지의 등산객, 낚시꾼, 행락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사전 대피유도활동 필요 - 고립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강풍지역 낙하물 제거, 기타 안전조치활동 전개 - 수난구조시 물의 흐름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필요장비 활용 등 사전안전조치 절대 필요

1.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기상청의 집중호우예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함양군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수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수난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자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군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홍수 또는 침수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군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트, 소방정 등 수난구조용 장비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등 - 구급 및 의료약품/소모품 등

라. 현장지휘대

- 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함양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 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 파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긴급복구반에서는 홍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비상제방 설치 및 펌프 작동준비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 피해 시 우회도로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대형 홍수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구조진압활동 기본방침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 침수피해 확대방지 활동실시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침수지 및 산사태 드응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안전피난 확보
 - 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당해 지역으로부터 피난이 완료될 때까지 피난로 확보 및 침수·토사붕괴 방지 활동에 주력한다.
 - 소방대 운용 : 풍수해 발생 시의 수난구조 및 고립자 구조 등에 대응할 소방대를 운용한다.
 - 소방대 등의 운용원칙
 - 목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격한 위치에 목격자나 관계자와 동행하여 구체적인 수몰위치를 확인하고 도면화하여 관계자에게 확인시켜 정확성을 확보한다.
 -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부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 인명구조, 구급활동 원칙
 - 구명활동 우선원칙
 - 중증환자 우선 원칙
 - 어린이·노약자 우선 원칙
 - 침수위험구역 및 토사붕괴위험구역 인근에 있는 자 우선원칙
 - 구조, 구급 효율 증시 원칙
 - 구조대 운용
 - 구조사태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부근 수역의 활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조 활동 대상구역을 설정한다. 활동환경은 야간, 시계수심, 수온, 유속, 기상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수몰이나 떠내려가 요구조자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의 수심, 유속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색범위(수심의 1배에서 3배의 하류측 구역)를 결정한다.
 - 현장의 물리적 요소 및 자연적 요소, 소방부대의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

- 여 잠수 및 잠수이의 활동을 할 것인지 수중보트를 활용한 구조 활동을 실시할지 결정한다. 수난구조 대장은 잠수 여부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현장지휘대장에게 조언한다.
- 각 부대의 임무분담(육상, 수상, 잠수 등)을 명확히 지정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한다.
 - 지휘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가 곤란해 졌을 때에는 활동방침을 변경하거나 수정한다.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등 효율적인 긴급 구조 활동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소방대 편성의 기본사항
 - 수난구조대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배수지원팀, 안전조치팀 등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초기 대응시 항공대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소방헬기를 운용할 경우 현장에 있는 각 부대마다 긴급 이착륙장을 지정하여 신속한 연대체제를 확보한다.
 - 재난특성에 의한 유발재난 방지대책 운용
 - 침수에 따른 전기 감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 방치된 벌채입목, 공사용자재, 고수부지 차량 등 유수소통 지장물로 인한 교량, 암거, 보 등 하천내 방재시설물의 피해방지대책 등
 - 자원집결지 운영 및 확보
 - 수방장비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뚝, 덧개류(비닐), 배수관(흡관, PE관), 작업공구 등
 - 오염통제 장비 : 도자, 백호우, 페이로다, 덤프트럭,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방지용 장비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자원지원부장은 응원소방기관의 위치, 재난상황 등에 따라 집결지를 선정하여 현장지휘대장에게 통보한다.

동 원 기 관	동 원 장 비
소방, 경찰, 군, 의료기관, 유·도선업체, 잠수요원	인명구조용 헬기, 구급차, 구조공작차, 모터보트 등 잠수장비

- 지원기관과의 연대
 - 경찰·군부대 : 구조활동 등인 경우 현장지휘소에서 각각의 기관의 지휘자 간 활동구역, 임무분담 등의 조정을 실시한다.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table border="1"> <tr> <td>의사</td> <td>간호사</td> <td>약사</td> <td>구급대원</td> </tr> <tr> <td>2명</td> <td>5명</td> <td>1명</td> <td>2명</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p>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p>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p> <p>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행방불명자 탐색 및 구출 : 통제단장은 풍수해 발생 시 피해상황으로부터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탐색 및 구출에 경찰, 군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 치안대책 : 경찰은 풍수해 발생 시 경계체제를 신속히 확립하여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응급대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질서 유지, 각종 범죄 예방, 검거,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지역에서의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구조·구급·구호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긴급 오염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긴급오염통제 업무 실시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응급의료소장과 협의로 환자의 격리
- 지역내 방역의 실시
- 청결, 오염방지관련 교육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홍수 피해지역의 물, 전기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비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 기본대응활동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 도로의 운행기능 확보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 하천장애물 제거 : 하천·수로의 월수 방지, 호안 등의 결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수로의 유지관리자가 장애물을 제거한다. 단, 인명구조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경찰·소방 등에서 장애물을 제거한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는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응급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거한 장애물은 가까운 공지로 이동시킨다.
- 헬리콥터 이착륙장 확보 : 고립지역의 경우, 헬리콥터를 통해 통제단과의 긴급연락, 인력운송과 긴급환자 이송, 긴급물자 운송을 하기 위해 각 지역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공공기관 헬리포트를 헬기활동의 주요 기지로 하고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응원항공기의 집결기지로 한다.
 - 긴급환자의 이송이나 긴급물자의 이송을 하기 위한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응급복구 시 필요자원 확보

- 인력확보 : 자원지원부장은 응급복구에 노동력 필요 시, 통제단장을 통해 전문인력인 경우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 운송차량 등의 확보
 - o 운송수단이 부족할 경우 용도, 차종, 대수, 사용기간, 인수장소, 일시 등을 파악하여 자원지원부장을 통해 통제단장에게 긴급운송차량의 조달을 요청한다.
 - o 통제단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긴급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운송차량 등을 조달한다.
 - 연료확보 :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공사, 석유사업협동조합, 지정항공연료사업자 등에게 공급협력을 요청한다.
- ※ 긴급 운송대상

구분	긴급은행차량에 의한 운송대상
제1단계	1. 구조·의료활동 종사자 및 의약품 등의 물자 2. 소방, 수방활동 등 재난의 확대방지를 위한 인원 및 물자 3. 중앙정부 재난대책요원, 지자체 요원, 정보통신, 전력, 가스, 수도 시설관련자 등 초동의 긴급대응계획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 4.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부상자 등 5. 긴급운송에 필요한 도로운송시설, 운송거점의 응급복구, 교통규제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
제2단계	1. 식료품, 물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 2. 부상자 및 이재민의 피해지역 밖으로의 운송 3. 운송시설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제3단계	1.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2. 생활필수품

- o 토목시설 응급대응 : 침수, 수몰,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도로, 교량, 하천, 등의 도시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출구조, 물자운송 등의 긴급대응계획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도로 : 긴급운송로 기능회복,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o 피해상황 파악 : 긴급복구 조사를 실시하여 응급복구가 필요한 개소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해 통제단에 보고한다.

- 긴급복구계획 수립 : 도로관리교통공단 등의 지구대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정리, 검토한 후 긴급복구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한다.
- 긴급복구 실시 : 통제단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한다.
- 하천시설 응급대응 : 호안의 복구공사는 하천단면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하도 퇴적물 제거 및 임시 흙막이 등의 복구공사를 실시한다.
- 하수도 시설 응급대응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별 복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휘소에서는 시설관리책임자가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1.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설)량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대응1단계	○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지휘소 설치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대응2단계	<p>○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재난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재난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대응3단계	<p>○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

1.1.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결정

- 119종합상황실은 호우주의보 발령시부터 기상청과 HOT LINE 유지, 실시간 기상정보 입수(비상경고준비)
- 호우주의보 발령 시 남강 홍수통제소 연락관의 보고를 통해 부분 가동 결정 (호우주의보 :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발령 시 남강 홍수통제소 연락관 보고 즉시 가동 결정 (호우경보 :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
- 비상방송시스템 24시간 적극 활용
-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 및 사후승인을 받는다.

1.2 태풍

1.2.1 태풍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예측 이상의 강력한 태풍피해 발생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하천 범람,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 만곡부 제방유실, 산지하천으로부터의 유목과 토석류, 지방하천 제방의 유실 및 붕괴, 해일 피해 등 복합적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함.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 산간계곡부의 산사태로 인한 유목 및 제방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및 도로유실 피해 등 복합적 피해 발생
광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 발생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 많아 대응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접 시·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피해 : 농경지, 도시, 라이프라인 시설 - 해안시설 : 해일로 인한 선박의 파손·유실,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 주요공공시설 : 도로의 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 제방붕괴, 항만시설 파손, 어항파손, 상하수도시설 피해, 대규모 정전발생 - △△지역의 도시하천 연안지역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1.2.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기상청의 태풍주의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함양군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풍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태풍진로 예측 상황 전파 및 위험지역 선정 우선대처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배치상황 보고 : 대응계획부장 및 자원지원부장은 직원의 배치상황을 신속하게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특히 직원의 동원발령 시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현장지휘소장은 대기인원을 현장지휘대장에게 보고한다.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풍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침수, 유실 등으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특수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침수, 제방붕괴, 산사태, 도로유실, 토석류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자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구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피해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풍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함양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과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토석류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풍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토석류 및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

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table border="1"> <tr> <td>의사</td> <td>간호사</td> <td>약사</td> <td>구급대원</td> </tr> <tr> <td>2명</td> <td>5명</td> <td>1명</td> <td>2명</td> </tr> </table> <p>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p>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p>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p> <p>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장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행방불명자 탐색 및 구출 : 통제단장은 풍수해 발생 시 피해상황으로부터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탐색 및 구출에 경찰, 군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 치안대책 : 경찰은 풍수해 발생 시 경계체제를 신속히 확립하여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응급대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질서 유지, 각종 범죄 예방, 검거,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지역에서의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토석류 및 유목, 쓰레기 등으로 인해 하천이 막히거나 범람할 우려가 있는 구역 우선 실시
 - 배수기능에 장애를 받는 지역 우선 실시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및 해일로 인한 연안지역 유출류 제거 작업 등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선박 파손 등에 의한 유출기름 방제조치 실시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기본대응활동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 도로의 운행기능 확보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 하천장애물 제거 : 하천·수로의 월수 방지, 호안 등의 결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수로의 유지관리자가 장애물을 제거한다. 단, 인명구조 등

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경찰·소방 등에서 장애물을 제거한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는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응급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거한 장애물은 가까운 공지로 이동시킨다.

- 헬리콥터 이착륙장 확보 : 고립지역의 경우, 헬리콥터를 통해 통제단과의 긴급연락, 인력운송과 긴급환자 이송, 긴급물자 운송을 하기 위해 각 지역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공공기관 헬리포트를 헬기활동의 주요 기지로 하고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응원항공기의 집결기지로 한다.
 - 긴급환자의 이송이나 긴급물자의 이송을 하기 위한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응급복구 시 필요자원 확보
 - 인력확보 : 자원지원부장은 응급복구에 노동력 필요 시, 통제단장을 통해 전문인력인 경우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 운송차량 등의 확보
 - 운송수단이 부족할 경우 용도, 차종, 대수, 사용기간, 인수장소, 일시 등을 파악하여 자원지원부장을 통해 통제단장에게 긴급운송차량의 조달을 요청한다.
 - 통제단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긴급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운송차량 등을 조달한다.
 - 연료확보 :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공사, 석유사업협동조합, 지정항공연료사업자 등에게 공급협력을 요청한다.
- ※ 긴급 운송대상

구분	긴급은행차량에 의한 운송대상
제1단계	1. 구조·의료활동 종사자 및 의약품 등의 물자 2. 소방, 수방활동 등 재난의 확대방지를 위한 인원 및 물자 3. 중앙정부 재난대책요원, 지자체 요원, 정보통신, 전력, 가스, 수도 시설관련자 등 초동의 긴급대응계획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 4.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부상자 등 5. 긴급운송에 필요한 도로운송시설, 운송거점의 응급복구, 교통규제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
제2단계	1. 식료품, 물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 2. 부상자 및 이재민의 피해지역 밖으로의 운송 3. 운송시설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제3단계	1.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2. 생활필수품

- 토목시설 응급대응 : 침수, 수몰,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도로, 교량, 하천, 등의 도시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출구조, 물자운송 등의 긴급대응계획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도로 : 긴급운송로 기능회복,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피해상황 파악 : 긴급복구 조사를 실시하여 응급복구가 필요한 개소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해 통제단에 보고한다.
 - 긴급복구계획 수립 : 도로관리교통공단 등의 지구대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정리, 검토한 후 긴급복구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한다.
 - 긴급복구 실시 : 통제단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한다.
 - 하천시설 응급대응 : 호안의 복구공사는 하천단면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하도 퇴적물 제거 및 임시 흙막이 등의 복구공사를 실시한다.
 - 하수도 시설 응급대응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별 복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휘소에서는 시설관리책임자가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 태풍 시에는 강풍으로 인하여 전신주 도괴, 통신 기지국 파손사고, 교량 및 도로 유실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유관기관과 협의 후 신속히 복구태세를 확립한다.
- 특히, 통신망 확보를 위한 임시 중계국 설치 등의 활동에 주력한다.

1.2.3 대응단계별 활동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량, 풍속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산사태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p>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 주민대피 실시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도시하천연안지역 침수피해 주민대피 및 기간시설 피해축소활동
대응3단계	<p>○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분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2.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결정

- 태풍주의보 발령 시 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경고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영한다.(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 등이 함께 발령된 경우 협의과정 없이 비상경고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영한다.
- 태풍경보 발령 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비상경고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운영한다.(태풍경보: 강풍경보 풍속이 21m/s이상 또는 순간 풍속26m/s이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이상 예상 될 때,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이 예상될 때, 총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 기상특보(태풍경보 및 홍수경·주의보 동시발령 등)이 발령된 상황 하에서는 즉시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1.3 폭설

1.3.1 폭설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설빈도는 감소했으나 강설량 및 시간당 강설량의 증가로 지역적 고립, 교통장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정도도 심각 - 비닐하우스 등 적설압력에 약한 구조물의 붕괴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 긴급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조난자에 대한 구조활동은 산악의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 폭설 지역 요구조사 이송, 통신장애 등 많은 구조활동 곤란성 내재 - 고립지역에서의 응급환자발생 또는 사고발생시 현장접근 및 환자 이송로 미비로 긴급대응 곤란 - 고립 장기화에 대비한 긴급구호활동 필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재난은 산악지역 조난, 교통두절에 의한 고립, 적설압력에 의한 건물·구조물의 붕괴로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눈사태 또는 신체 한랭손상 등에 의한 등산객의 조난사고 - 도로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의한 차량정체, 지역적 고립, 빙판길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

가. 총괄지휘부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예상피해발생 구역분석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언론매체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설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폭설예보 발령시 주요 지역 사전 대피 또는 안전조치 비상경고활동
 - 조난예상 산악지역 등산객 입산통제 또는 하산귀가 조치
 - 교통장애 예상지역 차량진입 통제 및 우회도로 이용유도
- 고립지역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긴급복구부의 활동조정
 - 대한적십자사 등의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 및 배치
 - 산악지역 조난사고에 대한 군,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인력 동원(산악지역 기상조건에서 활동가능토록 관련 장비확충한 자원에 한함)
 - 고립지역 긴급구조, 구급이송 및 구호활동 접근을 위한 헬기, 긴급제설장비 등 필요장비 보유기관과의 동원사항 협의조정
- 유관기관 중점 조치사항
 - 군부대 : 헬기, 병력, 장비지원
 - 국립공원 관리공단 : 입산통제, 헬기 지원체제 구축, 등산객, 조난자를 위한 비상식량 확보(대피소)
 - 함양군 : 비닐하우스 등 피해경감대책 실시, 축사 등에 대한 점검조치 등
 - 함양군, 도로공사 : 긴급구조통제단과 유기적 지원·협조, 도구간에 대한 책임 제설
 - 함양경찰서 : 기상상황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 파악
 - 설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

- 체 수단을 강구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협의 예측 (고립, 붕괴, 눈사태, 대규모 교통사고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폭설지역 기상정보 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수립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 지금까지의 적설량, 앞으로의 적설예상량, 기온 및 바람의 변화사항 등 폭설지역 기상정보 정기적 수집
 - 기상정보, 대원안전을 고려한 현장대응활동계획 수립
 - 상황분석·관리
 - 상황원인조사
 - 재난정보 수집, 보고 및 기록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고립사고 구조 및 붕괴사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관련 장비 및 인원 지원활동
 - 한국도로공사,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제설차, 덤프트럭,

-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 용),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산악구조용 장비, 붕괴사고 구조용 장비, 헬기 등 고립지역 구조를 위한 장비 확보
 - 인접한 시·도, 경찰, 군 등이 보유한 헬기
 - 산악지역 긴급활동에 필요한 통신망 확충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 모색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긴급수송활동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라. 현장지휘대

- 설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 조직화
 - 실종자, 고립자 탐색/구조팀
 - 특수구조팀 중심 현장대응활동 전개
 - 소방, 경찰 인명구조견 조기 투입 공동대응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설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회도로를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설해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산악지역 조난자 구조활동
 - 군, 경찰등 대규모의 탐색구조팀 편성 운영
 - 조난지점, 조난상황 등 관련정보 최대한 활용
 - 현장활동대원의 동상방지조치 등 안전확보 최우선 고려
- 고립지역 구조구급 등 긴급대응활동
 - 교통장애지역, 고립지역에서 화재, 긴급환자 기타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접근
 - 헬기 등 대체교통수단 최대한 활용(강풍 등 기상악화사항 고려)
 -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긴급제설작업 실시(도로관리부서 긴급요청)
- 구조진압활동 기본방침
 -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활동
 - 대형교통사고 방지 : 교통두절예상 도로의 우회도로 지정 및 응급조치 실시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한다.
 - 붕괴사고 방지 : 비닐하우스, 가옥 등의 붕괴예상개소에 대한 홍보활동 및 붕괴로 인한 매몰자 구조·탐색
 - 조난사고 : 폭설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 및 통제소 설치운영, 헬기 등을 활용한 신속구조
 - 산악·고립지역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헬기동원체제 수립
1차 소방헬기 활용, 2차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 비상대기, 3차 경찰청 및 군용헬기 지원체제 구축
 -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

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안전피난 확보
 -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에는 즉시 표지판 설치
- 소방대 편성의 기본사항
 - 산악구조대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의료지원팀, 안전조치팀 등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초기 대응시 항공대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소방헬기를 운용할 경우 현장에 있는 각 부대마다 긴급 이착륙장을 지정하여 신속한 연대체제를 확보한다.(눈사태의 우려가 없는 지역 선정)
-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산악구조대와 연대하여 구조한다.
 - 요구조자의 위치, 상태 및 현장 주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헬기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 헬기구조원을 하강할 때에는 주변지역이 암반인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강하도록 한다.
 - 헬기의 풍압에 의해 인공낙석 및 눈사태 등 2차 재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저공비행은 피하도록 한다.
 - 요구조자의 부상상황을 고려하여 들것 등을 사용해 호이스트로 기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하강한 헬기구조원은 헬기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한다.
 - 지휘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가 곤란해 졌을 때에는 활동방침을 변경하거나 수정한다.
- 응원요청 : 자원지원부장은 현장의 재난추이상황을 통해 판단하여 타 시도의 소방기관으로부터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통제단장을 경유해 응원요청을 실시한다.
- 자원확보
 - 제설자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 제설장비 :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지원기관과의 연대
 - 항공대의 활동

항공대의 비행기준	항공대 활동내용
1. 폭설 피해가 발생하여 고립된 지역이 있는 경우 2. 폭설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체제가 발령된 경우	1. 재난상황, 도로, 교통상황 등의 정보수집, 전달 2. 재난기록 및 영상송출 3. 인명구조활동 4. 피난유도 및 피난명령 전달 5. 고립자 구출 6. 고립지역 구호물자 공급 7. 지상활동대에 정보, 명령 전달 8. 부상자 이송 9. 구조, 구급용 장비 운송 10. 소방대원 및 장비 이송 11. 홍보활동

- 경찰·군부대 : 구조활동 등인 경우 현장지휘소에서 각각의 기관의 지휘자 간 활동구역, 임무분담 등의 조정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소방의 지휘에 따라 활동한다.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

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 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2명	5명	1명	2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

- 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행방불명자 탐색 및 구출 : 통제단장은 풍수해 발생 시 피해상황으로부터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탐색 및 구출에 경찰, 군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 치안대책 : 경찰은 풍수해 발생 시 경계체제를 신속히 확립하여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응급대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질서 유지, 각종 범죄 예방, 검거,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지역에서의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고립예상지역인 지리산 국립공원, 산간마을 등에 대한 진입통제조치를 취한다.
- 고립예상지역의 주민이 대피 완료한 경우 상시순찰을 통해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긴급복구부

-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활동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폭설에 의해 파괴된 비닐하우스 등 각종시설물 긴급복구활동 적극 지원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 진입로 복구
- 고립지역 긴급구호활동의 실시
 - 단수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물, 전기, 연료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응급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 산간지역 주민 또는 고속도로상 고립주민에 대한 식료품, 의료품, 연료 등 생활필수품 긴급지원활동
 - 긴급제설지원활동과 연계하여 헬기 최대한 활용
- 긴급복구 대상시설

긴급복구 대상시설		피해내용
라이프라인 공급장애	라이프라인 시설	○ 라이프라인 시설이 각 개소에서 피해를 입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 불가능
	수도	○ 동파로 인한 단수
	하수도	○ 배수기능 및 처리기능에 지장이 발생함
	전기·전화	○ 2차재난에 의한 교환기고장, 장기간 정전 등
도로 및 산사태위험지역		○ 도로결빙·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구역 발생 ○ 낙석, 눈사태 발생 ○ 조난사고, 고립지역 발생
농경시설 등		○ 비닐하우스 등 붕괴 ○ 수산양식장 등 기온하강으로 인한 피해 ○ 경작지 피해

- 기본대응활동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 파악
 -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 도로의 운행기능 확보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 하천장애물 제거 : 하천·수로의 월수 방지, 호안 등의 결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수로의 유지관리자가 장애물을 제거한다. 단, 인명구조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경찰·소방 등에서 장애물을 제거한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는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응급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거한 장애물은 가까운 공지로 이동시킨다.
 - 헬리콥터 이착륙장 확보 : 고립지역의 경우, 헬리콥터를 통해 통제단과의 긴급연락, 인력운송과 긴급환자 이송, 긴급물자 운송을 하기 위해 각 지역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공공기관 헬리포트를 헬기활동의 주요 기지로 하고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응원항공기의 집결기지로 한다.
 - 긴급환자의 이송이나 긴급물자의 이송을 하기 위한 이착륙장을 확보한다.
 - 응급복구 시 필요자원 확보
 - 인력확보 : 자원지원부장은 응급복구에 노동력 필요 시, 통제단장을 통해 전문인력인 경우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 운송차량 등의 확보
 - 운송수단이 부족할 경우 용도, 차종, 대수, 사용기간, 인수장소, 일시 등을 파악하여 자원지원부장을 통해 통제단장에게 긴급운송차량의 조달을 요청한다.
 - 통제단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긴급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운송차량 등을 조달한다.
 - 연료확보 :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공사, 석유사업협동조합, 지정항공연료사업자 등에게 공급협력을 요청한다.
- ※ 긴급 운송대상

구분	긴급은행차량에 의한 운송대상
제1단계	1. 구조·의료활동 종사자 및 의약품 등의 물자 2. 소방, 수방활동 등 재난의 확대방지를 위한 인원 및 물자 3. 중앙정부 재난대책요원, 지자체 요원, 정보통신, 전력, 가스, 수도 시설관련자 등 초동의 긴급대응계획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 4.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부상자 등 5. 긴급운송에 필요한 도로운송시설, 운송거점의 응급복구, 교통규제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
제2단계	1. 식료품, 물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 2. 부상자 및 이재민의 피해지역 밖으로의 운송 3. 운송시설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제3단계	1.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2. 생활필수품

- 토목시설 응급대응 : 침수, 수몰,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도로, 교량, 하천, 등의 도시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출구조, 물자운송 등의 긴급대응계획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도로 : 긴급운송로 기능회복,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 피해상황 파악 : 긴급복구 조사를 실시하여 응급복구가 필요한 개소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해 통제단에 보고한다.
 - 긴급복구계획 수립 : 도로관리교통공단 등의 지구대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정리, 검토한 후 긴급복구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한다.
 - 긴급복구 실시 : 통제단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한다.
 - 하천시설 응급대응 : 호안의 복구공사는 하천단면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하도 퇴적물 제거 및 임시 흙막이 등의 복구공사를 실시한다.
 - 하수도 시설 응급대응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별 복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휘소에서는 시설관리책임자가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통학로, 출근교통로 등의 확보를 위해 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한 복구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3.3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대설주의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신(新)적설 :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폭설정보의 수집 및 분석(적설량, 기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대설경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고,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고립자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폭설지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폭설피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설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고립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고립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운영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폭설피해 발생 또는 대응2단계 수준의 폭설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도차원의 자원으로 대응이 불가능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3.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결정

- 폭설주의보 발령 시(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유관기관과 협의 후 비상경고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 폭설경보 발령 시(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즉시 전면적으로 비상경고시스템을 운영한다.
- 강설시 교통방송(TBS)은 타 방송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방송한다.

1.4. 지진

1.4.1 지진발생 및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은 다양한 피해형태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붕괴, 매몰, 추락 - 화재, 폭발 - 해일, 침수 - 화학물질 누출, 원자력 사고 - 기타 전기가스 사고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을 위한 장기간의 대응활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사전계획 필요 - 추가자원의 지원과 효율적 분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 -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복구와 희생자의 구호대책 고려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대응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대응활동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 매몰에 따른 탐색/구조활동 - 화재진압 및 폭발에 따른 화재진압활동 - 해일, 침수피해에 따른 수난구조 - 화학물질누출, 방사능 누출에 화학물질처리활동 ○ 다양한 자원을 효율의 조직화로 적합한 전략과 전술 적용 필요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현장의 광역화로 대응자원 부족과 대응활동 제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파괴로 소방용수의 부족, 출동로의 제한, 통신장애 발생 - 의료시설, 대피시설의 파괴로 긴급구조활동 장애 ○ 재난상황 유동성에 따른 예상하지 않은 대응활동 장애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의 제한성을 예상하여 충분한 보완대책 수립 - 수립된 대응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실행하는 등의 신축적인 태도 필요

1.4.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지진피해예측 및 분석결과에 의한 대응활동 우선순위의 결정에 주안점을 둔다.
- 지진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지진재난 발생 후 유연비어 등이 유포되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지진 상황의 대중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지진, 진원에 관한 관측 정보
 - 여진(After-shock) 등 지진 발생에 관한 이후의 전망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지진발생시 전기, 가스, 석유 및 관련제품 안전사용의 홍보
 - 화재,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대응
 - 여진대책에 관한 정보
- 지진발생 시 배치체제 : 통제단장은 MM 8등급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직원 대비령」을 발령한다. 그리고 진도 MM 7등급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체제를 확보한다.
- 직원 동원 : 통제단장은 근무시간 외에 긴급구조통제단 체제가 발령된 경우 직원 동원 명령을 내린다. 동원대상직원은 MM 9등급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동원명령을 득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정해진 동원처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 직원소집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확보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 자택 및 이웃의 안전을 확인한다.
 - 복장 및 휴대품: 대응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장갑, 타올, 갈아입을 옷,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 등의 물품을 휴대한다.
 - 소집도중 긴급조치: 소집도중 화재, 인사사고 등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소

방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통보연락하고 바로 인명구조, 소화활동에 착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피해상황 보고: 소집도중 피해상황, 재난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정보를 동원 처 상사에 보고한다. 특히 병원, 도로, 교량 등의 중요시설의 피해상황은 상세히 보고한다.

- 대응활동요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중점고려사항과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중점고려사항	주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인구밀도 ◦ 지정학적 중요성 ◦ 대응지역 및 시설물의 지정학적 중요성 ◦ 기반시설의 보호 ◦ 사회/경제적 손실 ◦ 복구단계에서의 이용가치 ◦ 자원지원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 위험의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활동 ◦ 대응활동효과 (대응활동노력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 2차재난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요원의 안전성 ◦ 시설물의 용도와 특징 ◦ 주거밀집도와 점유형태 ◦ 희생자의 수와 생존가능성 ◦ 화재하중과 연소의 가능성 ◦ 전기, 가스, 위험물질 누출 등의 위험요인 ◦ 대응활동의 난이도 ◦ 대응자원의 능력과 보유장비

나. 대응계획부

- 지진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응구역별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상황 (인명 및 건축물, 시설물, 라이프 라인 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폭발·연소, 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과 관련하여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 피해상황분석계획 가동

- 국토해양부와 연대하여 피해상황분석반을 신속히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경찰의 현장통제 기능의 지원을 받는다.
- 학계 전문가(건축물 안전진단, 토목 분야 등) 자문위원회를 구축한다.
- 2차재난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진단 후 피해·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다. 자원지원부

- 지진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으로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체계 확립에 노력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인력집결지의 개설과 동시에 각 지원기관 및 적십자사의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추가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분류 배치
- 지역 외부에서 지원을 온 외부자원이 대응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지진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수송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지진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긴급수송 선박의 확보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를 대비하여 예비 인력 및 자원을 확보한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건축사협회 및 기술사협회와 연계)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외국 구조대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지진대응 필수장비 및 물자의 확보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소방드론 포함) - 전기, 가스 등 안전진단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특수소화약제 (포, 분말소화약제) - 구급 및 의료약품/소모품 등

라. 현장지휘대

- 지진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를 조직화한다.
 - 붕괴건물 등의 매몰자 탐색/구조팀
 - 화재진압팀
 - 특수사고대응팀(열차전복, 댐파괴, 화학물질 누출 등 대응)
- 위험물시설의 긴급대응
 - 지진발생시 유류, 화약, 가스, 독극물, 방사선 등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의 누수·유출, 폭발 등은 재난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대응활동을 어렵게 함
 - 관할구역의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에 대한 긴급대응활동 실시
- 신속한 대피 및 철저한 현장통제활동
 - 지진발생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지진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구조진압활동 기본방침 : 지진 발생 시 소방에서 실시해야 할 긴급재난대응활동은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화활동 우선
 - 지진은 인명에 대한 다양한 위험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가장 피해를 증폭시키는 것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이다.
 - 지진 시 구조 진압 활동을 할 때에는 발생 초기단계에 예비차를 포함한

펌프차 및 구조차 등을 운용하고 의용소방대, 각 기업의 자율소방대 등과 연대하여 화재의 조기진압 및 확대방지를 도모한다.

- 인명구조, 구급활동

- 지진 시에는 화재 발생은 물론 가옥의 도괴, 장해물의 낙하, 옹벽붕괴, 자동차 등의 차량 충돌 및 위험물, 독극물의 누설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대, 구급대의 인원 및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실시한다.

- 안전피난 확보

- 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당해 지역으로부터 피난이 완료될 때까지 화재진압과 확대방지에 주력한다.

- 응원요청 : 자원지원부장은 현장의 재난추이상황을 통해 판단하여 타 시도의 소방기관으로부터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통제단장을 경유해 응원요청을 실시한다.

- 시·군 통제단장(소방본부장)의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은 다음의 요청기준에 근거하여 타 시도의 응원을 요청한다.

- 진도6(약) 이상 시
- 진도6(약)에 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요청소방력 : 요청할 소방대 등의 수는 화재, 구조 상황 등에 따라 자원지원부에서 판단한다.

- 자원집결지 결정 : 자원지원부장은 응원소방기관의 위치, 재난상황 등에 따라 집결지를 선정하여 현장지휘대장에게 통보한다.

○ 지원기관과의 연대

- 경찰·군부대 : 구조활동 등인 경우 현장지휘소에서 각각의 기관의 지휘자간 활동구역, 임무분담 등의 조정을 실시한다.

- 국토해양부 :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소방의 지휘에 따라 활동한다.

○ 소방본부의 조치사항

항목	소방본부의 조치사항	현장지휘소의 조치사항
활동 내용	1. 통제단 체제 발령 2. 출화방지조치 3. 소방본부 설치 4. 통제단 체제 확립 5. 우선전화 통제 6. 각종 경보, 정보 등 전달 7. 대기체제 확인 및 보고 8. 차량 등의 안전확보 9. 정보수집 및 보고 10. 부대운용 검토 11. 응원대 편성 12. 지령반, 정보수집반에 대한 응원 직원 파견 13. 통신시설 확보 14. 청사, 차량 등의 피해상황 확인	1. 현장지휘소 설치 2. 출화방지조치 3. 통제단 체제 확립 4. 차량 등 안전확보 5. 무선국 개국 6. 현장상황 확인 7. 방재관계기관에 정보전달 및 교환 8. 소방대 출동준비 9. 정보수집 및 보고 10. 전원확보 11. 활동중인 소방대와의 무선연락 12. 소방대의 출동경로 확인 13. 출동 불가능한 소방대 조치

○ 현장대응활동

- 초기의 정보수집 활동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1. 119통보(종합상황실)에 의한 정보 2. 재해감시 카메라의 정보 3. 헬리콥터 영상을 통한 정보 4. 각 현장지휘소로부터의 정보 5.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 6. 기상청의 정보 7.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	1. 현장 내 고소감시를 통한 정보 2. 출동대로부터의 정보 3. 지령반의 정보 4. 현장 활동중인 관계기관, 유관기관 활동원의 정보 5.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

- 소화활동의 원칙(지진 시 소화활동의 기본사항) : 지진 발생 후의 화재상황이 소방력을 하회할 경우 신속히 소방대를 집중시켜 한번에 진압하고 화재상황이 소방력을 상회할 경우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선택 방어를 통한 소화활동을 실시한다.

- 중요 방어 지구 우선원칙
- 소화 유효 지역 우선원칙

- 시가지 화재 우선원칙
- 중요 대상물 우선원칙
- 인명구조, 구급활동 원칙
 - 구명활동 우선원칙
 - 중증환자 우선 원칙
 - 어린이·노약자 우선 원칙
 - 화재현장 인근에 있는 자 우선원칙
 - 구조, 구급 효율 중시 원칙
 - 대량 인명 위험 대상물 우선원칙
- 수난구조대 : 수난구조대는 소방정을 활용하여 연안화재의 소화활동, 지상 활동대로의 송수 및 유출유에 대한 경계소방활동과 소방장비의 운송을 담당하고 운항 중 익수자를 발견한 경우 구조한다.
- 인원 및 장비 이송 : 재난의 상황에 따라 특정의 현장지휘소에 인원 및 장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차량, 소방정, 항공기 및 지원기관의 차량 등을 통해 인원 및 장비를 이송한다.
- 항공대의 활동 : 항공대의 재난활동은 다음과 같다.

항공대의 비행기준	항공대 활동내용
1. 진도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한 비행인 경우 진도4) 2. 지진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체제가 발령된 경우	1. 재난상황, 도로, 교통상황 등의 정보수집, 전달 2. 재난기록 및 영상송출 3. 인명구조활동 4. 공중소화활동 5. 피난유도 및 피난명령 전달 6. 지상활동대에 정보, 명령 전달 7. 부상자 이송 8. 구조, 구급용 장비 운송 9. 소방대원 및 장비 이송 10. 구호물자 등 운송 11. 홍보활동

- 의용소방대 활동 : 지진 발생 시에는 의용소방대의 전 기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양상에 따라 유효한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활동체제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의용소방단의 전력을 기울여 조속히 활동체제를 확립하고 사전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지진재해대책 의용소방대 본부 설치 : 긴급구조통제단 체제가 발령된 이후 현장지휘대 하에 지진재해대책 의용소방대 본부를 설치한다.
 - 각 지구별 의용소방대는 통제단의 현장지휘대장의 명령에 따라 현장지휘소로 배치를 받아 활동에 임한다.
- 의용소방대의 활동
 - 의용소방대원 동원에 관한 사항
 - 장비 확보, 조달에 관한 사항
 - 소화, 구조, 구급활동
 - 주민의 피난유도 활동
 - 지진해일 경계 활동
 - 관계기관과의 연락
- 활동 시 기본사항
 - 활동 구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의용소방대의 차량, 소화, 구조용 장비를 활용하여 활동을 실시한다.
 - 현장지휘소와 연대하여 활동을 실시한다.
 - 활동범위는 담당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조활동 실시. 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2명	5명	1명	2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지진으로 인해 도괴우려가 있는 가옥에 소지품 등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진입하는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 경비지원팀장은 피해현장의 재산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한다.
- 사체안치소의 안전 지원
 - 경비지원팀 또는 방법지원팀은 사체를 초기 수집지점으로 운반하여 검시자 지원
 - 사망자 신분과 소지품 식별 처리, 가족이나 친족에게 사망통지를 위해 지원하고 현장 안전과 임시사체안치소 안전 지원

마. 긴급복구부

- 지진피해에 의한 위험요소 및 중장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

한 긴급복구활동을 한다.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가스설비차단 및 안전진단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의 복구
- 파괴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진단팀을 운영한다.
- 주민과 대응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응작전의 수립과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전기, 가스, 화학, 건축, 원자력 등 유형별 전문가들을 통합지휘팀과 긴급복구부 구조안전 진단팀에 배치하여 재난지역과 건물 등에 대하여 임시 안전 점검 실시
- 대규모 피해로 인하여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통제를 실시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대응구역내 방역 실시
 - 청결, 오염방기관련 교육
-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비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1.4.3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주요 비상대응활동
대비단계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4 이상의 지진 경보·예보가 있는 경우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지진정보의 수집 및 분석(진원, 진앙, 규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p>○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진 발생지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각 지원기관 연락관 :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대응2단계	<p>○ 정의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p>
대응단계	<p>주요 비상대응활동</p>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지진피해 발생 •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시도자원으로 대응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 :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지진구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 중앙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4.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결정

- 지진의 경우, 대규모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경고를 실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 통제단의 발표는 정보의 경중에 따라 통제단장, 연락공보담당이 실시한다.
 - 정보제공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단장이 정하는 장소, 방법으로 실시한다.
 - 통제단에서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연락이 취해질 수 있도록 연락관을 지정한다.
- 지진재난 시 보도기관에 대한 대응 및 연대활동은 연락공보담당이 담당한다

2. 사회재난 기본계획

2.1 붕괴사고

2.1.1 붕괴사고 유형 및 특성

유형	내 용
캔틸레버형 (Cantil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충격에 의하여 한 쪽 벽판의 갑작스러운 탈락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할 수 있는 빈 공간은 각 층마다 골조나 튼튼한 가구류 부근에 형성
경사형 (Lean-to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벽이 무너지거나 한쪽 바닥판의 분리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판, 바닥판 또는 지붕의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내리고 반대쪽은 여전히 지탱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가능한 곳은 붕괴 결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
팬케이크형 (Pancake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이나 부실공사 등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바닥 슬래브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 겹겹이 쌓인 상태 • 내력벽이나 기둥이 모두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 가능한 빈 공간은 기둥부분, 대형시설물의 부근 등에 작게 형성
V형 붕괴 (V-shaped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판이 중앙부의 지지력 결함 또는 과부하로 인해 중앙부가 붕괴되어 발생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가능한 빈 공간은 V형태 잔해의 양쪽 아래 벽 부분

특성	내 용
활동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 장애로 인해 접근곤란 및 구조활동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벽체 등 붕괴잔해물을 제거하여만 접근가능 - 붕괴잔해물 제거시 생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점진적 작업실시 ○ 붕괴형태를 고려한 탐색구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에 압좌된 요구조자는 2차적 생명위협요소 고려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현장 안전확보 및 탐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대 및 자원지원부 조직 강화
주민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징후 발견 및 1차붕괴 접수 직후 붕괴위험 여부와 예상 위험지역 판단 ○ 각종 경보수단을 이용한 붕괴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 대한 통지 지시
대규모 자원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해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중장비 동원 ○ 대규모 인력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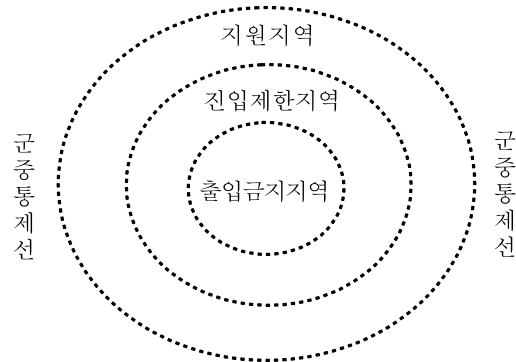
2.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체계·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협 요소, 불안정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화번호의 언론 홍보 확인
- 언론기관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언론매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지시
- 비상경고메시지 주요내용 : 사고현장 인근도로 폐쇄·우회·진입제한 등 관련 조치사항, 원활한 대응활동을 위한 구경꾼 통제 및 자원봉사 활동 요청, 주민에게 제공할 정보(주변건축물 위험구역 대피지역, 사고로 인한 단수, 단전 복

구상황)

- 전문가 활용 : 건축구조 또는 기계전문 엔지니어, 화학, 위험물질 전문가 등
- 매몰자 수색팀 및 지원팀 지정 : 특수장비 사용 시 작업환경 확보 및 주변 소음 차단, 실내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방재센터 내에 설치
- 부서 위치 결정 및 통제선 설치



[그림] 통제지역 설정

- 현장지휘소 설치
 - 옥외 설치 시 유의사항
 - (방재센터 근무 직원과의 연락 및 정보과약, 지원 위해 연락관 배치)
 - 일반인, 언론·보도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활동을 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는 곳
 - 자원집결지 또는 자원대기소의 확인이 가능한 곳
 - 요구자 및 요구조자의 대피장소와 겹치지 않는 곳
 - 화재로 인한 독성 연기 및 추가 폭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 재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
 - 지휘대 차량 및 119종합상황실과 무선통신 장애가 없는 곳
 - 재난상황 및 주위의 환경 등에 따라 지휘차 또는 임시막사에 설치

나. 대응계획부

- 현장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작성
 - 사고발생시간 : 사고발생시간을 통해서 붕괴건물 내부에 있는 요구조자의 수와 위치에 대한 정보 수집가능
 - 소재지 : 사고현장으로의 접근성 분석
 - 높이와 면적(6면) : 건축물 6면 전체와 면적을 고려
 - 건축물의 형태 : 대응전략과 전술의 수립에 매우 중요
 - 붕괴면적과 구조물의 위험성 : 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안전한 방법 결정
 - 화재위험성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파악
 - 노출 : 구조대원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노출 정도는 추가적인 손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고려
 - 가스, 전기, 수도 : 가스, 전기, 수도의 통제는 구조대원과 요구조자에게 안전을 위해 시행
 - 기상조건 : 바람이 불거나 우천시에는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활동에 부수적인 문제 발생
 - 요구조자(확인·미확인/목적/정보의 수집) : 요구조자의 위치파악은 초기 구조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중의 하나, 요구조자의 위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확인
 - 교통상황 : 붕괴현장에 출동대의 신속한 도착과 즉각적인 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회로의 확보와 교통통제 및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 이동대책 수립
 - 주변철도 : 기차나 지하철에 의한 진동은 약화된 구조물에 충격을 줄 가능성 있음
 - 2차 붕괴 : 지진에 의한 여진 또는 이미 손상된 구조물에 의한 2차붕괴의 위험성 고려
- 피해상황분석계획 가동
 - 국토교통부와 연대하여 피해상황분석반을 신속히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경찰의 현장통제 기능의 지원을 받는다.
 - 학계 전문가(건축물 안전진단, 토목 분야 등) 자문위원회를 구축한다.
 - 2차재난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진단 후 피해·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다. 자원지원부

- 붕괴현장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관리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가스사업, 건축·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응급의료(구급) : 응급의료활동은 현장의 대응인력 뿐만이 아니라 요구조자에게도 제공필요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가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현장지휘대에 편성된 특수임무 담당자 분야별 상호 조정
 - 안전진단 전문가는 구조와 구출활동, 구조활동 책임자는 초기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활동 중에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위험물 담당자는 구조 활동의 초기에 현장상황분석 지원, 건축물 내의 위험물질 확인과 주기적인 점검 수행
 - 중장비/특수 장비 전문가는 크레인, 대규모 리프팅 조작, 중장비 이동, 등을 활용 대책 제시
 - 기술정보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 구조팀장의 요청으로 구조 활동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 구조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들의 지원활동을 진행 중인 구조활동에 통합
- 1, 2차 검색
 - 1차 검색 : 2인1조 검색조 활동 → 붕괴잔해물 표면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빈 공간에 갇혀있는 요구조자 탐색
 - 신속한 요구조자 확인
 - 현장평가
 - 구조 우선순위 결정

- 2차 검색(광역(격자)탐색) :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행, 할당된 모든 구역을 세부적으로 탐색
 - 전체적인 체계적 탐색
 - 중복 탐색
 - 탐색장비의 교체, 중복 사용 고려
- 중점 장소
 - 건축물이 튼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 비상대피 시설이 있는 곳
 - 계단 아래의 공간
 - 지하실
 - 지붕근처
 - 부분적으로 무너진 바닥 아래 공간
 - 잔해물에 의해 닫힌 비상구가 있는 방
- 잔해제거 방법
 - 선택적 잔해제거 : 요구조자 위치 확인 시 선별적 잔해제거
 -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 잔해의 위치와 상태
 - 건축물이 붕괴될 때 요구조자가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
 - 붕괴에 의하여 형성된 빈 공간
 - 기타 요구조자가 대피하여 있을 만한 위치
 - 일반적 잔해제거
 - 아직 실종상태인 사람이 있을 때 실시
 - 조직적으로 해당 영역을 모두 치워나가는 작업
 - 부주의하거나 반대로 너무 주의하여 신속성을 잃게 되면 요구조자는 더 상처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
 - 주의사항
 - 건축물이 붕괴된 유형을 판별하고 건축물의 구성요소 확인
 - 우선 작은 조각들과 위태로운 큰 조각들을 제거, 중량을 받고 있거나 그 자리에 췌기 박듯 고정된 조각은 제거 하면 안 됨. 즉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각인 경우 고정상태 유지
 - 부득이 중량이 걸려있는 조각을 제거해야 할 경우 먼저 지주 설치

- 하중을 지탱하는 벽들은 절단하지 않는다.

○ 자원동원

동원기관	동원장비
소방, 경찰, 군, 가스, 전기, 수도, 중장비 보유업체, 자원봉사 단체	구조공작차, 구급차, 긴급복구차(가스, 전기, 수도 등), 중장비(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table border="1"> <tr> <td>의사</td> <td>간호사</td> <td>약사</td> <td>구급대원</td> </tr> <tr> <td>2명</td> <td>5명</td> <td>1명</td> <td>2명</td> </tr> </table> <p>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p>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p>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p> <p>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장시간 고립된 상태에 있었던 요구조자 및 깔림상태에 있었던 요구조자 등에 대한 구조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구조진압반장에게 제공한다.
- 요구조자의 상황에 따른 공황증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파견을 요청한다.
- 요구조자 평가 및 판단

좌상 또는 압착	물과 음식부족
• 좌상증후군	• 탈수증
• 구획증후군	• 굶주림
• 다양한 종류의 골절	• 쇼크
• 내출혈	• 신부전
둔상(둔한 외상)	• 저체온 및 관련합병증
• 내·외출혈	오염된 공기
• 쇼크	• 호흡곤란 및 정지
• 심한 타박상	• 심장정지
추락	• 신경학적 문제
• 수족·두개골·척추의 골절	장시간의 고립 및 절망
• 내·외출혈	• 외상성 스트레스

마. 긴급복구부

- 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독극물 사용시설 및 방사능 시설에 대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실시
- 긴급복구활동 제반여건 사전 확인
 - 현장으로 긴급복구자원이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수송로 지정
 - 긴급복구에 동원된 물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지역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지 여부 확인
 - 긴급복구활동에 필요한 중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
- 여름철 또는 장기간의 대응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시체, 음식물 등의 부패로 인한 오염위험이 있으므로 방역조치 실시
- 신속히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장소를 확보하고 중장기협회 등과 연대하여 필요장비를 조달한다.
- 장비조달 시 지나치게 많은 대응자원이 집결되지 않도록 자원지원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량 이상의 대응자원은 자원대기소에서 관리한다.
-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주변의 도로를 차단한 경우 대중정보센터에 알려 비상경고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 잔해물 처리 임시장소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 야간까지 활동이 지속될 경우 한전을 통해 비상전력공급을 요청한다.

2.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붕괴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자연재난으로 인해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응1단계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대응조직구조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응2단계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자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운영
대응3단계	○ 정의 : 다중이용시설의 붕괴 또는 붕괴규모가 커서 전 국가적 자원대응이 필요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1.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 대형 붕괴사고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의 파손정도가 절반 이상인 경우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장대응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구조·진압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비상경고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 TBS교통방송과 연대하여 붕괴 건축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차단·진입제한 조치 등에 대한 비상경고를 실시한다.
- 인근 건물의 연쇄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붕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통지, 비상경고를 실시한다.
- 비상경고메세지 작성 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접수처, 응급의료소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한다.

2.2 가스폭발

2.2.1 가스폭발 발생 특성

특성	내용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설과 가스 자체의 연소로 크게 구별된다. ○ 가스 누설은 체류 지역 및 유동 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 위험, 산소부족, 중독위험성이 크다. ○ 특히 LP가스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체류하는 폭발 혼합기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 갑작스런 2차 폭발로 인하여 대원 작업 위험 발생 우려 ○ 폭발 충격파에 의하여 진입하는 대원 작업위험 발생우려 ○ 분출화재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조 및 대원 작업 시 위험 발생 우려 ○ 가스누출 장소에 관찰부대를 배치할 때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무인방수 고려 ○ 경계구역내외의 통제를 확실하게 함
폭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충격으로 인하여 폭원(爆源)에 근접한 고체물 (용기 혹은 건축(建屋) 등)을 파괴하는 효과 ○ 폭발가스의 급팽창에 의거하여 상기에 의한 파편을 날려버리는 추진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충격파를 만들고, 이것이 원거리까지 영향을 주는 충격효과 ○ 폭탄형식의 폭발 : 폭탄과 같은 매우 강고한 용기 중에 폭발이 일어나면, 용기를 파괴하고, 그것을 파편으로써 주위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폭풍의 효과는 원거리까지 미치지 않는다. ○ 핵폭발 형식의 폭발 : 2차적으로 파편효과가 수반한다. ○ 가스 및 분진 폭발 : 가스나 분진은 고압상태가 아닌 한 파편효과 (최초의 파편효과)가 적고 충격파에 의한 거리효과 의 파괴비중이 크다.
<p>활동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및 옥내 폭발로 구분하여 활동 방침을 결정 ○ 폭발로 인한 파괴효과에 의하여 화재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폭발인 경우, 대원 안전사고에 요주의 ○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재난의 확산방지에 주력 ○ 구조활동에 있어 시간적 제약 및 날씨의 제약이 큼

2.2.2 통제단조직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에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폭발·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체계·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폭발 및 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협 요소, 불안정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가스의 누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하면 위험지역 주민에게는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 현장지휘

- 재해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가스누설 장소로부터 반경 150m의 범위에 설정하고, 화기의 사용제한, 구역에의 출입제한 및 퇴거명령 등을 한다.
- 폭발위험구역은 가스농도가 폭발최저한계의 30%가 넘는 지역에 설정을 하고, 대원 등의 진입을 금지한다.
- 가스·전기의 차단은 원칙적으로 가스, 전기사업자 관계자가 한다.(복구 시에는 반드시 관계자가 실시)

○ 유관기관 연대활동

- 가스·전기관계사업자의 책임자에 대하여 화재경계구역의 범위를 가리켜 폭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스, 전기 차단을 요청한다.
- 현장의 경찰관에 대하여 화재경계구역의 설정범위를 가리켜 응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대피, 출입의 금지, 제한, 교통통제 등 협력을 구한다.

나. 대응계획부

- 사고유발경위, 가스의 종류 및 양, 가스의 비산 정도, 사고현장 주변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추가폭발 및 사고현장(폭발에 의한 붕괴)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제 확보 및 다수의 대응자원 확보
- 현장조사활동 시에는 가스사업자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안전 진단 후 진입하여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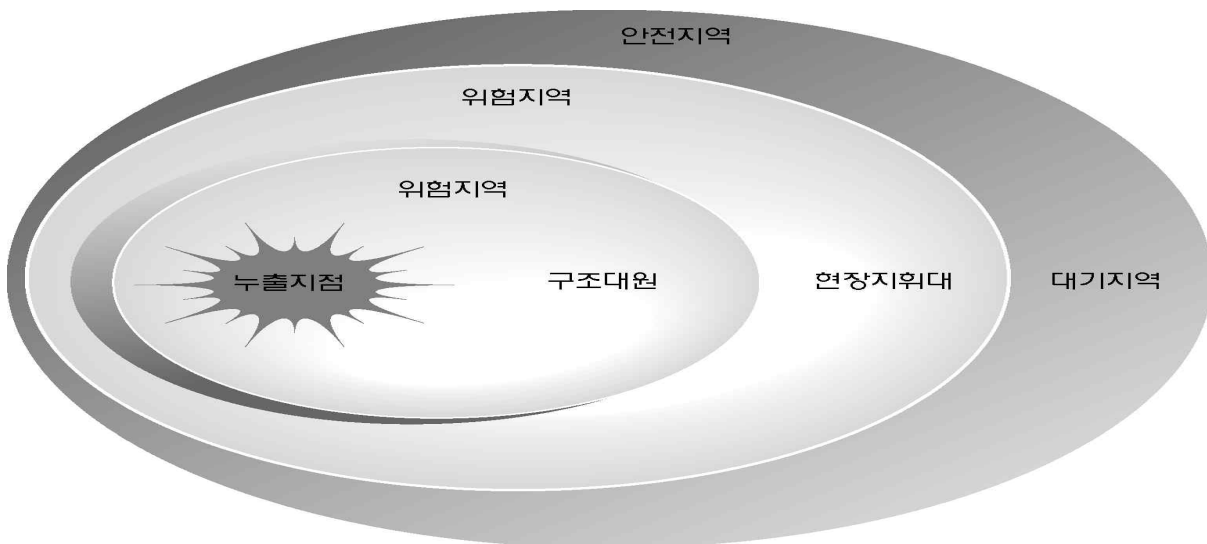
다. 자원지원부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가스사업, 건축·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 필요

라. 현장지휘대

- 2차 폭발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검출활동 수행
- 사고지역 및 위험지역 통제조치 및 자원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교통규제조치
- 다수의 화상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소 신속 설치 및 임시시체안치소 설치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 현장대응
 - 지형 내용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추측하고, 가스 대책 기자재의 적재와 병행하여 활동통제, 부서 위치 등 2차 재해방지를 주안을 두어 소방활동의 원칙적 사항을 재확인하고 출동을 한다.
 - 가스, 전기사업관계자의 출동을 요청한다.
 - 부서 위치
 -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한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얻은 정보, 풍위, 풍속, 지형, 건물상황 및 가스의 특성 등으로부터 누설 가스의 유동 상황을 추측하여 부서 위치를 정한다.
 - 옥내 누설의 경우 : 폭발에 의한 유리 파편,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피

- 할 수 있는 위치로 한다.
- 옥외 누설의 경우
 - 가스 체류의 위험이 있는 하수구, 맨홀 등을 피한다.
 - 가스 누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가스누설 현장을 포위할 수 있도록 부서한다.
 - 활동통제
 - 휴대무전기, 랜턴, 인터폰, 전화 등 화기 발생의 염려가 있는 기기의 사용을 엄금한다.
 -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위험물에 의한 폭발사고는 건물, 공작물 등 파괴와 붕괴에 의하여 강도저하를 일으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주의한다.
 - 대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재붕괴 등 2차재난 발생위험성이 있다.
 - 구조활동 중점 장소
 - 폭발에 의해 좌굴된 지붕, 기둥, 교량 등은 갈쿠리 등으로 강도를 확인하면서 활동한다.
 - 붕괴위험이 있는 기둥 등은 진입하기 전에 배제하지만 로프 등으로 확보한다.
 - 구조활동을 위하여 대원이 왕래하는 장소에 유리조각, 철근 등이 돌기하고 있을 때는 장갑을 사용한다.
 - 예리한 부분은 갈쿠리 등으로 배제하거나 구부러 필요에 따라 천으로 덮는다.
 - 폭발사고 현장에는 비산물, 돌기물에 의한 부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성 방수화를 신고 활동한다.
 - 2차폭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인화방지 조치 및 가스 희석, 배출 조치를 행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벽체 등을 방패로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응한다.
 - 가스누설 범위의 추정
 - 지휘본부장은 가스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가스체류구역 및 유동범위를 추정한다.
 - 가스누설은 옥내·옥외로 크게 구별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스비중 등의 특성, 풍향 등에 유의하여, 당초에 광범위하게 위험구역을 추정하여 가스를 탐지한다.

- 가스누설 화재경보설비, 기구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 ※ 화재경보설비, 기구의 경보농도는 도시가스로 폭발 최저한계의 4분의 1 이상, LP가스로는 폭발 최저한계의 5분의 1 이상이다.

○ 가스농도 측정

- 가스농도의 측정은 가스사업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측정자는 원칙적으로 방화복 혹은 방사능 방호복을 착용하여 활동한다.
- 측정은 누설가스의 특성 및 풍향 등에 유의하여, 안전한 지역으로부터 위험한 쪽으로 측정을 한다.

- 측정중점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6B · 12A · 13A 등)
 - 누설실을 중심으로 방의 천장부근, 후미진 곳 및 그 상층부
 - 파이프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승강로, 덕트 등 수혈구역의 최상부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6A · LP가스 등)
 - 실내의 바닥 및 그 밑 계단
 - 파이프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혈구역의 최하부
 - 옥외의 경우에는 맨홀, 하수구의 바닥부분

○ 응원요청

- 가스대책 기자재 · 소요부대의 도움요청 : 구조진압반장은 광범위한 가스 누설 등 재해의 규모에 대하여 조기에 가스대책 기자재, 소요부대의 출동을 요청한다. 이때에는 자원집결지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가스대책 기자재 : 산결공기위험성가스 측정기 (GX7 · GX111) · 가연성 가스 경보기 · 방화복 · 호흡보호기구
 - 추가 출동대 : 지휘대, 화학기동중대, 특수차 (배연 · 고발포 · 조명 · 공기) 및 펌프차 등의 소요부대

○ 대응자원

동원기관	동원장비
소방, 경찰, 가스, 수도, 의료기관	구조공작차, 가스복구차, 고성능화학차, 구급차, 수도복구차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 ·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

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table border="1"> <tr> <td>의사</td> <td>간호사</td> <td>약사</td> <td>구급대원</td> </tr> <tr> <td>2명</td> <td>5명</td> <td>1명</td> <td>2명</td> </tr> </table>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 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2명	5명	1명	2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

- 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독성가스 위험성

분류	생리작용		예	특성
자극성 가스	인체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주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호흡기 (목,기관지, 코)	액화암모니아, 아크릴산메틸, 초산	· 강한 자극과 냄새로 존재유무 파악이 쉽다. 단 독성이 강한 가스가 많고 중독증은 급성이다. 경상인 경우 결막염, 피부염, 중증인 경우 호흡곤란, 질식사
		호흡기, 폐	염소, 트리렌지, 소시아네트	
		기도말단부, 폐포		

분류	생리작용		예	특성
질식성 가스	자체로는 거의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다량 존재하면 산소 함유율을 감소시켜 산소결핍증이 되어 질식에 이른다.	단순질식 가스	(탄소가스) (질소) 메탄 에탄	· 무색, 무취, 무미로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어 중독되기 쉽다. 특히 화학적 질식가스는 신경계장애를 유발시키므로 위험하다. 피로하거나 호흡기계통 질환이 있을 때 중독되기 쉽다.
	혈액 또는 다른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을 막아 질식하게 된다.	화학적 질식가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일산화탄소)	
마취성 가스	자체로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취작용이 있으나 다량이면 산소결핍증 발생	마취질식 가스	산화에틸렌 (알콜류) 아세틸렌 · 프로판에틸렌 · 프로필렌	· 가스를 흡입 농도와 시간에 따라 만성 또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고농도인 경우 급성중독을 일으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취성과 간, 위 등 장기 장애 발생	내장 장애 가스	(사염화탄소) 산화에틸렌	
	마취성과 신경계통 질병발생	신경계장애 가스	사알킬염	

○ 독성가스 허용농도 기준

가스명	분자식	범위 m ²	허용농도		TWA		STEL	
			ppm	mg/m ³	ppm	mg/m ³	ppm	mg/m ³
일산화탄소	CO	10	50	57	50	55	400	440
일산화질소	NO	10	-	-	25	30	(35)	(45)
암모니아	NH ₃	10	25	17	25	18	35	27
에틸렌	C ₂ H ₄	10	50	90	1	2	-	-
황화수소	H ₂ S	1	10	14	10	14	15	21
염화메틸	CH ₃ Cl	10	50	100	50	105	100	205
브롬화메틸	CH ₃ Br	1	-	-	5	20	(15)	(60)
모노메틸아민	CH ₃ NH ₂	1	10	13	10	12	-	-
디메틸아민	(CH ₃) ₂ NH	1	10	18	10	18	-	-

가스명	분자식	범위 m ²	허용농도		TWA		STEL	
			ppm	mg/m ³	ppm	mg/m ³	ppm	mg/m ³
트리메틸아민	(CH ₃) ₃ N	1	-	-	10	24	15	(36)
염화비닐모노마	C ₂ H ₃ Cl	1	-	-	5	10	-	-
시안화수소	HCN	1	10	11	C10	C10	-	-
호스겐	COCl ₂	0.1	0.1	0.40	0.1	0.4	-	-
아황산가스	SO ₂	1	-	-	2	5	(5)	(10)
불소	F ₂	1	-	-	1	2	2	4
염소	Cl ₂	1	1	2.9	1	3	3	9
포화취소	Br ₂	0.1	0.1	0.65	0.1	0.7	0.3	2
불화수소	HF	1	3	2.5	(3)	(2.5)	(6)	(5)
염화수소	HCl	1	5	7.5	C5	C7	-	-
취화수소	HBr	1	-	-	(3)	(10)	-	-
이산화질소	NO ₂	1	-	-	3	6	5	10
아산화질소	N ₂ O	10	-	-	25	30	(35)	(45)
오존	O ₃	0.1	0.1	0.20	0.1	0.2	0.3	0.6
포름알데히드	HCHO	1	2	2.5	(C2)	(C3)	-	-
모노실란	SiH ₄	1	-	-	5	7	-	-

- 2차재난 위험구역 및 추가폭발 우려가 있을 경우 1차 통제구역 바리케이트 설치 및 2차 통제구역 통제선 설치, 기타 홍보문 게시
- 가스폭발 시 유리의 비산 등 2차 사고발생확률이 높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

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 폭발위험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구역 내에서 가스농도가 폭발 최저한계의 30%를 넘는 구역에 설정한다.
- 폭발위험구역의 설정은 가스·전기사업관계자, 소방대원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다른 활동에 우선하여 실시해야 한다.
- 지하가, 지하실, 내화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설정구역으로 지정한다.
- 폭발위험구역 내 행동통제
 - 폭발위험구역 내에 있는 자, 전원의 일시 퇴거
 - 전기 차단 등 착화원이 되는 모든 것의 배제가 확인되기까지 원칙적으로 진입금지.
 - 방수대좌의 활용 등 (무인) 에 의한 가스확산의 배려

바. 긴급복구부

- 폭발·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잔해물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비산되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 추가폭발 우려가 없고 누출된 가스의 폭발 및 발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가스배관 등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후 차단한 전기·가스 공급활동 재개
- 가스의 비산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지역을 선정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한다.
-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는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통제선을 설치한 후 오염제거활동을 신속히 실시한다.
- 전기 및 가스의 복구작업 시에는 해당기관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
- 전기 및 가스차단 및 복구 시에는 대중정보센터에 그 점을 알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위해 불꽃이 나는 장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가스폭발 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해 폭발의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응1단계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대응조직구조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응2단계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자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운영
대응3단계	○ 정의 :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원대응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2.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 기상청의 정보 등을 토대로 유출된 가스 등의 비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2차 폭발우려가 있을 경우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민방위 경보통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 우려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확성기, 싸이렌 등으로 비상경고를 실시한다.
- 인근에 있는 특수 다중이용시설(비상경고방송을 듣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통지조치를 취한다.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3.1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특성

항목	내용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백화점, 역, 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게임방 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여 무질서한 관계로 화재시 피난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내부상황 판단이 곤란하고, 출입구로부터 화연이나 농염이 분출하는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발생 ○ 공기의 공급이 제한되고,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피난·대피의 곤란으로 대량 인명피해 및 오염의 우려 ○ 피난대피 및 유도, 인명검색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폐쇄공간에서의 소방활동으로 소방력 분산 및 무선통신 장애 발생 ○ 공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주수효과 미흡
소방활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각층의 용도, 업종, 업태, 상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난상황에 대해서는 각 층별 사업소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지정·활용 ○ 건물의 상세도면 및 각층별 용도, 입주현황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고 내

	<p>부 방화구획,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유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점, 연기로 인한 오염 범위 및 요구조자의 상황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지휘·통제에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로부터의 주수는 건물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내부 진입 후 주수 ○ 현장진입 대원 안전관리 철저 ○ 음식점의 주방, 실내 화재는 주방 덕트의 배기구를 신속하게 확인 하여, 배기구로부터 화염 또는 열기가 분출하고 있는 경우 덕트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의한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확인하여 2차 재난 발생 방지
항목	내용
고층건물 진압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 재난진압활동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참모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기지 : 재난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현장도착 자원의 건물진입을 통제하고 건물외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부에 전달 - 로비통제 : 건물내의 로비에 위치하여 계단, 엘리베이터등 상부진입수단을 조정 - 계단운송 지원 : 엘리베이터사용불가능시 계단을 통한 진압장비의 운송을 지원 - 진입대기소 : 재난층 2층아래층에 위치하며 재난층으로의 진입대원을 통제하고 교대인원이 휴식, 장비교체, 점검의 공간제공
지하층 화재 진압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에서의 배연, 조명, 통신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 ○ 조직적인 현장지휘대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장의 철저한 진압대원 통제기능 발휘 - 현장대원의 독자적 행동 엄금으로 대원의 안전확보 - 명확한 진입통제 및 무선통제수단 확보 ○ 인명검색, 구조활동, 피난유도 최우선 실시 ○ 상황실과 연계하여 건물구조에 대한 철저한 파악 선행

2.3.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모든 경로를 통하여 화재에 대한 신고 접수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특수시설에 통지
 -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통지
- 대규모의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대피소 위치, 대피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등 메시지 방송 실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 설치운영
- 화재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조진압조직을 편성하고 필요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출동한 유관기관에 지휘체계 확립방안 모색
- 현장지휘체제 명확화 : 현장지휘 체제 및 현장지휘대장의 변경,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운영

나. 대응계획부

- 화재유형별 상황진행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활동계획 수립
 - 고층건물의 경우 층의 위치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용가능여부 파악하고, 화재층 이상의 인명구조계획, 주민대피계획, 엘리베이터 및 계단 통제계획 등을 수립
 - 지하층은 내부구조에 관한 정보파악 및 연기배연 및 통신가능상태 확인 후 배연활동과 연계하는 구조진압계획을 수립
 - 항공기가 공중에서 파악한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대응계획 수립
- 현장조사활동
 - 화재 상황
 - 인명피해
 - 대상물 상황(연소 확대 경로의 판단요소) 파악
 - 현장활동(작업) 위험(2차 화재 방지의 판단요소)
- 현장조사 시 정보입수 대상
 - 건물관계자, 피난자 및 도면 등
 - 화재진압반장, 인명구조반장, 응급의료소장
 - 소방헬리콥터로부터 재난현장 전체상황 파악
 - 경찰, 가스, 전기, 상수도 등 유관기관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화재유형별 필요자원이 신속히 확보 배치되도록 관련 조치
 - 고층건물화재는 사다리차 및 헬기지원 확보
 - 지하층화재는 배연장비, 조명장비, 통신지원장비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라. 현장지휘대

- 화재유형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구조진압반 대응조직 편성운영
- 현장에 대한 원활한 주민 통제를 위한 현장통제반 활동 강화
 - 가족생사확인, 물품반출 등을 위한 비이성적 현장접근주민의 통제
- 화재진행상황의 분석 및 공중진화활동,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대와의 연계활동 강화
- 타 시·도 지원 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효과적 배치운영을 위한 자원대기소의 지정 운영
- 구조진압계획
 - 대중 비상경고계획 가동
 - 인명구조
 - 구조대는 원칙적으로 발화층을 담당하고 후착한 진압대 및 구조대와 연계하여 화세를 제압하면서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실시
 - 구조대는 요구조자에 대한 인명검색, 구조활동을 주무로 하고 진압대와 연계하여 상호협조 주수태세 확보

- 사다리차 대원은 고층건물 구조를 담당하고 진압대와 연계하여 상호협조 주수태세 확보
- 요구조자가 다수로 예측되는 백화점, 호텔, 관람시설 등의 화재에는 2개대 이상의 구조대, 사다리차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구조 태세 확보
- 고층건물 화재 등의 경우에는 옥상, 건물 상층의 인명검색·구조, 배연구 설정 등에 헬리콥터 활용
- 요구조자 구조 순위
 - 우선순위 : 자력피난 불가능자
 - 차순위 : 자력피난 가능자(피난방향, 경로, 장소 등 지시)
- 긴급대피결정
 -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지역
 - 대피결정지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출입통제 실시
- 유의사항
 - 패닉상태의 요구조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소방차에 적재된 확장기, 옥내방송설비 등을 활용하여 추락 및 패닉 방지
 - 화재진압반장은 요구조자 구조 시마다 신속하게 현장지휘대장에게 보고, 현장지휘대장은 이를 소방서 현장지휘대(119종합상황실) 전파
 - 검색 및 구조작업은 진압활동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행
 - 구조한 자의 중복검색을 하지 않도록 구조자 상황 체계적 관리
- 통제선 설치(현장통제반장과 협의)
 - 출동대 파악 후 부서위치 결정
 - 화재진압반, 인명구조반의 연대활동 지시→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동시실시
 -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범위에 제1통제선 설치 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제2 통제선 설치
- 대응자원 확보

동원기관	동원장비
소방, 경찰, 군, 가스, 전기, 의료기관, 수도사업자	인명구조용 헬기, 고가사다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긴급복구차(가스, 전기, 수도 등)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

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 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2명	5명	1명	2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사 : 시체의 분류 및 검사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통제구역 내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구조자의 신원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 긴급복구부

- 현장보존 및 잔재물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시행
- 연소확대 우려지역 및 건물에 대하여 임시 안전대책 강구
 -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위험물 보관시설은 폭발·유출에 대비 시설의 긴급점검 실시
- 화재로 인하여 누출된 독극물 등에 대해서 긴급오염통제 실시
- 통신시설 등 대응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긴급복구 실시
- 연소확대 우려지역의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한 경우 위험이 해제된 경우 신속히 복구한다.
- 전기 및 가스의 복구작업 시에는 해당기관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
- 전기 및 가스의 복구완료 예상시간을 대중정보센터에 제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위해 불꽃이 나는 장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야간 및 지하 등에서의 활동이 예상될 경우 한전을 통해 비상전력공급을 요청한다.

2.3.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화재정보의 수집 및 분석(가연물의 종류, 적재량, 연소특성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가동 •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되고, 중앙통제단이 부분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 시·도 통제단 각 부장 및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들은 각 부 및 대응구역별 활동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 화재현장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재난대응의 전략과 전술의 수립과 결정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은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 대응자원의 총동원 • 현장대응은 자치단체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고 중앙 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 각급 통제단장은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2.3.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 기상청의 정보 등을 토대로 불씨의 비산으로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2차 재난의 우려가 있을 경우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민방위 경보통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우려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확성기, 사이렌 등으로 비상경고를 실시한다.
- 인근에 있는 특수 다중이용시설(비상경고방송을 듣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통지조치를 취한다.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2.4.1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특성

특성	형태
재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우연한 사고 또는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이송 중 교통사고, 보관탱크 관리 미숙으로 인한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 - 테러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가능성 있으며 이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활동 전개 ○ 방사능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의 분실, 누출, 비정상취급(밀수, 도난), 운반사고, 방사능누출을 포함하는 화재 등의 사건 - 원자력추진 인공위성의 대기 진입시의 추락사건, 외국 또는 미등록 방사선원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등의 방사선 사고 -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
현장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은 화재발생으로 연결되거나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상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발생된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체류된 지역에 점화원이 가해질 경우 폭발성 화재 발생 ○ 유독물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 또는 대기환경의 피해유발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되어 기화된 유독물은 주변지역으로 급속 확산 가능성 있음 -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활동 필요 ○ 주변 하천에 유출 시 상수도 및 각종 용수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보호를 위한 긴급오염통제팀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특성	형태
현장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물질 취급시설의 화재 또는 인사상사고의 처리시에는 반드시 방사능사고 대응활동 검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대한 방사선피폭 여부 확인 및 통제선 설치 - 방사선보호복 및 관련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활동 - 피폭구역 내에서 허용된 대응활동 임무만 수행 ○ 방사선재난은 인명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된 사상자는 방사선환자 처리능력이 있는 병원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활동 중 사용된 보호장구 등 피폭된 물건을 수거 후 폐기하거나 안전조치 필요 - 주변 수질,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통제활동 필요
대규모 자원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의 동원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문팀의 지원필요 - 보호장비와 제독장비를 갖춘 전문처리대의 투입 필요 ○ 유출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에 대한 제독과 응급처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에 노출된 사람 중 부상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독실시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재난의 대응활동은 관련 기술전문 대응부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방사선사고의 대응활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무책임. -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활동은 테러사건대책본부(본부장 경찰청장)가 주무책임
생화학 사고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징후 판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 자극취, 유색연기 등 - 희생자 증상 - 대량 사상자 발생 - 살포장치 - 경보제공 또는 방송 전파 ○ 2차 징후 판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새 등의 사망 - 희생자 진술 - 현장 이외의 것 - 이상한 액체

2.4.2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각종신고 및 통보에 의해 누출정보를 접수한 경우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국정원 또는 환경부에 반드시 통보하여 단순 유출 또는 테러에 의한 살포행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출동하는 유관기관의 대원들은 관련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통보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

-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 유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위협에 노출될 때,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 통지
 -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위험지역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 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나. 대응계획부

- 사고유발경위,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오염확산정도, 사고현장 시료채취분석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위험물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의 자문으로 재난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응계획 수립
 - 위험물질과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신체적 위험성 고려
- 위험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정보수집)
 - 재난 상황 : 발생장소, 요구조사 확인, 품명, 물성 특징
 - 성상 및 위험성 : 상태에 따른 인적위험, 화학적, 물리적 위험
 - 재난대응 기자재 상황 : 중화제 상황, 가스측정·검지기, 방호복 등의 상황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 요원을 지정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화학물질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자원동원 체제 유지
 - 유출물질 성상별 대응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 동원
 - 유독물 유출시 중화, 회수 할 수 있는 자재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 협조하에 현장진입 및 구조구급활동 진행
 - 현장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활동은 방사선사고대책본부가 자문하는 처리절차에 의해 이행
 - 현장활동대원의 방사선 노출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 2차 확산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감시활동 수행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의해 제독 및 병원이송 조치
- 구조진압활동 기본방침
 - 화재진압 : 장애요인 여부, 연소확대 경로, 기상상황에 따른 차량부서
 - 방사성물질 일부(우라늄과 토륨의 금속조각·분말, 질산염)는 가연성이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 소형화재는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포 소화약제를 이용하고, 대형화재는 물을 분무 주수하여 진압
 - 진압활동과 관련 원전측과 긴밀한 공조
 - 방사선 피폭정보 교환
 - 방사능 방호장비 상호활용 : 선량계, 옥소제 등
 - 방사선 피폭에 따른 소방활동 범위 결정
 - 인명구조·구급
 - 요구구조자의 예상위치 등 상황판단에 신중
 - 방사선 피폭 허용선량 감안 구조작업
 - 외부 피폭자 제염조치 후 이송

- 원자력연구소측 오염검사소 조기설치
 - 의류제거, 노출피부와 모발세척 등
 - 이송 시 2차오염 방지를 위해 접촉차단
- 응급조치
 - 독성가스 확산, 배출 및 중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인화,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 엄호주수 하에 실시한다.
 - 유독물에 적합한 중화제를 선정하여 활용하게 한다.
 - 소량의 누출물인 경우 수용액 중화제를 선정한다.
 - 도로 상에서 누출된 경우 또는 가스누출로 직접 가스를 중화할 경우 분말중화제를 선정한다.
 - 응급조치 실시 중 경계원을 배치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 경계배치
 - 응급조치 개소마다 경계대원을 배치하여 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누설·유출개소 부근의 인화, 폭발위험을 판단하여 경계대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엄호주수를 실시하게 한다.
- 응원요청
 - 유독물재난대응기자재·소요부대 지원요청 : 자원지원부장은 유독물 대량누출, 유출 등 화학재난 규모에 따라 신속하게 지휘대·화학차 등 소요부대와 유독물 재난대응 기자재요청, 자원집결지를 결정한다.
 - 지원부대 요청
 - 지휘부대, 화학차, 구조대, 구급대, 특수차(자재운송, 협조, 배연, 고발포, 조명) 및 펌프차 등 소요부대
 - 복수 화학차 요청
 - ▶ 유독물위험구역, 폭발위험구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설정될 경우
 - ▶ 위험구역 내에서 장시간 동안 소방활동이 지속될 경우
 - ▶ 측정기, 방호복 등 화학재난대응기자재가 부족할 것이 예상될 경우
 - 유독물 재난대응기자재 요청 : 가스검지기, 산결공기위험성가스측정기, 가스유출방지용 공구, 유독물 방호복, 방열복, 호흡보호기구

동 원 기 관	동 원 장 비
소방, 경찰, 군, 의료기관, 환경	인명구조용 헬기, 구급차, 제독차(제독장비 포함)

- 시설관계자 활용
 - 시설관계자를 조기에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 또는 응급조치, 소화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 소방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로는 응급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발생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시설관계자 등에게 중화제, 회수용기 등 기자재 조달 및 전문기술자 파견 등의 요청을 한다.
- ※ 고시·확인사항
 - 중화제 종류 및 필요량
 - 중화제 조달처
 - 살포용 기자재
- 현장대응활동
 - 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유의사항
 - 방사선 발생장치에는 고전압부분이 있으므로 차단한 후 소방 활동 실시
 - 소방대원의 안전확보
 - 선착대는 방사선 오염이 확인되면 경계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 해당기관의 방사선 비상계획에 따라 활동
 - 해당기관 비상대응조직의 유도에 따라 활동
 -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대원은 방사선 피폭허용선량을 감안, 임무교대
 - 갑상선량 10rem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옥소제를 복용
 -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개인별 TLD(열형광선량계), ADR(직독식선량계)와 방호복, 장갑, 신발, 모자, 공기호흡기 착용
 - 피폭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인원 투입 금지
 - 교대 대원의 TLD(열형광선량계), ADR(직독식선량계) 확인 및 기록
 - 내부피폭이 예상될 때는 WBC(전신체내피폭검사) 받게 함
 - 내부 피폭량이 많을 경우 방사선 전문의료기관(원자력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
 - 출동시
 - 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종 방호기자재 및 피폭관리자료 등 적재
 -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연기, 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풍향·지형을 고려하여 부서위치 결정
 - 기자재, 차량의 오염방호조치를 실시
 - 소방차량, 적재기자재 방호조치(덮개를 씌우도록 한다)
 - 휴대기자재 제한

- 피폭방호조치
 - 방사선 측정기 작동확인 등
 - 출동 즉시 방사선 검출활동개시
- 지원기관 활동
 - 국방부
 - 국방부의 장비, 설비들에 의한 위험물질의 방출에 대한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오염통제반장의 자원 요구 시 시도 및 시군구에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 테러에 의한 방사능,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험물질 누출 또는 오염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한다.
 - 오염통제반장의 요청에 의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위험의 제거·완화 등과 같은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운영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유해화학물질 폭발 및 누출과 관련된 주민의 의학적 영향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상담 및 자문
 -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에 대한 취급 및 처리에 대한 기술적 자문
 - 오염통제 기능 수행 대원과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정도 평가 및 완화를 위한 자원(인력, 오염도 측정장비)을 지원한다.
 - 환경부
 - 자체 설비 및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방출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시한다.
 - 유해화학물질 누출 정도 및 근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및 처분관련 조언
 - 복지부
 - 대원들 임무수행 및 보호에서 건강 위험성 판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위험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발병 기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시험을 실시한다.
 - 독소 물질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지, 개발한다.
 - 생화학테러 또는 감염병과 관련된 위험성을 상담하고 필요시 조치하고 감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한다.

○ 생화학 사고 특성

특성	형태															
사고발생 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용제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지장비 활용 오염원 확인 및 표본 수집(오염원 밀봉처리, 추가 확산 방지) ○ 오염지역과 안전지역을 구분하여 오염통제선 설치 ○ 오염환자 판단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환자 : 격리 후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MARK-1, KM258A1) - 중환자 : 지정병원 후송(오염방지 대책장구 : 비닐, 구급낭 등) ○ 인원/지역/차량제독(오염 의심 인원 포함) ○ 제독차, 소방차, 목욕탕 활용 															
의심물질 발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워하지 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저포자에 노출된 후에라도 적절한 투여하면 항생제 등 치료제로 질병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 현장접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장소, 시간, 상태(백색분말 봉투/소포) 등 - 개봉금지 : 격리보관 <p>※ 고층건물 위치 시 상층이동 후 건물내부 밀폐(비닐, 테이프)</p>															
화학제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공업 발달과 산업화로 화학물질 제조 및 획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린가스 1톤 항공기 살포 시 300~700만 명 사망(인구밀도 3천~1만 명 인 도심지역일 경우) ○ 테러집단 화학무기 제작기술 습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제조원료 및 기술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에 전달 ○ 테러분자의 휴대 및 살포/투척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소형폭탄으로 제작, 은밀하게 사용가능 															
화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분류 <table border="1" data-bbox="314 1563 1378 189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종류</th> <th style="width: 33%;">특성</th> </tr> </thead> <tbody> <tr> <td>독성화학작용제</td> <td>질식, 신경, 혈액, 수포작용제</td> <td>일정농도흡입/인체 침투시 사망, 상해, 무능화</td> </tr> <tr> <td>무능화 작용제</td> <td>중추신경억제/흥분 작용제</td> <td>기억력, 집중력 저하, 정신/육체적 활동 둔화, 환각상태</td> </tr> <tr> <td>폭동진압 작용제</td> <td>구토/최루작용제</td> <td>구토/재채기, 눈물 흘림</td> </tr> <tr> <td>대식물 작용제</td> <td>낙엽제, 건조제</td> <td>식물잎 제거/건조</td> </tr> </tbody> </table> ○ 증상별 분류 	구분	종류	특성	독성화학작용제	질식, 신경, 혈액, 수포작용제	일정농도흡입/인체 침투시 사망, 상해, 무능화	무능화 작용제	중추신경억제/흥분 작용제	기억력, 집중력 저하, 정신/육체적 활동 둔화, 환각상태	폭동진압 작용제	구토/최루작용제	구토/재채기, 눈물 흘림	대식물 작용제	낙엽제, 건조제	식물잎 제거/건조
구분	종류	특성														
독성화학작용제	질식, 신경, 혈액, 수포작용제	일정농도흡입/인체 침투시 사망, 상해, 무능화														
무능화 작용제	중추신경억제/흥분 작용제	기억력, 집중력 저하, 정신/육체적 활동 둔화, 환각상태														
폭동진압 작용제	구토/최루작용제	구토/재채기, 눈물 흘림														
대식물 작용제	낙엽제, 건조제	식물잎 제거/건조														

특성	형태			
	구분	종류	증상	보호/치료
	신경	타분, 사린, 소만, VX	동공축소, 경련, 방분, 방노	방독면, 보호의 MARK-1, 피부제독킷
	질식	포식젠	기침, 구토, 두통, 폐수종	방독면, 인공호흡, 휴식, 보온
	혈액	염화시아노젠, 청산가리	구토, 혼수, 전신, 경련, 호흡장애	방독면, 인공호흡
생물제 분류	종류	증상(효과)	테러방법	잠복기
	탄저균	열성질환(감기증상)	우편물, 환기설비, 공중살포	1~8주
	천연두	고열, 홍반, 수포, 통증	공중살포	7~19일
	보툴리누스	식중독, 시각, 분비, 운동장애	공중살포, 음식, 식수시설 등	12~72시간
	페스트	오한발열, 구토설사	공중살포(에어로졸)	1~6일
	야토병	오한발열, 두통, 체중감소	공중살포	1~14일
생물제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살상력: 스스로 번식·확산 능력 ○ 광범위 지역 살포용이 높은 대량 살상 효과 ○ 천연두 : 인구밀집 지역에 10g만 살포해도 대혼란 초래 ○ 비용 저렴(1mile2 안의 인원을 대부분 살상하게 드는 평균비용) ○ 탐지 및 진단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임상증세가 자연발생 질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 - 생물학작용제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경험 의료진이 거의 없음 - 현재까지 개발된 실시간 탐지장비 신뢰도 제한적, 실험실 탐지방법은 오랜시간 소요(최소 18시간 이상) ○ 오염수단 다양 및 은밀한 살포가능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창상, 타박상, 골절, 열상 등의 외과적 부상자 중 경·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이다. 치료가 더 필요한 자는 구급차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의약품을 분실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대응활동도 실시한다. 응급의료소장은 피해상황에서 판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의료소 이외에도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구호소를 설치한다.
 - 면사무소, 군청

- 소방서, 119안전센터
- 기타 응급의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재해의료거점 병원 : 함양성심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서는 중증환자의 수용 외에 재해의료거점 병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피해지역 외에서 이송되는 중상자의 판별 및 헬기 이송의 거점
 - 현장응급의료소에 의료팀 파견
 - 임시 부상자 수용처 확대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구급의료체제 확보
- 기타 의료기관 :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 응급의료대 편성과 배치 :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에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대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의 출동을 요청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긴급히 필요할 경우 당해 관계단체의 장에게 현장응급의료소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대 편성기준				응급의료대 임무
의사	간호사	약사	구급대원	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의료구호활동 실시. 응급의료대가 담당할 의료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및 시술 4. 병원 또는 진료소 이송 처치
2명	5명	1명	2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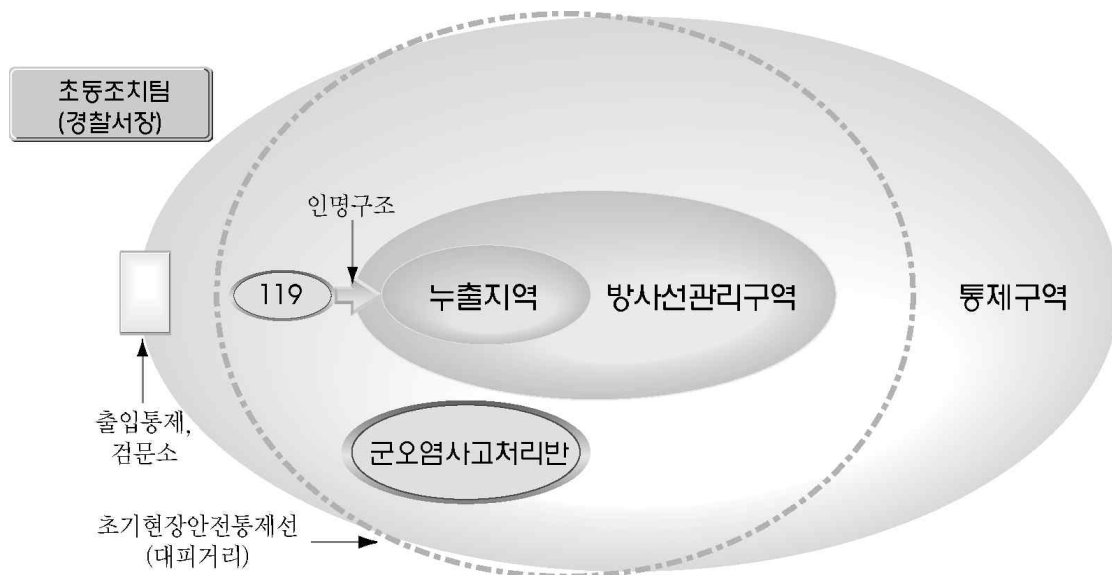
- 의약품 조달
 - 현장응급의료소 비축의약품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당해 지역의 비축 의약품을 활용한다. 부족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조달받는다.
 -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조달 :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이 곤란한 부상자에 대응하기

- 위해 시립병원 및 대형병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다.
- 의료정보 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은 대응구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상황 및 진료가능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단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장응급의료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 정보를 제공한다.
 - 광역의료이송체제
 - 광역이송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중증환자의 광역이송을 위해 통제단에 수용의료기관 확보를 요청한다.
 - 복지부 또한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수용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 이송거점 확보
 - 헬기를 이용한 이송인 경우 병원 주변을 확보하고 헬기지정 이착륙장을 기점으로 피해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중증환자의 이송인 경우, 가능하면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이송방법
 - 소방, 군부대 등의 응원헬기를 유효히 활용하고 도로가 복구되는 즉시 구급차 등의 육상이송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체처리 : 시체를 처리할 때에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적절히 대응한다.
 - 시체발견과 통보 : 재난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자는 즉시 현장지휘소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통보한다. 또한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반원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시체발견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 시체 분류·검시 : 시체의 분류 및 검시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 시체 검안
 - 검안은 경찰협력의사, 의료구호반 또는 의사가 실시한다.
 - 검안 후 필요 시 시체의 세정, 봉합, 소독 등의 처치를 한다.
 - 입관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탐색을 통해 발견된 시체를 시체안치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시체를 이송한 자의 이름, 주소, 시체를 발견한 장소, 시체의 이름,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확실히 경찰에 인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처리표 및 화장·매장 대장표를 작성하여 입관하고 이름, 번호를 기재한 이름표를 관에 붙인다.
- 신원확인
 - 경찰, 지역자치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시체의 신원확인을 하고 신원불분명자는 시체 및 소지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의 특징, 소지품, 복장, 특징 등을 기록한 후 유품을 보관한다.
 - 경찰은 신원불분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시체 인도
 - 경찰은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밝혀진 시체를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인도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현장지휘대장에게 인도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경찰의 시체인도 작업에 협조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시체의 분류·검시 및 의사에 의한 검안이 종료되고 신원이 명확해진 시체의 이름 등을 피난장소에 게시하여 유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유족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화·매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화장 및 유골의 가수장을 요청한다.
- 시체 관련사항 홍보 : 현장지휘대장은 사망자 수, 사망자의 이름, 신원불명 시체 수 등을 홍보할 때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 시체안치소 개설 : 현장지휘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체를 안치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하고 초등학교 부설 스포츠센터, 마을회관 등 시체안치에 적당한 시설을 선정하여 시체안치소를 확보한다.
- 부상자의 처리
 - 구급차는 안전지역에 주차, 요구조자는 들것을 이용하여 이송
 - 요구조자의 상태(기도, 호흡과 심혈관계 등) 파악
 - 중환자인 경우 즉시 응급처치실로 이송
 - 중환자는 아니지만 오염된 경우 요구조자의 옷을 제거하고 오염제거실이나 방사선 응급처치실로 이송

- 귀, 코, 입은 가능한 신속하게 검체면봉을 이용 검체 후 세정
 - 요구조자의 안정에 필요한 약물, 수액과 내과 혹은 응급처치
- 활동상 유의사항
- 철수 시에는 대응자원(대원 포함)의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철수
 - 2차 오염방지를 위해 고무장갑 등을 이용하여 신체나 의복이 오염자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오염자가 절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부위로부터 체내오염 확대를 막도록 유의, 필요 시 수돗물로 세정, 상처부위로부터 심장 가까운 부위에 고무끈 등으로 묶어 정맥의 흐름 막음
 - 오염자를 구급차에 수송하는 경우에 비닐, 모포, 고무포 등으로 오염자를 싸서 다른 것에 접촉되지 않게 함(단, 사용된 비닐, 모포 등은 지시에 따라 처리)
 - 피폭자는 피폭량이 소량이더라도 불안감을 가지므로 패닉방지에 주의
- 통제구역 내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현장에 있던 구조자들의 피폭검사 및 제염조치가 완료된 후 임시대피소로 이송한다.
- 검문소 설치
- 정해진 구역별로 검문소를 설치하고 긴급교통로 지정, 방재관계 공공시설에서 긴급교통로로 연결되는 도로확보, 긴급통행차량의 확인 및 현장홍보 등을 실시한다.
- 부서위치 결정 및 통제선 설치
- 풍상, 풍황 등 안전한 장소로 한다. 현장 도착까지 얻은 정보, 풍위, 풍속, 지형, 건물상황 및 독성가스, 가연성독성가스의 유동상황을 추측하고 유폭 및 폭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부서위치를 결정
 - 이미 화재위험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구역 밖에 부서
 - 유독물누설지역에 대한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범위에 출입통제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방통제선을 설치하여 2차 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 안전통제선 설정(경찰협조)

구 분	이격거리(m)	대피거리(m)
방사능물질인식 여부	25-50	100
화재발생/위험성 여부	-	300
폭발/폭발 위험성 여부	-	1000



마. 긴급복구부

- (시·도 / 시·군·구별 해당 업무 추진부서)와 연대활동
- 유출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제방을 설치작업 실시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모래, 흙 등으로 적절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 누출된 액체가 배수관, 하수도 또는 강에 스며들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위험물질 소량 유출시는 모래나 흙으로 유출된 제품 흡수조치
- 활동오염통제
 - 긴급오염통제반
 - 오염통제 자원의 조정 및 지원
 - 오염물질에 의한 감염병 발생 가능성 여부 파악 및 현장지휘대 응급의료 반에 정보제공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정도파악 및 완화

- 오염측정팀 임무
 - 잠재된 위험을 방지, 완화 및 최소화하고자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방출을 탐색, 파악, 저지, 청소, 처분하기 위한 총괄적 활동들을 조정, 통합, 관리한다.
 - 위험물질, 오염원, 또는 오염균 및 환경오염 통제와 관련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및 오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조정관으로 임명·파견한다.
 - 파견된 현장조정관들은 피해보고서와 평가결과 작성하여 보고 오염통제 반장에게 보고한다.
 - 필요시 수돗물, 지하수, 우물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 재난 대응 요원 및 긴급대피소 이재민에 대한 식수의 배분 및 대책을 조정 통제한다.
 - 오염 정보를 연락공보담당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 자원관리팀 임무
 - 오염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으로부터 지원 받은 장비를 조정 배분한다.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방재장비·약품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한다.
 - 오염통제 관련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공한다.
 - 방사능 오염에 대한 평가 및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인력, 오염도 측정 장비)을 확보 배분한다.
- 식품오염팀 임무
 - 피해 평가 및 보호 방법을 개발하고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가축 및 가금류의 처분을 지원한다.
 - 음식물의 오염정도를 평가하고, 식품오염에 의해 발생한 질병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시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환경오염통제
 - 재난현장 고용 및 개인 하수처리시스템 작동 확인
 - 피해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작동 불가능할 경우 하수처리 시설 실태조사 및 유출 하수 시료채취, 수질연구소 지원기관 분석 의뢰
 - 지원기관 분석자료 통보 시 환경오염통제팀 기준치 초과여부에 따른 후속조

- 치 실시
- 시민들의 오염물질 노출시간 단축을 위해 사고현장 오염물질 및 잔해물 신속 수거 및 처리
- 제염조치
- 제염을 수행하는 위치는 유독물위험구역 밖에서 하도록 하고 제염에 의한 2차 오염 피해가 없는 지역 선정
 - 제염은 분무 주수를 사용하여 한 부위에 10초 이상 방수하도록 하고 세정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대량의 물로 세정
 - 산성물질 제염에는 중화제살포기를 활용
 - 제염작업을 한 대원은 제염수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독물용 방호복을 착용
 - 신체방호조치를 해제할 때에는 위험구역 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호흡보호기는 가장 마지막에 벗는다.
 - 방호복 등을 벗은 후 양치질, 세안 및 기타 땀에 젖기 쉬운 부분을 세정
 - 소화 및 오염물 제거활동 시 유독물의 비산, 가연성 독성가스 확산 등에 주의
-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 사고 시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복구 활동을 실시한다.
- 복구 활동 시에는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실시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부득이 하게 현장의 소방대원이 실시할 경우 방호복 및 방호장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 오염통제반의 오염검사가 완료된 후 안전을 확인하고 복구작업을 한다.
-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위해 불꽃이 나는 장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 등을 자원집결지에 대기시키고 부여받은 임무 수행
 - 오염통제반장의 허가를 득한 구역에(오염의 우려가 없는 구역) 설치
 - 국지적으로 발생한 경우 대응구역별 소방서에 자원집결지 선정

2.4.3 대응단계별 주요활동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유독성,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일상적 출동대로 현장조치 종료 [운송사고]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나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지 않음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이 확인됨 ○ 수송차량 이동 조치 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불필요 ○ 수송로 변경이 불필요함 [저장시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나 누출가능성 없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지역 위험지도를 통한 방사능 오염지역 판단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긴급통신연락관계 유지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국지적 누출피해 발생, 기초행정단위 긴급사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운송사고]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 의심 ○ 수송차량 이동 조치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필요 ○ 수송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 ○ 사고발생지역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저장시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며 누출가능성이 있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필요 ○ 사고발생대상물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협)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사실 통보 • 소방본부 및 소방청에 대한 초기보고서 준비 및 제출 • 최소 30분 간격으로 시설 소유자/운전자로부터 최신 상황정보 수집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 공공정보센터의 가동 및 시설정보소유자(소유자, 관리직원, 안전담당직원)의 비상대기 고려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누출피해 발생 또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광역적 비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진행 중 ○ 사고발생 지역 및 주변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p>[저장시설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 사고가 시설내부에 국한되지만 외부배출 및 확산 가능성 ○ 지원기관의 협조가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사태 선포 고려 • 비상경고체계(비상방송시스템) 가동 준비 • 당해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경고방법 검토 및 임무분담 • 위험지역 내 주민에 대한 최신상황 및 방호조치정보 지속적 제공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긴급대피에 필요한 대응인력 비상근무 전환 • 부분적 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소방서, 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 시설소유자/운전자,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필요한 방호행동조치 검토 및 시행 • 현장대응요원 및 위험지역 출입허가자의 안전장구 수준 지정 및 출입허가증 발급 • 긴급피난 가능성 있는 경우 다음사항 결정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 주민 수, 긴급대피소 현황(개방된 대피소명, 수) - 긴급대피로,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 긴급대피의 가능성 및 기타 방호조치 등 피해예방활동에 대비토록 위험지역 내 주민에 긴급홍보 • 비상대응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료 기록 유지
대응3단계	<p>○ 정의 : 광역적 누출피해, 유해화학 물질의 비산 또는 폭발·화재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고 중앙통제단이 전면 가동되어야 할 때.</p>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위험반경 내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p>[저장시설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시설주변의 위험반경 내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대책본부) • 모든 상황분석자료와 메시지가 도상에 표시되고 기록 확인 • 현장지휘대, 지원기관, 시설소유자/운전자, 기타 주요 관련 공무원과의 통신확립 및 유지 • 모든 대응요원에 비상소집 및 임무 부여 • 지역지도, 항공정찰정보, 위성정보의 취합 및 분석 • 위험반경 내 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 지역 주민의 방호조치를 지도하기 위한 경고시스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기타 보조 경고수단 강구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대중정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소, 통제단, 통합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안전경계활동 • 방호조치가 필요한 정확한 위험범위 확인 • 다음의 방호조치 이행(내·외부 긴급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긴급대피소 개방, 교통통제 확인 - 독자적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주민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 특별시설(요양소, 학교, 병원 등) 수용인원의 피난 지원 -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설치 - 대피장소 및 지역에 안전 제공 • 통제단과 대중정보센터는 다음의 최신정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경로, 긴급대피소 명 및 위치, 긴급대피 주민의 수 - 위험지역 출입 통제소 및 도로와 이용가능한 도로(통로) 변경사항 - 유언비어 내용 및 확산범위, 위험반경 및 지리적 범위 • 위험지역 통과 철도, 항공, 선박 통행금지 및 시설 폐쇄 • 현장응급의료소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제공 • 위험 경계지역 내 출입 통제소 설치

2.4.4 비상경고시스템 가동

- 기상청의 정보 등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방사능 물질) 비산 등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2차 재난의 우려가 있을 경우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신속히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 민방위 경보통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우려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확성기, 사이렌 등으로 비상경고를 실시한다.
- 제○대응구역의 △△ 특수 다중이용시설(비상경고방송을 듣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통지조치를 취한다.
-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시 피해우려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염검사 등을 받은 후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통제반장·오염통제반장과 협의하여 주민의 오염검사소 등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 록

1. 각종현황
2. 서식
3. 참고자료

【각종 현황】

- 재난사고명 -
사·군 자원집결지 운영(안)

□ 재난개요

○ (일 시) 2020. 00. 00.(). 00:00 ~

○ (장 소)

○ (원 인)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00명(중상 00명, 경상 00명, 사망 00명)

- 재산피해 :

□ 00소방서 대응상황

○ (00:00) 대응2단계 발령

○ (00:00) 00시·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및 운영

○ (00:00) 경남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및 통제단장 지휘권 선언

○ (00:00) 대응3단계 발령,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동원령 요청

* 동원령 3호 : 시도 시도 / 동원령 2호 : 시도 시도 시도 / 동원령 1호 : 시도 시도 시도

□ 자원집결지 지정 ⇨ 지정장소 (주소 :)

1번

자원집결반 운영(예시)

□ 자원집결반

○ (반 장) 소방O 000(010-1234-5678, abc@koera.kr)

○ (반 원)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1번

자원집결반 운영(예시)

□ 자원집결반

- (반 장) 소방O 000(010-1234-5678, abc@koera.kr)
- (반 원)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 (세부임무)

① 자원집결지 ⇄ 소방청·경남소방본부 간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 소방력 도착 시 도착유무 보고 등 상황전파 : 자원집결반장

※ 자원집결반장 ⇄ 소방청(지휘작전실·119종합상황실), OO(현장지휘소·OO119상황실) 보고

② 지원 사·도 별 소방력 동원* 현황 및 예상 도착시간 파악

- 동원령3호·1호 : 소방O 000 / 동원령2호 : 소방O 000

* 동원령 3호 : 시도 시도 / 동원령 2호 : 시도 시도 시도 / 동원령 1호 : 시도 시도 시도

③ 무선통신체계 및 차량상태 관리·점검

- 지원 사·도 별 책임관 주재 무전기 점검(사·도 별 광역 작전망), 소방차량 연료량 및 차량 이상여부 확인 ⇒ 무전기 활용(전국단위 공통망), 차량 점검상태 및 무전기 점검결과 통보 : 소방O 000

* 결과 통보 예시) 자원집결반! 충북 펌프차량 3대 차량 및 연료량 상태 양호, 무전기 상태 이상없음

□ 재난현장 및 자원집결지 위치



< 재난 발생위치 > OOIC에서 OO분거리(00km)



< 자원집결지 > OOIC에서 OO분거리(00km)

2번

자원분배반 운영(예시)

□ 자원분배반

- (반장) 소방O 000(010-1234-5678, abc@koera.kr)
- (반원)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 (세부임무)

① 동원 기관별 활동구역 지정, 소방용수 및 주유시설 파악

* 동원령 3호 : 전남·전북, 동원령 2호 : 충남·대전·세종·충북, 동원령 1호 : 경기·경북·대구
- 재난대응 작전계획 수립 : 자원분배반장, (소방O 000)

< 재난대응 작전도 >



동원령	시·도 별	소방력현황	예상도착시각	세부활동 구역	책임관	지리안내
3호	부산	000명/00대	15:30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	장보고	의용소방대
	울산	000명/00대	15:50	전면도로 교통사고 대응	000	000
2호	전남	000명/00대	17:50	차량추락 대응	000	000
	대구	000명/00대	17:40	산불 대응	000	000
	전북	000명/00대	17:40	산불 대응	000	000
	경북	000명/00대	18:10	산불 대응	000	000
	광주	000명/00대	17:40	00 대응	000	000
1호	대전	000명/00대	18:40	00 대응	000	000
	충남	000명/00대	18:30	00 대응	000	000
	충북	000명/00대	18:30	00 대응	000	000

- 활동구역 별 인근 소방용수 시설 및 주유시설 확인 : 소방0 000

< 00재난현장 인근 소화용수 시설 위치 >



종별	호수	번지	인근건물위치	비고
지상식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빌라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페인마트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마트 옆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경찰서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 편의점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네일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초 정문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0102동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0전골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생태탕 앞	
지하식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0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0 정문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작업복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마트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주민센터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교회 앞	
	0000	000시(군) 000로 00-00	0000 000	

㉓ 시도 별 지휘관 간 연락체계 구성 등

- 지원 시·도 별 책임관, 차량 선탑자 등 상시연락체계 구성 및 지리안내자 지정(의용소방대 활용) : 소방0 000

3번

행정지원반 운영(예시)

□ 행정지원반

- (반 장) 소방O 000(010-1234-5678, abc@koera.kr)
- (반 원)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소방O 000(010-1234-5678)
- (세부임무)

① 동원 소방력 주차장소 및 숙박시설 마련

- 주차장소 및 인근 숙박시설 확인 : 행정지원반장, (소방O 000)

< 00재난현장 인근 주차장 및 식당·숙박업소 >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식당	000 감자탕	000 00로 739	055-941-0000
	00식당	000 00로 735	055-944-0000
	00식당	000 00로 739	055-941-0000
	00식당	000 00로 443	055-941-0000
	00식당	000 00로 67-1	055-941-0000
	00식당	000 00로 12	055-941-0000
주차 장소	00 0000(소방차량 주차장소)	000 00로 152번길 53-84	055-613-0000
	00 0000(소방차량 주차장소)	000 00로 152번길 53-27	055-000-0000
숙박 장소	00 모텔	000 00로 212번길 14-11	055-944-0000
	0000	000 00로 212번길 14-15	055-945-0000
	00모텔	000 00로 212번길14-19	055-943-0000
	00모텔	000 00로 212번길 13-8	055-945-0000
	00모텔	000 00로 232번길 13-5	055-269-0000

② 소방장비 고장발생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 유사시 활용가능 장비 확보 및 차량정비업체 확인 : 소방0 000

< 00재난현장 인근 차량정비업체 >



	업체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00특장	000 00로 764-34	00-000-000	특장
2	0000 서비스	000 00로 663	00-000-000	일반
3	00-000-000 전문점	000 00로 485	00-000-000	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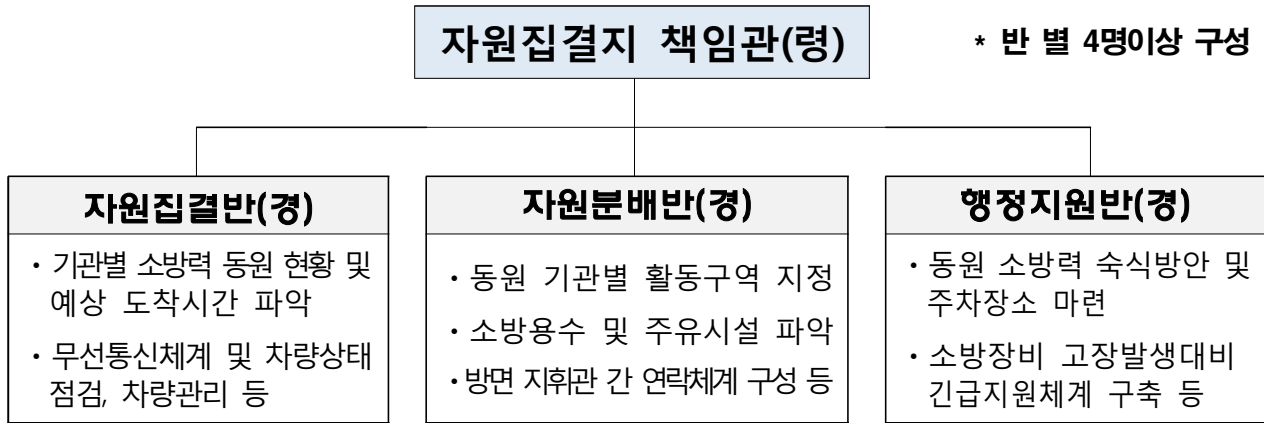
< 식당 및 숙박비용 정산 >

- ① 식수대장 및 숙박시설 이용대장 작성 후 경남소방본부 일괄결제
- ② 지원 시·도 별 식비 및 숙박비 결제 후 재난 상황종료 후 결제금액 청구

□ 소방본부 및 관할소방서 통제단 담당자

- (소방본부) 소방0 000, 소방0 000
- (관할소방서) 소방0 000, 소방0 000, 소방0 000
- 비상상황 발생시, 도119종합상황실 즉시 연락

【서식 1】



《 각 지원기관 지휘소 》

지원기관	위치	전화번호

【서식 2】

《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위치	전화번호

【서식 3】

《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

상황실	주소 / 위치	연락 이름과 전화번호

【서식 5】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기관임무 재난대응기능	소방본부	경찰청	건설교통국	보건소	000부대	환경관리청									
	접근통제					지	지								
고립거주자 구조(구호)	책	지													
심리 상담				책											
피해 평가	책				지										
쓰레기 제거			지												
비상방송	지					책									
긴급대피															
식품검사	지				책										
홍수감시															
기관간 협조			책												
대중 급식/보건															
실종자 구호															
관련 공무원 비상연락	책														
현장지휘소	책				지										
비상전력/조명	지														
식수제공			지												
교통차단(격리)	지														
안전점검						책									
모래자루/제방쌓기/배수		지													
탐색과 구조															
눈 제거						지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 운전자 구원				지											
긴급 대피소					책										
태풍 기상감시		지													
교통통제															
구호시설 협조						지									
차량제거			지												
희생자 신원확인															
물 사용 제한				지											

【서식 6】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2 (야간) 010-9898-2320	F. 02-397-7292
	방재환경과	02-397-7352 (야간) 010-9898-2320	F. 02-397-736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	상황실(24시간)	080-004-4949	F. 042-868-0406
	방사선보안대책실장	042-868-0146	휴대폰 자동연결
	방사선원보안대책실	042-868-0027	F. 042-868-0356
	당직실(야간)	042-868-0402	F. 042-861-1700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상황실장(24시간)	080-002-0049	휴대폰 자동연결
	테러및방호상황실(주간)	042-860-9782	
	당직실(야간)	042-860-9800	F. 042-860-9849
한국원자력 의학원	사고접수(24시간)	02-970-2300	
	비상진료센터(주간)	02-3399-5931	
	당직실(야간)	02-970-2121	F. 02-970-2404
방사선 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	031-289-3560	F. 031-289-3569
	24시간 응급	031-719-8780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111(신고센터) 02-572-3023	F. 02-572-5671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	02-2008-6119 02-2008-6340	F. 02-3412-8064
경찰청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112 02-3150-2461	02-3150-1234 (치안상황실)

【서식 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예시)

기관단체명 재난대응 기능	소방본부	경찰서												
접근통제	책													
사고대응 지원														
보조동력		책												
사건분류														
현장지휘소														
제한														
봉쇄														
청소														
피해평가														
오염제거	지													
환경/보건 평가														
피난/내부 보호														
음식/농작물/동물보호														
급식														
유해화학물질 확인	지													
지휘														
기상정보														
실종자 구호														
대기/물 오염 감시		지												
영안실 서비스		지												
공공 용수 보호														
기록유지		지												
복구/재 점유	지													
루머통제														
안전														
대피처/피난센터														
특별한 대중														
교통수단														
교통통제														
희생자 수송	지													

책=책임기관 지=지원기관

【서식 8】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대 상	위 치	물질명	양	
ABC 화학 회사	0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 빌딩 옆)	Chlorine	5,400,000 ℓ	
...	

※ 특별한 대응방법 및 절차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및 지역도 포함할 것

【서식 9】 긴급구조대응지침서

재 난 명	
작성일시	
대응기간	
일반대응목표	
대응지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상황(해결해야 할 문제 위주 개조식 기술) 2. 임 무(해결해야 할 하위 대응목표) 3.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 조치사항 - 12시간 예측에 따른 조치사항 4. 대응지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응지침 - 문제점 - 개 선 5. 필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단체 현장대응자원 협조사항 - 긴급대피소 협조사항 - 시설, 기타 물품 협조사항 6. 통신(음성전달, 데이터통신, 항공통신, 무선) 7. 일기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상상태 - 24시간 후

【서식 10】 상황예측 매뉴얼

《 상황예측 매뉴얼 》

서식1-2

계획부는 변화하는 재난상황을 예측하여 현장지휘대장, 자원지원부장, 긴급복구부장, 총괄지휘부장에게 제출한다. 계획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예측 지침을 이용한다.

1.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가?
 - 호전되는가?
 - 악화되는가?
 -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가?
2. 수색 및 구조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 피해 도로 긴급복구 소요 시간은?
 - 교량이 파손되었나?
 - 긴급구조 및 대피장소에 가기 위한 대체 도로는?
 - 주요 자원의 현장동원을 위한 대체 도로는?
4. 전기, 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활동과 소요 시간은?
5. 긴급복구로 인한 잔해물 적치장소는? 잔해물 중 위험물질은 없는가?
6. 긴급대피소 및 대응자원의 숙소가 필요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서식 11】 상황 요약 절차

《 상황 요약 절차 》

서식1-3

1. 계획부 각 반별 운영요원을 임무별로 조직한다.
 - 상황분석반 :
 - 상황보고반 :
 - 작전계획반 :
 - 메시지센터 :
2. 지역 지도에 재난발생 지점을 모두 표시한다.
3. 현장지휘대장과 만난다.
4. 현장지휘대장에게 대응지침서를 전달한다.
5. 연락공보담당에게 초기(1차) 브리핑 자료를 제공한다.
6. 연락공보담당은 통제단장에게 브리핑 계획을 보고하고 초기 브리핑을 실시한다 .
7. 현장지휘대장, 자원지원부장, 긴급복구부장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8. 브리핑을 한다. 주요 요점은,
 - 재난(사고) 위치
 - 재난의 성격(화재, 위험물질 등)
 - 인명구조 및 구급(응급의료) 상황
 - 12 시간 이후에 대한 상황평가(예측)
 - 자원배치 현황
 - 유관기관 상호협조
 - 건의 및 중점지원사항
10. 현장 대응 계획을 준비한다.
11. 12시간 예측을 준비한다.

【서식 12】 상황 요약 양식

《 상황 요약 양식 》

서식1-4

1. 현 재난 상황/위험 분석

2. 조치상황

3. 상황예측(12시간)

4. 필요 자원

5. 장기적 대응목표

【서식 13】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부 서 별	직 책	성 명	핸 드 폰	비 고

【서식 14】 주요기관 목록

조 직	연락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 15】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주파수	주 소	전화번호	보도국 전화번호
.....*				FAX 뉴스취재차량:
.....				FAX 뉴스취재차량:
.....				

【서식 16】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 방송국)

방송국	채 널	주 소	보도국 전화번호	보도국 팩스번호

【서식 17】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언론사(신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고

【서식 18】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월. 일	시간	TV	라디오	신문	기타	언론매체 전화번호	기록자	비고

【서식 19】 통제단 주요 지휘관 비상연락망

연번	소속	직책	임무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1							
2							

【서식 20】 자원동원매뉴얼

- 통제단장에게 자원동원부서 상황을 보고하고 초기 지침서를 입수 후 자원동원부 요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을 할당한다.
- 활동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 전반적 자원동원 연대 조직을 확립한다.
- 통제단 가동초기 1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휘대장, 대응계획부장, 긴급복구부장과 만난다.
- 통제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문제점을 검토한다.
- 현장대응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 계획된, 예상된 작전에 필요한 자원동원, 업무지원 사항을 확인한다.
- 요청된 자원동원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한다.
- 재난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을 확립한다.
- 필요한 모든 일지를 기록하고 작성 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자원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서식 21】 피해상황분석편람

● 사망(부상)자 피해상황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망위치	사망(부상)원인	부상부위	비고

● 부동산 피해상황

피해물건명	피해의종별 (소손,수손,기타)	수량 또는 면적	경과년수	비고

● 동산 피해상황

품명	수량	피해액	피해의종별 (소손,수손,기타)	피해장소	비고

【서식 22】 최초보고서

수 신 :

재 난 명 :

1. 사고개요

- 일 시 : (접수 : , 출동 :)
- 장 소 :
- 원 인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사망 , 부상 , 실종)
 - 재산피해 : 원 (건물 , 기타)

2.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의료기관 명,
공무원 명, 자원봉사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중장비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3. 지원 및 조치사항

-
-
-

【서식 23】 자원요청서

수신 : 기관장

제목 :

1. 사고개요

- 일시 :
- 장소 :
- 사고내용 :

2. 지원요청사항

- 인원 :
- 장비 :
- 물자 등 :

3. 협조사항

- 지원시기 :
- 지원지역 :
- 지원사유 :
- 행동요령 :

4. 행정사항 : ○○기관 인원 및 장비 등을 ○○년○○월○○일 ○○시 까지
○○장소로 집결토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함양군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4】 대중정보보고서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1)
2)
 - 재산피해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 기 타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공무원 명, 기타 명)
장 비 : 대(구조차 대, 소방차 대, 특수차 대, 헬기 대, 기타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서식 25】 피해상황 최종보고서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p>1. 사고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 장 소 : ○ 원 인 : ○ 내 용 : <p>2. 피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원(동산 원, 부동산 원) <p>3. 동원인원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공무원 명, 기타 명)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p>4.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5. 환자이송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 명(남자 명, 여자 명, 미상 명) ○ 부상자 : 명(중상 명, 경상 명) <p>※ 함양성심병원 명. 경상대학교병원 명. 한마음연합의원 명. 제일병원 명. 고려병원 명. 함양장례식장 명.</p>	

【서식 26】 피해상황분석관 표준작전절차(통제단 반별 임무)

- 재난발생 우려시 사전위험성 분석활동 및 재난 초기조사
- 피해상황 정보의 조사·수집·전파
- 상황 및 분석보고, 정보의 표시, 기록유지 등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확보한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 및 종합분석
-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상황분석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
-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
- 연락공보 담당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긴급구조대응 활동과 관련된 사항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개선사항에 대한 제한 포함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비디오, 사진 등을 보관
- 소방본부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관련 자료정리

【서식 27】 사상자 조치상황

- 사망자 : 총 명 (남 , 여)
- 안치사항

안치장소	사체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사망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안치장소	비고(주소,직업)

- 부상자 : 총 명 (남 , 여)
- 입원조치사항

병원별	부상자 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 부상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입원병원	비고(주소,직업)

【서식 28】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일자, 시간별	추진내용	비고

《 응급의료소 운영상황 보고 》

- * 사망자 수
- * 병원시설 피해상황
- *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 * 특수재해시 현장활동요원들의 보호장구 착용수준 및 유의사항
- *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비 의료자원 현황
- * 사망자 명단

【서식 29】 통제단 보고양식

《 응급의료소 운영상황 보고 》

- * 사망자 수
- * 병원시설 피해상황
- *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 * 특수재해시 현장활동요원들의 보호장구 착용수준 및 유의사항
- *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비 의료자원 현황
- * 사망자 명단

【서식 30】 자원동원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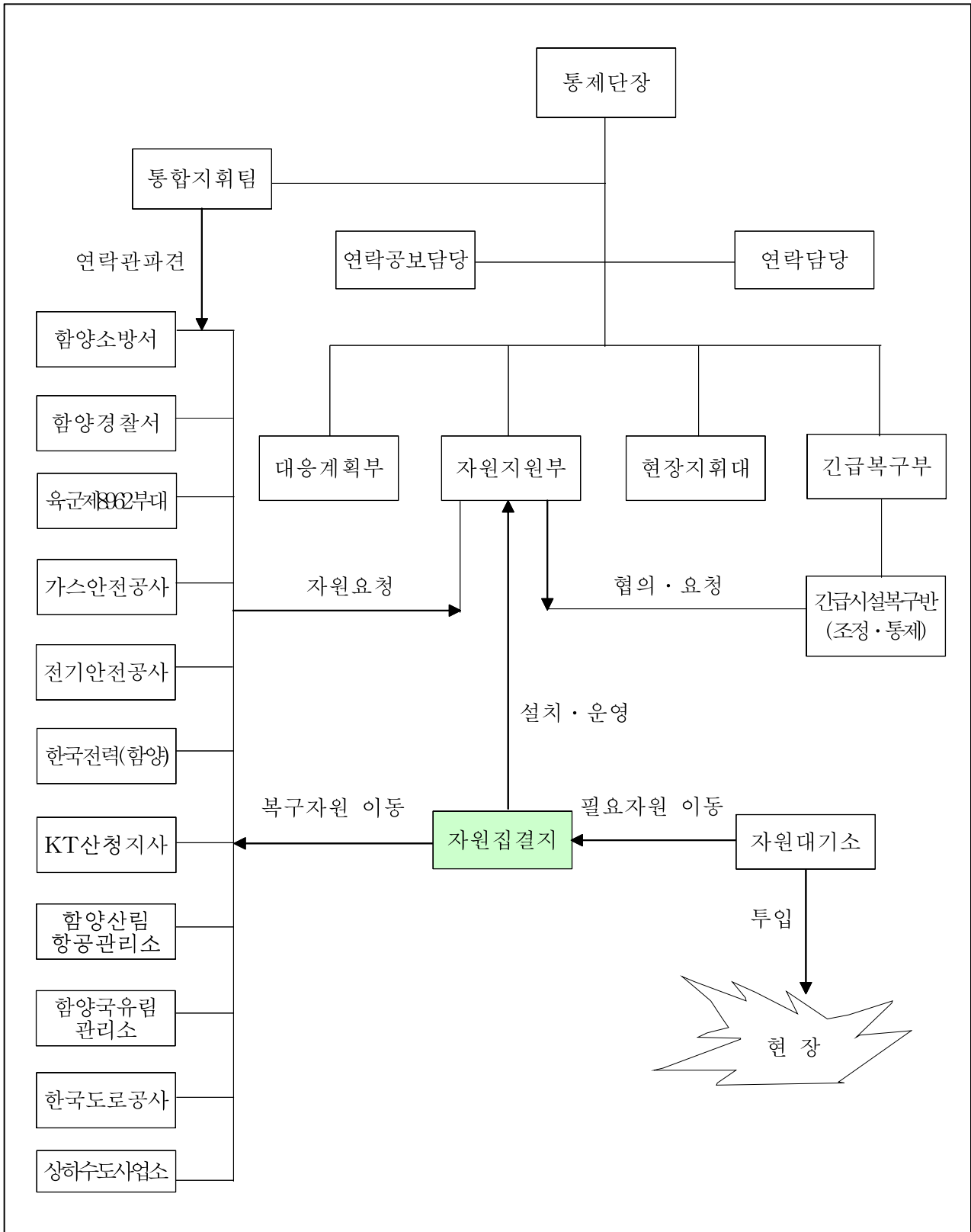
자원현황

1. 긴급구조지원기관 구성 - 경찰, 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2. 긴급동원 인력 /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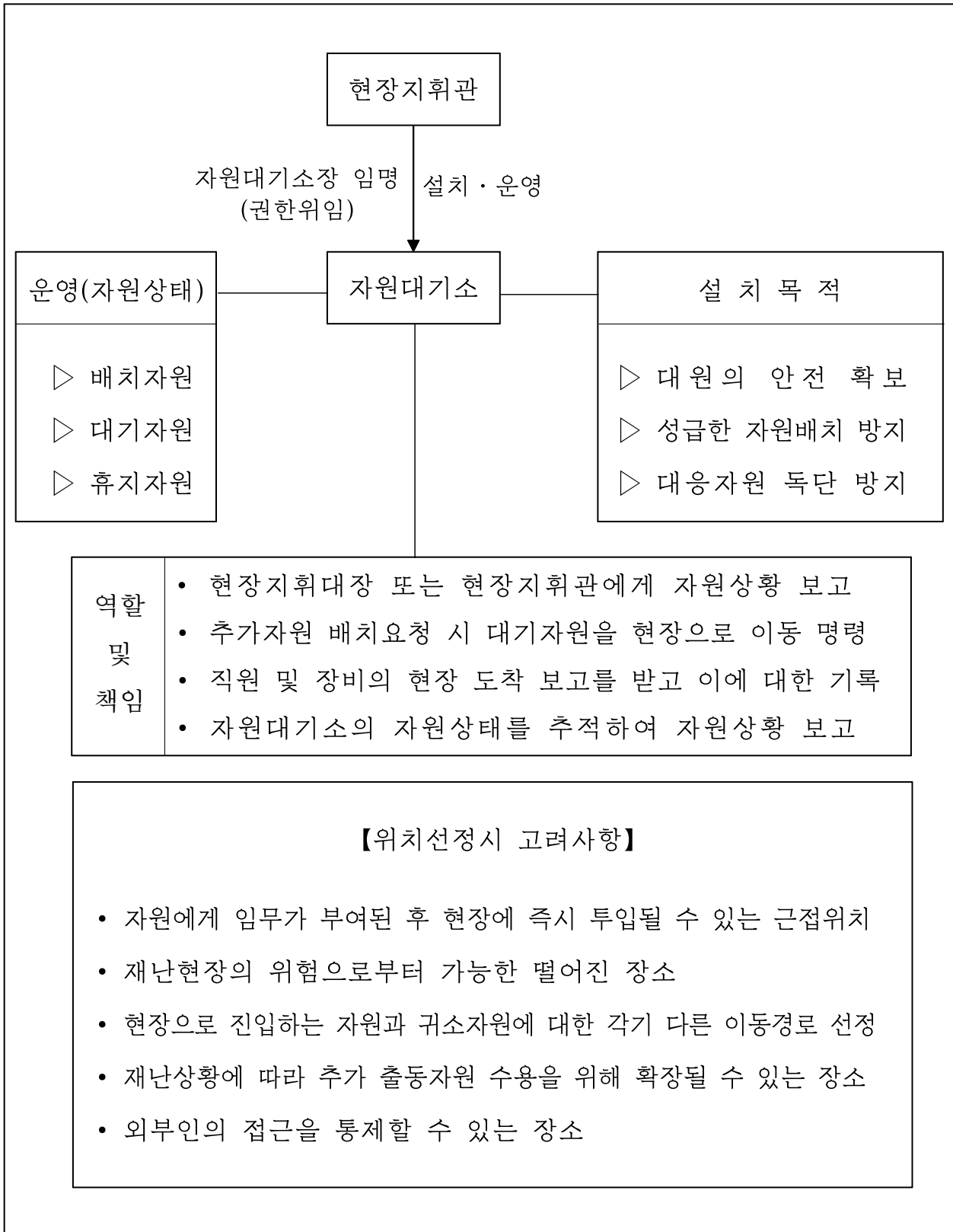
총괄

연 번	보유 기관명		인원	장 비 (종 / 점)						기 타
				계	차량	인명 구조	응급 의료	구호 물자	복구 장비	
	계									
1	함양군보건소									
2	함양경찰서									
3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4	KT산청지사									
5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6										
7										
8										

【서식 31】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서식 32】 자원대기소 설치절차



【서식 34】

동원인원현황

2019. . .

기관별	업무별	계	구조	구급	진압	행정			기타

【서식 35】

동원장비현황

2019. . .

기관별	장비	계	지휘차	구조차	공작차	구급차	조명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중장비	굴삭기	행정차	기타
	계															

【서식 36】

장비불출현황

연번	품명	규격	수량	수령자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서식 37】

동원인원 및 장비현황

○ 인원(당일/누계)

계	소방	군청	경찰	군부대	적십자	민간인	기타
/	/	/	/	/	/	/	/

○ 장 비

구분	계	구조	공작	구급	소방차	중장비	화학차	기타
계	/	/	/	/	/	/	/	/
소방	/	/	/	/	/	/	/	/
시	/	/	/	/	/	/	/	/
경찰	/	/	/	/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8】

긴급구조지원기관, 단체 출동인원 및 장비현황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출동인원 및 장비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역할	비고
		인원	장비				

【서식 39】

유관기관별 출동인원 및 작업일지

기관·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시간)	출동인원 및 장비		지휘관성명	비고
		인원	장비		

【서식 40】

구조대원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속 (구조대명)	구조대장	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서식 41】

유관기관 통보현황

연번	유관기관명	통보시간	송화자	수화자	비고

【서식 42】

첨단장비 동원현황

연번	반입일시	소속(소유자)	장 비 명	장비용도	비 고

【서식 43】

현장지휘소 전화번호 현황

연번	반 별 (유관기관)	경 비	일 반	휴대폰	호출기	F A X	비고

【서식 44】

무전기 지급 현황

연번	지대상처 급처	지일 급시	반납 일시	무전기 고유번호	형식	대수	채널	수령자	비고 (호출명)

【서식 45】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기관명	건축분야	토목분야	위험물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비고

【서식 46】

재난현장 안전진단 대장

연번	소속	성명	진단결과	조치사항

【서식 47】

재난현장 경리대장

년 월 일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비고

【서식 48】

재난정보 관리대장

발생일시	장소(범위)	원 인	피 해 상 황		추가위험 요 인	비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서식 49】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장비지원 신청서</p> <p style="margin: 0;">(NO)</p> <p style="margin: 10px 0 0 20px;">1. 신청자 소 속 :</p> <p style="margin: 0 0 0 40px;">작업장 :</p> <p style="margin: 0 0 0 40px;">직 위 :</p> <p style="margin: 0 0 0 40px;">성 명 : (인)</p> <p style="margin: 10px 0 0 20px;">2. 신 청 장비명 :</p> <p style="margin: 0 0 0 40px;">수 량 :</p> <p style="margin: 10px 0 0 20px;">3. 현장지휘본부 확인 : (인)</p> <p style="margin: 0 0 0 40px;">※ 일별로 편철관리할것.(24:00기준)</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장비지원 신청서</p> <p style="margin: 0;">(NO)</p> <p style="margin: 10px 0 0 20px;">1. 신청자 소 속 :</p> <p style="margin: 0 0 0 40px;">작업장 :</p> <p style="margin: 0 0 0 40px;">직 위 :</p> <p style="margin: 0 0 0 40px;">성 명 : (인)</p> <p style="margin: 10px 0 0 20px;">2. 신 청 장비명 :</p> <p style="margin: 0 0 0 40px;">수 량 :</p> <p style="margin: 10px 0 0 20px;">3. 현장지휘본부 확인 : (인)</p> <p style="margin: 0 0 0 40px;">※ 일별로 편철관리할것.(24:00기 준)</p>
--	---

【서식 50】

소모품 불출 현황

연번	불출일시	품 명	수 령 자		비 고
			소 속	성 명	

【서식 51】

상 황 일 지

(반)

2019. . .

일 자	시 간	조 치 사 항	비 고

【서식 52】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발 신 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서명	비고

【서식 53】

문서등록대장

등록번호	결재일자	분류번호	제목	시행				비고
				일자	수신처	방법	문서관인 확인	

【서식 54】

병원별 수용능력표

연번 (관리번호)	병원명	사상자 수용능력					비고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계	

【서식 57】

병원영안실 현황

연번	구 별	병 원 명	총 안치수	현 안치수	잔 안치수	여 수	전화번호	비고

【서식 58】

발 굴 대 장

연번	일 시	성 명 (남,여)	발 굴 장 소	구조대	인수자	비고 (특징)

【서식 59】

구급차 배치 현황

위 치	소 속		인 원	종별(특수,일반)	비고
	서 명	차량번호			
	계				
	계				

【서식 60】

실종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	실종일시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신고자		실종자 특기사항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서식 61】

헬기 인명구조 활동대장

기관명	출동일시	구조·구급 장 소	구조인원				이송병원	비고
			계	중상	경상	기타		

【서식 62】

자원봉사자 현황

연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단체	전화번호	비고

【서식 63】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연번	성명	배치장소	배치시간	철수시간	활동임무	비고

【서식 64】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 소모품)

연번	일시	품명	수량	기증자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식 65】

구호물자 접수대장

구분 기관명	계	천막 (조)	침구류 (점)	취사도구 (점)	의류 (점)	생필품 (점)	기타	비고

【서식 66】

이재민 구호대장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수용장소	지원물품		
						담요	의류	기타

【서식 67】

구호물자 접수대장

구분 기관	계	천막	침구류	취사도구	의류	생필품	기타

【서식 68】

통제선 출입허가증 발부대장

연번	일시	소속	성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목적	관련부서	비고

【서식 69】

공동취재단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국 적	비 고
					남	여		

【서식 70】

보도 비표 발급대장

연번	비표번호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서식 71】

긴급구조활동 보도(홍보) 대장

일 시	보도기관	보 도 내 용	자료제출자	비고

【서식 72】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월. 일	시간	TV	라디오	신문	기타	언론매체 전화번호	기록자	비고

【서식 73】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수정요구서 제출일자	장	절	페이지	수정일자	비 고

【서식 74】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

연 번 (관리번호)	계획사용기관 및 사용자	배 포 수	발 송 일	비고

【서식 7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연 번 (관리번호)	계획사용기관 및 사용자	수 정 페이지	발송·문서 등록번호	발 송 일	비 고

【서식 76】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① 0000(기관명)

① 일반현황 ※ 재난안전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 -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지원활동 가능 재난유형	※ 작성요령 : 참여 가능한 재난유형 모두 기재 예) 지진, 태풍, 홍수, 대설, 한파, 폭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전기, 가스, 통신, 수도, 감염병, 기타()																	
재난현장 에서의 주요기능	※ 작성요령 : 아래 예시사항 참조 기재(중복 가능) - 피해상황분석, 인명구조(붕괴, 수난, 산악, 화생방), 화재진압, 응급의료, 오염제 독, 긴급복구(도로, 통신, 전기, 수도, 가스), 긴급구호, 기타() <예시 : 해당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는 주요기능과 지원능력 비중을 명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주요기능</td> <td>인명구조 (산악)</td> <td>산불진화</td> <td>긴급구호</td> <td>긴급복구 (도로)</td> <td>피해상황 분석</td> <td>응급의료</td> <td>기타</td> </tr> <tr> <td>지원능력</td> <td>1순위</td> <td>2순위</td> <td>3순위</td> <td>4순위</td> <td>5순위</td> <td>6순위</td> <td>7순위</td> </tr> </table>		주요기능	인명구조 (산악)	산불진화	긴급구호	긴급복구 (도로)	피해상황 분석	응급의료	기타	지원능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주요기능	인명구조 (산악)	산불진화	긴급구호	긴급복구 (도로)	피해상황 분석	응급의료	기타											
지원능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긴급대응 협력관 지정	※ 재난법 제52조2 지원기관 소속 재난관련 업무 부서 책임자 - 지정일 :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 - 사무실전화 : 휴대전화 :																	
긴급구조 통제단 파견 연락관 지정	※ 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관련 업무 실무 책임자 - 지정일 :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 - 사무실전화 : 휴대전화 :																	
상황실 (당직실)	- 부서(기구)명 : (근무형태 : 주간 00명, 야간 00명) - 전화번호 : Fax :																	
재난대응 관련부서	※ 작성요령 : 재난대응 관련부서가 2개부서 이상일 경우, 관련부서 정보 추가 1) 부서명 : (관련사무 :) - 담당과장 : / ☎ : Hp : - 담당팀장 : / ☎ : Hp : - 담당자 : / ☎ : Hp :																	
우리 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현황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관련업무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또는 담당업무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② 전문인력 : 총 명 ☞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인력

구 분	보유자원 현황	비 고										
가. 긴급구조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 총 명 ※ 기관 전체 근무인원 : 명 (작성예시) - 세부내용 명시(수료한 교육기관, 부서별 수료인력 등) - 기관 근무인원 대비 교육수료자 비율(%) - 전년 대비 이수자 증가율(%) - 재난관련업무 담당 부서 근무인력 대비 교육 이수자 비율(%) ※ 긴급구조관련 교육기관 : 중앙 및 지방소방 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지정된 교육기관 에서 수료한 경우를 말함	당해연도 이수자 수료증, 확인증 등 관계서류 첨부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총 명 - 세부내용(종사 기간별, 부서별 종사 인력 등) - 기관 근무인원 대비 3년이상 종사자 보유율(%) - 전년 대비 3년이상자 증가율(%) <table border="1" data-bbox="483 994 1131 1093"> <thead> <tr> <th>기간</th> <th>3년이상</th> <th>5년이상</th> <th>7년이상</th> <th>10년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인원</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재난관련업무 담당 부서 근무인력 대비 3년이상 종사자 비율(%) ※ 3년 이상 종사자 중 실제 근무 부서 작성 - (예시) 사고점검처 00명, 재난관리팀 00명 등	기간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인원					복무 담당자 확인 증빙자료
기간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인원												
다. 긴급구조 관련 해당 분야 자격* 보유자	• 총 명 - 세부내용(자격증별, 부서별 자격증 보유 인력 등) - 기관 근무인원 대비 자격 보유자 비율(%) - 전년대비 자격 취득 증가율(%) - 재난관련업무 담당 부서 근무인력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 -(예시) 응급구조사, Open Water Scuba Diver, 전기분야 기술사 등	자격증 사본 첨부										
라. 교육이수, 3년이상, 자격보유 중복자	• 총 명 - 가+나 : 명 / 가+다 : 명 - 나+다 : 명 / 가+나+다 : 명	재난관련 업무 부서 담당자 확인										

③ 시설·장비·물자 : 중 점 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및 사전 지정 시설·장비·물자

구 분	보유자원 현황	비 고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 구조지원 요청 접수·처리가능 상시 운영 시설	(작성예시) - 상황실 : 보유장비 - 당직실 : 보유장비 ...	
나.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 유선전화 : 대 - 위성(무선)전화 : 대 - 무전기 : 대 - 아마츄어 무선함 : 대 - 기타* 장비 : 대 * 기타의 경우 보유장비 중 긴급구조 장비를 말함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유형 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물품	- 화학보호복 : 벌 - ○○측정장비 : 대, - 굴삭기 : 대, 크레인 : 대 - 기타 : 대	시설·장비·관리현황 첨부
라.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 항공기(헬기포함) : 대 - 버스 : 대, - 트럭 : 대 - 기타 : 대	
마.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 천막(m× m용) : 개 - 모포·담요 : 장 - 급식차량 : 대 / 장비 : 셋 등	
바.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 항공기, 차량 정비창 : 개소 - 장비 정비실(소) : 개소 - 유지·보수·정비 필요물자 : 점	

※ 전문인력 및 자원의 특성에 따라 별도작성 첨부 가능

④ 운영체계 ☞ 재난현장대응 전문인력, 시설·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 재난안전법 제52조2 긴급대응협력관 수행 업무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내용 * 긴급구조대응계획 미수립 기관은 별도의 재난대응계획 및 대응매뉴얼 제출	긴급구조대응계획 첨부
나.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 재난현장 대응조직 편성 및 운영체계 구축 내용	구축 증빙자료
다. 재난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파악과 효율적 배치·관리체계	- 재난현장 자체 자원관리체계 구축 내용	구축 증빙자료
라.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 현장연락관 파견 사전 지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운영 사항	지정 및 운영 관련서류
마. 비상연락망 체계	-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도 첨부

※ 나·다·라·마 항목 내용이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된 경우 긴급구조대응계획만 제출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을 유동
유 동
지로 훈련 실시(참가)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활동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가. 시·도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 및 자체훈련 실시	- '18년도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 현황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물자 지원 현황 운영체계 가동내용, 훈련시 임무 등 활동내역) - '18년도 자체훈련 실시 현황 (동원 인원, 장비 등 훈련 내용)	훈련참가 자료 훈련 계획 및 결과 첨부
나. 실제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 활동 실시	-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현황('18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물자 지원 현황 운영체계 실제 가동내용, 재난현장 임무 등 활동내역)	대응활동 현황 및 활동내역 첨부

⑥ 기타(작성기관 의견)

※ 작성요령 :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개선의견, 기관간 협조 및 요청사항,
기관 애로사항, 긴급구조대응활동 우수 사례 등 기재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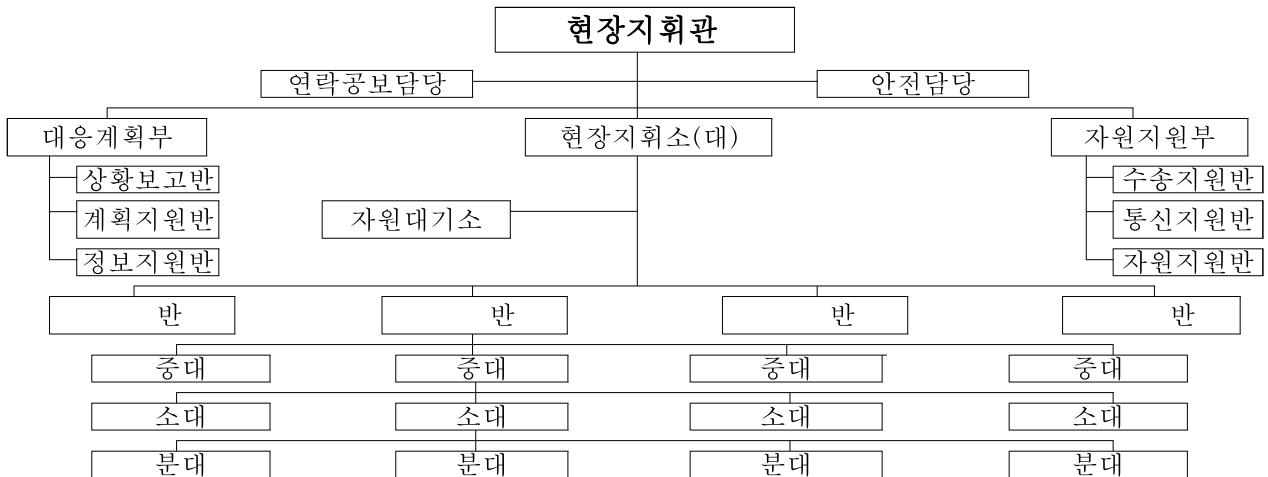
참 고

【참고 1】 표준현장지휘체계

3.4.1 기본지휘구조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재난시 긴급구조기관 및 각 지원기관의 일상적 행정조직을 대체하여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운영조직이 된다.
- 재난상황에서는 아래의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가 이용된다.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



※ 소방서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3.4.2 적용상황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된다.
 - 소방, 경찰, 응급의료소에 의한 재난현장 공동 대응
 - 각 지원기관 현장지휘소에서
 - 000시 통제단을 통하여 000시 전체의 대응조직 운영할 때
 - 각 재난대응구역 내의 소방서 통제단에서

3.4.3 표준현장지휘체계 운영원칙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모든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며,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 또는 다수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상황에 표준현장지휘모델로 적용한다.
- 표준현장지휘체계의 표준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대응계획부 : 재난상황과 자원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현장대응계획을 문서화한다. 현장대응계획을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에 전달하고, 상황예측에 따른 필요자원을 예측한다. 현장지휘대 및 통합지휘팀과 함께 대응지침서와 현장 대응계획서를 개발한다.
 -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에 따른 현장 대응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통제한다.
 - 자원지원부 : 현장대응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장비, 인력자원을 제공하고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지원임무를 수행한다.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사전 대비
(-D7 ~3일전)

- 정보수집**
 -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 주요추진 사항**
 - 시·도 급경사지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취약지역 파악
 - 강·하천 주변,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 전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철저 지시
 - 풍수해 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 정비·점검 지시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내습 전
(-D2 ~1일전)

- 상황판단 회의**
 -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 중통단 운영준비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 일선 소방관서장 상황중요시까지 지휘선상 근무 지시
- 중통단 운영**
 - 중통단 조별 근무자 명단작성 및 비상연락망 확인·점검
 - 기상특보에 따른 대기 예경 발령
 - 중대본 구조구급반 인력 파견(정보교류 및 지원사항 요청 등)
- 주요추진 사항**
 - 주무부서(119구조과) 정위치 근무
 - 긴급조치사항 시·도 소방본부 및 119중구본 지시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내습 중

- 중통단 운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시·도 통보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즉보체계 확립 지시
 - 피해사항 및 지원사항 등 상황보고체계 확립
- 긴급지시 사항**
 - 시·도 소방본부 및 중앙119구조본부 강조 지시
 - 내습지역 : 대응단계별 진통단 운영준비 철저
 - 기 타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비·대응태세 유지
- 주요추진 사항**
 - 긴급구조활동 지휘·조정·통제 강화
 - 인근 시도 지원 및 중앙단위 출동체계 확립
 - 기타 긴급구조 상황 추가지시 등

내습 후

- 피해현황, 긴급구조 실적 및 미담사례 등 보고준비
- 복구 및 민생활동에 가용 소방력 최대 지원 지시

시·도 소방본부

- 정보수집**
 -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 주요추진 사항**
 - 소방서별 재난취약지역 등 파악·취합하여 중통단 보고
 - 강·하천 주변,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 내근 및 외근근무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현행화
 - 기상특보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수립 시달
 - 재난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및 수방장비 점검 철저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지시(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상황판단 회의**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 총괄지휘부 구성 운영 및 상황실요원 보강 등
 - 119신고 폭주 대비 상황실 접수대 증설방안 강구
- 지통단 운영**
 - 본부 및 소방서 조별 근무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확인
 - 기상특보에 따른 예비단계 비상 예경
 - 지역재난대책본부와의 협업체계 유지
- 주요추진 사항**
 - 전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 소방력 재배치로 동시다발 긴급구조 출동대비
 - 피해예상 집중지역 → 필요시 즉시 중통단으로 요청
 - 태풍경로, 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 지통단 운영**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상황조정 운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소집	필요시 필수요원 동원	정원 30%	정원 50%

※ 기상특보, 지역실정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가능

- 중통단과의 핫라인 등 상황 즉시보고 체계 유지
- 주요추진 사항**
 - 긴급구조 대응 시 직원 안전사고 절대방지 재강조 지시
 - 특히 주변 동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장지휘 강화
 - 상습 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감화 지시
 - 해안가, 유원지 및 붕괴우려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 피해발생 큰 지역에 대한 소방력 우선 배치 등 탄력적 운영

- 피해현황 및 긴급구조 실적·미담사례 등 파악
- 통합지원본부와의 지원관련 물자 등 관련 정보 공유

소 방 서

- 기본 업무**
 - 출동차량 정비 등 출동태세 확립 및 개인안전 장비 점검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
- 주요추진 사항**
 - 관내 강·하천 주변 등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 진통단 운영을 위한 단계별·조별 비상소집 명단 정비
 -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동원자원 파악
 - 소방차량 및 풍수해 대응자원 정비·점검
 - 기타 상급부서 지시사항 이행 등

- 지통단 운영**
 - 상황판단회의 실시로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유지
 - 기상상황, 위험요소, 소방력 동원 등 판단·이행
 - 총괄지휘부 등 상황요원보강 계획 등
- 주요추진 사항**
 -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집중 순찰 실시 및 대처요령 홍보
 -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재배치로 대응태세 유지
 - 매년 상습 침수지역 및 예상지역 센터에 집중 배치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에 따른 근무자 명단 작성·정비

- 지통단 운영**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피해범위,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탄력 운영
- 주요추진 사항**
 - 긴급구조대응시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안전점검관 센터별 지정운영 지시
 - 수난구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현장활동 준수
 - 필요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및 출입통제
 - 순찰차 및 펌프차 등을 활용 사이렌 취명 및 안내방송 실시
 - 시·군·구 통합지원본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 상황공유 및 필요한 물자·자원 등 지원요청
 - 필요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예방활동

- 복구 및 민생활동에 가용 장비 및 소방력 최대 지원

【참고 3】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1. 비상경고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한다.(첨부 참조)
2. 000시 긴급구조 통제단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코드암호를 얻는다.
3. 아래에 열거된 순서대로 방송국에 연락한다.
 - KCB 전화 765-4074, 팩스: 765-4080로 연락
 - KCB가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
4. 전화가 두절된 경우, 비상용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한다.
5.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특정 암호 숫자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면, 암호숫자 우측 옆에 나타난 암호로 대답한다.
6.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기 작동개시라고 말하며, 5, 4, 3, 2, 1, 0를 읽고, 메시지 양식에 있는 메시지를 읽는다. 주의하여 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읽는다. 그리고 메시지 양식의 맨 끝부분에 “방송완료” 라고 말한다. 메시지가 완료되었을 때,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완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는다.

【참고 4】 비상경고메시지(예시)

□ 메시지 1 --- 재난발생 후 최초 메시지

1. ____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공지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 사고가 (장소명)에서 발생했습니다. _____로 인하여 _____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명)의 (반경 Km)내의 모든 사람들은 본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은 북쪽으로 (이름)도로, 동쪽으로 (이름)도로, 남쪽으로 (이름)도로, 서쪽으로 (이름)도로입니다.
2. 지금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마십시오. 대피가 필요하게 되면 대피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대피지시를 듣게 되면 즉시 보호장소를 찾아서 대피하십시오. 119대원(소방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메시지 2 --- 위험지역 내 보호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 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〇〇〇-〇〇〇〇 ~ 〇번입니다.

□ 대피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 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00-0000 ~ 0번입니다.

【참고 5】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연락공보담당은 외국어로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번역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로 언론에 제공되는 메시지 및 비상경고메시지의 샘플이다.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2. 지진(최신 정보)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10. 도로폐쇄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물탱크의 균열)
14. 비상방송메시지(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이 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_____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는 피해나 부상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그 곳에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심한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진동이 시작되면 재빨리 견고한 가구 밑이나 지탱할 수 있는 문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원차단기를 내리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지진(최신 정보 제공)

이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오늘 __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_인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과학적 설명)

긴급구조통제단에 _____명의 사망자 _____명의 부상자 _____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상황 요약을 계속한다)

여진이 사고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면 즉시 견고한 가구 밑이나 문간으로 대피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메시지 1

오늘 _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 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부상, 사망, 재산피해액, 화재 기타 내용을 알린다.)

강도 ____의 여진이 이어졌지만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피해사례를 열거한다.)

____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이재민들을 위해 ____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____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____일 ____시에 시장은 (시간) (날짜)에 (지역)에서 지역재난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액은 ____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시지 2. 단기에보용 메시지

(기상청의 지진예보경고를 참고한다.)

기상청은 ____동 주변지역에 ____시간내 지진이 발생할 것을 (시간) (장소) 발표하였습니다. 지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진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개인과 기업 등은 즉시 지진을 대비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_____ 지역에는 더 큰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도를 참고한다)

(다음의 지진 대비활동을 제공한다.)

*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은 철근이 없는 오래된 석조건축물이다.(보통 벽돌건물임)

* 온수기, 불안정한 가구(예를 들어 높은 파일 캐비닛인 서랍장), 실험실 선반 위의 화학약품, 고정되지 않은 높은 물건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십시오.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기상청에서 발표된 지진예보는 _____시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_____의 모든 지역은 언제라도 지진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_____의 건물 설계기준은 지진의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언급한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예보, 홍수예보 등과 마찬가지로 지진예보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진예보가 상황실에 접수될 때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보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_____은 대중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게 대비해야한다.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명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예보된 지진은 아주 미미하거나 진앙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피해가 _____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특정지역명)에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방출)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 도로는 _____입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그 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후 결과를 가능한 빨리 전달할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위험물질인 (물질명)의 소량이 ____에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도로가 폐쇄되었고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물질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하지만/강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_____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____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도로는 _____입니다. 위험지역과 가까운 곳에 계신 경우에는 출동한 소방관(또는 비상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반복해줄 것을 요청)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이 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인 (물질명)의 (다량/소량)이 _____에서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_____ km이 내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지금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밖에 있는 친구나 친척의 집 또는 (장소)에 설치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십시오. 차량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의 이웃을 태우고 가십시오. 차량이 필요하다면 _____로 전화하십시오.

(학교목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소)의 대피소로 대피할 것입니다. 학생을 태우기 위해 학교로 가지 마십시오. 학교당국이 대피소로 학생을 대피시킬 것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경청하십시오.

그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높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험지역 밖의 병원이나 (장소)에 있는 대피소에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_ 지역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오늘 (오전/오후) 약 ____시경에 위험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의 (유출/방출) 사고를 (신고자)가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소방/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출/방출)된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면 ____증상을 나타내는 (위험한/무해한) (화학약품/물질/가스)인 (물질명)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출이 발생한 ____지역에서 (기관명)이 약 ____명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관명)의 위험물질요원들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상황을 수습한 후 주민들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소방/경찰)관을 포함하여 ____명이 ____을 위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숫자)명이 치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____입니다.

10. 도로폐쇄

여기는 ____의 ____입니다. 최근의 폭풍우로 인하여 시의 (몇 개의/많은) 지역에 (심각한/심하지는 않은)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도로의 통행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도로에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모든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쇄된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 도로폐쇄정보를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십시오.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여기는 ____의 ____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지역 내에서 구경을 하려고 해선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폭풍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다음의 장소는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곳입니다.

(장소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이 곳은 _____입니다. _____시의 _____지역에는 홍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즉시 빨리 _____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의 경계, 대피경로를 쓴다.)

생필품인 구급약,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만,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은 실지 마십시오.

대피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집에 머물 수 없다면 _____에 있는 적십자 대피소(중한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적십자 대피소에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덩치가 큰 애완동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차량이 없거나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_____로 전화하십시오.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_지역(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전체 메시지를 반복)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위험물 탱크의 균열)

이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우리는 ____물탱크에 작은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장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관한 최신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14. 비상방송메시지(위험물 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이곳은 _____입니다. _____탱크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_____은 수주/수시간/수일 이내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고 _____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_____ 지역을 떠나십시오.

(대피지역 경계와 대피경로를 말해준다)

적십자는 _____에 대피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 머물 수 없다면 다음의 대피소 중 한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약품,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 생필품과 주요한 물건만 챙기십시오.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을 싣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을 떠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창문과 문을 잠그고, 수도와 가스를 잠그고,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차량이 없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음의 승차장소 중 한곳으로 가십시오. 차량이 없는 사람은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만 챙기십시오. 버스가 당신을 적십자 대피소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승차장소에 갈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_____로 전화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승차장소 안내)

애완동물은 적십자 대피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맡길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덩치가 큰 동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사항을 말해준다).

재난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주파수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흥분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해 주십시오. 당신이 협조하신다면 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기관명)_____으로부터 지진의 발생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발생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 표본

1. (발신기관명)로부터
2. (수신기관명)으로
3. (해일 도착시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4. (발생지역) 00시 남서쪽 00km 지점
5. (진도) 8.4
6. (성명), (관측소)

1. 2번 설명 생략.

3번--지진에 의한 파도가 육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칭한다.

4번--지진이 발생한 위치나 지역을 나타낸다. 때때로 막연한 방향이나 대략적 거리가 주어진다.

5번--리히터 지진계에 나타난 지진의 규모

6번--보고를 보낸 직원의 이름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기상청은 ____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해일이 ____해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일은 약 ____에 ____해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해일로 인하여 홍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지역 안내)

위험지역내의 모든 사람들은 ____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상황은 여섯 시간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할 것입니다.
(유사 재난의 사례 설명)

지진해일은 ____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64년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지진해일도 ____에서 12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제때에 대피를 하지 않았거나 대피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 지진해일은 ____지역에도 피해를 입혔다. 1960년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경고가 발표된 지 6시간이 지난 후 ____에서 61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____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____에서 ____명의 사람들이 지진해일로 생명을 잃었고, ____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해서 발생하는 파도입니다.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를 받을 때까지 위험지역 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파도는 이 지역해안에서 한 시간 거리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 ____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지역에서 지진해일의 크기나 진폭을 미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지진해일이더라도 한 해변에서는 크고, 수마일 거리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지진해일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해선 안 됩니다.

지진해일을 보러 해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파도는 당신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____해안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지역 유선TV 방송국이나 뉴스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동안, 지역 경찰, 소방 그리고 비상활동 임원들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바다 속에서, 특히 태평양 가장자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원인이다. 잠재적 위험지역은 해안지역, 항구와 낮은 고도의 만이다. 즉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15m 이하의 지역, 지역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30m이하의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 *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적인 파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위험지역(항구, 만, 바다어귀와 해안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 지진해일의 크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 지역에 따라 파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즉 한 지역에서는 작은 파도로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파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지진 해일은 위험하다.
- *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경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60년에 첫 번째 파도가 도착하기 10시간 전에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하와이 힐로에서 61명이 사망했고, 수 백명이 부상당했다.
- *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1983년 5월에 해안 근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혼슈 서북쪽 해안이 지진해일에 의해 강타되었고 일본에 있는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 * 지진해일의 접근은 해안선을 따라 해발의 높이가 눈에 띄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예고할 수 있다. 이 신호는 항상 경고로 받아들여야한다.
- * 절대 지진해일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가선 안 된다.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참고6】 현장브리핑문안예시(초기)

◇ ○○ 소방서장(또는 현장대변인) ○○○입니다.

- 오늘 오후 ○○시 ○○분경에 ○○군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및 붕괴사고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고개요’ 입니다.

- ○월 ○일 ○○시 ○○분에 ○○시 ○○구 ○○동 ○○문화체육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동호회원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 사고 당시 체육센터에는 동호회원 ○○명, 센터운영직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동호회원과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고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 총 사상자는 ○○명입니다.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으로 추정(잠정)되고, 정확한 인명피해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건물 안에 있던 ○○명을 구조해 인근 ○○으로 대피시켰습니다.
- 재산피해는 체육센터 1동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에 대비하여 인접 주민들을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추가붕괴 및 화재확장에 대비하여 경찰과 협조하여 주변도로를 폐쇄하고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은 ○○의료원, ○○병원 등에 분산 이송하였고,
- 부상자도 중증도에 따라 ○○의료원과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 정확한 사상자 명단은 나눠 드린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김○○씨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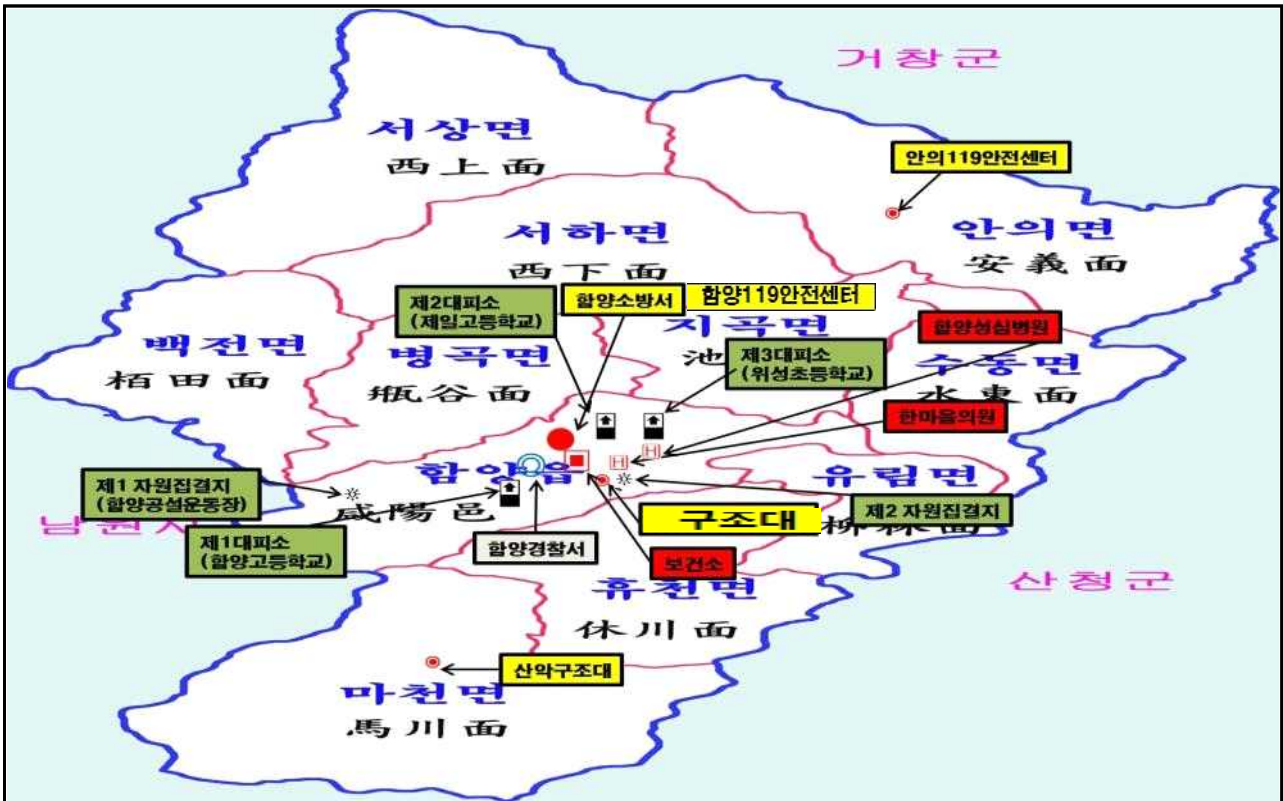
◇ 추가 피해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다음 브리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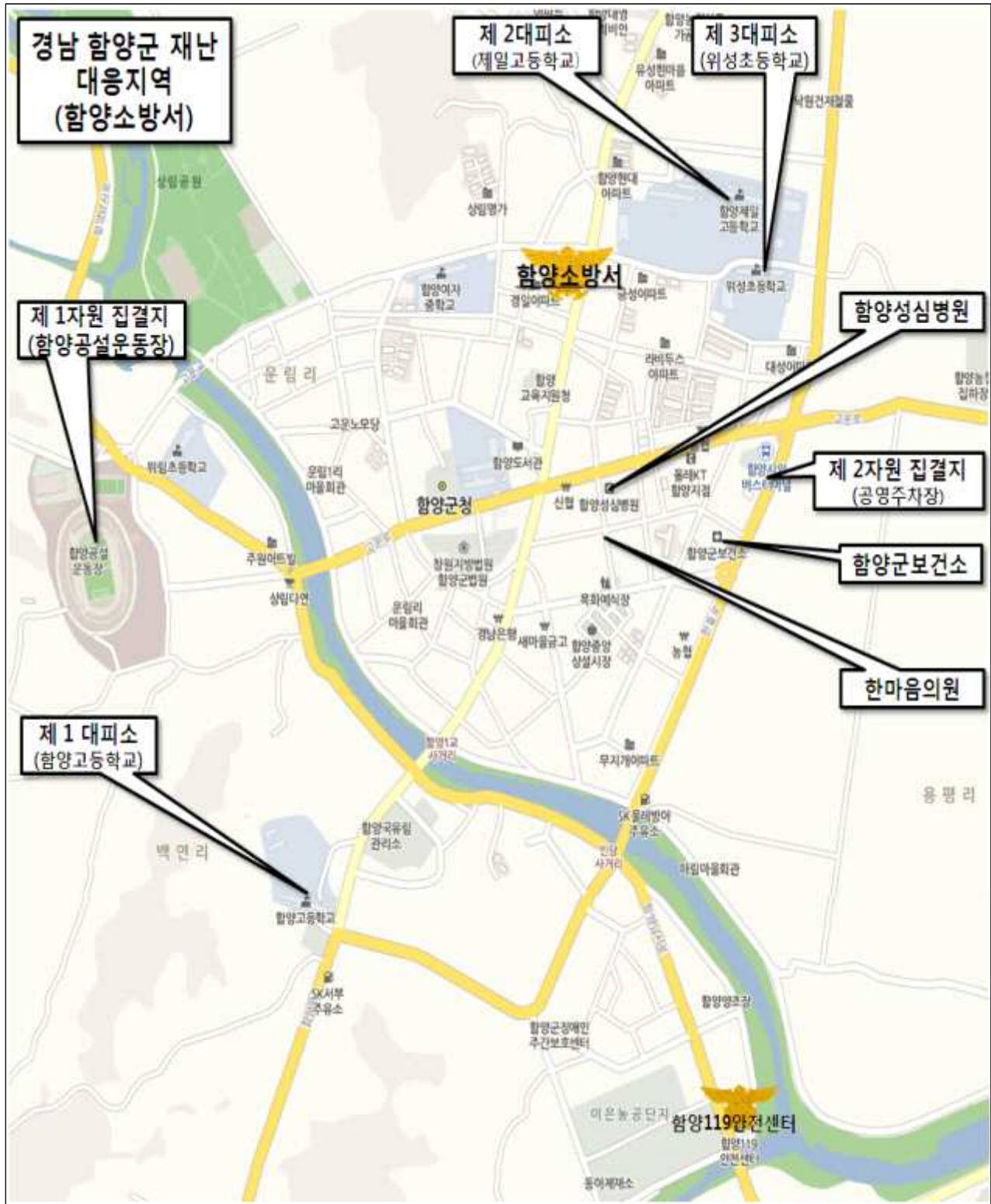
◇ 다음 브리핑은 ○○시 ○○분(구체적인 시간 예시)에 지금 이 장소(구체적인 장소 예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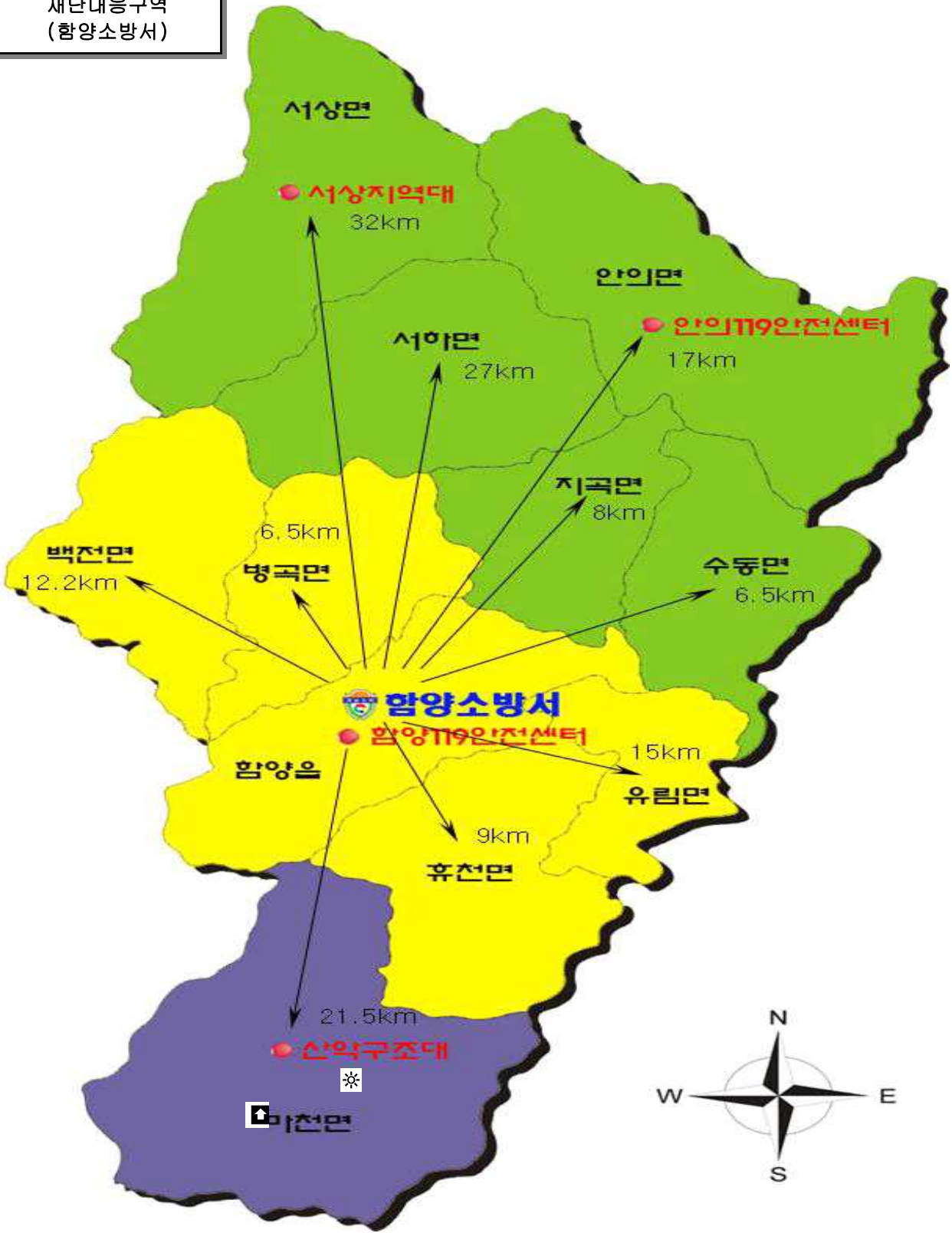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및 대피소, 자원집결소 현황

- 소방서
- ▲ 학교(대피소)
- ◎ 119안전센터
- ㄱ 사찰
- ※ 집결지
- ⊕ 교회
- ◎ 경찰서 / 해양안전
서
- ▬ 대응구역 경계선
- ▣ 보건소
- *파란색
침수위험지역(해일)
- H 병원
- *주황색
대량위험물 저장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재난대응구역
(함양소방서)



자원집결지, 대피소, 응급의료기관 현황

1. 자원집결지 현황 (3개소)

자원집결지	위 치	전화번호	비고
함양공설운동장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96-1	960-6413	
공영주차장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37-5	960-9282	
함양소방서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61-41	960-9263	

2. 긴급대피소 현황 (3개소)

긴급대피소	위 치	전화번호	비고
함양고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963-3201	
제일고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27	963-2488	
위성초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위성초등길 18	963-2244	

3. 응급의료기관 현황 (1개소)

의료기관명	위 치	전화번호	비고
함양성심병원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963-4322	

【참고 8】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 대피소 지정현황

구 분	함 양 군
합 계	33개소 17,920명
교 회	15개소 16,000명
마을회관	8개소 330명
학 교	4개소 1,000명
관 공 서	5개소 390명
창고 등	1개소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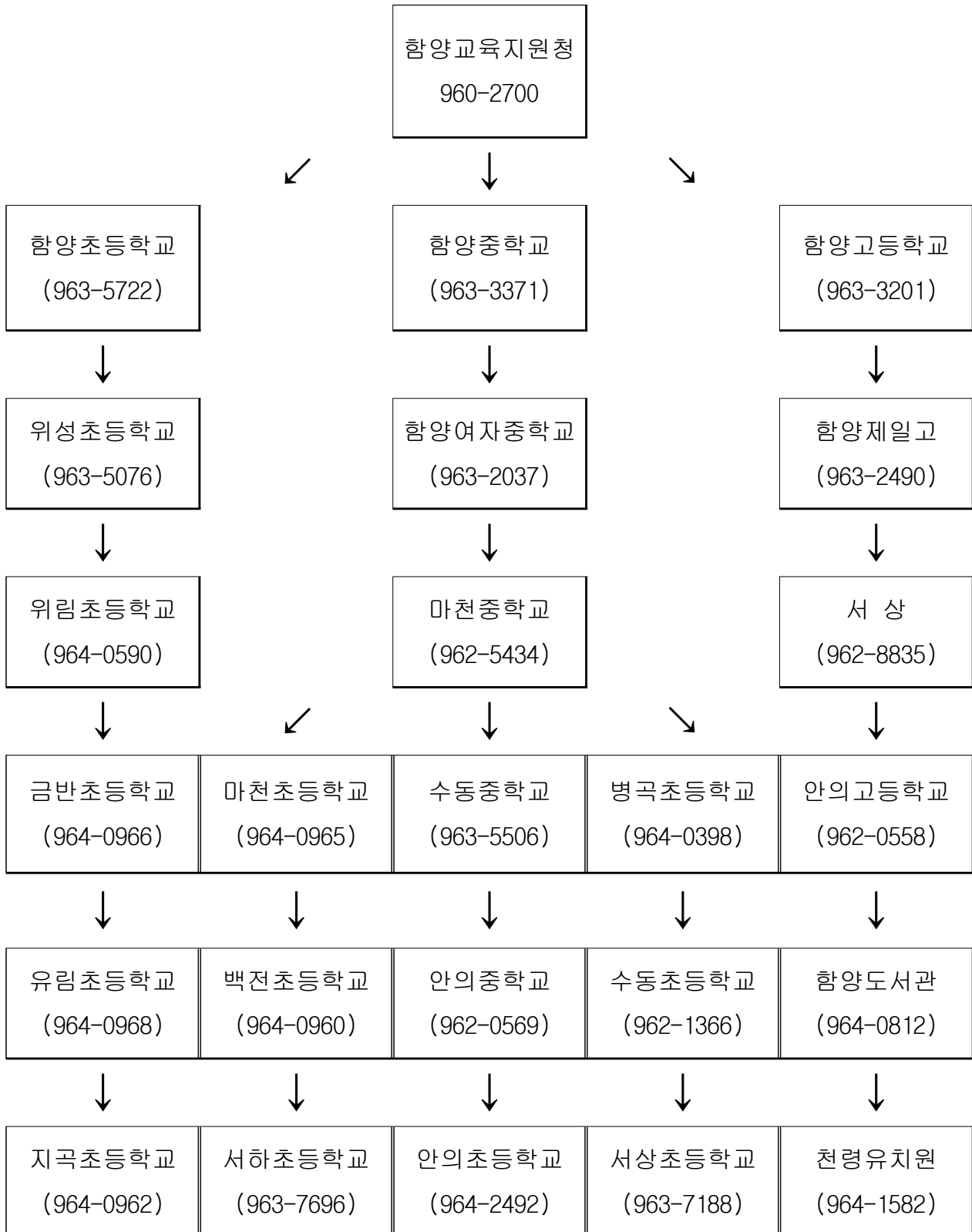
○ 교회 및 마을회관 현황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인원	전 화
함양군	운산교회	함양군 백전면	45	962-8520
	유림교회	함양군 유림면	60	962-6252
	창원교회	함양군 마천면	180	962-5256
	공배회관	함양군 지곡면	47	962-7453
	관동회관	함양군 안의면	28	962-4265
	금호마을회관	함양군 수동면	30	962-0472
	내마마을회관	함양군 마천면	30	962-5481
	대안마을회관	함양군 백전면	40	962-8243
	덕암마을회관	함양군 지곡면	47	962-7223
	반정마을회관	함양군 서하면	40	962-8211
	옥동마을회관	함양군 유림면	67	962-4217

○ 학교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인원	전 화(휴대폰)
함양군 학 교	함양초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3	1,300명	963-5722
	위성초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위성초등길 18	2,000명	963-5076
	마천초등학교	함양군 마천면 마천삼정로 126	1,000명	962-5421
	금반초등학교	함양군 휴천면 휴천로 371	100명	964-0966
	유림초등학교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927	300명	964-0968
	수동초등학교	함양군 수동면 연화산길 18-1	400명	962-1366
	지곡초등학교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12	200명	964-0962
	안의초등학교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길 8	500명	964-2491
	서하초등학교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117	200명	963-7696
	서상초등학교	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6	300명	963-7188
	백전초등학교	함양군 백전면 구산 대안로 12-2	200명	964-0960
	학생야영수련원 (2015.3.1.일차 폐원)	함양군 백전면 함양남서로 2755	420명	960-2777 (함양교육청)
	병곡초등학교	함양군 병곡면 휴촌길 21	300명	964-0398
	함양중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11	2,500명	963-3371
	함양여자중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8-9	1,021명	963-2037
	마천중학교	함양군 마천면 마천삼정로 108	250명	963-5434
	수동중학교	함양군 수동면 수동내동길 19	220명	963-5506
	서상중학교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32-1	400명	962-8835
	안의중학교	함양군 안의면 거함대로 1654번지	500명	962-0569
	함양고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1,000명	963-3201
함양제일고등학교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27	1,300명	963-2488	
서상고등학교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32-1	480명	962-8835	
안의고등학교	함양군 안의면 안의배움길 30	500명	962-0558	

함양군 교육지원청 비상경고발령 메시지 비상연락망



【참고 9】 소방응원협정체결 대상 현황

연번	대 상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인원	장비(대)	대응재난
1	성심병원	함양읍 고운로 70	정형주 963-4322	2	구급차 1대	전 반
2	상림중기	함양읍 한들로 36	안성환 (964-0415)	7	굴삭기 3대(중형) 덤프트럭 3대	전 반
3	함양굴삭기협의회	함양읍 함양로 1050-9	정희석 964-9990 010-9363-4621	125	굴삭기 소형 : 65대 중형 : 40대 대형 : 20대	전 반
4	대원중기	마천면 군자리 1148	양승대 962-3556 010-3654-5215	1	굴삭기 소형 1대	전 반
5	화신정비	함양읍 용평3길 8	이행관 963-2120	1	렉카 2톤 1대	교 통
6	상림렉카	함양읍 고운로 306	박동조 964-0901	4	렉카 1톤 4대 크레인 5톤 1대 크레인 8톤 1대	교 통
7	해병전우회	함양읍 함양로 1117	김광진 010-3869-4670	5	래프팅보트 4대 고무보트 1대(도트2)	수 난
8	파워레포츠	휴천면 천왕봉로 2261	최상두 964-1171	15	래프팅보트 11대	수 난
9	재난구조협회 함양군지회	함양읍 함양로 1201	윤석구 964-0365 010-3333-7362	15	트럭 1대	수 난
10	한들가스	함양읍 함양로 1399	강성기 963-7393	4	1톤 트럭 3대 가스탱크로리 2대 (2.5톤, 10톤)	전 반
11	국도전기	함양읍 함양로 1205-1	강운자 964-7000	1	1톤 트럭 1대	전 반
12	퓨어플러스	수동면 수동농공길	박헌식 964-1437		지하수 수원 700톤	화 재
13	강산카고크레인	함양읍 고운로 317	김순철 (963-9097)	1	크레인 1대(5톤)	전 반
14	우주광고사	수동면 수동내동3길	지철수 963-9442	1	스카이1대(3.5톤/21m)	전 반
15	함양스카이	병곡면 송평리 428	이인수 964-5504	1	스카이1대(5톤/45m) 굴삭기 중형 1대 5톤 덤프트럭 1대	전 반
16	백호스카이	유림면 우동길 10-3	백성호 010-6298-9337	1	스카이1대(5톤/38m)	전 반
17	보성스카이	함양읍 필봉산길 83-1	김병국 962-3773 010-5345-6996	1	스카이1대(5톤/36m)	전 반

※ 긴급대응 지원기관 6개소 제외 현황임.

【참고 10】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위 치	전화번호
산청소방서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6-7	970-9282
거창소방서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	940-9282
합천소방서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930-9282

【참고 11】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

상황실	주소 / 위치	연락 이름과 전화번호
경남소방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구조구급과 211-5413~6

【참고 12】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부 서 별	직 책	성 명	핸 드 폰	비 고
통 제 단 장	함양소방서장	구본근	010-8954-9082	
총괄지휘부장	현장대응단장	김영일	010-6578-4730	
통합지휘팀	구조구급담당	이권재	010-5099-9314	
연락공보담당	예방지도담당	정 엽	010-2032-7063	
안 전 담 당	소방행정담당	서성일	010-9662-3819	
대응계획부장	소방행정과장	김성배	010-6665-7864	
자원지원부장	예산장비담당	최영종	010-9921-2540	
현장지휘대장	지휘조사1팀장	이인수	010-5099-9314	
	지휘조사2팀장	곽기재	010-3616-2870	
	지휘조사3팀장	이종은	010-9620-7706	
긴급복구부장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010-8372-4766	

【참고 13】 통제단 주요 지휘관 비상연락망

연번	소속	직책	임무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1	함양군	안전도시과장	긴급복구	최인기	960-4479	010-8700-2433	
2	함양군	건설교통과장	긴급복구지원	강득만	960-4001	010-3657-5841	
3	함양군	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지원	임재호	960-4383	010-3574-7528	
4	함양군	환경위생과장	긴급오염통제	배성훈	960-4239	010-5357-9767	
5	함양군보건소	보건소장	의료·방역	김영숙	960-4614	010-3542-0514	
6	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회질서유지	장수석	960-1280	010-9076-6461	
7	함양산림항공 관리소	관리소장	산불진화 인명구조	이성관	960-2801	010-7677-1006	
8	육군8962부대 제3대대	대대장	시설응급복구	박점복	055-963-1113	010-5079-2265	
9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전력공급팀장	에너지가능복구	최경석	960-2231	010-2664-1326	
10	KT산청지사	CM팀장	긴급통신지원	박종욱	973-0060	010-2832-7530	

【참고 14】 주요기관 목록

조 직	연락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960-4248	960-5777
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	960-1282	963-5847
제8962부대 3대대	작전과장	963-1113	960-9130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안전항공담당자	960-2800	962-2870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960-2550	960-2580
함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960-4654	960-5742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960-2760	960-2709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전력공급팀	960-2232	960-2240
KT 산청지사	CM팀장	973-0060	973-0115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구호복지팀	278-2730	278-278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안전관리과	746-0388	746-0161
함양성심병원	원무과장	964-4322	963-7689
함양한마음연합의원	원무과장	964-2301	964-2305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대)750-8000 750-8282	750-9094
진주고려병원	응급실	(대)751-2500 755-7575	757-4705

【참고 15】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함 양 군	안전도시과	과장	최인기	사무실: 960-4248	
				H·P: 010-8372-4766	
함양보건소	감염병관리계	계장	박정희	사무실: 960-4633	
				H·P: 010-2071-6952	
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	과장	강신소	사무실: 960-1280	
				H·P: 010-9811-6053	
제8962부대3대대	군수과	보급 급양관	정재호	사무실: 963-1113	
				H·P: 010-4910-2392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전력공급팀	팀장	최경석	사무실: 960-2231	
				H·P: 010-2664-1326	
함양산림항공 관리소	안전항공팀	팀장	최대정	사무실: 960-2810	
				H·P: 010-5572-7110	
함양국유림 관리소	보호산사태 대응팀	팀장	이종규	사무실: 960-2543	
				H·P: 010-6371-0798	

【참고 16】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기관임무 재난대응기능	소방서	경찰서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부대	한국전력	K T	상하수도사업소	적십자사	홍수통제소	환경위생과
접근통제	책	지					지						
고립거주자 구조(구호)	책	지	지				지						
심리 상담					지						책		
피해 평가	지		책			지		지	지	지			
쓰레기 제거			책	지			지			지			책
비상방송	지	지	책										
긴급대피	지	책	지				지						
식품검사			책		지								
홍수감시										지		책	
기관간 협조	지	지	책		지		지	지	지		지		
대중 급식/보건	지										책		지
실종자 구호	책	지					지						
관련 공무원 비상연락	책		지										
현장지휘소	책	지	지		지		지	지	지				
비상전력/조명				지				책	지				
식수제공	지		지							책	지		
교통차단(격리)		책		지									
안전점검	지		책				지						
모래자루/제방쌓기/배수			책			지					지		
탐색과 구조	책	지					지						
눈 제거		지		책			지						
오도도못하는차량운전자구원		책	지				지						
긴급 대피소	지	책	지										
태풍 기상감시													
교통통제		책		지			지						
구호시설 협조			책					지	지				
차량제거		책		지			지						
희생자 신원확인		책											
물 사용 제한			지							책			

※ 책 : 책임기관
지 : 지원기관

【참고 1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기관단체명 재난대응 기능	소방서	경찰서	함양군	보건소	군부대	한국전력	K T	수자원공사	농어공사	적십자사	환경위생과
접근통제	책	책			지						
사고대응 지원		지	지	지	지						
보조동력	지					책					
사건분류	지	책	지								
현장지휘소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제한	책	지	지		지						
봉쇄	지	책			지						
청소	지		책								지
피해평가	지	지	책								
오염제거	지	지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책
환경/보건 평가	지	지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책
피난/내부 보호	책	지	책	지	지						
음식/농작물/동물보호	책	지	지		지				지		
급식			지							책	
유해화학물질 확인	책	지	책	지	지						
지휘	책	지	지		지						
기상정보			책					지			
실종자 구호	책	지	지		지						
대기/물 오염 감시			책					책	지		지
영안실 서비스	지	지	지	책							
공공 용수 보호			지					책			
기록유지			책								
복구/재 점유			책								
루머통제		책									
안전	책		지		지						
대피처/피난센터			책		지					지	
특별한 대중 교통수단		지	책		지						
교통통제		책			지						
희생자 수송	지			책	지						

※ 책 : 책임기관
지 : 지원기관

【참고 18】 중점관리대상 목록

연번	대상명	위치	층		동	연면적	소방안전관리등급	전화번호 (휴대폰)
			지하	지상				
1	함양정신요양원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	1	3	5	2,787.67	2	962-2071 (010-7153-8413)
2	지리산함양시장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7		2	1	2,154.82	일반	963-2461 (010-8890-5842)
3	(주)한국화이바	함양군 수동면 산압단지길 7		2	26	20,955.17	2	960-3225 (010-2284-4002)
4	에디슨모터스(주)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86		2	7	34,004.36	2	960-3217 (010-6572-4992)
5	이레소망의집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886	1	3	2	3,383.32	2	962-0659 (010-4232-2954)
6	함양은혜의집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449-15	1	3	1	1,919.18	2	962-5078 (010-6419-3349)
7	남계서원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1	10	244.63	일반	960-5166 (010-3862-1317)

【참고 19】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주파수	주 소	전화번호	보도국 전화번호
진주문화방송	89.3	진주시 가호로 13	771-2112	FAX. 771-2139
KBS진주방송국	91.1	진주시 신안로 85	740-7100	FAX 740-7199

【참고 20】 언론매체 명단(TV 방송국)

방송국	채 널	주 소	보도국 전화번호	보도국 팩스번호
진주문화방송	11	진주시 가호로 13	771-2112	771-2139
KBS진주방송국	15	진주시 신안로 85	740-7100	740-7199
KNN 경남본부	14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4	283-0505	283-0502
서경방송 (유선방송사)	8	진주시 진양호로532	740-3001	748-0525

【참고 21】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언론사(신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고
함양신문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3길 9-8	962-5000	962-9988	
주간함양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60-1	963-4211	963-4666	
뉴스 거함산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94	963-7545		
함양군민신문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3길 5-1	960-2828	962-9009	
서부경남신문(거창)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69-1	941-9100	941-9300	

첨 부 자 료

[첨부 1] 주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첨부 2] 세부 대응메뉴얼

첨부 1 주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첨부 2 세부 대응매뉴얼

2-1 계획부장 세부 대응매뉴얼

- 계획부 담당요원 근무현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선착대의 장(또는 현장지휘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을 받는다.
- 현장지휘대장으로부터 초기 전술계획표를 입수한다.
-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 계획부 요원들의 비상소집상황을 검토한 후 임무를 재부여하고 초기 대응지침서를 개발 보급한다.
- 대응부장과 공동으로 통제단장의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주요 정보요소(파악해야 할 주요정보사항)를 결정한다.
 - 보고 일정을 결정한다.
 - 대응전략에 관한 초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한다.
 - 분석된 상황에 맞게 메시지센터에서 메시지전달 절차를 즉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 교대근무 주기를 결정한다.
 - 브리핑 일정을 상황판에 게시하여 취재단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통제단 운영의 초기 한 시간 이내에,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휘대장, 자원지원부장, 그리고 긴급복구부장과 긴급회동을 시작한다.
 - 재난상황에 상응한 통제단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운영요원의 수와 수준을 검토한다.
 - 작전계획을 개발하고 대응조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황을 검토한다.
 - 각 반장으로부터 필요정보를 파악한다.
 -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 긴급대피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재난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평가한다.
 - 우선적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어떤 임무(어디)에 우선적으로 자원과 보급품을 제공할지 결정한다.
- 상황보고반장이 상황판에 기록한 재난상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
- 운영요원에게 통제단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계획부 수행업무를 준비한다.

- 현장지휘대장을 위해 대응전략 및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고 특수대응자원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다.
- 긴급복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예측을 한다.
-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배치자원의 철수, 재배치, 교대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하고 수정한다.
 - 선착대장(현장지휘대장)과 공동으로 도착 즉시 통제단장(통합지휘팀 포함), 자치단체장에 대한 상황보고를 준비한다.
 - 계획부 운영요원들의 교대근무계획, 현장배치요원들의 교대조 운영계획을 세운다.
 - 재난상황에 부합하도록 각 부의 운영지침을 제공한다.
 - 모든 기록일지와 정보기록이 유지 관리되도록 확인한다.
 - 상황분석 후 잠재적 위험성 및 문제점을 분석 예측한다.
 - 통합지휘팀 회의와 각종 브리핑에 참석하고, 통합지휘팀 회의에 재난상황보고서를 제출한다.
 - 자원봉사요원 및 운영요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서류를 보존하고 이것들을 자원지원부에 제출한다.
 - 교대 근무가 계획된 바에 따라 배치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주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2-2 상황분석반장 세부 대응매뉴얼

- 상황분석반장은 계획부장으로부터 상황정보를 전달받고, 추가정보의 수집, 정리, 배포, 분석할 책임이 있다.
- 상황분석반장은 관련 정보분석자료를 상황보고반, 작전계획반, 메세지센터에 제공한다.
- 상황분석반 담당요원 근무상태를 계획부장에게 보고한다.
- 계획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 대응방침 자료를 입수한다.
- 상황분석에 필요한 전시판과 지도를 준비한다.
- 계획부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주기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예측을 실시한다.
- 기타 유관기관의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요구에 응한다.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선착대장)으로부터 상황정보를 수집한다.
-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의 대응지침수립을 지원하고, 통합지휘팀 회의의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보고를 준비한다.
- 통제단 운영요원의 필요물품을 조사하여 자원지원부에 제출한다.
- 상황분석반이 작성해야할 기록서식을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한다.
- 상황분석결과 발생가능한 잠재적 문제점과 필요조치사항을 예측한다.
- 교대근무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대조가 편성되어 배치되고 있는지 확인하다.
- 통제단내 각종 브리핑에 참석하고, 계획부장의 지시에 따라 통합지휘팀 회의에 참석한다.
- 관련 모든 기록물, 보고서를 보관한다.
- 유사재난과 관련한 각종 기록정보를 검색, 참고자료로 정리 배포한다.
- 주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2-3 상황보고반장 세부 대응매뉴얼

- 상황보고반장은 상황판에 정보를 게시하고, 각종 브리핑 및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상황보고반 담당요원 근무상태를 계획부장에게 보고한다.
- 계획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 자료를 입수한다.
- 재난의 충격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계시수단(지도, 상황판, 그래픽 등), 브리핑 시간계획을 결정한다.
- 필요한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자원지원반에 제출한다.
- 기록일지를 작성한다.
- 상황보고반의 교대근무 계획과 교대조 배치여부를 확인한다.
- 주요 현안보고를 입수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2-4 작전계획반장 세부 대응매뉴얼

- 통제단장의 방침과 상황분석반의 분석정보에 근거하여 자원현황을 분석 할당 조정하여 대응작전계획서(작전지침서 및 작전계획서)를 작성배포 할 책임이 있다.
- 작전계획반 담당요원 근무상태를 계획부장에게 보고한다.
- 관련 지도, 계획수립양식을 준비한다.
- 각 운영요원의 비상소집현황을 파악하고 각 직책별 미 응소인원, 교대근무조 편성 등 통제단의 24시간 상시운영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계획부장에게 보고한다.
- 자원봉사자 및 통제단 운영요원의 근무일지를 작성유지하고 이것을 자원지원부에 제출한다.
- 통제단장의 대응방침과 통합지휘팀 회의시 할당된 임무분담결과를 작전계획서에 표시한다.
- 각 출동기관별 대응자원현황을 파악한다.
- 필요시 자원집결지 운영을 통제단장(자원지원부장)에게 요청한다.
- 대응작전을 위한 기술적, 전문적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전문가를 소집 운영한다.
- 현장지휘대장과 함께 현장대응자원의 각 단위조직별 교대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교대조를 편성 배치한다.
- 상황보고와 관련된 상황정보를 재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점과 필요조치사항을 예측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2-5 메시지센터 세부 대응매뉴얼

- 통제단 내·외부에서 작성한 대응작전계획, 보고서 등 각종 메시지 전달과 주민 보호 비상방송메시지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계획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자료를 입수한다.
- 메시지 담당요원 근무상태를 계획부장에게 보고한다.
- 필요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자원지원부에 제출한다.
- 통제단내 행정 및 전술상의 메시지 전달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 모든 메시지가 적절히 복사, 발송되는지 확인한다.
- 모든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 확인한다.
- 모든 메시지의 원본을 보관한다.
- 모든 메시지 수신과 송신기록일지를 작성한다.
-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가능한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고 조치한다.
- 메시지 담당자들에 대한 교대근무계획의 수립과 교대요원의 편성 여부를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2-6 자원지원부장 세부 대응매뉴얼

- 현장지휘관과 현장대응부장에게서 초기 브리핑내용을 입수한다.
 - 통제단장에게 자원지원부의 상황을 보고한다. 통제단장의 초기지침서를 입수한다.
자원지원부 요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을 할당한다.
 - 활동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 전반적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가동한다.
 - 통제단 가동 초기 1시간 내에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부장, 대응
계획부장, 긴급복구부장과 회의한다.
 - 통제단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다.
 - 현장대응부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 계획된 또는 예상되는 작전에 필요한 자원공급, 업무지원사항을 확인한다.
 - 요청된 자원지원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한다.
 - 재난대응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필요한 모든 일지와 기록이 계속 작성되는지 확인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자원수요나 문제점을 예측하고 조치한다.
 - 통제단 브리핑과 작전계획회의에 참여한다.
 - 자원지원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유지하고 이를 대책본부로 이관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 다음 교대근무가 계획되어 있고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 목록을 재점검한다.

2-7 유관기관협조팀 세부 대응매뉴얼

☞ 경찰 연락관

- 소속 지휘부 및 비상대책상황실과 통신을 시작한다.
- 자원지원부가 요청한 자원 중 경찰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대응계획부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경찰보유 자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경찰자원의 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 재난대응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 통신공사 연락관

- 소속 지휘부 및 비상대책상황실과 통신을 시작한다.
- 자원지원부가 요청한 자원 중 통신공사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대응계획부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통신공사보유 자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통신자원의 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 재난대응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통신체계가 정상 작동하게 될 때 자원지원부장에게 통지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 군부대(제8962부대 제3대대) 연락관

- 소속 지휘부 및 비상대책상황실과 통신을 시작한다.
- 자원지원부가 요청한 자원 중 군부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대응계획부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군부대 보유자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군부대자원의 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 재난대응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

☞ 교육청 연락관

- 소속 지휘부 및 비상대책상황실과 통신을 시작한다.
- 자원지원부가 요청한 자원 중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대응계획부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교육청 보유자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교육청 자원의 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 재난대응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긴급대피와 음식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구역 학교책임자와 연락을 한다.
- 자원지원 부서 수송지원팀이 사용가능한 버스의 수를 보고한다.
- 사용 가능한 교육청 자원의 목록을 작성한다.
- 적십자사와 함께 긴급대피 업무를 조정한다.
- 정기적으로 위의 업무를 반복한다.